미국장로교 헌법 제Ⅱ부

규 례 서

큰활자판

2000–2001 Korean Book of Order, PDS #OGA-00-045

2000–2001

규 례 서

PRESBYTERIAN CHURCH (USA)

미 국 장 로 교

헌 법

제 Ⅱ 부

큰활자판

OGA-00-045

미 국 장 로 교

헌 법

제 Ⅱ 부

규례서

미국장로교

헌 법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U. S. A.)

제 Ⅱ 부
규 례 서

PART II
BOOK OF ORDER
2000–2001

공식 한국 번역판
(교회 또는 일반 법정의 소송이 있을 경우 영문판을 공식판으로 함.)

총회 사무처 발행

PUBLISHED BY
THE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1396

머리말

'품위와 질서' 는 미국장로교를 운영하는 정신과 문화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다. 미국장로교 헌법 제2부 *규례서*는 장로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장로교의 정치와 예배 그리고 권징에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참여하고 협력하는 일에 표준과 법이 된다.

*규례서*가 우리말로 처음 출판된 것이 1990년이고 1994년에 제 1차 개정판이 나왔다. 해마다 개정되는 헌법 조항들이 부록 형식으로 나왔는데 금번에 총회서기국의 협력으로 두번째 개정판을 낼 수 있게 된 것을 온 교회와 함께 기뻐한다.

한인교회들이 미국장로교의 일원이 되어 장로교의 치리와 법도를 배우며 성장해 온지 이제 30년이 되었다. 이제는 성숙한 교회로 발돋음해야 할 새로운 세기를 바라보면서 *규례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목회자나 평신도 모두가 *규례서*의 신학, 영성, 문화, 목회와 치리의 과정과 안내, 힘의 공정하고 조화로운 분배와 책임, 그리고 섬김과 순종의 정신을 잘 배우고 친숙하게 되어 평화롭고 건강한 교회생활이 되기를 소원한다.

*규례서*가 처음 나올 때부터 계속 번역과 원고 다듬는 일을 위해 수고해 주신 천방욱 목사의 헌신적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금번 새로운 개정판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준 미국장로교 총회서기 클리프 컥패트릭(Cliff Kirkpatrick) 목사와 *규례서* 담당 직원 테리 스티븐슨(Terri Stephenson) 여사, 그리고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주신 한국장로교출판사 사장 김봉익 목사와 직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다시한번 새로 출판된 *규례서*가 한인교회의 성숙한 교단 선교참여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1999년 6월 일
김 춘 자 목사
미국장로교총회 회중사역부
한인교회 자료개발실

서문

*미국장로교 헌법*은 정치형태 G-1.050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앙고백서*(제1부)와 *규례서*(제2부)로 구성된다.

*신앙고백서*는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 스콧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스위스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바르멘 신학선언, 1967년도 신앙고백과 간추린 신앙고백-미국장로교를 포함하고 있다.

규례서는 정치형태, 예배모법과 권징조례를 포함한다.

이 *규례서*에서

(1) "이어야 한다"와 "되어야 한다"는 명령받은 실제 행동을 지시한다.

(2) "마땅히 … 이어야 한다"는 강하게 제안받는 실제 행동을 지시한다.

(3) "적절하다"는 적합하게 맡겨지는 실제 행동을 지시한다.

(4) "할 수 있다"는 요구가 아닌 허용되는 실제 행동을 지시한다.

제211차 총회(1999)에서 각 노회에 제안되었고, 제212차 총회(2000)에서 선포된 정치형태와 예배모법과 권징조례의 개정안들이 이 책에 포함되어 있다. 새 용어가 해당 문단에 굵은 글자로 나타나 있다. 개정안들은 다음과 같은 곳에 이루어졌다.

규례서	*회의록, 1999*
G-6.0204	375
G-7.0306	577-78
G-9.0301a	656-57
G-10.0103a	577-78
G-11.0405	188
G-14.0801	375, 577-78
D-3.0101b	96
D-3.0105	64, 96
D-5.0101	93
D-5.0204	94
D-10.0201a	94
D-10.0204	94
D-10.0303c	94
D-10.0303d	94
D-10.0405b	95
에큐메니컬 일치설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가시적 표시	564-67

2000년 6월

크립톤 커크패트릭
미국장로교 총회 서기

규례서 참조 번호제에 관한 설명

*규례서*의 세 부분은 대문자들을 사용해서 약자화됐다.

G－정치형태
W－예배모범
D－권징조례

본문에 있는 각 참조 조항은 해당되는 약자로 시작한다. 약자 다음의 소수점 왼쪽에 나타난 숫자는 해당 장수를 지적한다. 소수점 오른쪽에 네 개의 숫자가 있다. 첫 두 개 숫자는 조항을 가리킨다. 그 다음 두 개 숫자는 조항 아래 있는 소제목을 가리킨다.

각 페이지는 해당 조문을 가리키는 적절한 약자에 이어 숫자로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정치형태의 제6장 첫 페이지는 이런 숫자표시가 있다 :

G - 6.0000 -.0106

이것은 정치형태의 제6장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과 그 페이지는 6개의 소제목들인 6.0101, 6.0102, 6.0103, 6.0104, 6.0105, 6.0106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 중에 조항 1이라는 뜻이다.

*규례서*의 장과 조항이 이처럼 표기되었으므로 현재의 숫자 표시를 변경시키지 않고서 수정 조항을 거기에 추가할 수 있다.

페이지 번호를 피함으로, 이 기호법은 매년 영어, 한글, 스페인어와 점자판에 동일하게 남게 되어 회의록, 보고서와 통신에 있어서 *규례서*를 인용하는 일을 가능케 만든다.

[이 항목은 …에 의해 삭제되었다.]란 문장을 몇 곳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규례서*의 인용에 혼란을 주게 될 번호를 다시 매기는 일을 피하기 위함이다.

내 용

정치형태

예배모범

머리말

권징조례

정치형태

The Form of Government

[본 문]

정치형태[1]

제1장 기본 원리

G-1.0000

G-1.0100

1.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심

a.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모든 통치와 권세, 모든 정사와 모든 권력, 그리고 현세대 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세대에서 모든 이름 위에 그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두셨으며, 그리스도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불러 세우심

b.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불러 세우사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교와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께 대한 교회의 봉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리스도는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와 항상 함께하신다. 그리스도만이 홀로 그의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부르시며, 사용하시되 남녀의 사역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하는 일에 그의 권위를 행사하신다.

그리스도가 교회에 신앙과 생명을 주심

c.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신앙과 생명, 일치와 선교적 사명, 교직자와 조례를 주신다.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뜻이 성경에 설정되어 있는 한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예배와 하나님 섬김, 그리고 교회 치리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성과 건전한 판단에 의해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한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권위이심

d. 예수는 주(主)시라고 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교회는 예수가 교회의 소망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의 권위에 예속되었고, 생동적이고 기쁨에 찬 하나님의 은혜의 실재 가운데 자유하는 삶을 누린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G-1.0200

2. 교회의 큰 목적

교회의 큰 목적

교회의 큰 목적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 ; 하나님 자녀들의 안식처, 양육

---

1) 본서 전체를 통해서 다음 약자가 쓰여진다 :
G-정치형태
W-예배모범
D-권징조례

과 영적 친교 ; 거룩한 예배의 유지 ; 진리 보존 ; 사회 정의의 촉진 ;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제시하는 것이다.[2]

G-1.0300

3. 교회규례의 역사적 원리[3]

교회규례의 역사적 원리

다음의 정치형태, 예배와 권징을 설정함에 있어서, 미국장로교(PCUSA)는 이 나라 공동 유산의 일부이고, 또 장로교 개념과 교회정치 제도의 기초가 되어 온 교회규례의 역사적 원리를 재확인한다, 즉 :

G-1.0301 판단의 권리

(1) (a) "홀로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교리와 계율일지라도[4],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벗어난 것이면 신앙문제 혹은 예배에 있어서 양심은 자유하다."[5]

(b) 그러므로 모든 종교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판단 권리가 보편적이고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 우리는 어떤 종교적 헌법이 보호나 안전을 위해 필요하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며 공통된다는 사실 이외에 국가 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G-1.0302 집단적인 판단

(2) 위의 보편적 권리의 원칙과 완전히 일치하여 각 교파나 연합체나 개체교회 협의회는 그 교회의 가입 규정과 목사와 교인의 자격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임명한 교회 내적인 치리의 전체적인 제도를 선언할 권리가 있다 ; 그럼에도 이런 권리 행사에 있어서 그것들이 그 가입 규정을 너무 해이하게, 혹은 너무 협소하게 만드는 잘못이 있을 수 있다 ; 그렇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까지도 그것들이 다른 사람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들의 권리를 부적절히 이용했을 뿐이다.

G-1.0303 제직원

(3) 우리의 복 되신 구세주께서는 그의 몸인 가시적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제직원을 임명하시어 그들로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진리와 의무를 보존하기 위하여 권징을 실시토록 하신다 ; 이것은 모든 제직원

---

2) 여기에서 말한 교회의 큰 목적들은 북미 연합장로교회 것을 약간 수정한 것인데, 이 교단은 1958년에 미국장로교와 통합하였다. 이 진술도 그 때에 통합하면서 미연합장로교 헌법의 일부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지금은 고전이 된 이 진술은 1904년과 1910년 사이에 여러 차례 그 교회의 헌법 개정을 했던 것인데, 1910년에 북미 연합장로교회에 의해 채택되었다.

3) 이 조항은, 첫 구절만 제외하고 뉴욕과 필라델피아 대회가 처음으로 1788년에 만들어 낸 정치형태 서문에서 따온 것이다. 그 해에 그 대회는 네 대회로 분리하여 미국장로교 총회를 구성했고, 그 다음 해에 첫 총회로 모였다. 그 네 대회는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캐로라이나 대회로 구성되었다. 이 네 대회가 총회에 총대를 보내서 1789년 5월 21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첫 총회로 모였다. 1788년에 만들어진 총괄적 계획이 미국남장로교회와 미국연합장로교회의 계속적인 정치원리가 되어 왔다.

4) 여기 인용한 '인간들' 과 '인간의' 란 말은 18세기에서 따온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5) 이 인용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것인데, *신앙고백서* 6.109에 있다.

에게 또한 전체 교회에 의무로서 주어진 것으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규율을 준수하면서 잘못을 범하는 자들과 불명예스런 자들을 견책하거나 축출시킨다.

G-1.0304
진리와 선행

(4) 진리는 선행을 하기 위해서 있으며 ; "그 열매를 보아서 그들을 알지라."고 하신 구주의 법에 따라 성결을 증진하는 것이 진리의 큰 시금석이며 그 의도다. 진리와 거짓을 같은 수준에 놓고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사람의 의견은 결국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해롭고 부당한 의견은 없다. 그와는 반대로 우리는 신앙과 실천, 진리와 의무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확신한다. 그렇지 않다면 진리를 찾거나 그것을 간직하려고 하등 애쓸 필요가 없다.

G-1.0305
의견의 차이

(5) 이상의 원칙에 입각한 확신하에서 교사로 인정되는 사람들은 신앙이 건전해야 한다는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좋은 성품과 생활 원칙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진리와 형식에 대한 이해에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피차에 상호 관용하는 일이 개 교인과 교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G-1.0306
교인에 의한 선거

(6) 교회 제직원의 성품, 자격, 권위만 아니라 그 직분 수여와 제도의 적절한 방법까지 성경에 규정되었을지라도, 어느 특정 조직체에 있어서 그 권위 행사를 위한 직원 선정권은 그 집단에게 있다.

G-1.0307
교회의 권한

(7) 교회의 권한은 전체 교회가 하든지, 혹은 선택하여 세운 대표에 의해 하든지 목회적이며 선언적일 뿐이다 ; 즉,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 어떤 치리회라도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양심을 억압하는 법을 제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 치리회의 모든 결정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모든 교회회의와 협의회가 인간성의 약점 때문에 과오를 범할 수 있지만, 이미 제정되었고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법을 판단하는 권리보다는 법을 만들겠다는 억지 주장에 더 큰 위험성이 있다. 그럴지라도 이 권리는 현상태에서 필요하기에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인간에게 맡겨진 것이다.

G-1.0308
교회의 권징

(8) 끝으로, 위에서 언급된 성서적이고도 합리적인 원칙들이 올바르게 준수된다면 교회 권징의 구속력과 엄격성으로 인해 교회는 영광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순수히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공민적 효력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강제성도 있을 수 없고, 다만 그 권징 자체의 정당성과 공평한 대중의 시인과 세계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지원과 축복 속에서 발생한다.

G-1.0400

4. 교회정치의 역사적 원리

교회정치의 역사적 원리

장로교회의 정치 및 권징의 급진적[6] 원리는 다음과 같다:
몇 개의 다른 회중이 집단적으로 모여 교회라고 단호히 불리우는 하나의 그리스도

의 교회를 이룬다 ; 그 교회의 상회나 상회 대표가 하회를 치리하거나 그 안에서 발생하는 논쟁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 같은 방법으로 전체 교회의 대표가 각 부분과 연합된 전체 분야를 다스리며 결정해야 한다 ; 곧, 다수가 다스려야 한다 ; 따라서 상소문제가 생기면 하회에서 상회로 상정되어 전체 교회의 공동의 지혜와 연합된 의사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원칙과 절차를 위해서는 사도들의 모범과 초대교회의 관례가 권위로서 인정된다.

G-1.0500

5. 헌법 정의

헌법 정의

*미국장로교 헌법*은 *신앙고백서*와 *규례서*로 구성된다.

G-1.0501

*신앙고백서*는 다음의 고백들을 포함하고 있다: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
스콧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스위스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바르멘 신학선언
1967년도 신앙고백
간추린 신앙고백－미국장로교

G-1.0502

*규례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정치형태
예배모범
권징조례

6) 이 조항의 본문은 1797년 미국장로교총회가 채택했던 것이다. 이 인용구 중 '급진적' 이란 말은 '근본적이고 기초적' 이란 뜻이고, '상소' 란 말은 사법 절차상의 사건을 말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2장 교회와 신앙고백

G-2.0000

G-2.0100
신앙고백적
진술의 목적

a. 미국장로교는 *신앙고백서* 가운데 있는 신조와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을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 이들 고백적 진술에서 교회는 그 교인과 세계를 향하여

그가 누구이며, 그것이 무엇인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행하도록 결심하는지를 선언한다.

공동체인
교회

b. 이 진술들은 확신과 행함으로 알려진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그것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지침서이다 ; 그것들은 기독교 전통의 본질을 요약한 것이다 ; 그것들은 교회로 하여금 건전한 교리를 유지하도록 지시한다 ; 또 그것들은 복음 선포의 사역을 위해 교회를 훈련시킨다.

G-2.0200
부차적인
표준으로서
신앙고백적
진술

이 신앙고백적 진술은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하는 교회의 부차적인 표준이다. 고백적 표준이 성경에 부차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표준이다. 그것들은 소홀히 작성되었거나 찬동된 것이 아니므로 무시되거나 경솔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신앙을 심각히 거절하는 안수받은 자를 교회는 충고하거나, 심지어 권징하기도 한다. 더욱이 교회의 신앙고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치, 예배, 권징에 관계되는 헌법 개정보다 더 엄격한 개정 절차가 요구된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는 그 정치형태뿐 아니라 그 교리의 표준을 개혁하는 데도 개방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개혁했고 또 항상 개혁하는 교회"(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임을 확인한다.

G-2.0300
보편교회의
신앙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들에서 보편교회의 신앙을 증거한다. 그 신앙고백들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교회, 즉 정경으로서의 성경과 전세계 교회적인 신조,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의 신비를 정의한 니케아 신조와 사도신경의 형성과 채택을 인정하는 그 교회의 신앙을 표현한다.

G-2.0400
개신교 개혁의
신앙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들에서 개신교 종교개혁의 주장들을 확인한다. 이들 주장의 초점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개신교의 표어－은총만으로, 믿음만으로, 성경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생활로 계속 인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이해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G-2.0500
개혁 전통의
신앙

a.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들에서 개혁 전통의 신앙을 표현한다. 이 전통의 중심 사상은 주권적 정의와 사랑을 펴시는 자유 가운데서 세계를 창조, 보존, 통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지존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섭리를 긍정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긍정하는 이 같은 중심 사상과 관련하여 또 다른 개혁 전통의 큰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1) 구원받고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 백성의 선택 ;

(2)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회 질서를 위해서 잘 다져진 관심을 나타낸 계약의 삶을 사는 일 ;

(3) 겉치레를 피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는 충실한 청지기직 ;

(4) 인간성은 우상숭배와 폭정을 할 경향성이 늘 있음을 인정하는 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며 정의를 추구함으로써 사회 변혁을 위하여 일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인정하는 일

특이한 입장
반영

b. 이와 같이 장로교회의 신조와 신앙고백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안에서 특이한 입장을 반영한다. 그것들은 살아 있는 전통 안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경험한 결과로써 나타난 고백들이다. 그것들은 개인의 신앙결단 및 신앙공동체의 생활과 복음 증거를 강화하는 데 요긴한 것이다.

G-3.0000

제3장 교회와 선교

G-3.0100
형 성

교회의 선교는 성경에서 말하고 신앙으로 이해되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활동에 의해 형성된다.

G-3.0101
하나님의 활동

a.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사 살아 있는 모든 피조물을 돌보는 관리 책임을 인간에게 맡기셨다 ; 하나님은 남녀를 공동체 안에서 살도록 지으셨으며, 창조주께 감사하면서 순종의 응답을 하도록 하셨다. 비록 인간이 그를 지으신 분,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갖는 공동체를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한 가족을 은총으로 선택하사 약속의 순례자, 곧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약

b.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에서 자유케 하셨다 ;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고,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셨다 ;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계약의 책임을 지우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그들을 보존하시면서도 그들의 불성실 때문에 백성을 심판하셨다.

G-3.0102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 예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 타인을 위한 그의 삶과 죽음으로 인하여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볼 수 있게 나타났다 ;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죄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와 세상에 계속 현존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었다.

G-3.0103
성 령

성령의 현존하심과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화해의 활동이 계속된다. 성령은 개인과 집단에게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 되심을 직면케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부르신다.

G-3.0200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잠정적인 시범장이다.

a.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실재의 세계를 위한, 그리고 세계 안에 있는 한 징표로 부름받았다.

b.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새로운 실재는 새 인간성이요, 새로운 창조요, 세

상에서 인간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다 :

(1) 죄는 용서받았고

(2) 화해는 이루어졌으며

(3) 적대에 찬 장벽은 허물어졌다.

c. 교회는 공동체적 생활에서 또 각 신자의 개인생활에서 공히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이 진리를 실체화시키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G-3.0300
교회의 소명

a. 교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며 말씀과 성례전에서 선포된다 :

(1) 새 시대가 밝아 왔다.

(2) 생명을 창조하시고, 얽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단절을 화해케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주장을 제시

b.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제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제자가 되어 새 생명을 받도록 촉구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의 충성스런 전도자

c.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복음 전도자가 되도록 부름받았다 :

(1) 세상에 나아가서 만백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다 ;

(2) 교회는 또한 교인들 서로간에 사랑을 본보이고 공통적 삶의 자질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실재를 나타내며 ; 예배와 친교, 교육을 함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깊은 기도생활과 남을 섬기는 생활을 실천한다 ;

(3)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한다 :

(a) 병을 고치고, 화해를 이룩하며, 상처를 싸매 주고,

(b)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외로운 자, 그리고 힘없는 자를 돌보며,

(c) 죄와 공포와 억압과 굶주림과 불의에서 백성을 자유케 하는 투쟁에 참여하며,

(d)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봉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e)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에서 그의 의와 평화와 사랑의 통치를 이루는 일에 동참한다.

G-3.0400
위기와 신뢰에로 부름받음

교회는 자신의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할지라도 이 같은 선교를 완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만이 홀로 생명의 주인이시요, 수여자이심을 신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실재를 이 세상에 이룩하기 위하여 자신을 초월하여 이런 행동을 수행한다.

G-3.0401
개방성에로

교회는 부름받았다 :

a. 교회와 세상에서 현존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더욱 근본적인 복종에 대

부름받음

하여 또한 예배와 활동에서 더욱 기쁨에 찬 축하를 드리는 일에 새로운 개방성을 갖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

b. 교회는 그 회원 됨에 있어서 다양한 신앙공동체임을 인정하고, 모든 연령의 남녀와 인종과 계층이 실제로 신앙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새 인간성의 보이는 상징으로서 모두를 포용하는 새로운 개방성을 갖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

c. 교회는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이런 형태의 신실성과 유용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교회의 제도적 형태의 가능성과 위험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방성을 갖도록 부름을 받았다 ;

d. 교회는 세상에서 더욱 효과적인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에큐메니칼 교회로 계속 개혁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방성을 갖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G-4.0000

제4장 교회와 일치

G-4.0100

1. 교회-보편교회와 개체교회

G-4.0101
보편교회

보편교회는 어린이를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그의 통치권하에서 교제 가운데서 살기로 결단한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다.

G-4.0102
보편교회와
개체교회

이들 모든 사람이 다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섬길 수 없으므로 각기 개체교회로 나누어지는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개체교회란 보편교회의 한 지역적 표현으로 이해하면 된다.

G-4.0103
개체교회

한 개체교회는 어린이까지 포함하여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이며 특별한 교회의 정치형태에 순응하는 어느 특정지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G-4.0104
개체 장로교회

미국장로교의 각 개체교회는 이 헌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된다. 개체교회 직원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들이다. 개 교회의 정치와 지도권은 당회의 책임하에 있다. 개체교회는 모든 백성을 섬기는 지역의 선교 단위로서 전체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G-4.0200

2. 교회의 일치

G-4.0201
선교적 일치

교회의 일치는 주께서 주신 한 은총의 선물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선교적 사명에 충성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기 위해 믿음의 영역을 넓히기를 원하는 믿는 자들의 친교이며 결코 기독교 공동체만의 유익을 즐기는데 만족해서는 안 된다.

G-4.0202
동일성

교회는 하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교회는 한 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한 하나님"(엡 4 : 5-6)을 모시고 있음을 일깨워 준다.

G-4.0203
가시적 동일성

각기 개성과 재능과 이해의 다양성을 다 하나로 단합시켜서 가시적 동일성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일치를 보이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다. 또한 그것은 일치가

성취된 한 방편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각기 다른 교파로 갈라진 것이 이 일치성을 파괴하지 않지만 이러한 나누임은 교회와 세상에게 그 일치를 모호하게 한다. 미국장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와의 그 역사적 연속성을 긍정하면서 그 모호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힘쓰며, 나아가 하나인 세계 교회의 모든 지교회들과의 교제와 유대를 추구하고 도모하려고 한다(G-15.0000).

G-4.0300

3. 장로교 정치원리

G-4.0301
장로교 정치

미국장로교는 보편교회에 대한 관여의 맥락에서 장로교 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한 특별한 관여를 재확인한다 :

a.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집단적으로 다 한 교회를 이룬다 ;
b. 이 교회는 장로들(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전통적으로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라고 불리우는)에 의해 치리된다 ;
c. 이 장로들은 함께 모여 단계적인 치리회를(전통적으로는 사법관할, 또는 법정으로 불리우는) 형성한다 ;
d. 장로들은 단순히 교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 대표하려고 한다 ;
e. 모든 결정은 치리회에서 토론의 기회를 가진 다음에 투표로써 하고, 다수가 치리하게 한다 ;
f. 상급 치리회는 하급 치리회를 시찰하고 통제할 권리를 가지며, 논쟁적인 문제를 문의나 불평이나 상소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
g. 장로들은 오로지 치리회의 권위에 의해서만 안수받는다 ;
h. 교회의 관할권은 치리회에 모인 장로들이 함께 행사함으로써 서로 나누어 갖는 권한이다 ;
i. 치리회는 교회의 헌법이 부여한 의무와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때 발효하는 모든 행정적 권위를 갖는다.

G-4.0302
장로교 일치

장로교 치리 질서의 성격은 권한과 책임을 서로 지는 체제이다. 한 교회든 여러 교회든 간에 다스릴 권위를 가진 치리회의 체제는 교회의 일치를 나타내는 구조 안에서 상호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G-4.0303
역사적 인식

장로교의 정치형태는 현대 교회의 배후에 있는 전통 유산을 충실히 지키는 동시에 연속성을 요구한다.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활동을 향한 개방성과 충성심을 동등하게 요구한다.

G-4.0304
에큐메니칼 인식

이 정치형태는 성경에 비추어서 이 교회에 질서를 주기 위해 세워진 것이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존속하는 데 기본적인 제도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또 모든 크리스천에게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G-4.0400

4. 다양성과 포괄성

G-4.0401
형태의 다양성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교적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으며, 교회와 세상에 있어서 이 다양성에 부응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예배에 함께 모이고 공동체적 삶에 질서를 제공할 때 여러 문화와 필요에 적합한 형식, 실천, 언어, 프로그램, 그리고 양육과 봉사의 다양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G-4.0402
타인에의
개방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일치는 교회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와 예술과 과학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양한 재능과 은사에 개방적이 될 것을 요구한다.

G-4.0403
전적인 참여

미국장로교는 교인들이 가진 풍부한 다양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게 하고 건전한 교회 생활에 이르도록 보다 큰 포괄성을 확실하게 할 방편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종족 그룹, 연령의 차이, 성 차이, 각종 신체장애, 다양한 지역, 개혁교회 전통에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신학적 입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결혼 상태(기혼자, 독신자, 미망인과 상처한 자, 이혼자)에 있는 교인들이 다 교회의 의사 결정에 대표자로서 충분히 참가하고 또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G-9.0104ff).

G-5.0000

제5장 교회와 교인

G-5.0100

1. 교인의 뜻

G-5.0101
믿음으로
교인됨

a.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육신은 교회에 그 선교적 사명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인에 대한 이해도 제공한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그의 주 되심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질 때 교회의 활동교인이 된다. 세례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공적인 신앙고백이 교회의 활동교인이 되는 가시적 표징이다.

활동교인이 됨

b. 사람들은 다음의 방법으로 교회의 활동교인이 될 수 있다 : 곧 신앙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재확인으로, 또는 타교회로부터 이명증서를 가져옴으로써 된다.

전에 세례
받은 자

c. 유아로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공적 신앙고백을 하고, 또 교회생활의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 당회는 그들이 활동교인으로서 책임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도록 초청하고 격려하며 돕는다. 그런 공적 신앙고백을 해야 하는 젊은 사람들의 나이는 정확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 활동교인으로 지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조심스럽게 심사한 후 당회의 세심한 판단에 달렸다.

전에 세례받지
않은 자

d.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신자로서 교회생활에 연합하고 싶을 때에는 당회가 실시하는 적절한 교육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명증서

e.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개체교회의 교인이 된 사람들은 최근까지 교인으로 있었던 그 교회로부터 온 이명증서를 받아서 당회가 접수함으로써 활동교인이 될 수 있다.

신앙의 재확인

f. 때로는 전에 신앙고백도 하고 또 어떤 개체교회의 활동교인으로 있던 사람들도 타교회로부터 이명증서나 교인 확인증을 얻을 수 없을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당회가 실시하는 교육과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들의 신앙고백과 교회생활의 책임 수락을 공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G-5.0102
사역하는 교인

충성된 교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역에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초청을 받아들인다. 그런 사역의 참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내포한다.

a. 복음을 선포하고,

b. 개체교회의 예배와 공동생활에 참여하고,

c. 기도하고 성경과 기독교의 신앙을 연구하고,
d. 돈, 시간, 재능을 드림으로써 교회사역을 받들고,
e. 교회의 치리 책임에 참여하고,
f. 교회 내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삶의 새로운 자질을 보이고,
g. 타인을 섬김으로써 세상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고,
h. 개인, 가정, 직업, 정치적, 문화적, 또는 사회생활의 관계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고,
i. 세상에서 평화, 정의, 자유, 그리고 인간 완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포함한다.

G-5.0103
포용성

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함으로 응답하며 교인이 되고,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고자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해야 한다. 인종과 종족의 기원, 세속적 조건, 또는 신앙고백과 관계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아무도 교인됨을 거부당해서는 안 된다. 교인 각자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귐을 넓히는 은혜의 개방성을 추구해야 한다(G-9.0104).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거부하고 복음에 비방거리가 된다.

G-5.0200

2. 교인의 범주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의 교인은 세례교인, 활동교인, 비활동교인, 그리고 관련교인으로 구성된다.

G-5.0201
세례교인

개체교회의 세례교인은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유아세례 교인－역자 주) 당회에 의해 세례교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공적 신앙고백을 안한 사람이다. 그런 세례교인은 목사의 돌봄과 교회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의 성만찬에 참여한다.

G-5.0202
활동교인

개체교회의 활동교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그 교회의 교인이 된 후, 이 교회의 치리에 자발적으로 순응하고, 또 교회의 활동과 예배에 적극 활동하는 교인을 말한다. 활동교인에게는 교회의 모든 특권과 권리가 부여되는데,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고 자녀들을 세례받게 하며, 공동의회에 참가하고, 투표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개체교회의 요구에 맞으며 또 미국장로교의 규례와 신앙고백에 부합한 활동교인의 또 다른 조건은 교회의 주의 깊은 연구와 논의를 거쳐서 당회에 의해 채택된다.

G-5.0203
비활동교인

개체교회의 비활동교인은 교회활동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교인이다. 비활동교인도 활동교인의 모든 권리와 특권이 주어지지만, 공동의회 때 발언권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G-5.0204
관련교인

개체교회의 관련교인은 본 교단의 다른 교회 또는 다른 교단이나 크리스천 교파의 활동교인으로, 활동교인의 소속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 잠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서 해당 치리회로부터 교인 증명서를 발부받아 제출하고 그 교회 당회가 관련교인으로 받은 자이다. 관련교인은 선거와 피선권을 제외한 모든 활동교인의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는다.

G-5.0300

3. 비회원의 특권

G-5.0301
비회원의 특권

미국장로교의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다음의 특권을 부여받는다 :

a. 모든 사람이 이 교회의 예배와 생활에 참여하도록 환영받는다.

b. 어린이든, 어른이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적 신앙고백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고 목사의 돌봄과 교회의 교육을 받는다.

c. 타교파의 신앙고백을 한 교인도 성만찬 참여 및 자녀의 세례받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G-5.0400

4. 교인 되기 위한 준비

G-5.0401
당회의 의무

당회는 그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을 준비시킬 책임이 있다.

G-5.0402
어린이의 신앙고백
성인의 신앙고백

a. 준비란 교회가 교인들을 계속 양육시키는 일부이므로, 교인의 자녀들을 준비시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공적 신앙고백을 하도록 특별배려를 해야 한다. 교육은 신앙고백의 뜻, 교인의 책임, 또 미국장로교의 신앙과 직제에 관해 실시한다.

b. 신앙고백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교육을 시킨다. 당회는 이런 교육을 신앙고백 이전에 또는 이후에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G-5.0403
재확인, 이명

신앙을 재확인함으로써 또는 교인증서를 가지고 이명해 와서 개체교회에 가입하려는 교인들에게도 적절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G-5.0500

5. 회원권의 재검토

G-5.0501
교인에 의해

교회에서 교인의 특권과 책임을 수락함은 개 교인으로 하여금 교인의 의무를 완수하도록 다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말한다. 당회의 격려를 통해 교인들은 정기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평가해야 하며, 교회의 예배와 봉사에 대한 그들의 참여가 얼마나 발전하였는지, 또 얼마나 보람과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G-5.0502
당회에 의해

당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교인 명부를 검토하고, 교인의 책임을 등한시한 사람들을 권면해 주어야 한다.

G-6.0000

제6장 교회와 제직원

G-6.0100

1. 목회의 직책

G-6.0101
그리스도의 목회

교회 내의 모든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선물이다. 교회의 교인과 제직원은 다 모든 사람의 목자장이신 그리스도의 명령하에서 서로 섬겨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든 목회의 근본이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고 오신"(마 20:28) 분이 보이신 모범이 모든 직책의 표준이다.

G-6.0102
목회의 직책

교회에서 교인이 맡은 하나의 책임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안수받은 교회의 제직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런 직책이 존재한다 해서 모든 교인이 교회의 전체 목회에 참여하는 헌신의 중요성을 감소시키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안수 직분은 오로지 기능상으로만 다른 교인들과 다르다.

G-6.0103
직책명

본 교회가 유지해 온 신약에 언급된 교회 직책은 장로(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 직책을 포함한다.

G-6.0104
다양한 형태

목회는 하나이지만, 목회의 특수 형태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특별한 임무와 재능을 강조하고 목회 직책의 직제가 이런 다양성을 반영시킨다. 목회의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으뜸가는 강조점을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례에 두는 형태, 사랑과 자비의 행동을 강조하는 형태, 주로 교육, 행정, 입법, 또는 사법적인 형태, 그리고 주로 예언적인 형태가 있다.

G-6.0105
목회에 부름 받음

남녀는 다같이 교회의 직책을 맡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의 선물에 의해 남녀가 특별한 목회 형태를 수행하도록 교회의 부름을 받았을 때 교회는 다른 부름이 어떤 것인지 해석해 주고, 또 다른 사람의 판단과 필요에 민감하도록 그들을 도와야 한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름받은 목회 형태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목회에 부름을 받았을 경우, 그들과 교회는 그들과 교회의 선교에 임한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G-6.0106
은사와 요구

a. 교회 내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자들 곧 집사, 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 하나님은 각기 그들의 임무 수행에 적절한 은사를 주신다. 타고났든 후천적이든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소유한 것 외에도 특별한 목회에 임직하려는 사람들은 강한 믿음, 헌신적 제자직, 그리고 구세주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의 생활양식은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증하는 생활이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교회 치리회의 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교회에서 직분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순복하고 교회의 역사적 고백적 표준들에 순응하는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런 표준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W-4.9001),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앙고백들이 죄라고 지칭하는 일을 스스로 인지하고서도 그 행위를 회개하기 거부하는 사람들은 집사들이나 장로들이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안수와 취임 또는 안수나 취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

G-6.0107
교인에 의한 선출

장로교의 정치는 대의정치이며, 교회의 제직원을 선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해당기관의 선출에 의하지 않고는 교회나 교회의 치리회에서 영구직을 맡을 수 없다.

G-6.0108
양심의 자유—
개인적, 집단적

a. 장로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은 교회의 순결성과 건전성을 위해서 *신앙고백서*와 정치형태에 명시된 개혁교회의 신앙과 정책의 근본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표준에서 심각하게 이탈하지 않고, 타인의 권리와 의견을 침해하지 않고, 또한 본 교단의 헌법적 관할을 어기지 않는 한 성경해석에 관하여 양심의 자유가 유지되어야 한다.

어느 한계 안에서

b. 그렇지만 미국장로교의 직원 또는 후보자가 되려면 그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어떤 한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 남녀간에 그들의 양심은 이 장로교단의 직책을 추구하거나 직책을 계속 가지려고 생각하는 한, 교회의 제 표준에 해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되어야 한다. 개혁교회 신앙과 정책의 근본으로부터 떠났는지의 여부는 먼저 관계되는 개인의 결단에 의하지만 궁극적으로 결정의 책임은 그이나 그녀가 섬기는 교회의 치리회가 져야 한다(G-1.0301:G-1.0302).[1]

목회 후보생

c. 미국장로교의 목회 후보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양심의 자유에 관한 진술서까지 포함해서 교단의 헌법 문서에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G-14.0304).

G-6.0200

2.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G-6.0201
목사와 노회

주께서는 어떤 교인들을 말씀선포 및 성례전의 특별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소명과 훈련을 통하여 구별하셨고, 그들에게 다양한 사역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으므로 교회는 노회를 통하여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책임과 직책을 수행하도록 그들을 부른다. 이러한 목사는 개체교회의 선교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지정해 주는 노회의 회원이며, 사역 수행에 있어서 그들은 노회에 책임을 진다. 목사는 노회가 불러 지정하는 개체교회의 임무 외에도 교회의 보다 큰 목회활동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노회 자체의 의결에 따라노회의 회원이 되며, 헌법 조항 G-11.0000에 의하여 그 회원권을 유지한다.

G-6.0202
목사, 부목사

a.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영구 목회 직책은 목사와 부목사(associate pastor)이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개체교회나 여러 교회들의 목사 또는 부목사로 청빙되었을 때, 그이나 그녀는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복음의 기쁨과 정의를 전달하는 삶의 자질과 관계에 책임을 진다.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며 세례와 성찬예식을 집행하고, 교인과 더불어 또 그들을 위하여

[1] 미국장로교 역사의 아주 초기, 아직 총회가 조직되기도 전에 뉴욕과 필라델피아 대회의 합동 계획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내포하고 있다. : "어떤 문제를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할 때 모든 회원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든지, 또는 소극적으로 그 결정을 수긍하든지 할 것이며 ; 만일 그의 양심이 어느 쪽에도 동의할 수 없게 한다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다음 분열을 시도하지 말고 평화롭게 우리 공동체에서 물러가든지 할 것이다. 이것이 오로지 언제나 장로교의 정치나 교리에서 분리시킬 수 없는 교단의 결정권을 이해하는 데서 배려된 것이다" <Hist. Dig.(P) p.1310>(합동계획, 1758, II부).

기도할 책임이 있다. 목사는 장로와 더불어 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를 하도록 교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로 교회 내에서의 직무와 또한세상에서의선교적 사명을 다하도록 훈련시키고 도와 주어야 한다; 또한 목회적 관심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움에 있는 자, 죽어 가는 자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 또 교회의 결정에 참여와 포용성의 원칙을 수행하도록 교인을 지도하는 일과 인류 전체 공동체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는 과업을 수행하도록 지도하는 일을 포함하여 제반 치리의 책임에 참여한다. 목사는 집사들과 더불어 동정과 증거와 봉사의 사역을 함께한다. 이러한 목회적 의무를 감당하는 이외에 그이나 그녀는 당회 위 상급 치리화와 에큐메니칼 관계에 있어서 교회의 사역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동사목사

b. 개체교회는 노회의 승락하에 교회를 위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책임을 행사할 동사목사(co-pastor)로 시무할 목사를 선출할 수 있다.

보조목사

c. 1985년 12월 31일부로 보조목사(assistant pastor)로 있는 사람들은 그 개인이 동일한 개 교회와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한 그 목회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

G-6.0203
교사, 기관목사,
기타 사역자

목사가 교육자, 기관목사, 목회상담자, 학원목사, 선교사, 선교동역자, 전도사, 교회행정가, 사회사업가, 자문위원 또는 교회의 사역에 합당한 특수한 임무에 종사할 때 그들은 복음사역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도움을 주는 삶의 자질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책임하에 있는 자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베풀어야 하고, 교회를 강화시키고, 교회로 하여금 인간 공동체의 생활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도록 교회를 훈련시키면서 그리스도와 이웃을 섬김으로써 그들의 목회 성취를 위해 힘써야 한다.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책임을 완수하는 일 이외에도 그들은 교회, 노회, 에큐메니칼 관계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또한 교회의 상급 치리회와 이들 상급 치리회의 이사나 대행기관에 선출될 자격이 있다.

G-6.0204

목회적 돌봄을 베풀 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은 진리와 비밀유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드러난 모든 정보 및 그러한 돌봄에 관계된 모든 정보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비밀 정보를 밝히는 것에 동의하는 표현을 했을 때,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를 밝힐 수 있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그녀 또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손상의긴박한 위험이 있음을 합리적으로 믿고 있을 때 그 비밀 정보를 밝힐 수 있다.

G-6.0300

3. 장로

G-6.0301
성서적 관례

구약시대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치리와 사역에 참여할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G-6.0302
치리의 책임

장로는 교인들이 선출한다. 장로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함께 지도력, 치리권, 권징을 행사하며, 장로는 개체교회의 삶을 위한 책임을 짐과 아울러 에큐메니칼 관계를 포함한 전체 교회의 삶을 위한 책임도 진다. 장로는 당회원으로서 충실히 섬겨야 한다(G-10.0102). 상급 치리회의 총대로 선출되었을 때에, 장로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똑같은 권위를 갖고 참여하고 투표하며, 어떤 직책에도 피선될 자격이 있다.

G-6.0303
은사와 요구

장로는 신앙과 헌신과 선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의 생활 양식은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증하는 것이어야 한다(G-6.0106).

G-6.0304
특별한 책임

그들에게 맡겨진 교인의 신앙과 생활을 강화하고 육성시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연대적으로, 장로들의 임무이다. 목사와 함께 장로는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를 하도록 교인들을 격려하고 교회 내에서의 사명과 세상에서 그들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도록 훈련시키고 갱신시키며, 교인들을 심방하고 위로하고 돌보며, 특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그리고 억압당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장로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과 조직체에 대해 목사와 당회에 알려야 한다. 그들은 예배를 도와야 한다(W-1.4003, W-2.3011-.3012, W-3.1003, W-3.3616, W-4.4003 참조). 장로는 성경을 가르칠 능력을 개발해야 하고, 말씀과 성례전의 정규사역이 없는 곳에서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다. 특별한 경우와 적절한 허락을 받아서 특정 장로가 G-11.0103z에 준하여 성찬예식을 집례할 권리를 노회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법에 의해 집행해야 할 이런 의무들이 직책에 부름받은 장로에게 특별히 주어졌으며, 장로는 공적인 책임으로 이 일들을 수행한다.

G-6.0400

4. 집사

G-6.0401
목회와 집사의 은사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의 직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동정, 증언, 그리고 봉사의 직책이다. 영적 성품, 정직한 명망, 모범적 생활, 형제자매의 사랑, 따뜻한 동심,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 이 직에 선출되어야 한다.

G-6.0402
책 임

집사의 임무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안팎에서 먼저 궁핍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외로운 사람과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다. 그런 임무 이외에도 시시로 당회가 위임한 다른 임무 즉, 중보기도를 통해 예배에서 교인들을 지도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바치고, 주의 만찬을 돕는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W-3.3616 참조).

G-6.0403
조 직

개체교회의 집사들은 다음과 같은 하나 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a. 그들은 집사회를 조직할 수 있는데 담임목사, 동시목사, 부목사와 보조목사는 자문위원이 되어야 한다(G-6.0202c). 집사회는 회원 중에서 회장과 서기를 선출해야 한다. 서기는 집사회의 의사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b. 그들은 그들 직분의 책임과 일치하는 특별한 과제를 당회에 의거 개인적으로 위임받을 수 있다. 당회는 보통 그들의 봉사에 대한 연례 평가를 해야 하며, 그때 그들의 위임사항이 갱신, 변경 또는 종결될 수 있다.

G-6.0404
당회의 감독 하에 있음

전체 교회가 당회의 관할하에 있듯이 집사회도 당회의 권위와 감독하에 있어야 한다. 집사회의 모든 기록은 적어도 1년에 한번, 또 어느 때 당회의 요구에 따라 당회에 제출해야 한다. 당회는 집사회의 어떤 의결도 개정 또는 무효화시킬 수 있고, 또는 집사회에 그 같은 의결을 재고려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G-6.0405
회 의

집사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회장의 소집으로 또는 당회의 소집 지시에 의하여 모여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모여야 한다. 집사회는 스스로 회의 정족수를 정한다. 당회와 집사회가 공동으로 모이는 연석회의는 당회장의 사회로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해 적어도 1년에 한 번 모여야 한다. 연석회의에서는 어떤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없고 다만 당회와 집사회는 그들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의결할 수 있다.

G-6.0406
관련된 봉사

집사들은 치리회에 의해서 위원회와 이사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어 봉사할 수 있다. 당회는 동정의 사역을 하는 집사들을 돕도록 교인들 중에서 어떤 이를 선정하고 임명할 수 있다.

G-6.0407
집사회를 두지 않는 결정

지교회는 다수결에 의하여 집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나 집사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사직의 기능은 항상 장로들과 당회에 의해 언제나 유지되며 그들에게 위임해야 한다.

G-6.0500

5. 교직권의 파기

G-6.0501
교직권 파기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장로나 집사이든지 간에 교회의 직분자가 교직권을 가진 치리회의 서기나 당회서기에 서면으로 이 교회의 교직권을 파기할 때, 그 파기는 서면 접수와 함께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 교직권의 파기는 그 직분자를 회원권과 안수직에서 제명하고 안수받은 직책 수행을 종결시켜야 하는 것이다.

G-6.0502
인정치 않는 일을 계속할 때

교회 직분자가 자문과 통고 후에도 관할 치리회가 인정치 않는 일을 계속 고집하여 행할 때, 그 치리회는 그 직분자가 이 교회의 관할권을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G-6.0503
파기의 효력

파기는 당회서기나 상회서기에 의해서 그 다음 치리회의 모임 때에 보고해야 하고, 거기서 파기를 기록하고 직분자의 이름을 해당 등록명부에서 제거하고 헌법이 요구하는 바 행정적 성격을 가진 다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G-7.0000

제7장 개체교회

G-7.0100

1. 조직, 선교 및 정치

G-7.0101
전체 교회의 부분으로서 노회에 의해 조직됨 의해

교회는 세계 교회이면서 동시에 개체교회이다. 교회의 이 두 가지 특징은 개체교회에서 발견된다. 미국장로교 내의 개체교회는 노회의 권위에 의해서만 조직될 수 있고, 이 헌법 규정하에서 그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G-7.0102
목회사역

개체교회는 교회의 선교에 중요한 책임을 수행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특히 예배, 말씀선포, 성례전의 참여, 복음전도, 양육, 상담, 개인적 또는 사회적 치유와 봉사의 사역을 수행한다. 사람들과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이 같은 근본적인 사역, 그리고 기도와 직원과 개정을 통한 지교회에 주어진 협조 없이는 교회의 그 어떤 의미 깊은 목회사역도 불가능하다. 개 교회는 노회 및 전체 교회의 필수적인 선교의 도구로서 봉사한다.

G-7.0103
정 치

개체교회의 교인은 그들이 선출한 교회 직분자의 지도를 자발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 당회는 목사나 동사목사, 부목사와 시무장로들로 구성된 개체교회의 치리회다. 미국장로교의 법과 정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피차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자발적 계약관계를 맺어 자녀들과 함께 갖는 남녀 교인의 교제를 전체로 한다. 교회의 조직체는 친교에 기반을 두고 신뢰와 사랑 없이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G-7.0200

2. 개체교회의 조직

G-7.0201
계약 성립

개체교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노회는 직접 또는 전권위원회를 통하여 신앙고백이나 신앙 재확인이나 교적 이명이든 간에, 새 교회를 조직하는데 뜻을 같이하기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 교인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 사람들은 다같이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해야 한다:

아래에 서명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______________ 교회라는 명칭으로 지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미국장로교의 신앙 원리와 선교와 규례에 따라 이 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주님, 그리고 상호간에 굳은 유대를 갖고서, 다같이 하나가 되어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같이 사역하기로 약속하며 서약합니다.

(서명)

G-7.0202
노회관계

a. 그들은 노회의 조직교회로서 선언되며 노회의 협조하에 그들의 준비, 고시, 안수, 그리고 취임을 위한 규약을 만들어서 집사 선출의 절차를 밟는다.

b. 노회는 개체교회의 목회지도력을 확보하는 일, 개체교회의 봉사와 증언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일, 타교회와의 사역을 조정하는 일, *미국장로교 헌법*에 일치하는 개체교회의 규칙 제정을 자문하는 일, 그리고 교단 전체의 삶 가운데서 지교회의 선교를 강화시킬 여러 형태의 지원과 격려를 제공하는 일에 있어서 지교회와 긴밀히 계속 일해야 한다.

G-7.0300

3. 공동의회

G-7.0301
회 중

지교회는 개체교회의 모든 활동교인들로 구성된다. 공동의회에 참석한 모든 활동교인은 투표할 자격이 있다.

G-7.0302
연례회의

a. 지교회는 연례 공동의회와 필요에 따라 다른 회의를 소집한다. 연례 공동의회는 제직원을 선거하는 일, 당회의 새해 사업계획을 포함한 보고서를 받는 일, 집사회와 교회의 여타 기관의 보고서를 받는 일, 그리고 기타 적절한 사업 처리를 할 수 있다. 연례 공동의회는 당회의 사전 검토 보고에 따라서 담임목사나 목사들의 사례가 적절한가를 검토해야 한다(G-10.0102n). 회의 공고는 계속 두 주일에 걸쳐 해야 한다.

특별 공동의회

b. 특별 공동의회는 연례 공동의회에 부합되는 목적의 부분이나 전체 또는 교인들이 적절히 생각해 볼 만한 다른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할 수 있다(G-7.0304). 처리할 안건은 그 회의 소집에 특별히 명시된 사안들에 국한해야 한다.

G-7.0303
공동의회
소집방법

a.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된다 :
(1) 그런 회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언제나 당회에 의해
(2) 그런 회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언제나 노회에 의해
(3) 개체교회의 활동교인 4분의 1이 서면으로 요청했을 때 당회에 의해.

공 고

b. 회의 소집 공고는 계속 두 주일에 걸쳐 해야 한다. 회의는 두 번째 주일 공고 후 소집할 수 있다(목사 청빙을 고려하기 위한 회의소집 공고는 G-14.0502a를 참조).

G-7.0304
안 건

a. 공동의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1) 장로, 집사 및 재단이사 회원 선출에 관계된 사안 ;
(2) 담임목사나 목사들을 청빙하는 사안 ;
(3) 목회자와 관계된 사안, 즉 청빙 조건을 변경하는 일이나 목회 관계 해소의 요청이나 동의나 거절하는 사안 ;
(4) 교회 부동산의 구입, 저당이나 매각에 관련되는 사안(G-8.0500);
(5) 회중에 허락할 수 있는 권한에 관련된 사안, 즉 모든 행정 책임을 당회에 위임하기를 바랄 때, 또는 교회의 제한된 규모로 인하여 한두 가지의 요구사항을 면제해 달라고 노회에 요청하는 사안

제 한

b. 공동의회의 안건은 상기한 사안 (1)에서 (5)까지로 제한되어야 한다. 시민법이 허락한다면 교직과 법인체의 안건을 같은 공동의회에 함께 다룰 수 있다.

G-7.0305
정족수

개체교회가 노회에 청원해서 더 적은 정족수의 규정에 노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개체교회 공동의회의 정족수는 교인수의 1/10 이하여서는 안 된다. 지교회는 자체의 투표에 의해 정족수를 높일 수도 있다. 세 명 이하가 모이는 회의는 공동의회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G-7.0306
의 장

모든 공동의회의 의장은 담임목사이어야 한다. 교회에 동사목사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회의를 교대로 사회해야 한다.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을 경우, 노회가 임명한 당회장이 모든 공동의회의 사회를 해야 한다. 담임목사나 노회가 임명한 당회장이 사회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이나 그녀는 당회의 동의를 얻어 노회 내의 다른 목사를 사회하게 하도록 청한다. **노회는 평신도 목회자를 그녀 또는 그가 파송된 교회의 당회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또한 선도자 및 감독자로 평신도 파송 목회자에 임명된 사람은 의장으로서 그 또는 그녀의 직무를 감독해야 한다.** 부가하여 강단이 공석인 지교회의 당회장은 노회 목회위원회 위원인 장로나 노회서기나 노회총무나 노회부총무에게 사회하도록 청할 수 있다 ; 그런 장로는 그 장로가 교인으로 있는 교회의 공동의회를 사회할 수 없다. 이렇게 하기에 어려울 경우, 담임목사나 당회장과 당회가 동의할 때에, 당회원 중에 한 사람이 사회할 수 있다.

G-7.0307
서 기

당회서기가 공동의회의 서기가 되어야 한다. 만일 회중이 폐회 전에 공동의회록을 승인하지 않으면 당회는 정해진 차기 당회 회의에서 공동의회록을 읽고 정정하고 승인해야 하며 그것들을 영구기록에 기재해 넣어야 한다. 차기 공동의회에 당회서기는 그 회의록을 마련해야 하고 당회의 결정을 보고해야 한다. 회중은 그것을 읽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투표로 추가나 정정을 할 수 있다. 당회서기가 못하게 될 경우, 공동의회가 서기를 선출해야 한다. 공동의회 회의록은 당회장과 서기의 서명을 한 후에 당회록에 기재해 넣어야 한다.

G-7.0308
동수일 경우

목사는 지교회 회원이 아니므로 그이나 그녀는 공동의회에 투표할 수 없다. 동수가 되었을 때 사회목사는 그 문제를 두 번째 투표에 부쳐야 한다. 또다시 동수가 되면 그 제의는 부결된다.

G-7.0400

4. 법인체와 재단이사

G-7.0401
법인체와
재단이사

민사법이 허락한다면 언제나 각 개체교회는 법인체를 구성하여 유지해야 한다. 개체교회의 활동교인 명단에 있는 교인만이 법인체의 회원이 되고, 이사로서 선출될 자격을 얻는다. 법인체가 이사 선정의 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교회의 사무장로들은, 민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장로직에 있기 때문에 법인체의 이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교체 방법에 따라 법인체에 의해 선출된 공천위원회를 두며, 재단이사의 임기를 장로의 임기와 같도록 정해야 한다. 법인체로 조직 안 된 개체교회는 활동교인 명단에 있는 교인 중에서 이사를 선출할 수 있다. 그런 이사회의 권한과 의무가 당회나 집사회의 권한 및 의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G-10.0102, G-6.0402).

G-7.0402
권 한

이렇게 형성된 법인체나 개인 이사들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교회를 위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접수, 보존, 저당, 관리 및 이전할 수 있고 : 그런 재산을 접수하고 명의 변경을 하며 ; 그런 재산 명의를 보존하고 방어하며 ; 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영구 특별기금을 관리하는데 모든 일은 다 당회의 권위에 속하고, *미국장로교* 헌법의 규정하에 예속된다. 더 나아가 부동산의 구입, 매각, 저당에 관계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재단이사회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소집된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만 처리해야 한다(G-8.0500).

G-7.0403
법인체의 개별회의

민사법이 법인체 업무를 공동의회와 별도로 취급하도록 요구한다면, G-7.0300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예외는 다음과 같다 :

a. 그런 회의는 그들 재량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소집되든지, 당회나 노회가 지시했을 때 소집되어야 한다.

b. 민사법의 별도 지시가 없다면, 이사회가 개체교회 활동교인 명단에 있는 교인 중에서 그런 모임의 사회자와 서기를 임명해야 한다.

c. 각기 그런 회의의 회의록은 사회자와 서기가 서명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해 넣어야 한다.

G-7.0404
대리인의 투표

위임 맡은 사람의 대리인 투표는 개체 재단이사회 문제에 한해서, 특히 민사법이 대리인 투표를 허용하는 곳에서만 대리인 투표를 하도록 허락된다.

G-8.0000

제8장 교회와 그 재산

G-8.0100

1. 재산에 관한 결정

G-8.0101
재산에 관한
결정

G-1.0400의 규정과 교회 내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검토되고, 수정되는 방식을 명시한 본 헌법의 다른 규정들이 재산에 관한 모든 문제에 적용된다.

G-8.0200

2. 신탁된 모든 재산

G-8.0201
재산을 신탁으로
보관함

개체교회, 노회, 대회, 총회, 또는 미국장로교를 위해서, 또는 그들에 의해서 소유된 재산은 그 법적 명의가 법인체, 이사회, 또는 비법인체로 되어 있든, 그리고 그 재산이 개체교회나 더욱 포괄적인 치리회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용되든, 또는 수입이 있게 보유되든 간에 모든 재산은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유익을 위해서 신탁 보관된다.

G-8.0202
법인체와
재단이사

민사법이 허용되면 각 노회, 대회, 총회는 법인체를 형성 유지해야 한다. 치리회가 이사회 조직에 관한 별도 방법을 결정하지 않은 한, 치리회의 중앙협의회는 법인체의 재단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G-8.0300

3. 헌법에 위배되는 재산 사용

G-8.0301
헌법에 위배되는
재산 사용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가 소유하거나 신탁된 재산이 본헌법에 따라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로서 헌법대로 그 재산을 그 교회에 의해 사용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노회가 규정한 대로 그 재산은 소유, 사용, 적용, 이양, 매각되어야 한다.

G-8.0400

4. 해체 또는 소멸된 교회의 재산

G-8.0401
해체 혹은
소멸된
교회재산

개체교회가 공식으로 노회에 의해서 해체되거나 또는 교인들이 흩어져서 없거나, 교회 사역의 포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소멸케 되면, 그런 재산은 노회가 지시, 제한, 지명하는 대로 그와 같은 용도, 목적, 신탁을 위해 소유, 사용, 적용되어야 하거나 또는 그런 재산은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 노회가 지시하는 대로 매각되거나 처분될 수 있다.

G-8.0500

5. 교회재산의 매매, 저당, 또는 임대

G-8.0501
교회재산의
매매, 저당

개체교회는 개체교회의 당회를 통하여 전달된 노회의 서면 허락 없이는 여하한 부동산을 매매, 임대, 저당하지 못하며, 저당이나 다른 조건으로 부동산 구입을 하지 못한다.

G-8.0502
교회재산의
임대

개체교회는 개체교회의 당회를 통하여 전달된 노회의 서면 허락 없이는 예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회의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며, 교회의 어떤 다른 부동산도 5년 이상 임대하지 못한다.

G-8.0600

6. 분열시의 교회재산

G-8.0601
분열시의
교회 재산

개체교회의 미국장로교에 대한 관계는 노회의 역할인 헌법상의 조처에 의해서만 단절될 수 있다(G-11.0103i). 개체교회의 교인들 간에 분열이 생기고, 또 노회가 화해시키거나 미국장로교 안에 분리된 교회로 분할하는 일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노회는 분열된 파벌 중 어느 그룹이 미국장로교에 속한 참된 교회인가를 밝혀서 그 교회에 재산권을 허락하는 일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은 분열 당시 어느 쪽이 개체교회 내에서 다수표를 얻었다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G-8.0700

7. 예 외

G-8.0701
예 외

본장의 규정은 미국장로교에 속한 모든 개체교회에 적용된다. 단, 예외는 이렇다. 즉, 미국남장로교와 미국연합장로교가 재연합하여 미국장로교를 형성하기 이전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헌법의 유사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았던 어느 개체교회가 미국장로교의 설립 이후 8년 이내에 정식으로 소집된 회의에서 이런 규정으로부터 면제되도록 투표하고 그런 투표 내용을 소속 노회에 통보하면, 본장의 규정으로부터 면제받게 된다. 그렇게 면제받도록 투표한 개체교회는 미국장로교의 설립 바로 전에 종속된 헌법의 규정하에서 그 재산의 명의를 소유하며 법인체의 특권과 재산 소유권을 행사한다. 본항은 개정될 수 없다.

G-9.0000

9장 치리회

G-9.0100

1. 총칙

G-9.0101
정의

미국장로교는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장로들(presbyters)로 구성된 대표제 치리회에 의해 치리받아야 한다. 이들 치리회는 다음과 같이 불리운다:

당회

노회

대회

총회

G-9.0102
국가의 정부와 구별

a. 교회의 치리회는 국가의 정부와는 구별되고, 또 민사 처벌을 부과할 민사 사법권이나 권한을 갖지 못한다. 이 치리회들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진리와 봉사, 질서와 권징에 관련하여 그의 뜻을 선포하고 복종하기 위한 교회적 관할권만을 갖는다.

교회 관할권

b. 이 치리회들은 신앙 상징의 기틀을 잡아 주며, 잘못된 교리와 부도덕한 삶에 거슬러 진리를 증언하며, 교리와 권징에 관한 질문에 해답해 주고, 양심 문제를 상담해 주며, 규례서의 조항에 따라서 그들 앞에 제기된 문제들을 적절히 결정해 준다. 이 치리회들은 예배 모범의 원리에 따라서 성찬예식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W-2.4012, W-3.6204). 이 치리회들은 교회의 예배, 선교, 정치와 권징을 위한 계획과 규정을 세우는 일과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교회의 평화, 순결, 일치와 발전에 필요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치리회들은 그들 관할권하에 있는 치리회의 지도력과 생활 지도와 정치의 책임이 있다.

G-9.0103
치리회의 일치

교회의 모든 치리회는 교회의 본질상 다 하나가 되어 이 헌법이 부여하는 책임과 권리와 권한을 같이 나눈다. 치리회는 분리되고 독립되어 있으나 어느 한 치리회의 행동은 그 해당 치리회를 통하여 이루어진 전체 교회의 행동이라는 점에서 상호 관련성을 가진다. 각 치리회의 관할권은, 노회에게 유보되었다고 명시되지 않은 권한과 각 차상급 치리회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는 각 치리회의 조처를 포함하여, 헌법의 명문 규정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G-9.0104
참여와 대표성

a. 교회의 치리회는 G-4.0403에 규정된 포괄성과 참여에 관한 교회의 결단을 시행할 책임을 져야 한다. 모든 치리회는 보다 포괄적이고 개방적이 되도록 일해야 하며, G-4.0403에 열거된 범주에 근거해 차별 경향을 시정할 목적으로 소수계 보호법 고용절차를 추구해야 한다.

시행

b. 이런 결단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직책이나 과업에 선출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이 목회의 은사와 요구 조건(G-6.0106), 그리고 그들 직분자를 선출하는 사람들이 가진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G-6.0107).

G-9.0105
대표위원회

a. 당회위 상급 치리회는 대표위원회를 선출해야 하며, 그 위원은 남녀 동수로 선정해야 한다. 위원의 다수는 치리회 내에 있는 민종그룹(아프리카계, 히스패닉계, 아시아 혈통과 본토 아메리카계 장로교인들)에서 선출해야 하고, 전체 회원은 각기 다음 범주의 사람들을 포함해야 한다:

(1) 다수의 남성위원

(2) 다수의 여성위원

(3) 민종그룹 남성위원

(4) 민종그룹 여성위원

(5) 남녀 청년위원

(6) 신체장애자

회원에 관한 조언

b. 그 주요 기능은 치리회로 하여금 그들 회원권과 그들 위원회, 이사회, 대행기관과 다른 부서의 회원권에 관련하여 교회의 의사 결정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참여와 포괄성의 원리를 실천하도록 조언하는 것이어야 한다.

옹호와 자원

c. 대표위원회는 민종그룹 회원, 여성, 각계 연령층, 신체장애자의 대표성을 옹호하는 일과, 또 이 분야에 있어서 해당 치리회에 대해 계속적인 자원 제공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대표위원회는 그 자신의 치리회가 이런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어떤 시정이 필요한 조처가 있으면 제안과 함께 그 치리회와 차상급 치리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대표위원회는 그 자신의 치리회의 공천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민종그룹 회원과 협의

d. 민종그룹 회원을 위원회, 이사회, 대행기관과 다른 부서에 공천 또는 임명하기 전에, 대표위원회는 그 민종그룹에 의해 지정된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 해당 민종그룹 회원과 적절한 협의를 해야 한다. 민종그룹 회원 수가 적은 상황에서 각 치리회의 대표위원회는 잠재적 민종 회원을 찾고 대표를 획득하기 위해 민종그룹 회원들과 당회, 공천 위원회와 전국 민종그룹 회원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여성을 상기 기관에 공천 혹은 지명하기 전에, 대표위원회는 여성 그룹이 지명한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 해당 여성층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인사 고용

e. 대표위원회는 참여와 대표성의 원칙에 따르고(G-4.0403), 평등 고용 기회를 위한 교단적 계획에 일치하여(G-13.0201b) 인사 고용을 하도록 치리회를 자문해야 한다.

f. 대표위원회는 어느 치리회에서나, 어떤 다른 위원회와 통합되거나 어떤 다른 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지정되어서는 안된다.

G-9.0106
예외

a. 위원의 다수가 민종그룹에서 선출되도록 요구한 G-9.0105a의 규정에 대한 예외는 참여나 대표성에 부합한 인물을 확보할 수 없을 때에만 치리회나 선출기관에 의해 허용되어야 하며, 이 사실은 치리회나 선출기관이나 임명기관의 공식 기록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당회위 각 치리회가 대표위원회를 선출한다는 요구사항에서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b. G-9.0106a 하의 예외는 회의에서 행한 치리회의 결의에 의해 1년까지 허락할 수 있다. 그러한 예외의 허락은 치리회의 서기와 대표위원회를 통해 차상급 치리회가 서기가 즉시 보고해야 하는 데, 그 대표위원회는 예외의 기간 동안 하급 치리회와 그 대표위원회를 감독해야 한다.

G-9.0200 2. 직원

G-9.0201
직원

각 치리회의 직원은 치리 회장과 서기여야 한다. 치리회는 필요시 추가로 직원을 둘 수도 있다.

G-9.0202
치리회장과 회의

a. 치리회장은 질서 유지 및 치리회의 효과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권위를 갖는다. 그이나 그녀는 치리회 자체의 조처에 따라 치리회를 소집하고 폐회

해야 한다. 치리회장은 긴급시 서면 통보에 의해 그 치리회가 전에 지정했던 것과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치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지교회와 치리회의 회장

b. 개체교회의 목사는 그 교회 당회의 당회장이 된다. 동사목사가 있는 교회는 동사목사가 출석할 경우 교대로 당회를 사회한다. 노회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회가 정한 임기대로 선출된다. 대회장은 대회에서 정한 임기대로 선출하되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내에 선출되어야 한다. 총회장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다. 선거시에 노회장, 대회장 및 총회장은 그가 사회하도록 선출된 치리회의 계속적인 회원이거나 총대이어야 한다.

G-9.0203
서기와 회의

a. 서기는 치리회의 회무 진행을 기록하고, 회원과 출석 명부를 보관하고, 그 기록을 조심스럽게 보존하며, 교회의 다른 치리회가 요구할 때 거기에서 발췌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서기가 입증한 발췌 기록은 교회의 어느 치리회에서나 분명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

지교회와 치리회들의 서기 및 정서기

b. 당회서기는 당회가 정한 임기 동안 일하도록 당회에서 선출된 장로이어야 한다. 노회, 대회 및 총회의 서기는 정서기(stated clerk)라고 부르며, 정해진 임기 동안 시무하도록 그 치리회에 의해서 선출되며, 그 치리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어야 한다.

G-9.0300

3. 회의

G-9.0301
개회

a. 당회위 상급 치리회 회장은 임기 동안 모든 정기회의들을 개회해야 하고, 또 새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사회해야 한다. **당회의 상급 치리회는 규칙에 따라 본회장 부재시 누가 사회를 볼것 인지를 정할 수 있다.**

기도로 개회와 폐회함

b. 모든 치리회의 회의는 기도로써 개회하고 폐회해야 한다. 1년에 여러 번 모이는 노회와 대회는 1년에 한 번은 설교와 성만찬 예식을 포함한 정기회의로 지정해야 한다.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 모이는 대회의 정기회의와 말씀선포와 성찬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G-9.0302
의사 진행

치리회, 전권위원회,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본 헌법이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국통상회의법의 최신판에 준해 진행되어야 한다.

G-9.0303
반대

반대란 치리회의 행동과 결정에 불찬성을 표현하는 선언을 뜻한다. 반대는 반대하는 행동과 결정이 취해지는 치리회의 특정 회기 때에 행해져야 한다. 반대하는 회원의 이름이나 이름들은 꼭 기록해 두어야 한다.

G-9.0304
항의

항의란 치리회의 한 회원이나 여러 회원이 변칙이나 비행이라고 믿는 사실에 불찬성을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서면 진술을 뜻한다.

통보

a. 항의서면 통지서는 그것이 발생한 치리회의 특정 회기 때 제출해야 한다. 그 항의는 당회 서기나 상회 서기에게 폐회 전에 접수시켜야 한다.

회의록

b. 만일 항의가 품위 있고 정중한 표현으로 되어 있다면, 치리회는 그 사람의 양심의 권리를 인정하여 회의록에 그것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회의록에 기록한 것이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응답

c. 항의를 받은 치리회는 그 회의록에 기록해 둘 답변을 준비할 수도 있다. 이것이 그 항의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G-9.0305
반대자나 항의자

무표할 수 없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그 결정에 반대 투표한 사람만이 반대나 항의를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G-9.0306
사법 결정

한 사건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었을 때 그 결정을 보고 받은 치리회의 회원은 누구나 반대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G-9.0307 효력

반대나 항의는 사법 처리 과정을 주도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G-9.0308 비용

장로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치리회의 회의 참석차 사용한 비용은 대체로 그들을 선출하거나 그들이 참석한 치리회가 지불하되 그 치리회의 구역 내에서 사용한 비용에 한하여 지불한다. 총회에 참석하도록 노회가 선출한 총대들의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 상회비는 각 치리회에 의해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G-9.0400

4. 행정의 원리

G-9.0401 행정의 정의

행정이란 치리회가 그것에 따라 결정을 실천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것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관여하는 것이며, 지도력을 개발하고, 계획을 세우고, 통신 연락하며, 조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

G-9.0402 행정 구조

a. 선교는 구조와 행정의 형태를 결정짓는다. 모든 구조는 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교회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교회에 가장 근접한 치리회

b. 선교 행정은 그것을 가장 효과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지교회에 가장 가까운 치리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변화

c. 모든 구조는 변화의 가능성과 에큐메니칼 협력의 새로운 형태에 개방되어야 한다.

G-9.0403 치리회에 대한 책임

치리회는 그 임무 중 어떤 특별한 일들을 협의회, 이사회, 대행기관, 전권위원회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지만 언제나 그 치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근거 위에서 한다.

G-9.0404 장로교 정책의 성격

장로교 정책의 상호 의존적 성격에 의미를 주기 위하여:

a. 각 치리회는 차상급 치리회의 계획과 행정에 대표를 통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b. 각 치리회는 선교 우선 순위, 프로그램, 예산 책정, 행정 직원의 직책 제정, 공평한 보수, 인사 정책, 그리고 공정한 고용의 실행에 관하여 해당 대표를 통해 상하 치리회와 협의해야 한다.

c. 각 치리회는 G-9.0104에 기재되어 있는 포괄성과 소수계 보호법의 원칙에 맞도록 그 직원을 모집, 훈련, 채용해야 한다.

d. 당회위 각 치리회는 행정 직원을 포함한 운영비를 위해 연례 예산을 마련해야 하며 그 구역 내 지교회의 상회비로서 그것을 조달할 수 있다. 노회는 그 자체의 상회비의 증액과 해당 대회와 총회의 상회비의 증액과 적시 송달을 책임져야 한다. 노회는 그 구역 내 지교회의 당회에 상회비의 할당을 지시할 수 있다.

G-9.0405 운영 지침서

당회위 각 치리회는 그 상하 치리회의 협의에 따라서 행정 운영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

G-9.0406 기록의 소유권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회의록과 그 밖의 모든 공식 기록은 전기 치리회 또는 그들의 법적 후계자의 영속적인 소유물이다. 교회나 노회 또는 대회가 해소될 때, 그들의 기록은 그들 기관이 해소되기 직전의 관할상급 치리회에 의해서 보존된다. 현존하거나 해소된 당회의 회의록과 공식 기록, 현존하거나 해소된 노회와 대회의 회의록과 모든 공식 기록은, 더 이상 빈번히 참고해 볼 필요가 없는 경우 역사부, 또는 미국장로교 신학교의 온도 및 습도가 관리되는 환경에서 보존한다. 치리회의 기록들의 항구 보존을 위해 그 치리회에 추천하는 일은 각 치리회의 서

기의 책임이다. 모든 치리회들은 공식 기록들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해 둘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G-9.0407
일반행정 검토

a. 개체교회와 위원회, 기관, 그 교회의 단체는 모든 절차와 결의를 매년 보고해야 하며, 당회는 이를 검토하고 이것들을 요약하여 당회록에 그 개요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연례 보고

b. 당회위 모든 치리회의 회장, 서기, 중앙협의회, 전권위원회, 위원회, 이사회, 대행기관, 그리고 단체는 모든 절차와 결의를 매년 해당 치리회에 보고하고, 그 치리회는 그것들을 검토해야 한다.

기록의 검토

c. 적어도 연1회 당회위 상급 모든 치리회는 차하급 치리회의 절차의 기록들을 검토해야 한다. 만일 어느 하급 치리회가 이 목적을 위한 기록을 올려 보내지 못하면, 상급 치리회는 특정한 때까지 기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G-9.0408
특수행정 검토

만일 상급 치리회가 어느 때든지 하급 치리회에 의한 변칙이나 비행 사항을 발견하면, 그 치리회에게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또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G-12.0102n, G-12.0304, G-13.0103k와 n).

G-9.0409
검토 방법

a. 하급 치리회의 절차를 검토함에 있어서 상급 치리회는 그 절차의 기록에서나 또는 관심을 끄는 다른 정보에서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그 절차가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2) 그 절차가 규칙에 맞고 헌법에 따랐는지.

(3) 그 절차가 신중하고 공평을 기했는지.

(4) 그 절차가 전체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충실했는지.

(5) 상급 치리회의 합법적 지시가 준수되었는지.

투표 못할 자

b. 하급 치리회의 절차가 상급 치리회에 의해 검토되고 있을 때, 하급 치리회의 회원이면서 동시에 상급 치리회의 회원은 토의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투표를 해서는 안된다.

G-9.0410
상급 치리회의 결정

상급 치리회가 그 자체의 절차와 심의 중인 절차에 있어서 시인, 부인, 또는 교정을 기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당한 일이다. 만일 필요하다면, 상급 치리회는 하급 치리회에게 변칙을 재고하여 정정하거나 비행을 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G-9.0411
사법절차의 검토와 교정

행정적 검토에 부가하여 하급 치리회와 총회 중앙협의회나 대행 기관의 검토와 교정은 D-6.0000의 규정에 따라 고소를 제기한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 또는 치리회에 의한 사법절차를 거쳐 얻어낼 수 있다.

G-9.0500

5. 위원회와 전권위원회

G-9.0501
위원회

a. 위원회는 적절한 결정을 연구하고 추천하거나 치리회에 의해 이미 취해진 방향이나 결의를 수행하도록 임명된다. 그것은 그 위원회를 조직한 치리회에 완전한 보고를 하고, 그 위원회의 건의 사항은 치리회에 결정을 요구한다.

회원권

b. 당회위 상급 치리회의 위원회는 적어도 절반수의 평신도들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G-9.0502
전권위원회

전권위원회는 치리회에 의해서 위촉된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짓도록 권한을 위임 받는다. 임명치리회는 전권위원회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회의 진행 과정을 완전히 기록해야 하고, 이 기록이

치리회의 회의록에 기록되며 치리회의 자체 결정으로 간주되도록 해당 치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G-9.0503
행정 및 사법 전권위원회

a. 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 의해서 임명된 전권위원회는 행정 전권위원회나 사법 전권위원회가 될 수 있으나, 당회의 경우에는 행정 전권위원회들만 임명된다. 행정적 전권위원회에게 맡겨진 일반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안수하고 영구한 목회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임시키는 일;

(2) 교회를 조직한다. 이러한 전권위원회가 노회에 의해 새로운 당회(G-11.0103h)를 구성하도록 임명될 경우 노회는 그 전권위원회가 새로운 당회의 편익과 목사를 위하여 당회에 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인가할 수 있다. 노회는 그 전권위원회가 새로운 당회의 위원회에 대하여 이러한 권한과 책임들을 위임하도록 인가할 수 있다;

(3) 교회를 통합한다;

(4) 무질서한 일이 생겼을 때 개체교회, 치리회, 또는 기타 교회 기관들을 방문하고 어려운 일들을 심의하고 해결하는 일. 단 예외는 임명치리회에 의해 그런 권한이 명백히 거기에 위임되어 있지 않는 한 전권위원회는 목회 관계를 해소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5) 노회 감독하에 목사후보생을 받는 일(G-14.0301);

(6) 당회가 임명한 행정 전권위원회의 경우, 장로와 집사를 안수하고 취임시키며, 개 교회 내의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며 거기에 있는 차이점들을 해결하는 일.

사법 전권위원회

b. 사법 전권위원회의 기능은 권징조례에 따라 치리회를 위해 절차의 사례를 고려하고 결정짓는 일이다(D-5.0000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관한 조항 참조).

추가 의무

c. 전권위원회는 위원회로서 추가 의무를 부여받을 수 있는 데, 이에 대한 보고는 위원회의 보고로 다루어져야 한다.

G-9.0504
회원권

a. 당회의 행정 전권위원회는 적어도 두 사람의 장로와 당회장 또는 당회가 있는 개체교회에서 영구 목회 관계에 위임받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구성된다.

동수의 장로와 목사

b. 노회, 대회, 총회의 행정과 사법 전권위원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장로수가 가능한 한 거의 동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권위원회가 홀수로 구성되었을 때 그 추가위원은 장로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든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위원의 최소한도의 수와 위원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총회

(1) 총회위원은 적어도 각 대회에서 한 사람씩 대표해야 하며, 15명 미만이어서는 안된다;

대회

(2) 대회위원은 실제적인 면에서, 그 소속 각 노회로부터 1명 이상의 대표가 나와서는 안되고 11명 미만이어서는 안된다;

노회

(3) 노회위원은 노회소속 개체교회에서 한 사람 이상의 장로가 나와서는 안되고, 7명 미만이여서도 안된다. G-9.0503a(1)에 설정된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노회는 어느 한 교회의 장로들 중 한 사람을 넘지 않는 5명의 위원으로 줄일 수도 있다.

정족수

c. 행정 전권위원회의 정족수는, 임명 치리회가 보다 높은 숫자로 정족수를 확정하지 않는 한, 위원의 과반수여야 한다. 사법 전권위원회의 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여야 한다(D-5.0204).

G-9.0505
결정

a. 행정 전권위원회의 결정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므로 전권위원회의 임무 완성과 공고하는 때로부터 임명 치리회의 결의로 간주해야 한다. 그와 같은 결정은 서면으로 치리회의 정서기에게 보고해야 하고, 서기는 다음 회의 때 그것을 치리회에 보고해야 한다.

청문과 적절한 절차

b. 행정 전권위원회가 어떤 교회, 치리회 또는 교회 조직체 내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도록 임명받을 때, 전권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통지를 하고, 그 문제에 관해 청문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G-9.0503a(3), a(5), G-9.0505b-d 참조). 공평한 통지란 위원회가 확인한 문제에 대하여 간결하고 평이한 진술을 하고, 그리고 문제에 관한 청문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야 함을 말한다. 청문은 문제에 관한 그들의 입장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두로 진술할 수 있는 최소한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그 절대 재량으로 문제에 관심을 가진 책임 있는 대표자들에게만 청문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동일한 또는 다른 책임 있는 대표들에 의해 청문에서 밝혀질 입장에 대한 구두 진술을 요청할 수도 있다.

추가 절차 과정

c. 행정 전권위원회는 그 절대재량으로 특수한 절차를 취택함에 있어서 관련 있는 사람들의 동의 또는 위원회 자체의 동의에 따라 사법적 과정을 밟게 되는 것처럼 추가 수속 절차를 밟게 할 수도 있다.

고소인을 대면할 권리

d.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나 진술이 심각하여 만일 사실로 입증되면, 그 결과가 직분이나 지위로부터의 면직, 징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사태를 자아내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이에 관련된 자들은 그 고소인과 대면할 권리가 있으며, 또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의 근거 없는 진술이나 주장을 청문할 권리가 있으며, 증인들의 대질 심문을 포함한 합리적 변호를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 항은 권징조례에 따라 공식 고소가 제출되었거나 그렇게 예상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G-9.0600

6. 중재 조항

G-9.0601
중재나 조정

치리회는 사법 절차 이전이나 진행 중에 사용될 수 있는 교정 사건을 위한 중재나 조정의 제도를 제정할 수 있다. 그런 제도 안에서는 권징조례의 조항들이 준수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G-9.0602
참여

중재나 조정의 본 절차에 참여하는 일은 당사자 어느 편에게 꼭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주: G-9.0600-.0601의 원문은 제203차 총회(1991년)의 결의로 삭제되었고, G-9.0602의 원문은 제201차 총회(1989년)의 결의로 삭제되었다.]

G-9.0700

7. 행정 직원

G-9.0701
총무

a. 노회와 대회의 총무들은 이들 치리회의 행정 책임자로서 결정사항, 전략적인 문제, 프로그램, 자료의 수행을 위해 중앙협의회를 통하여 이들 치리회에 책임을 진다. 그들은 치리회의 대행 기관이나 위원회를 위해 직원 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청빙 절차, 사역의 연례 검토 방법, 고용인의 재선출이나 해직의 문제를 포함한 부가적인 책임은 상기 G-9.0405에 요구된 지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총무의 선출

b. 각 노회마다 대회 중앙협의회나 중앙협의회가 없을 때에는 대회가 지정한 다른 부서와 협의하여 한 사람의 총무를 선출하며, 만일에 프로그램과 자원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노회와 공동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각 대회는 총회 중앙협의회와 협의하여 총무를 선출할 수 있다.

G-9.0702
기타 행정 직원

노회의 다른 행정 직원직은 대회 중앙협의회나 중앙협의회가 없는 때에는 대회가 지정한 다른 부서와 협의하여 노회가 위임 받을 수 있다. 대회 내의 다른 행정 직원직은 총회 중앙협의회와 협의하여 대회가 위임 받을 수 있다.

G-9.0703
총회 대행기구 직원

총회 대행기구는 총회 중앙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한 사람의 총무나 총무들을 선출해야 하지만 총회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 총회 대행기구의 다른 행정 직원직은 총회 중앙협의회의 동의로 이들 기구가 위임 받을 수 있다.

G-9.0704
참여와 대표

당회위 상급 치리회의 모든 총무와 행정직은 G-9.0104에 있는 참여와 대표의 원칙과 G-9.0405에서 명시한 지침서에 따라 이 직위를 위한 대표조사위원회가 분명히 조직된다는 요구 조건에 따라 채용되어야 한다.

G-9.0705
대회와 노회 직원의 해직

노회, 대회 및 관련된 치리회의 총무나 다른 행정 직원의 관계는 행정 직원의 요청이나 중앙협의회나 특별위원회나 그를 선출한 치리회의 전권위원회의 추천에 따라서, 그를 선출한 치리회의 다수결 투표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중앙협의회, 위원회, 또는 전권위원회가 해직 권고안을 준비했을 때 해직을 제안하는 사유를 명시하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권고안이 중앙협의회, 위원회 또는 전권위원회에 의해 채택되고 보고되기 이전에 사임할 기회를 주거나 요청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문은 직원이 변호인과 함께 직접 출두해서(D-7.0301, D-11.0301) 그 위원회나 전권위원회가 발견한 해직 사유에 대하여 응답하고, 그 관계 해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와 증거를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청문은 권징조례 14장(D-14.0000)에 있는 증거의 규정에 따라 절차 사안에 안전을 기해야 한다. 청문에 관한 기록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치리회의 최종 결정 후에 따르게 될 사법적 고소의 경우에 권징조례 D-6.0304 아래서 철하게 될 기록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G-9.0706
임시 행정 직원

노회나 대회나 총회의 총무가 행정직원직이 공석일 때, 또는 재직 중인 자가 그이나 그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노회나 대회나 총회의 대행 기관은 임시총무나 행정 직원의 직무를 확보할 수 있다. 임시 행정직은 노회나 대회나 총회의 대행 기관의 대행 또는 임시총무나 행정 직원을 포함한다. 임시직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차기 영구 총무나 행정직원으로서 동일한 직무를 영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될 수 없다.

G-9.0707
명예 관계

노회나 대회의 어느 총무나 부총무가 은퇴시, 그리고 그 치리회가 애정과 감사의 정의로 명예 관계에서 교제를 계속하기를 원하면, 그 치리회의 정규 회의에서 사례비가 있거나 없거나, 권한이나 의무 없이, 그이나 그녀를 명예총무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총무 관계의 공식 해소 이후나 그 후 언제든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G-9.0800 8. 공천위원회

G-9.0801
공천위원회

a. 각 노회와 대회는 노회나 노회들의 회원 교회 대표 중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1/3, 여성평신도 1/3, 남성평신도 1/3의 위원으로 공천위원을 넓게 선출해야 한다. 공천위원회는 3개조로 구성해야 하며, 각 조는 3년의 임기로 봉사하되 규칙적인 순번제를 만들기 위한 첫 1년조와 2년조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책임

b. 공천위원회는 노회나 대회의 선출을 요구하는 모든 상임위원회(공천위원회는 제외), 중앙협의회, 이사회 그리고 그 밖의 기관들의 모든 결원을 채우기 위

하여 사람들을 추천해야 한다. 신중히 고려해야 할 점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남성평신도와 여성평신도(각각 1/3)의 동수로 공천해야 할 일이다. 단, 노회 기능이 거기에 위임될 목회위원회에 여장로와 남장로를 공천해야 할 경우는 예외다 (G-11.0501, G-12.0102d, G-13.0111, G-13.0202).

c. 공천위원회는 적어도 매년 소속 치리회의 대표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만일 그 치리회의 대표위원회가 G-9.0106의 조항하에서 예외를 부여받았다면, 차상급 치리회의 대표위원회가 그 협의에 참여토록 초청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

d. 특정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사람들을 공천할 때, 공천위원회는 G-6.0106, G-9.0104, G-11.0103d, G-11.0302, G-12.0102d, G-13.0108, G-13.0202의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한다.

G-9.0900

9. 구조의 요약

G-9.0901
중앙협의회, 전권 위원회, 위원회

이 헌법에 준하여 당회위 상급 치리회는 특별 임무 수행을 중앙협의회, 전권위원회, 그리고 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전제한다. 그러한 대행기관에 위임된 사항은 선교를 위한 조직, 직책의 설치, 또 교회의 프로그램 관리를 분명히 하는 일들이다. 이들에게 위임된 사항은 가능한 한 공식 명칭을 부여함 없이 주어져야 치리회가 그것들을 구성하고 그 대행 기관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몇 가지의 경우 - 즉, 대표위원회, 총회 중앙협의회, 그리고 노회 목회위원회- 에는 치리회로 하여금 다 함께 선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명확한 명칭이 주어진다. 기능이나 공식 명칭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전체 교회의 상호 사역을 신속하게 행하도록 설명하려는 의도이다.

G-9.0902
구조의 목록

본 헌법에서 특별히 명시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

노회

a. 노회에

선교와 프로그램 조정을 위한 중앙협의회 (G-11.0103v)

대표위원회 (G-9.0105, G-11.0302)

목회위원회 (G-11.0500, G-14.0502)

목회후보위원회 (G-14.0300)

공천위원회 (G-9.0800, G-11.0103w)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D-5.0000)

대회

b. 대회에

선교와 프로그램 조정을 위한 중앙협의회(G-12.0102r)(이 요구 조항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대회 그 자체가 조정 기능을 보유하도록 결정했을 때에 한한다.)

대표위원회 (G-9.0105, G-12.0301)

공천위원회 (G-9.0800, G-12.0102s)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D-5.0000)

총회

c. 총회에

총회 중앙협의회 (G-13.0200)

대표위원회 (G-9.0105, G-13.0108)

공천위원회 (G-13.0111)

헌법자문위원회 (G-13.0112)

은급을 책임진 이사회 (G-14.0506, G-16.0201t, G-17.0201j)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D-5.0000)

G-10.0000

제10장 당회

G-10.0100

1. 총칙

G-10.0101
당회원

개체교회의 당회는 담임목사나 동사목사, 부목사 및 시무 중인 장로들로 구성된다. 목사, 동사목사 및 부목사를 포함한 당회원 전체가 투표권이 있다.

G-10.0102
책 임

당회는 개체교회의 선교와 정치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당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a.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 의해 배우고 실천하도록 전도의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교인들이 G-3.0300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을 조리 있게 표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 말과 행동으로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에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데 훈련받아 일하도록 한다.

b. 신앙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재확인, 또는 다른 교회로부터의 만족할 만한 이명증서를 통해 교인을 받아들이는 일인데, 교인 자격은 인종이나 경제적 또는 사회적 환경 또는 신앙고백에 관계되지 않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아무에게나 거절될 수 있다;

c. 교인으로 하여금 G-3.0000에 따라서 세상에서 전체 교회의 선교 사명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

d. 예배모범의 원리에 따라 말씀의 설교, 성례전의 나눔, 그리고 음악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하나님 백성의 예배를 제공하며 G-11.0103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훈련받고 권위를 위임받은 장로로 하여금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없는 곳에서 그 정상을 참작하여 성찬예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회에 허락을 요청하는 일;

e. 개인적, 그리고 목회적 보살핌과 교회학교를 포함한 교육 프로그램, 친교와 상호 지원을 통한 나눔과 세상에서의 복음 증거와 복음을 통하여 교인들의 성장과 사역의 훈련을 마련하는 일;

f. 교회학교 및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 육성하는 일;

g.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가 처해 있어 증가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 치유와 화해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지도하는 일;

h. 돈과 시간과 재능에 있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적 특권을 갖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전하며, 교인들이 헌금을 드리도록 권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또 모든 헌금이 헌금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쓰인다는 확신을 주는 일;

i. 교회의 연차 예산을 세우고, 교회의 선교비에 할당되는 금액을 정하고, 그리스도인의 목적에 합당한 헌금을 드리도록 지도하며, 이와 같은 일에 대한 당회의 결정을 교인들이 알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

j.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계속 교인들로 발견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변화, 갱신, 그리고 개혁을 계획하도록 지도하는 일;

k. 당회원의 교육과 상호 성장을 위한 과정을 추진하는 일;

l.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장로와 집사들을 지도하고 교육시키고, 고시하며, 안수하고, 임직하여 공동의 목회활동에 참여하도록 환영하며, 그들로 하여금 맡은 바 책임완수에 충성하도록 권고하는 일;

m. 협조, 보고, 평가와 통제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집사회와 재단이사회, 그리고 또 다른 조직과 소위원회에 일을 맡기며 감독하는 일;

n. 안수받지 않은 교회직원 채용을 포함하여 평등고용 기회, 공정고용 실행과 인사 정책, 매년 모든 고용인들을 포함한 교회 전직원에 대한 보수의 타당성 검토 등 교회 프로그램의 관리를 마련하는 일;

o. 교회 건물과 시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문제를 결정짓는 일을 포함해서 교회 소유 재산의 관리를 책임지는 일과 당회원, 직원, 재단이사와 집사들을 포함하여 시설, 프로그램과 제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 및 책임 보증보험을 획득하는 일;

p. 교회의 상회와의 규칙적이고도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1) 노회에 총대를 선정해서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받는 일; 당회가 적어도 1년, 되도록이면 2년 혹은 3년 동안 노회에 보낼 총대들을 선출하도록 노회는 격려한다;

(2) 대회나 총회를 위해 선출될 수 있는 장로를 노회에 공헌하는 일;

(3) 상기한 두 가지 책임을 실천함에 있어서 참여와 포괄성의 원칙을 이행함으로 교회의 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대표성을 확인하는 일;

(4) *미국장로 헌법*과 일치하는 상급 치리회의 지시를 준수하고 실천하는 일;

(5) 노회 대표가 방문할 때 환영하는 일;

(6) 노회에 또는 노회를 통해서 대회나 총회에 전체 교회의 선교적 공동 관심사가 될 만한 안건들을 제안하는 일;

(7) 노회의 요구에 따라 통계 및 기타 정보를 노회서기에게 매년 보내는 일.

q. 그 지역에서 교회생활과 선교에 필요한 에큐메니칼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일;

r. 사법적인 문제를 권징조례에 따라서 처리하는 일;

s. 헌법조항 G-10.0302에 따라서 교인들의 정확한 명부를 보존하고 이명증서를 타교회로 보내는 일과 부모를 위해 발급하는 이명증서를 그들 자녀들의 이름을 포함시켜 그들이 세례받았는지를 밝히는 일과 장로나 집사를 위해 발급하는 경우 안수 기록을 포함하는 일.

G-10.0103 당회장

a. 교회의 담임목사는 당회장이 되어야 하고, 당회는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담임목사가 없이는 회의를 가질 수 없다. 교회에 동사목사가 있을 경우 회의에 참석했으면 교대로 당회를 사회할 수 있다. 담임목사 이외에 다른 교회 목사가 와서 사회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목사는 당회의 동의를

얻어서 같은 노회 내의 타교회 목사가 당회를 사회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노회는 평신도 목회자를 그녀 또는 그가 파송된 교회의 당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선도자 및 감독자로서 평신도 파송 목회자로 임명된 사람은 의장으로서 그 또는 그녀의 직무를 감독해야 한다.** 그 위에 강단이 공석인 지교회의 당회장은 노회 목회위원회 위원인 장로나 노회서기나 노회총무나 노회부총무에게 사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장로는 그 장로가 교인으로 있는 교회의 공동회의를 사회할 수 없다. 담임목사가 병중이거나 결석하게 되었을 경우에 동일한 편법을 채택할 수 있다; 아니면 또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서 당회는 회를 열고 당회원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사회하게 할 수 있다.

담임목사가 없을 때

b.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을 경우, 당회장은 노회가 그 목적을 위해 임명한 목사이거나 특별한 경우에 당회가 사회해 주도록 초청한 같은 노회의 목사이어야 한다. 그렇게 참석해 줄 목사가 없을 경우, 그 당회는 당회원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사회하게 할 수 있다.

사법 사건

c. 모든 사법적 사건의 경우에는 당회장은 그 교회가 소속한 노회의 목사이어야 한다.

G-10.0200

2. 회의

G-10.0201
회 의

당회는 적어도 정기회의를 1년에 분기별로 모여야 한다. 당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임시당회를 소집할 수 있고 당회원 2명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임시당회를 소집해야 한다. 또 당회는 노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해야 한다. 통상적인 안건을 처리하는 이외의 경우, 임시당회에는 합리적인 소집 이유를 통고해야 한다. 당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느낀다면 교인들이 당회에 참여하여 참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언제나 상황이 당회 단독회의를 하는 일이 지혜롭다고 판단될 때는 그와 같은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G-10.0202
정족수

당회의 정족수는 담임목사나 다른 사회자와 장로의 1/3이어야 하되, 두 사람 이하여서는 안 된다. 단, 교인을 받아들이거나 떠나게 할 경우에는 당회장과 당회원 2명으로 정족수를 삼을 수 있다. 당회는 스스로 정족수를 더 많은 수로 정할 수도 있다.

G-10.0300

3. 당회록과 기록

G-10.0301
당회록

각 당회는 당회 진행 과정의 정확하고 완전한 기록을 가져야 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노회에 제출하여 노회의 전반적 검열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G-11.0103x, G-9.0407-.0411). 당회록은 당회 구성이 민종그룹 회원들, 남녀, 연령별, 신체장애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이 교인들의 구성 요소에 상응하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당회록과 당회의 다른 공식 기록은 공동의회 회의록, 집사회, 개체교회 재단이사회를 포함하는데 이 기록은 당회의 소유이며, 당회의 서기는 이 모든 기록을 보존할 책임이 있다. 그것들은 요청시 노회에 제시해야 하며 교단의 역사 자료 보관부에 보존해 둘 수도 있다.

G-10.0302
교인명부와 기록부

각 당회는 G-5.0200에 규정된 대로 교인명부를 보관하고, 다음과 같은 기록부를 보관해야 한다.

a. 교인명부, 교인의 이름은 언제나 당회가 그렇게 하는 일이 정당하고 아주 만족하다고 생각할 때만 당회의 명령에 의해 교인명부에 기록하거나 이적하거나 삭제되어야 한다.

G-10.0302a(1)
세례교인

(1) 세례교인 명부: 세례교인 명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신앙고백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개체교회에서 세례받은 그들의 이름과 다른 곳에서 세례를 받은 개체교회의 활동교인이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자녀들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G- 10.0302a(2)(a)
활동교인

(2) (a) 활동교인 명부: 활동교인 명부에는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였으며, 또 그 교회의 활동과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이 명부에 있는 교인수는 매년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G-10.0302a(2)(b)
관련교인

(b) 그 지역에서 임시로 옮겨 간 활동교인은 본 교단의 다른 교회나 총회와 통신관계를 갖는 다른 교단의 관련교인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당회는 이 사람이 성실한 교인이라는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G-15.0201). 그 증명서는 거기에 기재된 개체교회에 보내야 하고, 그 교회의 목회적 돌봄을 받도록 위탁하된 단 2년 간만 유효하다. 증명서 발부한 후 당회는 그가 다른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그 교인의 이름을 활동 교인 명부에 간직해야 한다.

G-10.0302a(2)(c)
활동교인의 이사

(c) 교인이 이사 가서 소속 교회의 예배와 활동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을 때, 그가 살고 있는 지역 교회의 활동교인이 되는 것은 그 본인의 의무이다. 소속 교회의 당회는 이 같은 의무를 그 본인에게 곧 알려 주고 이주해 간 지역의 교회에도 알리면서 그 교인을 받아서 목회적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 위에 노회 사무실에게나 노회의 서기에게 또는 양쪽 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G-10.0302a(3)(a)
비활동교인

(3) (a) 비활동교인 명부: 비활동교인 명부는 당회의 판단에 의해서, 그 교회의 사역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교인 명부에서 옮겨진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그 교인이 적어도 1년 동안 의도적으로 교회의 사역과 예배에 불참하고, 또한 당회가 그 교인의 불참의 이유를 알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도록 해서 교회의 사역과 예배에 적극 참여하는 활동교인이 되도록 권면하는 노력 없이는 아무도 활동교인 명부에서 비활동교인 명부로 그 이름을 옮겨서는 안 된다. 그의 이름이 그렇게 옮겨진 교인에게는 이 결정을 알려야 한다.

G-10.0302a(3)(b)
비거주교인

(b) 비거주 교인은 위에서 요구한 통지를 보내고 나서 1년 후에 비활동교인 명부에 옮길 수 있다. 그때 당회는 그 교인에게 거주지의 교회에 이명증서를 해 가도록 최종 주소를 통해 권유해야 한다.

G-10.0302a(4)
관련교인 접수

(4) 관련교인 명부: 관련교인 명부는 당회가 관련교인으로서 받아들였고, 그 교회의 사역과 예배에 활동적인 교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관련교인의 회원권은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G-10.0302b
교인명부에서 삭제

b. 당회는 다음 상황에서 교인명부에서 이름들을 삭제할 수 있다;

G-10.0302b(1)
이명증서

(1) 요청받았을 때, 당회는 그 사람의 교인 신분을 서술한 이명증서를 지교회로 발급해야 한다. 이명증서를 받은 교회는 그 교인을

교인으로서 받아들일 것인가의 여부와 교인으로 받아들일 경우의조건들을 결정해야 한다. 이명증서가 발부되었을 경우, 그 교인의 이름은 그 교인이 이명해 간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명증서를 발부한 교회의 적절한 명부에 보관해야 한다. 그 사람이 교인으로 받아들지자마자, 접수한 교회는 이명증서를 발부한 당회에 통보해야 하며, 그것에 따라 그 당회는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G-10.0302b(2)
교회의 해소시

(2) 어떤 교회가 해소되면, 관할 노회가 그 교회의 기록을 소유하고, 그 교인들을 관할하고 다른 교회로 이명해 가는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G-10.0302b(3)
말소 요청

(3) 어느 교인이 활동교인이든 비활동교인이든 간에, 교적을 말소해 주기를 요청하면, 당회는 그 교인을 열심히 권유해서 교인으로 남아 있도록 설득한 후에 활동 또는 비활동교인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G-10.0302b(4)
타교회 소속

(4) 어느 교인이 정식 이명증서 없이 다른 교회에 소속하거나 본 교회의 관할권을 파기하는 경우, 당회는 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된 모든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G-10.0302b(5)
비활동 비거주 교인

(5) 비거주 교인이 위에서 당회의 통보를 받고 그의 이름이 비활동교인 명단에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 당회는 그 이상 통보할 필요 없이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할 수 있다.

G-10.0302b(6)
이사 후 소재 불명

(6) 교인이 이사 갔고, 당회가 그 교인의 거처를 알려고 부지런히 노력했지만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당회는 1년의 부재 후에 그것이 기재된 모든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할 수 있다.

G-10.0302b(7)
비활동 명부에
2년
간

(7) 거주 교인이 활동교인 명부에서 비활동교인 명부로 옮겼을 경우, 목회적 관심을 그 교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회의 의무이다. 2년 동안의 목회적 관심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교인으로 회복시키는 데 실패했다면 당회는 더 이상 통보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의 이름을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G-10.0302b(8)
교인 사망

(8) 어느 교인이 사망했을 때, 당회는 사망 날짜를 기록하고 명부에서 그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G-10.0302c
결혼, 세례,
재직기록부

c. 기록부: 당회는 다음의 완전한 기록부를 보관해야 한다;

(1) 결혼, 본 교회 교인의 모든 결혼, 교회의 목회자가 집례한 모든 결혼, 그리고 교회 건물에서 거행된 모든 결혼;

(2) 세례

(a) 유아세례, 이름, 부모의 이름, 세례받은 자의 생년월일, 어린이를 세례받도록 드린 사람들의 이름을 포함.

(b) 성인세례, 이름, 부모의 이름, 세례받은 자의 생년월일을 포함.

(3) 장로, 각자가 안수받은 교회의 이름, 안수받은 날짜, 시무기간, 이동 기록;

(4) 집사, 각자가 안수받은 교회의 이름, 안수받은 날짜, 시무기간, 이동 기록;

(5) 시무 중인 목사, 동사목사, 부목사, 임시목사, 노회 임명목사, 협동목사의 시무년월일.

G-10.0400

4. 교회재정

G-10.0401
재정

교회 소재지의 주법이 허용한다면, 회계는 매년 당회가 선출해야 하고, 그이나 그녀의 봉사는 당회에 의해 감독받거나 집사회나 이사회에 대한 특별한 임무에 의해 감독받는다. 교회의 각종 자금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당회에 보고해야 하고, 요청이 있으면 더 자주 보고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재정절차의 최소한도의 표준이 지켜져야 한다.

a. 모든 헌금은 적어도 합법적으로 임명된 두 사람 또는 신용 보장된 사람에 의해 계수되고 기록된다;

b. 모든 재정 처리를 반영하는 적절한 장부와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합당한 시기에 권한을 맡은 교회 제직에 의해 감사받을 준비를 한다;

c. 재정 활동의 정기적 보고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자주하면 더 좋지만, 재정 감독의 권한이 주어진 이사회(들)에게 한다;

d. 모든 교회재정 장부와 기록은 1년에 한번은 공인계리사나 공인계리회사, 또는 계리절차에 밝은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충분한 재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 감사원들은 회계(혹은 회계들)와 친숙한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본 항목에 있는 용어는 일반적 지침을 마련해 주는 이미지 전문적 회계업무에 이해되는 바와 같이 특별감사 절차나 시행을 요구하거나 요구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G-11.0000

제11장 노회

G-11.0100

1. 총칙

G-11.0101
회원권

노회는 지역 내에 있는 모든 교회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구성된 교회의 공동조직의 표현이다. 노회가 모일 때 각 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적 규정에 따른 당회의 장로 총대를 대표로 보내야 한다:

a. 500명 이상의 교인을 가진 교회는 다음과 같이 대표를 보내야 한다.

501–1000 — 2장로

1001–1500 — 3장로

1501–2000 — 4장로

2001–3000 — 5 장로

교인수 3001명부터는 매 1000명 추가 활동교인이나 그것의 과반 끝자리수에 따라 한 명의 장로를 추가해야 한다.

b. 매년 1월 첫 주간에 각 노회의 서기는 노회의 회원인 교회 현직 목사 수와 노회의 총대로서 파송되는 교회의 장로 대표수를 확인해야 한다. 목사의 수가 더 많을 때는 서기가 그 해 첫 모임에서 회원의 불균형을 말하여 노회의 관심을 환기시켜야 한다. 노회는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체교회의 당회에게 장로총대를 추가로 선출해 보내라고 하든지, 또는 G-9.0104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근거에서 장로총대를 추가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c. 노회장으로 선출된 장로는 그이나 그녀의 소속 당회가 총대로 선출하든 안하든 그 임기 동안에 노회의 회원으로서 등록이 되어야 한다. 임원이나(노회장 외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노회 중앙협의회 위원으로 선출된 장로는 그이나 그녀의 소속 당회가 총대로 선출하든 안 하든 그 임기 동안에 노회의 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다. 노회 총무, 노회 부총무 또는 다른 정직원으로서 노회에 의하여 선출된 장로는 그이나 그녀의 소속 당회가 총대로 선출하든 안 하든 그 직무를 시무하는 동안 노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다.

G-11.0102
최저 회원수

각 노회의 목사의 최저 회원수는 12명이어야 하고, 교회의 최저수도 마찬가지로 12개 교회여야 한다. 고립된 지역에서는 대회의 추천에 의해서 총회는 최저수보다 더 적은 수로서 노회를 조직하도록 허락하는데, 이 경우에는 적어도 각 노회에 5명의 목사가 있어야 한다.

G-11.0103
책임

노회는 그 지역구에 있는 교회의 선교와 정치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노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a. G-3.0000에 따라 그 지역 내의 교회 선교활동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일 ;

b. 노회가 책임을 지는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 가장 효과적 증언을 하기 위해 회원 교회들을 지도하고 기동력을 동원함으로써 회원교회의 사역에 협력하는 일;

c. 대회나 총회의 보다 더 큰 전략에 비추어 다양한 형태를 통한 선교 활동을 주도하는 일 ;

d. G-9.0104에 따라 대회나 총회 총대 선출과 정책 결정에 있어서 공정한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회의 직원 채용과 그 위원회, 중앙협의회, 이사회 그리고

그 밖의 정책 결정과 정책 추천기관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참여와 포괄성과 소수계 보호법의 원칙을 수행하는 일. 노회의 대표위원회는 직접 노회에 보고해야 하고, 공천위원회가 그 공천을 재고하도록 제안하는 일을 포함하여 불균형 대표성의 상황을 교정할 제안의 권한을 부여받았다;

e. 교회의 다양한 구성 계층이 당회에 대표되어 있지 않은 개체교회를 자문하는 일;

f. 노회 회원교회의 지도자 개발, 교회 제직 훈련, 예배, 양육, 증거, 봉사, 청지기 직분, 공평한 보수, 인사 정책, 공정한 고용정책 분야에 있어서 회원교회에게 격려와 지도와 재원을 제공하는 일;

g. 정기적으로 당회와 목사를 방문하여(G-11.0502c) 회원교회와 노회원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마련하는 일;

h. 새로 교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받아들이고, 또 교인들과 협의하여 교회를 통합하는 일, 한 노회의 두 교회나 그 이상의 교회가 통합할 경우 이전 교회의 목사 또는 목사들은 통합 교회들이 합의하고, 통합 계획 가운데 그 관계가 명시되며, 노회가 함께 동의하면 통합된 교회의 목사나 목사들로서 계속하거나 목사나 목사들이 될 수 있다;

i. 교인들과 협의하여 교회를 나누거나 해산하거나 해소시키는 일;

j. 신설 교회의 위치와 이전하고자 하는 교회의 위치를 통제하는 일;

k. 평신도 목회자를 선정하고 훈련시키고 고시하며 파송하고 그들에게 주의 성만찬을 집행하는 권한(G-14.0516)을 주는 일까지 포함하여 목사가 없는 교회들을 특별히 감독하는 일;

l.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을 지망생으로 등록하여 언약 관계에 이르게 하고 지망생을 후보생으로 받는 일;

m. 노회 목회 후보 고시협력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안수받을 후보생을 위한 고시 채점하는 장로와 목사를 선정하는 일;

n. 목사를 안수하고, 회원으로 받고, 해소하고, 취임하고, 제명하고 훈련시키며, 새로 입회한 목사들로 노회의 생활과 사역에 융합케 하는 계획도 세우며, 모든 목사 청빙을 위한 최저 보수 요건과(G-14.0506e) 노회 소속교회에 의해 채용된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를 위한 보수와 급부금에 대한 지침을 세우며(G-14.0705b(2)),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를 위한 인정 예식을 마련하며(G-14.0705b(1)), 모든 청빙 조건들과 노회가 승인한 청빙의 변경 사항을 노회록에 정리하고 승인하고 기록 하는 일;

o. 목회의 관계를 수립하기도 하고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교회의 선교가 절대적으로 그런 일을 요구한다고 할 때 그 관계를 해소시키는 일;

p. 목사를 교사로, 복음 전도사로, 행정가로, 교목으로, 또는 노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한 목회에 사역하도록 지정하는 일. 그런 목사들도 치리회가 인정할 때와 장소에서 또는 치리회가 상세히 정한 다른 조건에 일치하는 경우에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다. 이에 적용되는 W-2.3000, W-2.4000, 또 W-3.3600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q. 교회에서 전문직 봉사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을 노회의 지도하에 받으며 적절한 때 그들을 파송하는 일(G-14.0102);

r. 권징조례에 따라서 사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일;

s. 당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정했을 경우에 원관할권을 맡는 일. 충분한 조사와 청문할 수 있는 전적인 기회를 문제의 당회에 준 후에 관할권의 노회는 지교회의 당회가 그 교회 사건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없거나 원치 않는다고 판정할 때는 언제나 노회는 당회의 전권을 가진 행정 전권위원회(G-9.0503)를 임명할 수 있다. 이 전권위원회는 노회가 별도로 지시할 때까지 권한 행사를 정지하게 될 기존 당회의 원관할권을 맡아야 한다;

t. 교회의 상급 치리회와 정규적이고 계속적인 관계 유지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1) 대회와 총회에 보낼 총대를 선출하고,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받는 일,

(2) 상급 치리회의 명령들이 지켜지고 실천되는지를 확인하는 일,

(3) 전체 교회의 선교적 공동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대회와 총회에 제안하는 일;

u. 해당 구역 내의 교회생활과 선교를 확대시키는 에큐메니칼 관계성을 확립하고 유지해 가는 일;

v. 노회의 구조와 그 선교 사이에 기능적 관계를 정기 평가하도록 노회 중앙협의회를 포함하여 노회 사역에 필요한 기관들을 세우고 감독하는 일. 노회는 그 자체의 제정된 규칙에 의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노회의 특별 책임 분야에 있어서 노회의 회의들 어간에 결의할 책임을 노회 중앙협의회에 부여하고, G-11.0502h에 명시된 권한을 노회 목회위원회에 부여하고, 또 목회후보생을 이적시키고 지망생을 등록시킬 권한을 목회후보생위원회에 부여하되, 그런 모든 결정을 차기 정기노회에 보고해야만 한다는 규정하에서 실시한다(G-9.0403, G-14.0507);

w. 목사와 평신도 남녀 동수(각기 1/3)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일;

x.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당회록과 기록을 검사하는 일;

y. G-8.0000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결의를 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개체 교회의 요구를 고려하고 처리하는 일;

z. 주의 성만찬 집행을 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할 때, 성만찬 집행과 그 교리에 관한 노회의 적절한 지시와 함께 특별한 환경에서 성만찬을 집례하거나 사회하도록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특정 장로에게 권한을 허락하는 일;

aa. 널리 퍼져 발생하는 긴급한 인종차별의 문제, 인종적 폭력과 인종적 부정을 대처하며 동시에 교회와 주변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인종적 압제를 조장하는 어떤 이념에도 대처하는 일.

G-11.0200

2. 회의

G-11.0201
회의

노회는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기회의를 가져야 한다. 노회장은 두 목사와 각기 다른 교회의 두 장로가 일치해서 요청할 때나 동의할 때 임시노회를 소집해야 한다. 만약 노회장이 소집을 할 수 없을 경우, 똑같은 조건하에 노회서기가 회의 소집을 해야 한다. 만약 노회장과 노회서기가 다 회의 소집을 할 수 없을 경우, 어느 3인의 목사와 각기 다른 교회에 속한 3인의 장로가 임시노회를 지시할 수도 있다. 임시노회 소집 통고는 늦어도 소집일 10일 이전에 각 목사와 각 교회 당회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회의 소집 목적을 명시해야 하고, 명시된 안건 이외에는 다른 안건을 처리할 수 없다.

G-11.0202
정족수

노회의 정족수는 목사 3인과 적어도 3교회를 대표한 장로 3인은 참석해야 한다. 노회는 자체적으로 더 많은 정족수를 규정할 수도 있다.

G-11.0203
객원회원

본 교단 또는 다른 그리스도 교회의 치리회의 장로들(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또는 장로)이 노회의 어느 회의에 참석했을 때 객원회원으로 초청될 수 있다. 단, 발언은 할 수 있으되 투표권은 없다. 노회는 그 지역 안에서 사역하는 다른 노회원을 그 사역 기간에 발언권만 있고 투표권은 없는 객원회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G-11.0300

3. 다른 규정들

G-11.0301
참여

노회 중앙협의회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노회는 G-9.0104이하에 표현된 참여와 대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G-11.0302
대표위원회

노회의 대표위원회는 노회의 공천위원회가 대표를 증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부문에 공천이 필요하면 조언을 해주어야 하고, 또 G-4.0403에 열거된 모든 부문의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표했는지 그 과정을 노회에 정기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G-11.0303
직원

노회는 총무와 필요한 다른 직원의 행정 봉사를 받을 권한을 갖고 있다. 협력하는 뜻에서 노회는 노회 중앙협의회(또는 다른 적절한 위원회, 또는 대표자)를 통해 대회의 전체적 선교 사역의 필요성을 노회 직원 유지에 따르는 경제적 지원의 필요에 관하여 대회(또는 대회 중앙협의회, 다른 위원회, 또는 대표자)와 협의해야 한다(G-12.0302) 행정 직원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사 채용에 관한 한, 노회는 G-9.0404에 설정된 협의의 실천과 소수계 보호법과 평등 고용기회를 위한 전체 교회 계획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G-13.0201b).

G-11.0304
예산

노회는 그 지역 내의 교회 선교 지원을 위한 노회의 일반 선교 예산을 세워야 한다. 노회가 이들 예산을 올리고 확대시킬 때에는 전체 교회의 우선순위 원칙에 비추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 노회는 대회의 추천을 받은 다음, 그리고 대회 및 총회가 대표하는 전체 교회의 종합적 전략에 따라 노회의 계획을 세우고 그 일반 선교 예산을 결정해야 한다.

G-11.0305
기록

a. 노회는 그 행정 절차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가져야 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그 기록을 대회에 제출해서 일반적 평가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 노회는 그 구역 내에서 그 해 동안에 일어난 상황과 진전, 그리고 모든 중요한 변화, 곧 안수; 회원의 접수, 이적, 목사의 사망; 또 교회의 조직, 통합, 분리 또는 해소 등을 포함한 사항들을 대회와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노회 소유

b. 노회의 회의록과 다른 공식 기록들은 노회의 소유이고, 서기는 그 문서들의 보관 책임을 가진다.

G-11.0306
연례보고

노회는 매년 총회서기에게 노회 목사들의 명단, 교회 명단, 통계 및 총회가 요구한 다른 정보를 보내야 한다.

G-11.0307
감사

노회는 재정에 관계된 모든 장부와 기록을 1년에 한 번씩 공인계리사, 공인계리회사, 또는 계리 절차에 밝은 교회교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서 충분한 재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 감사원들은 회계(또는 회계들)와 친숙한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본 항목에 있는 용어는 일반적 지침을 마련해 주는 의미지 전문적 회계업무에서 이해되는 바와 같이 특별감사 절차나 시행을 요구하거나 요구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G-11.0308
보험

노회는 그 시설, 프로그램, 직원, 그리고 선출 및 임명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 및 책임 보증보험을 획득해야 한다.

G-11.0400

4. 목사 회원

G-11.0401
목사의 회원권

a. 모든 목사는 보통 그가 사역하는 지역의 노회 회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회의 관할권 밖에서 사역하도록 부름받은 목사는 그이나 그녀가 거주하게 될 지역의 노회에 가입을 신청하거나 또는 다른 노회나 그이나 그녀가 회원이던 노회에서 회원권을 보유할 수 있다. 노회는 목사에게 그 구역 밖이나 관할권 밖에서 사역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목사가 다른 노회의 구역 안에서, 그리고 다른 노회의 책임 지역 안에서 사역하는 것은 해당 노회의 동의 없이는 허락할 수 없다. 그런 허락과 동의는 매년 검토하고 갱신해야 한다. 노회의 서기는 자기 소속 노회 밖에서의 사역 허가 신청을 원하는 목사에게 먼저 다른 노회 구역 내에서 사역하겠다는 허가 신청을 하라고 일러 주어야 한다. 매년 1월 중에는 목사의 회원권이 있는 노회의 서기가 그런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타노회에 목사의 주소를 알려 주는 연락을 취해야 한다. 노회의 승인하에서 미국 밖에 교단에서 일하는 목사는 본 교단 노회의 회원권에 영향받지 않고 그가 봉사하는 기간 동안에 그 교단의 목사 회원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G-11.0410).

사역 허락 권한

b. 노회 구역 안이나 밖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한은, 노회의 차기 정기회의에 모든 그와 같은 결정이 보고된다는 단서와 함께, 노회에 의해 그 중앙 협의회나 목회위원회에 위임될 수 있다.

G-11.0402
회원권을 원하는 목사

노회는 그 해당 위원회를 통해서 노회 회원권을 원하는 목사나 후보자를 G-14.0314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그의 기독교 신앙, 신학에 관한 견해, 성례전, 본 교단의 정치 등에 관하여 시취(試取)해야 한다. 노회의 회원권을 원하는 모든 목사는 노회 안에서 목회 관계에의 청빙을 받아야 하고, 또는 G-11.0410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한 치리회나 기관으로부터 청빙을 받아야 하고, 또는 받아들이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G-11.0411에 규정된 사역을 시작해야 하며, 또는 헌법조항 G-11.0412에 규정된 대로 명예롭게 은퇴해야 한다.

G-11.0403
계속회원의 목회 기준

노회는 계속회원이 되어야 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노회는 그 경내에서 목회 사역의 확인을 위해 노회가 개발한 서면 기준에 따라 지시 받아야 한다. 이런 기준은 G-6.0100과 G-6.0200에 따른 안수직 성격의 기술과 다음 표준에 근거해야 한다.

a. 계속회원인 목사의 목회는 성경과 신앙고백서와 본 교단의 규례서에 명시된 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와 분명히 부합해야 한다.

b. 그 목회는 타인을 섬기고 타인을 도우며, 타인의 목회를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c. 그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학적 지식의 충실한 증거를 보여야 한다. 이것은 대개신학석사 학위나 그에 대등한 학위, 그리고 G-14.0402에 설정되어 있는 안수 조건을 필할 것을 요구한다.

d. 그 목회는 그 성격과 행위에 있어서 노회와 조직체, 기관, 그리고 단체에 대해 책임을 이행하면서 수행되어야 한다.

e. 그 목회는 노회의 심의와 사역, 그리고 개체교회의 예배와 봉사에 책임 있는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

G-11.0404
타교파의 목사: 개혁 교회

타교파의 목사들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받아들일 수 있다:

a. 미국장로교 총회와 유대관계를 갖고 장로교의 규례를 보유하고 있는 개혁과 교회의 목사들이 노회의 회원이 되고자 원할 때에는 (1) 노회 또는 장로 감독회(classis)에 의한 안수증서, (2) 현재 정식회원, (3) 해노회에 이적 등 만족할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그들은 본 교단이 후보자에게 요구하는 성품과 학문의 자격

을 증명하는 만족스런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들의 기독교 신앙, 신학, 그리고 본 교단의 정치제도, 또 노회 재량으로 다른 과목들도 시험해야 하고, 그리고 G-14.0405b에 있는 질문 (1)-(9) 항목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야만 한다. 안수받은 지 5년 또는 그 이상된 그런 목사는 G-14.0508a (3) 규정의 부분 또는 전부를 노회의 2/3 투표에 의해 면제받아야 한다. 타개혁 교단으로부터 오는 목사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노회는 조언과 지원을 위해 총회 서기와 협의해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을 성실히 지킴

b. 노회가 말씀과 성례전을 근본적으로 성실히 지킨다고 판단하는 타교파의 목사가 노회 관할권 내의 적당한 일터를 얻어 청빙하는 증서를 보이고, 또 그 목사가 소속했던 교단으로부터 현재 품행 좋은 회원이란 증명을 포함한 적절한 이적 통지서를 제출하고, 그 노회에 목사로 받아 주도록 청원했을 경우, 그 노회는 헌법 조건들이 만족하게 된 후 본 교단의 헌법에서 목사에게 요구하는 안수 서약에 나타난 책무를(G-14.0405) 목사가 받아들인다고 표현을 할 때 목사직에 대한 그 목사의 이전 안수를 인정해야 한다.

통신 연락 관계

c. 본 총회와 유대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 관계를 그 교단이 인정하는 타교단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조직 목사가 아닌 임시로 비취임 목회 관계(G-14.0513)를 맺어 장로교의 지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 개교회의 목사나 미국장로교와 적어도 한 부서가 연관을 갖고 있는 교단의 부서들로 구성된 큰 교구의 목사, 또는 본 교단도 한몫 재정적 부담을 하는 연합 특수 목회에 봉사하는 목사일 때, 또는 본 교단도 참여하는 한 개 이상의 교단의 행정 직무에 공동으로 청빙받은 목사, 또는 해외에서 본 총회와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교단의 목사로서 이 교단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는 봉사기관 동안 노회 회원으로 등록되며, 회원의 권리와 특권을 잠정적으로 가질 수 있다.

d. 미국장로교가 충분하게 친교를 맺고 있는(G-15.0201) 타교단의 목사는 목회자로서 청빙받거나 조사되거나 승인될 수 있으며(G-14.0508a(1), (4), (5)), 이러한 교단에 다른 목회자 능력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으며, 이 봉사 기간 동안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가진 노회의 회원으로 등록될 수 있다. 목사는 그 교단들 중 어느 하나의 급부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 목사가 이미 하나의 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 그 계획에서 회원권을 보유하게 된다. 목사가 어느 계획의 회원이 아닌 경우 교회 계획들 중 하나 또는 다른 것이 그 목사에 의해 선택될 수 있다. 당회 또는 기타 고용 기관은 그 목사가 속해 있는 계획이 필요로 하는 수수료, 세금 또는 할증료를 지불해야 한다.

G-11.0405
입회 등록

a. 타교단의 목사가 본 교단 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 그 사람은 입회 등록되기 이전에 그가 전에 속했던 어떤 타교단의 목사 명단으로부터 삭제되었다는 만족할 만한 증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b. 새로운 이주자의 교제 및 회중 모임을 담당할 목사들의 경우, 노회의 후원자들이 선교를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노회는 비록 목사가 입회 시기에 G-14.0301b-d에서 요구되는 교육적 배경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노회의 일원으로 총회와 유대관계를 맺고있는 교단에서 명망을 얻고 있는 신임 이주 목사를 입회시키고 목사의 안수(G-15.0202)를 승인할 수 있다. 그러한 준비가 부족한 목사의 경우, 노회는 성경, 개혁 신학, 성례전, 노회 정책, 설교, 예배 인도, 목자적 돌봄 및 가르침과 관련한 목사의 능숙도 및 이해력를 평가할 의무가 있다. 노회가 상기 분야에 대한 목사의 이해력과 준비에 만족할 경우, 참석 인원 3/4의 찬성 투표로써, 이 목사를 노회의 목사로 입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노회는 이 목사가 이 노회의 지역 내에서 목사의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 노회에서 신중하게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이 목사에게 교육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본 장은 이용시 G-11.0403c, G-14.0310b-d, G-14.0313a-c 및 G-14.0508a(2, 3)에서 규정한 절차 및 요건들의 예외가 될 수 있다.

G-11.0406
계속회원

미국장로교 소속 노회의 계속회원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활동회원, 보통회원, 비활동회원을 포함한다.

활동회원

a. 활동회원은 G-11.0401에 의해서 노회에 받아들여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이다. 그리고 현재 예외 없이 G-11.0403의 모든 기준에 부합되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자이다. 활동회원은 개체교회 안에서 인정된 목회 활동을 하고 있고(G-11.0409), 본 교단의 다른 봉사 분야에서 인정된 목회 활동을 하며(G-11.0410), 본 교단의 관할권 밖에서 인정된 목회 봉사를 하고(G-11.0411), 또는 명예롭게 은퇴를 할 수 있는(G-11.0412) 회원이다. 활동회원은 노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투표하고, 직책을 맡을 자격을 갖는다.

보통회원

b. 보통회원은 전에 이 노회 또는 다른 노회의 활동회원이었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이며, 지금은 의도적으로 목회 활동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G-11.0403의 기준에 부합되는 목회에 더 이상 관여하고 있지 않은 목사다. 그이나 그녀는 노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의 책임이나 개인 사정 때문에 인정된 목회의 제반 기준을 완수하는 데 그이나 그녀의 능력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이유로 인해 이 목사는 보통회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 보통회원은 가능한 한 G-11.0403의 기준에 많이 적응하려고 해야 하며, 어느 교회의 협동목사가 되도록 권유 받아야 한다. 보통회원은 노회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투표하고, 직책을 맡을 자격을 갖는다. 각 보통회원의 신분은 목사의 청원에 의해서 노회가 허락하고 1년에 한 번씩 재검토해야 한다.

비활동회원

c. 비활동회원은 전에 이 노회 또는 다른 노회에서 활동회원이었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이지만, 지금은 G-11.0403의 모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어떤 직업에 자발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목사이다. 노회는 그 목사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목사에게 직접 통고하거나 최종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통고한 다음 노회 자체가 주도하여 그 목사의 회원 범주를 비활동회원으로 결정지을 수 있다. 비활동회원은 노회에 참여하여 발언하고, 투표하고, 직책을 맡거나 위원회에 봉사할 자격을 갖지 않는다. 단, 그 당사자 문제에 관한 의논을 할 때는 발언할 수 있다. 각 비활동회원의 신분은 매년 검토하되 3년까지 해야 한다. 만약 3년 끝에 가서 그 목사가 활동회원이나 보통회원으로 회복이 되지 못하면, 노회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해당 노회의 명단에서 제명하고 그에게 어느 지교회에 교인증서를 줄 수도 있다(G-11.0414).

G-11.0407
회원 명부

노회서기는 네 가지 명부를 보관해야 하는데, 노회의 계속회원이며 활동회원인 모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이름을 기재한 것 하나, 노회의 계속회원이며 보통회원인 모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이름을 기재한 것 하나, 노회의 계속회원이며 비활동회원인 모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이름을 기재한 것 하나, 노회의 모든 회의에서 발언권을 부여받은 노회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유자격 기독교교육자를 기재한 것 하나, 그리고 다른 명부에서 제명된 회원의 이름을 기재한 다섯 번째 명부를 보관해야 한다. 매년 12월 31일이나 그 이전에 본장의 관계 법규와 관련해서 노회는 각 계속회원의 회원권의 범주를 결정하고, 결정되는 대로 해당 명부에 기재해 둔다.

G-11.0408
인정된 목회

노회의 활동회원인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1)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인정된 목회 활동을 하고 (2) 본 교단의 다른 봉사 분야에서 인정된 목회 활동을 하고 (3) 본 교단의 관할권 밖에서도 인정된 목회 봉사를 하거나 (4) 명예롭게 은퇴한 회원이다.

G-11.0409
본 교단의 개체교회
에서 봉사

본 교단의 개체교회에서 인정된 목회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활동회원은 G-6.0202과 G-14.0513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담임목사, 동사목사, 부목사, 보조목사, 노회지정목사, 임시지정목사, 임시목사나 임시부목사로서 개체교회에서 봉사해야 한다.

G-11.0410
본 교단의 다른 분야봉사

본 교단의 다른 봉사 분야에서 인정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회원은 본 교단의 노회, 대회, 총회나 이런 치리회의 하나와 관계된 기관의 직원으로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교단이 후원하는 기관, 그 중 하나는 본 교단이어야 하는데, 가령 연합교회, 특수목회, 행정 직책, 또는 초교파기관 같은 곳에서 봉사하는 목사로서; 해외 교회와 관계된 선교동역자로서 봉사해야 한다. 그러한 봉사에 종사하기 전에 그 목사는 회원권이 있는 노회에 요청하고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청빙조건이 달라졌다거나 그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는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G-11.0411
교회 관할권 밖에서 봉사

본 교단의 관할권 밖에서 인정된 목회 활동에 종사하는 활동회원은 어떤 조직체나 기관이나 본 교단이 공식적으로 참여치 않는 기구에서 노회의 선교와 관계된 목회 활동에 종사하거나 다른 교단에서 임시로 목사나 어떤 다른 자격으로 봉사할수 있으며, 노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가 회원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장로교 소속 노회에서 그이나 그녀의 회원권을 상실하지 않고 그런 봉사를 하는 기간에 그 교단에서의 목사 회원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봉사활동에 종사하기 전에 목사는 회원권이 있는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노회의 목회위원회는 제시된 목회 기능을 철저히 검토하고 노회에 그 추천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그 위원회는 예외없이 G-11.0403에 열거한 모든 기준과 그 봉사가 부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보고해야 한다. 만약 노회가 그 청원을 허락한다면 그 허락은 매년 평가하고 갱신해야 한다.

G-11.0412
명예 은퇴 목사

a. 노회는 만약 그 목사가 품행 좋은 정규회원이면 활동회원을 명예 은퇴목사로 지정할 수 있고, 그 목사가 명예 은퇴목사로 지정될 때에 품행 좋은 정규회원의 신분을 부여할 수도 있다. 명예 은퇴목사의 신분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또는 나이 때문에 허락할 수도 있다. 새 목사를 선출하는 절차는 G-14.0502에 정해져 있다. 또한 노회는 명예 은퇴목사의 신분을 G-11.0410이나 G-11.0411에 기대된 대로 기관에 의해서 은퇴한 목사에게나 또는 활동회원으로와 (또는) 보통회원으로 계속 20년 목회 활동에 종사한 목사에게 허락할 수도 있다.

명예 은퇴목사의 노회 회원권

b. 명예 은퇴목사들에게 그들이 거주하는 노회에 그들의 회원권을 이명하도록 격려하며 그 노회가 그들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한다. 만일 그들이 노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노회 회의에 목사와 평신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로 장로들을 선출할 수 있다(G-11.0101b). 노회는 명예 은퇴목사들에게 그들의 경험과 기술을 창조적이며 의미있는 방면에 사용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역과 봉사에 다시금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지교회나 노회에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노회는 양육과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G-11.0413
보통회원과 비활동회원

보통회원과 비활동회원은 노회의 보살핌과, 감독과, 노회의 자제하에 있다. 그들은 양쪽 노회의 허락하에 다른 노회로 현재 그들의 회원권의 범주대로 이명해 갈 수 있다. 그 목사의 모든 기록은 그를 받는 노회에 다 전달해 주어야 한다. 목회위원회는 각 보통회원과 비활동회원을 매년 자문해야 하고, 그 회원이 현재의 범주에서 계속 회원권을 유지해야 하는지, 다른 범주로 옮겨야 하겠는지 또는 인수받은 직책의 수행에서 해제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노회에 제안해야 한다. 그런 결정은 노회나 그 목사의 요청에 의해 주도할 수 있다.

G-11.0414
안수 직책에서 해제

a. 만일 D-10.0102와 D-10.0201에 따라서 심리받은 적이 없고, 또 아무런 고소도 제기되지 않은 품행 좋은 회원인 목사가 안수받은 목회직에서 해제되도록 신청하면 노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노회 해당 명부에서 삭제하고 그에게 개체교회에 회원이 되는 증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노회는 G-11.0406c 또는 G-11.0413에 의거하여 목사를 안수하는 경우 노회는 그의 이름을 노회의 해당 명부에서 삭제해서 그에게 개체교회의 회원증서를 줄 수 있다. 노회는 그렇게 제명받은 자의 명부를 제명일자, 안수받은 날짜, 안수받은 장소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이런 결정은 그 목사편에 실패가 있다고 판단하는 뜻은 아니다.

기능의 중지

b. 안수받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직책에서 해제되었다는 것은 그 직책의 모든 기능의 중지를 요구하는 일이다. 성직자, 목사, 목회자, 또는 그 비슷한 용어의 호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제된 목사의 신분은 어느 교인과 꼭 같아야 한다.

회복되기 바람

c. 만일 본 규정하에서 해제된 어느 사람이 후에 노회의 계속회원으로 복권되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해제를 허락했던 노회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그 노회의 승인, 안수 서약의 재확인과 그에게 노회의 계속회원권의 자격을 주어 목회의 재개를 허락할 때, 그 사람은 재안수받지 않고 안수받은 직책에 복권되어야 한다.

G-11.0415
비활동 명부에 옮겨진 목사

a. 만일 어느 노회 목사가 회원권이 있는 노회 회의에 1년간 참석도 않고, 거처와 하는 일에 관한 보고도 하지 않으면 그 노회는 그 목사를 찾아 상담하려고 노력한 후에, 아무런 편견 없이 그 목사의 이름을 비활동회원 명부로 옮겨야 한다.

타노회 구역 내

b.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자기가 속한 노회 관할권 밖에서 사역하도록 허락을 받았으나 실지 일해야 할 지역의 노회로부터 사영할 수 있는 허가를 못 받았으면 2년 후에는 비활동회원 명부로 옮겨져야 한다.

G-11.0416
타교단에 가입한 목사

본 교단 목사가 G-11.0411에 규정된 조항은 제외하고, 타교단에서 어떤 성격의 회원권을 계속하거나 받아들인다면, 그 노회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그 목사의 이름을 명부에서 제명하고 헌법이 요구하는 다른 행정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G-11.0500

5. 목회위원회

G-11.0501
성격과 회원권

a. 각 노회는 목회위원회를 선정해서 목회자와 상담자로서 노회의 목사들에게 도움을 주며, 교회와 목사와 노회 사이의 관계를 용이하게 하고, 가능하고 편리한 때 노회를 대신하여 어려움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회원권과 정족수

b. 이 위원회는 최소한 6명의 위원으로 장로와 목사가 동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정족수는 노회가 설정할 것이며, 적어도 위원의 다수로 해야 한다. 회원은 3년 임기로 하되 임기가 끝나지 않은 위원의 대체는 그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은 계속 두 임기 이상 또는 임기의 일부를 계속 두 번 이상 봉사해서는 안 된다.

G-11.0502
책임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노회에 봉사해야 한다;

a. 이 위원회는 노회소속 목사를 각각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상담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노회의 각 목사가 어떤 형태의 사역에 종사하는지 매년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노회나 본 교단의 상급 치리회의 관할권 아래 있지 않는 일을 하는 모든 목사에게 연례 보고를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 이 위원회는 목사들의 청빙에 관하여 노회에 제안해야 한다. 목회적 관계에 있는 목사나 후보자의 모든 청빙은 목회위원회의 소관이며, 그 청빙이 순리로 되었는지 또는 그 청빙이 그 목사나 후보자에게 바로 전달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고하고 추천하는 일을 이 위원회가 노회에 해야 한다. 목회에 관계된 일로 목사나 후보자가 노회의 승인을 바라는 모든 요구는, 어느 개체교회와의 목회적 관계가 아닐지라도 이 위원회를 거쳐서 목사나 후보자가 요청해야 하고, 이 위원회는 노회의 결정을 바라는 제안을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c. 이 위원회는 매 3년마다 적어도 한 번은 노회에 소속한 당회를 방문하여 개체 교회의 선교와 목회에 관하여 논의하고, 또 각 당회와 교회가 노회와 교단의 생활과 사역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W-1.4002).

d. 이 위원회는 영구적 목회 관계를 요청하는 여러 교회를 자문하고, 목사나 부목사를 공천하도록 선정된 위원회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그의 이름이 교회에게 공천하기 위해 고려 중인 어떤 후보자나 목사의 공적과 채용 가능성과 적합성을 위원회에 조언해 주고, 청빙위원회에 목사의 이름

들을 시사하는 특권을 가져야 한다. 목사 청빙 결의를 하기 전에 개체교회가 그 위원회의 조언을 받고 고려하기 전까지는 영구적 목회 관계의 청빙을 노회가 고려해서는 안된다(G-14.0502). 영구적 목회 관계에 대한 청빙은 노회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발송되어져서는 안 된다. 목사의 지원 보조를 받는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의 청빙서가 목사에게 발송된다는 사실을 노회에 제안하기 전에 이 위원회는 그 교회와 보조금을 마련하는 노회의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노회의 해당기관은 노회가 목사를 얼마만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목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교회의 청빙서에 첨부해야 한다.

e. 이 위원회는 G-14.0501에 규정된 노회 임명목사 청빙의 권고를 위해 교회와 협의해야 한다.

f. 이 위원회는 교회에 목사가 없을 경우 노회 지정목사, 임시목사, 임시동사목사, 임시부목사, 그리고 임시지정목사에 관하여 당회와 상의해야 하며 목사들, 평신도 파송 목회자와 빈 강단을 돕도록 노회가 훈련시키고 파송한 자격 있는 평신도들의 명단을 마련해야 한다. 당회가 G-14.0513b와 c에 따라서 임시목사, 임시동사목사, 임시부목사를 초청할 경우 목회위원회를 통한 노회의 찬동이 요구된다.

g. 이 위원회는 인종, 종족, 성, 나이, 결혼 상태나 신체장애에 상관하지 않고 목사와 후보자를 위한 평등고용 기회의 이행을 마련해야 한다. 청빙이 있을 경우마다 이 위원회는 청빙하는 그룹이 취한 이해단계를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h. 노회는 이 위원회에게 권한을 주어서 교회가 청빙을 정당하게 했는지를 찾고 목사청빙을 승인하고 제안하며, G-11.0402의 요구대로 타노회에서 이명해 오는 목사의 시취를 승인하고, 목사와 교회가 동의하는 경우 그 목회 관계를 해소시키고, 노회의 구역 내외에서 사역하도록 허락하고, 목사를 타노회로 이적시키는데 이 모든 결정은 차기 정기노회에 보고되어야 한다(G-9.0403, G-14.0507).

i. 이 위원회는 교회의 평화와 조화를 위한 기구 역할을 하되, 특히 목사들과 교회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관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차이점을 중재하고, 사람들을 화해시키며, 결국 어려움을 그 개체교회의 당회로 하여금 가능한 한 시정하게 한다. 이렇게 함으로 개체교회의 복지는 더욱 강화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가 분명히 드러난다.

j. 이 위원회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긴 것을 알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였는지 지혜 있는 판단을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1) 이 위원회는 수집한 정보를 관련된 당회에 알리는 데 주도 역할을 하며, 보고된 어려움을 시정하는 데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을 당회에 협의한다.

(2) 이 위원회는 당회가 스스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지 못하거나 해결 조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중개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

(3) 이 위원회는 만일 문제에 관계된 당사자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요청하거나 만일 노회가 그 특별한 사안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면 어려움을 시정할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일을 하는 경우 이 위원회는 권징조례에 나타나 있는 절차를 따라 절차상의 안전을 기하도록 언제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G-11.0503
개방적 의사소통

이 위원회는 목사와 당회원인 장로들, 노회 소속 당회와 노회 구역 안에 있는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들과 의사소통하는 데 언제나 개방적이어야 한다.

G-11.0504
대회와 총회의 기관

노회 목회위원회는 목사와 목회 관계의 사안에 정보와 도움을 위해 대회와 총회에 문의할 수 있다. 대회는 노회위원회들의 활동을 협조하기 위한 필요한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총회는 이 문제에 관하여 노회와 대회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제12장 대 회

G-12.0000

G-12.0100 1. 총 칙

G-12.0101
회원권

대회는 특정한 지역 내에 있는 3개 이상의 노회로서 구성된 교회의 생활과 선교의 기구이다. 대회가 모일 때 그것은 노회가 선출한 총대로서 구성된다. 대회는 여러 노회 대다수의 합의하에 선거 기틀과 노회에서 선출된 총대의 비율을 결정하고 동시에 G-9.0104와 G-9.0105에 나타난 참여와 대표의 원리를 실현하는 그 방법도 결정한다. 노회에서 나온 총대는 장로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간에 동수로 나누어져야 한다. 대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후임자가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대회의 회원으로서 등록되며, 그 다음에는 대회의 객원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G-12.0102
책 임

대회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선교에 책임을 지는 중간 치리기구이다. 그러므로 대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a. 대회 산하의 노회들과 협력하여 G-3.0000에 따라서 그 지역 내의 교회의 선교를 위한 폭 넓은 전략을 개발하는 일 ;
b. 총회의 보다 큰 전략에 비추어 다양한 형태를 통한 선교활동을 주도하는 일 ;
c. 노회들과 협력하여 노회를 격려하고 지도하며 그 사역을 감독하면서 선교의 완수를 위한 공동 계획과 목표를 개발하는 일 ;
d. G-9.0104와 일치하여 인사 채용과 그 위원회, 중앙협의회, 이사회, 그리고 정책 결정 및 정책 추천기관의 회원권을 설정함에 있어 결정권 행사에 참여하는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참여와 포괄성의 원칙을 이행하는 일 ;
e. 산하 노회의 선교사업을 용이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 뿐만 아니라 평가 지침과 기준도 개발하고 제공하는 일 ;
f. 각 노회의 일반 선교 예산, 행정 직원직 설정, 공평한 보수, 인사 정책, 공정 고용 실행 등에 관하여 회원 노회들과 협의하는 일 ;
g. 노회의 목회위원회의 사역을 조정하고 목사의 청빙, 안수, 배치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회원 노회를 지원하는 일 ;
h. 각 노회간에 또 노회와 총회간의 통신 연락 소통 업무를 용이케 하는 일 ;
i. 그 지역 내에 있는 타교파와 기관과 합동 선교 활동을 촉진하는 일 ;
j. 노회와 당회와 교회들, 그리고 대회 지역 내에 있는 교인들이 넓은 지역을 근거

로 하여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봉사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 ;

k. 총회의 인정을 받는 조건으로 새 노회를 조직하고 분리하며 또는 여러 노회들이나 이미 기존하는 노회의 일부를 통합하거나 합동하는 일 ;

l. 권징조례에 따른 사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일 ;

m. 그 관할권 내에서 발생한 교리적 과오나 비도덕적인 문제에 경고하거나 반증을 하는 일 ;

n. 노회의 기록을 검토하고, 그것들이 교단 헌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여하는 일 ;

o. 다음을 포함하여 총회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하는 일 ;

(1) 총회의 명령과 지시를 지키고 실천하는지를 감독하고,

(2) 전체 교회의 선교적 공동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총회에 제시한다 ;

p. 그 지역 내에서 교회의 생활과 선교를 확장시키는 에큐메니칼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일 ;

q. 대회의 목적과 프로그램을 이루기 위하여 행정적 봉사 체계를 갖추는 일 ;

r. 대회가 그 구조와 선교 사역간에 기능적 관계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회 중앙협의회를 포함하여 그 사역에 필요한 각 기관과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감독하는 일 ;

s. 목사와 남성 평신도, 여성 평신도(각 1/3 비율)가 동수로 구성된 공천위원회를 조직하는 일(G-9.0801, G-11.0501, G-12.0102d, G-13.0111, G-13.0202) ;

t. 널리 퍼져 발생하는 긴급한 인종 차별의 문제, 인종적 폭력과 인종적 부정의를 대처하며 동시에 교회와 주변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인종적 압제를 조장하는 어떤 이념도 대처한다.

G-12.0200

2. 회 의

G-12.0201
회 의

대회는 적어도 2년마다 정기회의를 가져야 한다. 대회장은 전번 대회 정기회의의 총대였던 적어도 3개 노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 각 10인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 이들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대회장이 소집할 수 없을 때, 대회서기가 똑같은 조건하에서 소집해야 한다. 만약 대회장과 대회서기 두 사람이 다 소집할 수 없을 때, 직전 대회장이 똑같은 조건하에서 소집해야 한다. 총회는 지정된 사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회에 임시회의 소집을 지시할 수 있다. 임시회의 총대는 전번 정기회의에 대회 총대나 그 대리 총대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노회는 총대가 별세했거나 노회 회원권을 변경한 사람을 대치시키기 위해 총대나 대리 총대를 선출할 수 있다. 임시회의 통지서는 전번 대회 정기회의 총대에게와 각 노회서기에게 늦어도 15일 전에 보내야 한다. 통지서에는 회의 목적을 명시해야 하고, 명시된 안건 이외에는 다루어서는 안 된다.

G-12.0202
정족수

대회의 정족수는 적어도 3개의 노회를 대표한 최소 10명의 장로와 10명의 목사, 또는 3개의 노회를 대표하면서 대회의 회의에서 봉사할 자격이 있는 3/4의 총대, 어느 쪽이나 적은 수로서 도합 20명이 되어야 한다. 대회는 그 회의 정족수를 보다 더 많은 수로 정할 수도 있다.

G-12.0203
객원회원

본 교단의 다른 치리회나 다른 교파 교회의 품행이 좋은 회원이 대회의 어느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 대회는 그를 객원회원으로 초청할 수 있으되, 단 발언은 허용하나 투표권은 없다.

G-12.0204
참 여

각 노회는 대회에 그 선출된 총대를 통해, 그리고 노회가 공천하고 대회가 선출한 최소한 1명의 장로나 목사를, 중앙협의회가 있는 경우, 대회 중앙협의회와 가능하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게 하여 대회의 책임과 봉사에 참여해야 한다. 대회는 노회에서 중앙협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낸 대표를 교대시켜야 할 경우, 목사에 이어서 장로 또는 장로에 이어서 목사를 교대시킬 수 있다. 대회 공천위원회는 노회 대표와 일반 교회 대표의 필요성을 유념하고 G-9.0104에 표현된 참여와 대표의 원칙이 준수되는지를 보면서 이 과정을 조정해야 한다.

G-12.0300

3. 기타 규정들

G-12.0301
대표위원회

각 대회는 G-9.0105의 요구대로 대표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위원회는 대표 증가가 필요한 특별 범주에 공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대회 공천위원회를 자문해야 한다. 대표위원회는 적어도 매 2년마다 G-4.0403에 열거된 위원 범주의 공정한 대표성의 발전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G-12.0302
직 원

대회는 대회 총무의 행정 직무를 허락하고 또 다른 직원 부서를 필요시 설치할 수 있다. 대회 총무 선출은 대회 중앙협의회나 총무 선출을 목적으로 선정된 특별대표 공천위원회가 대회에 공천한다. 행정 직원을 포함한 인사 채용에 있어서 대회는 G-9.0404에 규정된 공정한 대표와 협의 원칙과 평등 고용 기회와 소수계 보호법(G-13.0201b)을 위한 교단적 계획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대회는 노회의 요구에 따라서 노회를 위한 대회 행정 직원의 봉사를 허락할 수 있다(G-11.0303).

G-12.0303
일반 선교 예산

대회는 그 지역 내의 교회의 선교사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회의 일반 선교 예산을 세워야 한다. 대회가 예산을 올리고 확장시킬 경우에는 전체 교단의 우선순위에 비추어 그렇게 해야 한다. 대회는 총회로부터 일반 선교 예산에 대한 추천을 받은 후, 그리고 전체 교단의 종합적인 전략에 비추어서 대회의 일반 선교 예산을 계획하고 책정해야 한다.

G-12.0304
기 록

대회는 그 절차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들을 가져야 하고, 차기 총회에 제출하여 일반적 평가와 통제를 받아야 한다. 대회는 그 산하 노회수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대체로 그 구역 내에서 일어난 모든 중요한 변화들을 보고해야 한다.

G-12.0305
감 사

대회는 재정에 관계된 모든 장부와 기록을 1년에 한 번은 공인계리사 또는 공공계리회사에 의해 충분한 재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 항목에 있는 용어는 일반적 지침

을 마련해 주는 의미지 전문적 회계업무에서 이해되는 바와 같이 특별감사 절차나 시행을 요구하거나 요구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G-12.0306
보 험

대회는 그 시설, 프로그램, 직원, 그리고 선출 및 임명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 및 책임보증보험을 획득해야 한다.

第13장 총 회

G-13.0000

G-13.0100

1. 총 회

G-13.0101
정 의

총회는 본 교단의 최고 치리회며 미국장로교의 대회, 노회, 당회, 지교회의 통일된 대표기관이다.

G-13.0102
회원권

총회는 각 노회로부터 같은 수의 장로와 목사대표로서 구성되는데 그 비율은 다음과 같다 : 교인수가 1만 명이 넘지 못하는 각 노회는 장로, 목사 각 1명씩을 선출하고 ; 교인수가 1만 명이 넘는 노회는 추가되는 1만 명당 또는 끝수가 5천 명 이상 추가되는 경우 장로와 목사 각 1명씩을 총대로 선출하며 ; 이렇게 선출된 대표를 총회 총대라고 부른다. 총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후임자가 선출되고 취임될 때까지 총회 회원으로 등록되며, 그 후에는 총회의 객원회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G-13.0103
책 임

총회는 교단의 모든 교회와 모든 치리회들 가운데서 연합, 공동체, 그리고 선교의 유대를 이룬다. 그러므로 총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a. G-3.0000에 기술된 대로, 그리스도의 뜻 아래서 교회의 선교 완수에 교회 사역의 최우선권을 설정하는 일 ;
b. 교회생활의 모든 수준에서 교회를 지도할 선교와 종합적 전략을 위한 전체 목표를 개발하는 일 ;
c. 교회의 선교에 있어서 전체적 균형과 다양성에 알맞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기능을 공급하는 일 ;
d. 복음 증거, 봉사, 성장, 개발의 전국적이고 세계적 사역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 ;
e. 총회의 목적과 프로그램을 완수하기 위해 행정직 봉사제도를 마련하는 일 ;
f. 전국 단위에서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체 교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제공하는 일 ;
g. 총회의 사무실을 세우고 관리하는 일 ;
h. 총회의 구조와 그 선교사역간에 기능적 관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면서, 총회 중앙협의회를 포함하여 그 사역에 필요한 기관과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감독하는 일 ;
i. 총회의 결정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전체 교회에 제공하면서 총회의 전반적인 연차 예산을 채택하는 일 ;

j. 교단 내에 통신전달을 제공하는 일 ;
k. 각 대회의 사역을 감독하고, 그들의 교단 선교의 참여를 권장하는 일 ;
l. 대회의 기록을 검토하고 그것들이 교단 헌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여하는 일 ;
m. 새 대회를 조직하고 분리하며 또는 여러 대회들이나 이미 기존한 대회의 일부를 통합하고 합동하는 일 ;
n. 대회에 의한 여러 노회나 노회의 일부의 조직, 분리, 연합이나 통합을 승인하는 일 ;
o. 권징조례에 따른 사법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일 ;
p. 교회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교리적 과오나 비도덕적인 문제에 경고하거나 반증하는 일 ;
q. 총회에 제출한 논쟁적 문제를 결정하고, 헌법에 의거하여 제출된 사안에 대한 자문과 지시를 하는 일 ;
r. G-13.0112에 따르거나 교정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해석이 내려졌을 때 교단의 치리회들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규례서*의 권위적 해석을 마련하는 일 ; *규례서* 규정의 가장 최근 해석이 구속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s. 교회의 생활과 선교를 확장시키는 에큐메니칼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일 ;
t. 타교단과 유대관계를 갖는 일 ;
u. 타교단의 생활이 본 교단의 신앙과 직제에 일치하는 교단을 노회들의 2/3의 동의를 얻어서 본 교단 관할권하에 받아들이는 일 ;
v. 대회의 구성 요소가 되기에 합당하고 대회 지역 내에 존재하는 타교단을 받아들이는 일에 유사한 권한을 대회에 위임하는 일 ;
w. 본 헌법에 설정된 절차와 일치되는 경우 타교단들과 연합하는 일(G-15.0300) ;
x. 총회서기와 협의하에 총회 사무처의 사업을 검토하는 일.

G-13.0104
회 의

총회는 적어도 매 2년마다 정기회의를 가져야 한다. 총회장은 이전 총회의 정기회의에 총대였던 적어도 5개 대회 관할권하에 있는 적어도 15개 노회를 대표하는 25명의 장로와 25명의 목사의 요청이나 동의로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총회장이 소집할 수 없을 때 총회서기가 똑같은 조건하에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만약 총회장과 총회서기가 다 회의 소집을 할 수 없을 때 직전 총회장이 똑같은 조건하에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임시총회의 총대는 전번 정기총회 총대나 그 대리 총대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노회는 총대가 별세했거나 노회 회원권을 변경한 사람 대신 총대나 그 대리 총대를 선출해야 한다. 임시회의 통지서는 전번 총회 정기회의 총대 및 각 노회의 서기에게 늦어도 60일 이전에 보내야 한다. 통지서에는 회의 목적을 명시해야 하고, 명시된 안건 이외에는 다루어서는 안 된다.

G-13.0105
정족수

총회의 정족수는 적어도 전체 대회의 1/4의 노회를 대표하는 50명의 장로와 50명의 목사, 도합 100명의 총대가 되어야 한다.

G-13.0106 객원회원

총회는 자신의 규정에 의하여 초청받을 객원회원을 결정할 수 있다.

G-13.0107 대회의 참여

각 대회는 총회 공천위원회와 협의한 후 대회의 추천을 받고, 총회 중앙협의회와 총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총회의 선출을 받은 대회가 파송한 적어도 1명의 장로나 목사 회원을 통해 총회 선교구조에 참여해야 한다. 총회 공천위원회는 대회 대표와 보통 회원의 필요성에 유념하고 G-9.0104, G-13.0111, 그리고 G-13.0202에 표현된 참여와 대표 원칙에 특별한 관심을 두면서 이 과정을 조정해야 한다.

G-13.0108 대표위원회

총회는 G-9.0105의 요구대로 상임 대표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위원회는 대표 증가가 필요한 특별 범주에 공천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총회 공천위원회를 자문해야 한다. 대표위원회는 총회의 각 회의에 (임시회의나 정회 이외에) G-4.0403에 열거된 위원 범주의 공정한 대표성의 발전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G-13.0109 직 원

총회 기관들의 총무나 행정 직원직은 G-9.0404, G-9.0703와 G-9.0704 규정을 따라서 또 평등고용 기회(G-13.0201b)를 위한 교단적 계획 규정에 따라서 설치되고 채워져야 한다. 각 행정 직원의 정기적 평가를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G-13.0110 기 록

총회는 그 절차의 완전하고도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G-13.0111 총회 공천위원회

a. 총회가 때때로 지명해야 하는 그런 이사회, 기관과 위원회 위원의 신중한 공천을 확인하기 위해, 총회 공천위원회는 총회에 그런 기관을 위한 공천 대상자를 제안해야 한다. 동수의 목사(남녀)와 남성 평신도와 여성 평신도의 추천을 고려해야만 한다. 공천위원회는 각 대회의 수와 같은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각 위원은 서로 다른 대회에서 나오고 위원 비율은 목사(남녀) 1/3, 남성 평신도 1/3, 여성 평신도 1/3의 비율이어야 한다(G-9.0801, G-11.0501, G-12.0102d, G-13.0202). 위원은 5년 임기로 임명하되, 위원의 1/5은 각 정기총회의 마감시 시무기간이 끝나도록 배려해야 한다. 직전 총회의 총회장은 정기총회 30일 이전에 다음 총회의 폐회시 발생할 결원을 채우기 위해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또한 총회장은 그 해에 사망, 사임 또는 활동불능으로 인한 결원을 채우기 위해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이런 임명은 그 정규 공천과정을 통해 대회와 협의해야 하며 총회의 포괄 정책의 공약을 반영해야 한다. 그 같은 임명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한정되나 동일인을 전체 임기에 임명하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 공천위원회에서 5년의 전체 임기를 마친 사람은 아무도 공천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된 후 4년이 경과하기까지는 공천위원회가 그의 임기 중 총회에 공천했던 기관에 재임명이나 임명이나 공천을 받을 자격이 없다.

임원선출

b. 공천위원회는 그 자체의 임원을 총회의 정기회의 이전의 마지막 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 이 공천위원회의 존재란 공천위원회가 제출한 공천 후보자 외에 어느 총대나 적합한 사람을 공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빼앗아서는 안 되는 데 있다.

G-13.0112 헌법자문위원회

a. 총회는 가능한 한 목사와 장로가 동수인 9명의 위원으로 헌법자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총회서기는 투표권이 없는 당연직 위원이어야 한다. 9명의 투표권 있는 위원은 총회의 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회원, 대회나 노회의 서기나 전 서기, 또

는 교단의 헌법과 정치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질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투표권 있는 위원은 총회 공천위원회에 의해서 공천되고,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3년조에 3년 임기로 봉사하여야 한다. 위원은 계속 두 임기 이상 봉사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연차 회의 가짐

b. 헌법자문위원회는 늦어도 다음 총회가 개최되기 60일 이전에 그 보고서와 제안을 하기 위해 때를 맞추어 적어도 매년 모여야 한다.

총회 120일 전 질문

c. 교단의 각 치리회나 개인으로부터 제기되는 *규례서*에 대한 총회의 해석을 요구하는 질문들은 다음 총회가 개회되기 늦어도 120일 이전에 서면으로 총회서기에게 연락해야 한다.

사법 전권위원회에 계류 중

d. 총회서기는 그 모든 해석상의 문제를 헌법자문위원회에 알려 주어야 한다. 단, 사법 전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문제는 제외한다. 자문위원회는 그 결정 내용을 제안과 함께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 제안은 헌법 개정의 제의를 포함할 수도 있다. 총회는 그 제안에 대하여 투표해야 하며, 그것을 개정이나 부결할 수 있다.

총회에서

e. 헌법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적어도 3인의 위원이 총회 회의석에 참석해야 한다. 헌법 문제에 관계가 있는 새 안건으로 소개된 모든 항목은, 헌법 문제를 내포한 의사 진행에 있어서 총회장의 판결을 요청하는 일까지 포함해서, 다 서면으로 이들 위원들에게 회부되어야 한다. 그들은 전체 위원회로서 행동하고 그들에게 회부된 각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총회장을 통해 총회에 직접 제안해야 한다.

G-13.0200

2. 총회 중앙협의회

G-13.0201 책 임

총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 총회 중앙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

a. 전체 교회의 영적인 복지를 개발하고 증진시키는 일 ;

b. 각 민종그룹 회원, 여성, 각 연령층, 결혼 상태에 상관없는 사람들(기혼자, 독신자, 미망인과 상처한 자, 이혼자), 또 신체장애자의 평등고용 기회와 소수계 보호법을 위한 전 교단적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일 ;

c. 총회의 결정을 위해 선교 방향, 목적, 목표, 그리고 교회의 최우선순위를 제안하기 위한 전 교단적 계획에 참여하는 일 ;

d. 선교 방향, 목적, 목표, 그리고 교회의 최우선 순위에 비추어 총회기관과 기구, 대회와 노회의 사역을 조정하는 일 ;

e. 총회의 선교 방향, 목적, 목표 또 우선순위에 비추어 총회기관과 기구의 사역을 평가하는 일 ;

f. 총회에 제출할 종합적인 선교 예산을 G-9.0404b에 따라서 준비하고 제안하는 일 ;

g. 전 교단적 계획, 예산 개발, 그리고 교회의 사역의 조정에 관계되는 일들을 노회, 대회, 그리고 그들의 중앙협의회와 연락하거나 자문하는 일 ;

h. 행정 직원 문제에 있어서 G-9.0701, G-9.0702과 G-9.0703에 표시된 대로 대회 중앙협의회와 총회기관들과 더불어 실행하는 일 ;

i. 공정한 보수, 인사 정책, 그리고 공정 고용 실행과 관련하여 대회와 자문하는 일 ;

j. [본 조항은 제206차 총회(1994)의 결의로 삭제되었다.]

k. 이전에 제정된 총회의 정책에 따라 언제나 시행하며 차기 각 총회에 그 결정을 완전히 보고하면서 총회나 본 헌법에 의해 총회 중앙협의회에 맡겨진 특별한 사안들을 시행하는 일 ;

l. 총회에 의해 위임받은 대로 부과적 책임과 의무를 실행하는 일.

G-13.0202
회원권

총회 중앙협의회의 회원권, 직책 임기, 그리고 직원은 합의조항에 명시된 적용기간이 끝날 때까지 합의조항 5.1, 5.2와 5.3에 의해 적용받아야 한다. 그 기간에 그 합의조항의 규정과 일치되는 단계나 상태에서 다음 조항들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야 한다 :

투표권 있는
위원

a. 총회 중앙협의회는 다음의 투표권 있는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각 위원은 미국장로교에 속한 개체교회의 활동교인이거나 노회의 계속회원이어야 한다 :

(1) 총회의 총회장과 생존한 직전 증경 총회장 2명.

(2) 포괄성과 필요한 재능을 확인하기 위해 총회 공천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 대회에 의해 공천받도록 제안되고 총회에 의해 3년 임기와 추가로 한 임기의 적임성이 있어서 선출받은 1명.

(3) 포괄성과 필요한 재능을 확인하기 위해 총회 공천위원회와 협의한 후 총회에 의해 승인된 '총회 중앙협의회의 운영지침서' 에 설정된 노회의 숫자를 이루는 노회들에 의해 공천받도록 제안되고 총회에 의해 3년 임기와 추가로 한 임기의 적임성이 있어서 선출받은 1명. 공천을 제안하도록 선정된 노회들은 총회 공천위원회에 의해 설정해 놓은 윤번제를 따라 선출될 것이다.

(4) 총회 공천위원회에 의해 제안되고 총회에 의해 승인된 '총회 중앙협의회의 운영지침서' 에 설정된 일반회원을 이루는 조항과 3년의 한 임기와 추가로 한 임기의 적임성이 있어서 총회에 의해 선출받은 일반회원의 수.

(5) 총회에 의해 3년의 한 임기와 추가로 한 임기의 적임성이 있어서 선출받았고 선출될 때 25세 미만인 청소년/청년 위원 2명.

(6) 장로교 여성 회장

자문위원

b. 투표권 있는 위원에 추가해서 총회는 다음의 자문위원들을 포함시키며 이들은 회의장에 참석할 특권은 있으되 투표권은 못 갖는다 :

(1) 에큐메니칼 참여를 위한 협의기구의 추천에 따라 총회 공천위원회에 의해 공천받고, 1년 임기와 추가로 두 차례 1년 임기의 적임성이 있어서 총회에 의해 선출된 미국 내의 타교단과 해외 동역교회로부터 온 에큐메니칼 자문위원 4명. 그렇지만 총회는 총회 중앙협의회의 추천에 따라 에큐메니칼 위원의 수를 이따금 증가나 감소할 수 있다.

(2) [본 조항은 제206차 총회(1994)의 결의로 삭제되었다.]

객원회원

c. 총회서기와 총회 중앙협의회 총무는 총회 중앙협의회의 객원회원이며,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 총회 중앙협의회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방법

으로 직능을 행사하도록 지명할 수 있다.

총회 공천위원회

d. 공천 과정에서 총회 공천위원회는 필요한 재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회 중앙협의회의 자문을 받고, G-4.0403에 의한 다양성과 포괄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총회 공천위원회는 적어도 20%의 민종대표를 총회 중앙협의회 위원으로 갖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 공천위원회는 G-9.0104, G-9.0105, G-13.0111의 규정들을 따라야 할 것이며, 총회장과 전 총회장들을 제외하고 1/3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남녀), 남성 평신도 1/3, 여성 평신도 1/3의 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천위원회는 대략 동일한 크기의 3년조로 위원들을 공천하도록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 임기 동안에 어떤 공석이 생기면 총회의 정책에 준하여 보선해야 할 것이다.

의장, 부의장, 기록서기

e. 총회 중앙협의회는 매년 그 투표위원들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총회의 서기는 총회 중앙협의회의 기록 서기가 되어야 한다.

G-13.0203 운영지침서

중앙협의회는 행정 직원과 규모에 대한 규정, 그리고 다양성과 포괄성에 따른 협의회 회원의 특정한 대표성 등을 위한 계획을 포함해야 할 운영지침서를 대회와 상의하여 개발해야 한다(G-9.0104). 그 지침서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G-14.0000

제14장 안수, 인정, 파송

G-14.0100

1. 교회 제직원의 안수

G-14.0101
안수

교회의 직책에 봉사하도록 교회에 의해 선출을 받은 사람들은(G-6.0000) 그 교회에 의하여 그 직책에 임하도록 안수를 받아야 한다. 안수는 교회가 사람들을 장로들(Presbyters,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장로) 또는 집사로 선별하고 기도와 안수가 따르는 행위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직책에 대한 안수는 노회가 행한다. 장로와 집사 직책에 대한 안수는 당회가 행하는 데 새 교회를 조직하는 경우는 예외다(G-7.0202).

G-14.0102
파송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특별히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헌신의 예식을 통하여 해당 치리회에 의해 파송받을 수 있다.

G-14.0103
종의 스타일

교회 목회의 모든 형태에 있어서 지도력의 목적과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목회 태도를 본받아서 권위가 아니라 섬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G-14.0200

2. 장로와 집사의 선거 및 안수

G-14.0201
선거 규정

모든 개체교회는 그 활동교인들 중에서 남녀를 장로와 집사 직책 또는 그 중 어느 하나에 임하도록 선출되는데, 그 교회의 교인인 모든 연령층과 모든 민종층과 신체장애자를 공평하게 대표하는 원칙에 의해 하며 그 교회가 승인하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되, 다음의 규정에 따라서 한다 :

시무기간

a. 장로나 집사회의 집사는 한 시무기간인 3년 이상으로 선출되어서는 안 되며, 장로나 집사회의 집사는 전체나 부분적인 기간이든 간에 6년 이상 계속 시무할 수 없다. 장로나 집사가 계속 6년을 봉사한 후에는 적어도 1년 동안 같은 직에 재선출될 자격이 주어져서는 안된다. 개체 교회는 한 번의 시무기간이 지난 후 무자격 기간을 설정해 둘 수 있다. 당회에는 언제나 2년조 이하와 3년조 이상이 아닌 장로들이 있어야 하고, 만일 지교회에 집사가 있을 경우에는 2년조 이하와 3년조 이상이 아닌 집사회가 있어야 한다. 가능하면 각 연조별 인원이 거의 동수이면서 매년 한 조가 만기 교체하도록 할 것이다. 시무기간은 만일 장로와 집사, 장로나 집사의 2년조가 있으면 보통 2년이고, 만일 장로와 집사, 장로나 집사의 3년조가 있으면 보통 3년이다. 단, 연조별로 동수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시 단기 봉사할 장로 또는 집사를 선출할 때는 제외한다. 그렇지만 교회는 공동회의에서 25세 미만의 교인 한 두 사람을 장로나 집사 직책이나 당회나 집사회에 1년, 2년이나 3년 임기로 봉사하게 하도록 투표할 수 있다. 선거, 안수, 또 봉사의 모든 요인들이 그런 장로나 집사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장로나 집사의 임기는 그들의 계승자가 안수받고 임직되었을 때 끝나야 한다.

공천

b. 공천은 교회의 활동교인들 중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가 해야 하되, 거기에 공평한 대표제에 따라 그 교회 교인인 모든 연령층, 모든 민종층과 신체장애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적어도 이 공천위원회의 두 사람은 당회가 지명한 장로들이어야 하고, 그 중 한 사람은 현재 시무장로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이 위원회의 한 사람은, 만약 교회가 집사가 있다면 집사회에 의해 그리고 집사회로부터 이 위원회의 지명을 받아야 한다. 이 위원회의 그 밖의 위원은 다수를 이루기에 충분한 수로서(목사는 제외) 교인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교회가 지명한 교회 내의 조직체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되, 시무 당회원과 시

무집사는 제외된다. 목사는 이 위원회의 투표권 없는 직책상 회원이어야 한다. 공천위원회 위원은 매년 선출하되, 아무도 계속3년 이상 시무할 수 없다.

작은 교회일 때

c. 70명 미만의 교회는 정기 공동의회에서 작은 교회의 공천위원회를 선출할 수 있는데, 당회가 위원장으로 임명한 당회원 1명과 적어도 두 사람의 교인 대표가 나와야 되는데 현직 당회원은 제외된다. 공정한 대표, 위원회의 봉사기간, 그리고 목사의 회원권 등에 관한G-14.0201b 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칙

d. 모든 공천 과정은 G-4.0403과 G-9.0104에 기재된 대로 참여와 대표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현장 공천

e. 언제나 충분한 기회를 회중에게 주어서 활동교인에 의해 공천하도록 해야 한다.

G-14.0202
어떤 교회의 면제

a. 어떤 교회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면제가 있을 수 있 다:

잠정

(1) 만약 어느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 선택에 있어서 그 공천 및 선거 과정이 "공평한 대표제에 따라 그 교회의 활동교인 중 남녀, 그 교회의 교인인 모든 연령층과 모든 민종층과 신체장애자를"(G-14.0201) 선출하는 상기 요구가 이행 안되었을 경우, 그 교회는 그 요구들을 잠정하도록 청원해야 한다. 노회는 그 교회가 요구에 응하려고 노력했다는 일 자체에 만족해야 한다. 노회의 3/4 표결로 면제를 허락할 수 있다. 그런 면제는 한 번에 3년 이상 더 허락해서는 안되나, 3/4 표결로 갱신이 가능하고, 또 다수결로 언제나 취소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잠정

(2) 만일 어느 교회에서 교인수의 제한 때문에 윤번제 임기를 택할 수 없는 교회는 G-14.0201a의 요구사항을 잠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노회는 다수결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런 면제는 한 번에 3년 이상 더 허락해서는 안되나 다수결에 의해서 언제나 갱신 이나 취소 조치를 할 수도 있다.

G-14.0203
영구 직책

장로나 집사의 선출 및 시무기간에 대한G-14.0201a에 있는 제한은 당회나 집사회의 시무에 적용된다. 모든 면에 장로나 집사의 직책은 다 항구적인 것이며 아무도 권징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함부로 그 직책을 치우거나 박탈할 수 없다. 한 번 안수 받은 장로나 집사는 그 개체 교회의 당회나 집사회에 재선이 안되거나 그 교회 교인이 아니라 해서 그 안수 직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장로는 당회가 임명하면 노회에서 그가 속한 개체교회를 대표하며 또 현재 당회의 시무장로이든 아니든 간에 합법적으로 선출되었을 때는 대회나 총회의 회원으로 봉사해야 한다.

G-14.0204
공동의회

a. 장로와 집사의 선출은 당회가 그 목적을 위해서 소집한 연례 공동의회에서 보통 이루어진다(G-7.0302).

공천과 투표
요구사항

b. 당회장은 회의 목적을 설명하고 나서 "여러분은 이제 장로와 집사 선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 만일 회중이 준비되어 있으면 선거를 진행시킨다. 어느 경우에나 출석교인에 의해 현장에서 공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후보 지명자의 수가 선출되어야 할 장로와 집사의 수와 같은 경우에는 구두선거나 거수선거를 할 수 있다. 후보 지명자 수가 선출되어야 할 장로와 집사의 수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회중은 비밀투표를 해야 한다. 출석 투표자와 투표의 과반수로 선출되어야 한다.

G-14.0205
직책에 대한 준비

장로나 집사 직책에 당선되었으면 당회는 그 당선자들에게 그 직책을 자진해서 감당하겠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회록에는 일정한 기간 공부와 준비를 마친 사실을 기록해야 하고 그 후 당회는 그들의 개인적 신앙 : 교회 헌법에 내포되어 있

는 교리, 정치, 권징의 지식 ; 그리고 그 직책의 의무 등에 관하여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당회는 안수식 및 임직식 날을 결정한다. 선정된 직원 중 한 사람이나 그 이상이 시험에 불합격이면, 당회는 그 사실을 그 교회의 공천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위원회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특별 공동의회에 추천해야 한다.

G-14.0206
안수와 임직식

안수식과 임직식은 교회의 선교와 목회를 통하여 그에게 봉사하는 기쁨과 책임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에 적절한 설교를 포함해야 한다. 집례하는 목사는 장로와 집사 직책의 본질을 간단히 진술해 주어야 한다.

G-14.0207
제직에게 하는
헌법 질문

그 목사는 안수와 취임을 받도록 준비한 그들을 온 교회 앞에 세워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도록 해야 한다:

a.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그가 만유의 주요,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b. 당신은 구약과 신약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며, 전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독특하고 권위 있는 증언이요, 또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받아들이십니까?

c. 당신은 장로교의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개혁신앙의 기본 교리가 우리로 믿고 행하게 하는 성경의 순수하고도 믿을 만한 해설서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채택하며, 아울러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이들 신앙고백서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으시겠습니까?

d. 당신은 성경의 권위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당신의 직책을 완수하며, 우리 신앙고백서에 의해 계속 지도를 받으시겠습니까?

e. 당신은 우리 교단의 정치에 순응하며 그 권징을 따르겠습니까? 당신은 목회 동역자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f. 당신은 자신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의 화해를 위하여 노력하시겠습니까?

g. 당신은 교회의 평화와 연합과 순결을 더욱 촉진시키기로 약속하시겠습 니까?

h. 당신은 주의 백성을 온 정성과 지혜와 상상력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i. (장로에게) 당신은 주의 백성을 돌보고, 예배와 양육과 봉사에 헌신함으로 충성된 장로가 되시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치리회에서 봉사하면서, 정치와 권징에 동참하고, 또 당신의 목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도록 힘쓰시겠습니까?

j. (집사에게) 당신은 몸소 사랑을 가르치며, 관심을 일으키고 친구가 없고 궁핍한 자들을 주의 백성들이 돕도록 인도하는 충성된 집사가 되시겠습니까? 당신의 목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G-14.0208
교인에게 하는
헌법 질문

장로와 집사로 피택된 자들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후, 한 장로가 그들과 같이 교인들 앞에 서서 전체 교인들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도록 묻는다:

a. 본 교회의 교인인 우리는 ___________ 를 (이름을 부른다) 본 교회 교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로들이나 집사들로 알고 받아들이십니까?

b. 우리는 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경하며, 그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로 동의하십니까?

G-14.0209
기도와 안수

a. 교인들이 이 질문에 긍정적 대답을 한 후에, 안수 받을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기도와 당회원의 안수를 위해 무릎을 꿇는다. 전에 안수 받은 이들은 할 수 있으면 안수와 취임 기도를 위해서 교인과 함께 보통 일어서야 한다. 당회는 다른 장로들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을 안수에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선언

b. 당회장은 이렇게 안수 받고 취임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 당신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본 교회를 위한 장로들과 집사들입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당회의 환영

c. 그 다음에는 당회원들과 또 다른 해당되는 분들이 새로 안수와 취임이나 새로 취임한 장로들과 집사들을 목회에 있어서 그들의 목회의 사귐에 참여하도록 환영해야 한다.

교인의 인사

d. 교인들이 예배가 끝난 후에 그들의 새 장로들과 새 집사들에게 사랑과 지지를 보이면서 인사하는 일은 합당하다.

G-14.0210
관계의 해소

장로나 집사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당회의 동의를 얻어 당회나 집사회에서 사임할 수 있다. 개체 교회의 활동교인 되는 일을 그만둘 때, 장로나 집사는 그 당회원이나 집사회원 되는 일을 그만 둔다. 장로나 집사가 거주지 변경이나 신체 부자유의 이유로 1년 동안 그 직책의 의무를 완수하지 못할 때 그 시무 관계는 그렇게 하지 않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회에 의해 해소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기록해 두어야 한다.

G-14.0211
안수직 수행의 해제

a. 만일 D-10.0100과 D-10.0200에 따라 그에게 아무런 심문이 착수되지 않았고 아무런 고소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달리 말하면 행실이 좋은 장로나 집사가 그이나 그녀의 회원권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의 당회에 안수직 수행의 해제를 청원한다면, 당회는 해제를 승낙하면서 교회의 해당명부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이런 결정은 그 장로나 집사편에 실패가 있다고 판단하는 뜻은 아니다.

b. 장로나 집사의 안수식 수행의 해제는 그 직분의 모든 기능의 중단을 요한다. 장로나 집사의 칭호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제된 장로나 집사의 신분은 어느 교인과 꼭 같아야 한다.

c. 만일 본 규정에서 해제된 어느 사람이 후에 안수직에 회복되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해제를 허락했던 당회에 청원을 해야 하며, 그 당회의 승인하에 그 사람은 재안수를 받지 않고 안수 받는 직책에 복권되어야 한다.

G-14.0300

3.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직책 준비

G-14.0301
노회의 책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안수받고자 하는 이들이 목회후보생위원회의 지도하에서 그들의 과제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G-9.0902). 이 목적을 위해서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이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이들과 계약 관계에 들어가야 한다. 이 관계는 지망과 후보의 두 단계로 나누어야 한다.

G-14.0302
지망 정의

지망 단계의 목적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위한 지망생에 적합성에 관련한 결정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야 할 것이란 방향에서 그 부름을 함께 추구

해 보도록 그 교회에게와 말씀과 성례전에 부름받았다고 믿는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G-14.0303
지망 과정

지망 절차와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지망생이 되고자 원하는 사람은 개체교회의 당회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고자 하는 개인적 의사를 더 추구하겠다는 열의를 나타내야 한다.

b. 지망생은 적어도 6개월 동안 그 개체교회의 활동교인으로 있어야 한다.

c. 당회는 그 노회에서 사용하는 절차의 수속 과정을 안내 받도록 목회후보생위원회와 접촉해야 한다.

d. 당회는 만약 그 개인이 지망생으로 등록 요청을 하면, 그 사람과 협의해야 하고 그 요청에 관하여 노회 서기를 통해 노회에 추천해야 한다.

e. 당회의 추천서를 접수하면, 목회후보생위원회는 그 지망생을 등록시킬 것인지의 여부 를 노회에 추천해야 한다. 목회후보생위원회는 추천을 하기 전에 지망생을 면담해야 한다. 등록키로 한 노회결정의 일자가 계약 관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 기간은 적어 도 2년이어야 하는데 그 중 1년은 G-14.0401에서 요구한 대로 후보생으로서 있어야 한다(예외 규정은 G-14.0313c 참조). 노회는 그 결정을 차기 정기노회에 보고한다는 조항과 함께 목회후보생위원회에게 지망생을 등록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G-9.0403).

f. 지망 단계는 지망생과 당회와 목회후보생위원회가 지망생을 후보생으로 청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 기간에 목회후보생위원회는 지망생이 제공한 정보, 개인적인 추천인, 상담소의 보고서, 당회와 만약 학생이라면 그 학교의 보고와 같은 여러 자료들을 이용해야 한다.

g. 지망 단계의 끝부분에 가서 각 지망생은 목회의 적절한 약속을 다음의 서류를 제시 함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1) 개혁파 전통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관한 그이나 그녀의 이해와 그것이 자신의 소명 의식에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말하는 진술서;

(2) 개혁파 전통의 이해에 관련시킨 개인적 신앙진술서;

(3) 하나님, 인간성, 그리고 그들의 상호 관계성에 관한 개인의 신앙진술서로부터 적어도 한 개념을 분석;

(4) 장로교인이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각성이 개체교회의 생활에 참여하는 중에서 자라나게 되었는지를 지적하는 진술서;

(5) 지망생의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반영시키고 정신적, 육체적, 또 심리적 건강 유지에 관한 관심까지 포함시킨 자기 이해의 진술서;

(6) 자기가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에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는 자각과 성장이 필요로 한 부분까지 포함시킨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이행해야 할 임무에 관한 그이나 그녀의 이해의 진술서.

G-14.0304
후보 정의

후보 단계의 목적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교회 봉사를 하도록 그 사람들을 충분히 준비하는 데 있다. 이것은 지원관계의 맥락에서 교육 접촉을 이용하여 후보생의 지도와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G-14.0305
후보 과정

후보 단계를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a. 지망생은 그이나 그녀의 소속 교회의 당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직책의 후보생이 되기로 노회 서기를 통해서 노회에 청원해야 한다.

b. 그 당회는 지망생과 협의하고, 지망 단계의 증거 서류를 검토한후, 청원에 관하여 추 천서를 노회 서기를 통해서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c. 목회후보생위원회는 지망생과 협의하고 지망생이 후보생이 될 준비가 되었는지 지시하는 증거서류를 검토해야 한다.

d. 목회후보생위원회는 지망생이 후보로서 받아들여지겠는지에 관련하여 확실한 추천서를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 노회는 후보 청원에 관한 위원회의 모든 추천을 조처한다.

e. 노회는 그 위원회의 보고와 추천서를 받고, 그 지망생의 기독교 신앙, 그가 책임진 기독교적 봉사의 형태, 또 목회를 추구하는 동기 등을 시험해야 한다.

f. 만일 시험에 합격하면 노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망자를 후보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노회장은 지망생에게 다음의 질문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당신은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직에 부르셨다고 믿습니까?

(2)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행위를 유지하고, 열심과 성실을 다하여 이 목회직에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기로 약속합니까?

(3) 당신은 당신의 목회직 준비에 관계된 노회의 적절한 감독을 받아들이겠습니까?

(4) 당신은 지금 미국장로교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직 후보생으로서 이 노회가 받기를 열망합니까?

g. 만약 이런 질문에 긍정적 답변이 있다면, 간단한 권면을 주고 그 후보생 성명을 노회의 후보생 명부에 등록하고, 기도로써 그 과정을 끝내야 한다.

h. 노회는 후보생이나 그이나 그녀의 당회의 요청에 의하여 노회의 전권위원회가 그 후보생의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환영 예식을 갖도록 허락할 수 있다.

i. 후보 단계는 후보생이 승인된 청빙을 받고 시험을 받고 안수받을 때까지나 후보생의 이름이 헌법조항 G-14.0312에 의해서 후보생 명부에서 옮겨질 때까지 계속한다.

j. 후보 단계가 끝나면 안수받을 각 후보생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입증한다:

(1) 보통 G-14.0310의 요구사항을 달성함으로 입증된 신학, 성경, 정치, 그리고 예배와 성례전 분야에서의 능력의 증거와; 감독받아 행한 목회 실천에서 입증된 목회 기술의 증거를 제시;

(2) 과도기를 위한 청빙 노회의 계획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는 증거와 계속적인 연구와 성장을 위한 계획의 증거를 제시(G-11.0103n과 G-14.0506, 마지막 문장);

(3) 교단의 신앙고백 문서에 적합한 신학적 견해를 표현;

(4) 다양한 상황에 있는 교회에 대해 얻은 지식, 안수에 요구되는 질문(G-14.0405)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지를 표현;

(5) 인격적 성숙성, 영적 깊이, 목회 동료들까지 포함해서 타인의 필요에 응답하는 능력을 갖고서, 미국장로교의 규례 안에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에 임하겠다는 결단을 제시;

(6) 그 설교에 현대인의 요구 상황의 묘사와 설교를 작성하게 된 성경의 자료에 대한 주석적 해석을 포함한 기록된 설교 한 편을 제시. 이 설교는 G-14.0402에 설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후보생의 출두의 일부로서 청빙노회나 위원회 앞에서 행해야 한다;

G-14.0306
노회 및 당회의 의무

노회와 당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1) 목회후보생위원회는 당회에 지망과 후보의 과정에 있어서 당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시해야 한다. 지망생이나 후보생을 승인해 준 당회에 특별 지시를 주어야 한다. 이런 일은 목회후보생위원회가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2) 지망이나 후보 단계 기간에 그 개인은 계속 그가 속한 교회의 활동 교인이어야하고, 당회의 관심과 훈육에 계속 따른다. 목회 준비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그 개인은 목회후보생위원회를 통해 노회의 감독하에 있다. 지망생과 후보생의 영적 성장을 위한 책임을 실행하는 일, 이해와 동정적 관심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학습 과정, 성경과 신앙고백에 익숙, 실천 훈련과 학교의 선택을 포함한 교육계획, 그리고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재정적 요구와 관련하여 지도하는 일이 노회의 임무여야 한다. 노회는 교회의 신앙과 정책 안에서 지망생이나 후보생에게 지도와 지시를 주도록 해야 한다(G-6.0108).

당회의 지원

b. 당회는 지망과 후보 단계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계속적인 근거에서 관심을 표명하여 지원적인 역할 기능을 해야 한다. 당회는 교회의 장로 한 사람을 지망생이나 후보생과 노회의 해당위원회와의 연락자로 임명해야 한다. 당회는 지망생이나 후보생에게 재정적 지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G-14.0307
계약관계의 봉사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속한 목회후보생위원회의 승인과 지도하에서 어떤 형태의 교회 봉사에 참여하도록 격려받아야 한다. 신학기관의 감독하에 있는 교육 실습과제는 노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교회의 생활에 관해 유일한 목회적 책임을 지는 학생 인턴인 지망생이나 후보생에게 부과하는 교육 실습 과제는 그 교회의 관할권을 가진 목회위원회의 조언과 감독을 요한다.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그 교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노회의 승인과 또한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속한 노회의 승인 없이는 임시 설교자일지라도 어떤 교회를 섬겨서는 안된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전에 장로로서 안수받지 않은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당회장을 맡거나 성례전을 집행하거나 또는 결혼식을 집례할 수 없다.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되기 이전에 안수받은 장로는 G-6.0304와 G-11.0103z에 따라 성만찬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G-10.0103과 G-7.0306에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회장을 맡거나 결혼식을 집례할 수 없다.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되기 이전에 평신도 임명 목회자로 임명된 사람은 G-14.0801c에 의하여 노회의 권위로 이전에 허락한 조건에 부응하여 성찬식을 집례할 권한을 계속 부여받을 수 있다.

G-14.0308
연례 보고

노회는 지망생이나 후보생에게 그의 학교로부터 학업보고서까지 포함하여 학업과 교회 봉사에 관한 연례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G-14.0309
협의와 지도

a. 목회후보생위원회는 지망생과 후보생의 명부에 있는 각자와 연례 협의를 마련해야 한다. 그 협의의 목적은 지망생과 후보생의 평가와 양육을 위한 것이다. 그런 협의는 전체위원회에 의해 취해지거나 위원 중 임명된 몇 사람이나 또는 지망생과 후보생이 공부를 계속하거나 다른 허락된 봉사에 관여하고 있는 노회에서 그와 비슷한 책임을 지닌 자들에 의해 시행될 수 있다. 단, 그 후보생이 속한 노회의 목회후보생위원회에 의해 행해지는 최종 사정의 경우는 예외다. 노회는 당회와 지망생이나 후보생과 함께 연례 협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그 협

의는 개인의 영적 성장과 필요, 그이나 그녀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경제적 계획, 그리고 그이나 그녀의 교회와의 관계와 목회 안수에 이르는 연수 프로그램의 진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각 협의는 지망이나 후보 기간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결정은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서면보고

b. 각 연례 협의의 서면 보고에는 그 위원회나 그 대표자와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공동으로 준비한 개인의 강점과 성장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진술서를 포함한다. 노회는 이 보고서들의 접수를 통고받고 이 보고서들은 그 개인, 후원 당회, 또 신학 교육 기관들에게 제출되어져야 한다.

내용

c. 이런 연례 협의의 내용은 어떤 제한은 없지만, 해당 단계와 해당 연한에 이어 나온 결과에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발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

신학교육 이전

(1) 신학교육을 받기 이전 수년 동안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신학교육과 개인적 성장을 위한 준비에 관하여 의논한다;

신학교육 1년차

(2) 신학교육 1년차 기간 동안의 연례 협의를 위해 그이나 그녀의 경험과 미래의 전문적 목회 활동에 시사하는 바에 대한 일반적 평가를 한다. 이 같은 협의의 기본 목적은 공식적으로 시험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망생과 후보생에게 지도와 상담을 한다는 데 있다. 이 협의에서 그 학생은 목회후보생위원회에게 언어 규정 같은 G-14.0310b(2)와 b(3)의 공식적 교육 규정의 면제를 위한 요청을 노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일 노회가 그런 면제를 하고자 하면 그 절차는 G-14.0313a에 따라야 한다;

신학교육 2년차

(3) 신학교육 2년차 기간 동안의 연례 협의를 위해 전 해에 행한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경험의 평가. 추가로 신앙에 관한 기초적 진술서, 모든 학점 평가, 교육 실습 보고서 및 기타 적절한 평가서를 포함하여 안수 준비의 발전 과정을 위해 그 개인과 행한 의논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노회는 그 개인의 철저한 성경 지식에 만족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노회는 G-14.0310d(2)에 의한 성경 내용시험의 합격점수의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목회후보생위원회와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어떤 부족한 점들을 제거할 방편을 논의해야 한다.

봉사를 위한 절충

d. 어느 경우에나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이런 연례협의에서 면제되어서는 안된다. 신학교육 2년차나 그와 동등한 기간 해의 완료이전, 모든 안수시험의 성공적인 완수 이전이나 G-14.0313b의 규정에 따라 준비가 되었다는 노회의 증명에 앞서,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아무도 그이나 그녀의 목회 봉사를 하겠다고 어느 교회와 협의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단, 노회 출석회원 3/4의 찬성투표를 얻으면 가능하며, 그러므로 그 이유를 노회 회록에 기록해야 한다.

G-14.0310 최종 사정

a. 신학교육의 최종 학년이나 후보생이 G-14.0310의 요구사항을 만족스럽게 마쳤을 때와 후보생이 청빙을 받기 전에, 후보생의 노회의 목회후보생위원회는 후보생의 목회 준비에 대해 최종 사정을 해야 한다. 이 협의는 지망(G-14.0303g)과 후보(G-14.0305j)의 종합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또한 G-14.0310b-e에 정해진 확인의 각 요구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 사정의 개요는 노회에 보고해야 하고 요청하면 청빙 노회에 전달해야 한다. 목회후보생위원회는 후보생이 청빙을 기다리는 동안 안수 시험을 치를 준비가 된 것을 확인했을 때 그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G-14.0507 참조).

시험준비를확인하는 요구사항

b. 후보생의 노회는 후보생에게 청빙을 기다리는 동안 안수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확인하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마치도록 요청해야 한다 :

(1) G-14.0305j에서 요구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시작할 준비의 제시;

(2) 지역적으로 학위를 인정하는 대학이나 대학교의 졸업장과 만족할 만한 성적증명서의 제출;

교육적요구사항

(3) 신학교협의회가 인정하는 신학 교육기관으로부터 온 노회가 만족할 만한 성적증명서와 만족할 만한 성적 증명서의 제시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헬라어 본문을 사용한 구약과 신약의 주석을 포함한 신학 학위를 마칠 계획서의 제출;

시험 요구사항

(4) 노회 목회 후보 고시위원회가 담당하는 5개 분야에 걸친 시험 답안지와 함께 만족할 만한 성적의 제시.

성경 시험

c. 지망생이나 후보생에게 신학교 1학년 때 성경 내용 시험을 치루도록 권한다. 다른 네 가지 시험은 신학교육 2년을 다 마친 다음에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치룰 수 있다. 이 네 과목의 시험은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노회의 목회후보생위원회가 승인해 주었을 때 치루어야 한다.

시험 분야

d. 이들 시험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공개 성경 주석:* 이 시험은 본문의 원어 지식과 그것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을 과시하면서 *성경*의 주어진 본문의 의미를 찾아 설명하는 후보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후보생은 다음의 어느 것이나 또는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본문, 번역서, 주석책, 그 밖의 성경 언어 지식을 풀이한 것까지 포함한 주석의 도구.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이나 그녀는 그 본문의 뜻을 진술하도록 요구받고, 어떻게 그이나 그녀가 이러한 해석에 이르렀는지를 보이며, 또 이 구절이 어떻게 현대 교회의 생활 속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2) *성경 내용:* 이 시험은 후보생의 성경의 형태와 내용에 대한 지식을 평가해야 한다.

(3) *신학적 적성:* 이 시험은 후보생이 어떻게 고전적 신학분야와 어떻게 복음을 현대 교회의 신앙에 관련시키면서 교회의 고백문서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후보자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4) *예배와 성례전:* 이 시험은 공중예배와 성례전의 뜻과 목적에 대한 후보생의 이해, 예배 모범과 신앙고백서와의 친숙도, 그리고 예배 공동체의 생활에 그것들의 적용 능력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5) *교회 정치:* 이 시험은 미국 장로교의 헌법 구조에 대한 지식과 그것에 의해 차이점들을 적절히 풀 수 있는 방법과 교회의 선교 사역을 완수케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후보생의 실제 지식을 평가해야 한다.

채점 방법

e. 이상 다섯 개의 전문 분야에 요구되는 시험은 G-11.0103m에 있는 노회 목회 후보 고시위원회의 감독하에 노회의 대표자들에 의해 채점되어야 한다.

G-14.0311
계약관계 이전

노회는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계약관계를 타노회로 이전시킬 수 있으나 받아들이는 노회와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그렇게 한다.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목회 준비를 책임지고 있는 노회의 승인 없이 타노회 관할권하에 있는 개체교회로 그이나 그녀의 회원권을 이전해 갈 수 없다. 노회가 이전을 승인할 때, 타노회로 그 승인증서, 그 개인에 관한 기록들, 이전 요청의 이유를 보내야 한다.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이 절차대로 따르지 못해서 실패하면 지망생이나 후

보생으로서 자격 상실의 결과를 가져온다. 어느 노회도 그런 사람의 신분을 회복시킬 수 없다. 단, G-14.0303의 규정에 따라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G-14.0312
계약관계 취소

지망생이나 후보생은 당회와 목회후보생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에 계약 관계에서 물러날 수 있다. 목회후보생위원회를 통해 전달된 그런 요청을 받은 후, 노회 서기는 지망생과 후보생 명단에서 그 개인의 이름을 삭제하고 노회에 삭제를 보고해야 한다. 노회는 또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명부에서 그 개인의 이름을 제거할 수 있고 이 결정과 그 이유를 당회와 그 개인에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개인이 등록하고 있는 그 교육기관에 보고한다. 양자의 경우, 최종 결정 이전에 목회후보위원회는 지망생이나 후보생과 다른 관계자들에게 그 위원회에 와서 청문할 기회를 주도록 합리적 시도를 해야 한다. 그 노회는 물러났거나 지망생과 후보생의 명단에서 삭제된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도와 지원을 해 준다.

G-14.0313
특례적 지망생이나 후보생
교육적 요구 사항

G-14.0310의 모든 요구사항들은 다음의 특례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필히 응해야 한다:

a. 만일 그 지망생이나 그 후보생이 G-14.0310b(2)와 b(3)의 교육적 요구에 응하지 못할 충분하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노회가 판정한다면, 참석 노회원의 3/4의 투표에 의해서만 예외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예외에 대한 충분한 이유 설명이 반드시 노회의 회록에 기록되어야 하고, 또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이전해 갈 수 있는 노회에 연락을 해야 한다(G-14.0311과 G-14.0314). 그런 예외조항에 명시된 연구과정의 성공적 이수는 G-14.0310b(2)나 b(3)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험 요구사항

b. G-14.0310b(4)의 시험 요구사항은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만족한 점수를 받도록 두 번 시도하여 실패했을 때까지는 보류해서는 안된다. 이 때에 노회가 그 사람이 청빙을 기다리는 동안 안수 시험을 치룰 준비가 된 것이 확인되면, 노회는 출석 노회원의 3/4의 투표에 의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야 하며, 실패한 분야에 있어서는 능력이 있음을 만족시킬 교체 방법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 개인이 교체 방법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 노회는 일상적인 방법으로 준비되었음을 확인해 줄 수 있다. 노회록에는 예외를 위한 이유와 능력이 있음을 결정한 교체 방법의 완전한 기록을 포함시켜야 한다. 노회는 한 과목이나 그 이상의 안수 시험에 두 차례 실패한 후보생이 시험을 치를 절차를 대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 절차가 승인되었을 때, 노회는 해당 후보생과 더불어 절차를 진행하며, 그런 예외는 매번 노회록에 기록해 둔다. 그런 절차는 매 3년마다 검토된다.

시간 요구사항

c. G-14.0303의 시간 요구는 왜 이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시간의 요청에 응할 수 없었는 지에 대한 이유에 알맞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노회가 판정할 때까지 보류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노회의 출석회원 3/4의 투표에 의해서만 이 예외를 만들어야 한다. 노회록에는 그런 예외의 충분한 이유 설명이 있어야 되고, 노회는 지망생이나 후보생이 이전하게 될 노회에 연락해야 한다(G-4.0311). 어떤 환경하에서도 시간 요구는 1년 이내이어서는 안된다(G-14.0303e 참조).

결정의 확인

d. 만일 그 노회가 이들 어느 하나의 요구사항의 면제를 승인한 타노회로부터 지망생이나 후보생을 받아들이면, 이전시키는 노회의 결정을 확인한 후, 후보생의 접수에 대한 전술한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

G-14.0314
안수 장소

a. 목회 후보생을 청빙하는 노회는 통상 고시를 해야 하고 그 고시와 G-14.0402의 모든 요구 조건을 후보생이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조건으로 후보생의 목회 준비를 책임진 노회가 그 후보생을 안수해야 한다.

다른 개혁파 교단

b. 어떤 후보생이 개혁파 교단의 관할권 아래서 일하도록 청빙 받았다면 그이나 그녀는 이명증서에 의해 후보생에서 해소할 수 있다. 같은 원리로 후보

생은 이명증서에 의해 다른 개혁파 교단으로부터 이 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G-14.0400 **4.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안수**

G-14.0401
후보생의 안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안수는 한 사람을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위해 선별한 후 노회에 의해 거행되는 전체 교회의 한 행위인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후보생으로서 적어도 1년(G-14.0313c 예외 참조)을 포함한 적어도 2년 간 한 노회나 여러 노회들과 계약 관계에 들어갔던 바 신학 학위의 완수와 함께 G-14.0310의 요구에 응했고, 교회에서 일하도록 청빙을 받았거나 후보생과 노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의 선교에서 다른 사역을 하도록 청빙을 받은 자이다.

G-14.0402
안수 시험

a. 그 후보생은 간단한 개인적 신앙과 G-14.0314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에 대한 결단의 선언을 해야 할 노회 앞에 출두해야 한다. 노회는 신학교협의회가 인정하고 노회가 받아들이는 신학교로부터 졸업증서를 받고 후보생의 말을 듣고(G-14.0305j(6)), 또 해당 책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에 (G-11.0402)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이나 그녀의 기독교 신앙과 신학, 성경, 성례전과 교회 정치의 견해에 관한 시험을 더 치루어야 한다.

투표 진행

b. 만일 그 노회가 후보생의 자격에 충분히 만족하면 안수 예식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그이나 그녀의 안수를 진행할 투표를 해야 한다.

G-14.0403
예외적 후보생

노회는 G-14.031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예외적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안수의 요구사항을 어느 하나도 생략해서는 안된다.

G-14.0404
안수 장소

a.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후보생의 안수는 대개 후보생이 교인으로 있는 그 교회의 교인들 앞에서와 정규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보통 시행하여야 한다.

취임 예배

b. 취임 예배(G-14.0510)는 그 후보생을 목사로 청빙한 지역에 있는 노회에 의해 거행되어야 한다.

G-14.0405
안수 예식

a. 노회나 이 목적을 위해 임명된 전권위원회는 안수를 위한 예식을 시작하고 교인들을 예식에 초대해야 한다. 예식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선교와 목회의 책임과 기쁨에 집중해야 하고, 그 경우에 적절한 설교를 포함해야 한다. 집례를 맡은 자는 안수를 준비하기까지의 노회의 절차를 간단히 말하고, 그것의 성격과 그 중요성을 지적해야 한다.

헌법 질문

b. 집례자는 그때 후보생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도록 물어야 한다:

(1)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그가 만유의 주요,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2) 당신은 구약과 신약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며, 전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독특하고도 권위 있는 증언이요, 또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받아들이십니까?

(3) 당신은 장로교의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개혁 신앙의 기본 교리가 우리로 믿고 행하게 하는 성경의 순수하고도 믿을 만한 해설서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채택하며, 아울러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이들 신앙고백서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으시겠습니까?

(4) 당신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성경의 권위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우리의 신앙고백서에 의해서 계속 지도를 받으시겠습니까?

(5) 당신은 우리 교단의 정치에 순응하며 그 권징을 따르겠습니까? 당신은 목회 동역자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6) 당신은 자신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의 화해를 위하여 노력하시겠습니까?

(7) 당신은 교회의 평화와 연합과 순결을 더욱 촉진시키기로 약속하십니까?

(8) 당신은 주의 백성을 온 정성과 지혜와 상상력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9) 당신은 말씀과 성례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주의 백성을 돌보는 충실한 목사가 되시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치리회에서 봉사하면서 정치와 권징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고 ; 또 당신의 목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힘쓰시겠습니까?

취임

c. [본 조항은 제 206차 총회(1994)의 결의로 삭제되었다.]

기도와 안수

d. 그 후보생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후, 할 수 있으면 무릎을 꿇고, 노회는 기도와 안수로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직에 그 후보생을 안수해야 한다. 그 집례자는 그때 다음과 같이 선포해야 한다:

(이름)________,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안수받았습니다. 당신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환영

e. 그 다음에 노회원들과 다른 해당 인사들이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에 임한 새 목사를 환영해야 한다. 취임 예식 끝에 새 목사는 간단한 인사와 축도를 선포해야 한다.

G-14.0406
안수 기록

노회는 그 공식 기록의 일부로서 안수 서약에서 확인한 의무를 맡게 되는 새 목사의 수락과 승인을 기록해야 한다. 노회 서기의 의무는 새로 안수받은 목사를 노회원으로 등록하고 그 후보생이 교인으로 있었던 그 지교회의 당회에 통보하는 일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당회는 그 후보생이 이제 안수를 받았고 노회의 명부에 옮겨졌다는 사실을 기록할 수 있다.

G-14.0500

5.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청빙과 취임

G-14.0501
담임목사, 동사목사, 부목사, 보조목사

a. 모든 교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목회적 봉사를 받아야 한다. 목사와 개체교회 사이에 목회적 관계는 영구관계, 임명관계나 임시관계이다. 영구적 목회 관계는 담임목사, 동사목사, 부목사 및 보조목사의 관계다. 다만 임명 목회 관계는 담임목사와 동사목사다. 임시관계는 노회 지정목사, 조직목사, 임시목사, 임시동사목사, 임시부목사 및 잠정설교목사이다. 1985년 12월 31일부로 보조목사로 섬기는 사람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그 개인이 그 동일한 개체교회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어하는 한 그 목회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

담임목사나
부목사

b. 담임목사나 부목사는 공동의회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하고, 그들 간의 관계는 노회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 담임목사나 부목사의 청빙은 노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하고, 담임목사나 부목사의 요구나 교인들의 결의에 의한 교회의 요청을 따라 노회의 승인 없이는 그 청빙은 변경시킬 수 없다.

동사목사

c. 동사목사는 목회를 위해 동등한 책임을 가지고 청빙받고 취임받은 목사이다. 각자가 담임목사로 인정되어야 하고 당회에 의한 동의와 노회에 의한 승인을 받는 대로 교회 안에서 의무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한 개체교회가 동사목사로 섬기는 2명의 목사를 모시고 그 중 한 목사의 관계가 해소가 되는 때, 다른 목사는 그 교회의 담임목사로 남아 있는다.

보조목사

d.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임한 보조목사의 관계에 일어난 어떤 변화는 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관계는 노회가 주도하거나 그 보조목사나 당회의 요청에 따라 노회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보조목사를 부목사로 청빙

e. 보조목사는 같은 교회 안에서 부목사로 봉사할 자격을 가져야 한다. 목사가 한 교회에서 보조목사로서 적어도 1년 이상 목회했을 때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부목사로 청빙받을 수 있다:

당회는 노회 목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그 목적으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보조목사를 부목사로 공천할 수 있다. 공동의회의 결정이 찬성이면 노회의 동의를 얻도록 노회에 제안해야 한다. 만일 그 목사가 더 많은 책임을 질 수 있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노회는 그 청빙에 동의할 수 있다. 그 동의에 따라서 노회는 부목사로서 그 목사의 취임을 위해 준비를 한다.

곧바로담임목사를 계승할 수 없음

f. 부목사나 보조목사의 한 교회에 대한 공식 관계는 담임목사의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부목사나 보조목사는 함께 일해 온 같은 교회의 담임목사를 직접 계승할 수 없으며, 그 교회의 동사목사로 청빙받아서는 안된다. 단, 최소한 3년간 실시되어 온 동사목사 모델을 현재 가지고 있는 교회와 그런 모델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교회의 경우는 제외된다. 그런 교회에서는 부목사나 보조목사가 노회의 3/4의 동의를 얻어서 그 교회의 동사목사로 사역하도록 청빙받을 수 있다. 부목사나 보조목사의 청빙에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해 받아야 한다. 부목사나 보조목사는 당회와 협의하여 담임목사에 의해 그이나 그녀의 사역을 지시받아야 한다.

임명목사

g. 노회임명목사나 동사목사(들)은 교인의 투표에 의해 2년 이상 4년 미만 임기로 선출되어 목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이다. 그 관계는 노회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 다만 임명 목회 관계는 담임목사와 동사목사에 한한다. 그런 목사나 동사목사(들)은 노회 목회위원회에 의해 지명된 사람들 가운데서만 개교회 목사청빙위원회에 의해 공천받아야 한다. 그 교회와 그 목사는 다같이 지정된 기간 동안의 관계를 자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 청빙은 노회 목회위원회의 사전승인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청빙의 기간은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목사는 노회에 의해 취임된다. 목회자가 목사일 때 그는 당회장이 되어야 한다. 목사의 청빙과 취임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G-14.0502-.0507)(G-14.0501a 참조). 만일 목회위원회에 의해 시행되는 공개 청빙 절차가 있었고 임명목사 관계가 2년이 지난 후, 그리고 목회위원회, 임명목사, 그리고 임명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단일 목적을 위해 목사청빙위원회를 대신해서 활동하는 당회의 동의를 얻은 후, 임명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할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당회는 목회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전적인 목사 청빙 작업을 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나, 임명목사를 담임목사가 되도록 청빙하기 위해서 목사청빙위원회를 선출할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공동의회의 결정은 노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만일 공동의회의 결정이 긍정적이면, 노회는 새로운 목회 관계를 승인하는 투표 후에 임명목사를 담임목사로 취임시켜야 한다.

G-14.0502
목사의 선출

a. 교회에 목사가 없거나 목회 관계 해소의 효력 기일이 지났을 때, 교회는 G-11.0502d에 따라 목회위원회의 지도와 허락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목사 선출을 진행해야 한다. 당회는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전체 교회를 대표해야 하는 청빙위원회를 선출한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교회에 목사를 선출하도록 한 목사를 공천하는 일이어야 한다. 공동의회의 시간, 장소, 그리고 목적을 명시한 통지는 계속 2주일을 포함하여 적어도 10일 전에 해야 한다.

청빙위원회의 작업

b. 청빙위원회는 G-11.0502d에 규정된 대로 목회위원회와 협의해야 하고, 부목사나 동사목사를 찾을 때는 담임목사나 계속 시무하는 동사목사와 협의해야 한다. 후보자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주의사항은 인종, 종족, 성, 결혼신분, 연령이나 신체부자유와 상관없이 해야 한다.

청빙위원회의 보고

c. 목사청빙위원회는 보고 준비가 되었으면 당회에 알리고, 당회는 상기 문단a에서 요구한 대로 공고하고서 청빙위원회의 보고에 관한 결의할 목적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부목사 선정에 있어서도 똑같은 과정을 따라야 한다. 공동의회의 결의는, 만일 찬성을 받으면, 노회의 동의를 얻도록 제안해야 한다. 만일 노회가 동의하면, 노회는 그 목사의 취임 준비를 해야 한다. 노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는 영구적 목사 관계 청빙이 발효되어서는 안된다(G-11.0502d)

G-14.0503
공동의회

a. 담임목사(부목사)의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시작할 때, 노회가 임명한 당회장이나 노회의 어느 다른 목사가 사회해야 한다.

무기명 비밀투표

b.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기도가 있은 후에 당회장은 목사 청빙위원회의 보고를 요청해야 한다. 그 보고가 있은 후에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한다: "여러분은 담임목사(부목사)의 선거를 하실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만일 준비가 되었으면, 당회장은 청빙위원회가 공천한 목사의 이름을 선포해야 한다. 투표는 그 교회의 목사로서 공천된 그 사람을 공동의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동의회가 그 교회의 담임목사(부목사)로 청빙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참석하여 투표한 투표자의 다수표로 선출되어야 한다.

G-14.0504
대교구

노회가 세운 두 교회나 그 이상의 큰 교구가 합동으로 목사를 청빙할 때 그 청빙은 각 교회가 약속한 지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노회의 승인하에 그런 청빙은 대교구협의회에 의해서 발의될 수 있는데, 그 협의회는 적절히 소집된 그들의 공동의회에서 취한 교회들의 승인, 교구의 교회들 간에 재정적 협약의 설명서와 함께 공동 교구 회계부의 봉급의 지불, 그리고 각기 공동의회가 투표한다는 규정과 함께 교구협의회가 목사의 봉급을 매년 검토하는 일 등을 마련한다. 그런 청빙이 교구협의회에 의해서 발의되고 노회가 승인했을 때, 각기 참여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참여를 거부하지 않는 한, 그 목사의 목회 기간 동안 교구의 재정적 후원을 계속할 의무를 져야 한다. 그 청빙서는 그 목사가 교구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들의 담임목사(부목사)로 청빙받은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G-14.0505
반대자

담임목사(부목사)를 선출함에 있어서 투표자들의 상당한 소수가 투표의 다수를 받은 후보를 반대하고, 또 청빙에 동의하도록 설득당할 수 없을 경우, 당회장은 다수에게 청빙을 시행하지 말도록 제안해야 한다. 만일 공동의회가 거의 만장일치이거나 다수가 담임목사(부목사)의 청빙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 당회장은 청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숫자와 중요한 다른 사실을 확인하여 그 청빙을 노회에 상정해야 한다. 당회장은 또한 청빙받는 사람에게 그 결정의 성격과 환경을 알려 주어야 한다.

G-14.0506
청빙

a. 공동의회의 투표에 의해 청빙 서류에 서명하고 노회 앞에 제출하고 그것을 집행할 사람들이 선출되어야 한다. 공동의회의 당회장은 이 청빙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적절히 선출된 자들이고, 그 청빙은 모든 면에서 헌법이 요구한 대로 된 것임을 노회에 확인해야 한다.

양식

b. 청빙서는 다음과 같은 또는 이와 비슷한 형식이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노회에 속한, (주소) ________________에 소재한, 미국장로교의 (교회이름) ________________장로교회는 당신의 목회의 자격에 만족하고, 또 당신의 목회 봉사를 통해 우리 교회의 영적 관심사에 유익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게 할 분으로서 성령이 우리를 당신에게 인도해 주심을 확신하면서, 진지하고 엄숙하게 당신 (이름) ____________________를, 그 직책 수행을 다하도록 지원과 격려와 주 안에서의 충성을 약속하면서 본 교회의 담임목사(또는 부목사)의 직책을 수행해 주도록 청빙합니다.

당신이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에 전임(파트타임)하시도록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이미 합의 본 액수를 기입해 넣는다.):

연봉급

(월별 정규지불에 의한)...... $ ______

목사관 사용 .... $ ______

주택비 .... $ ______

주택 유지비 .... $ ______

기타 의료보험 .... $ ______

전문직 수당

자동차 비용 .... $ ______

계속 교육 비용 .... $ ______

도서비 .... $ ______

개인 용무 수당 .... $ ______

기타(명기할 것) .... $ ______

이사비용 .... $ ______

휴가(기간) .... ______

계속교육(기간) .... ______

그리고 우리는 이 청빙서에 설정된 대로 당신이 본 교회에 대한 목회 관계에 있으며 그 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연금과 의료보상 또는 총회에 의해 승인된 차후 어떤 계획을 포함하여 미국장로교회의 보조 계획에 참여하도록 미국장로교 총회가 정하는 당신 봉급의 필수 비율에 동일한 액수와 보조금을 책임진 연금처에 정기적으로 선불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보수의 충분여부를 당신과 매년 평가할 것을 약속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서약하면서 우리는 주후 ________ 년 __________, 월 ______일에 서명합니다.

(서명)

수당과 액수

c. 청빙서는 청빙의 부분으로 약속한 모든 수당과 액수만을 명시해야 한다. 만일 목사가 목회 사역 기간에 군복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목사와 청빙기관 사이에 합의는 목사의 의무와 잠재적 동원을 청빙 조건에 추가하고 노회의 승인을 받아 청빙 조건의 한 요소가 되게 한다. 만약 그 청빙이 전임이 아니면 정확한 계약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증명서

d. 당회장이 발행하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목회 사역에 청빙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사회한 후, 나는 이 청빙의 모든 절차가 본 교단의 정치 형태의 규례에 규정된 법대로 이루어졌으며, 또 이 청빙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미국장로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교회의 투표에 의하여 그렇게 하도록 취임받은 사실을 증명합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

공동의회 의장

하한선 규정

e. 청빙 조건은 그 청빙서가 작성될 때 효력을 발생한 노회의 하한선 요구에 맞거나 초과하는 보수를 마련해야 하며, 또 그 후 그런 요구에 준하도록 매년 조정되어야 한다.

융합

f. 후보자에 대한 모든 청빙은 새 목사들로 하여금 노회의 생활과 사역에 융합하도록 하는 노회 계획 설명서가 따라야 한다(G-11.0103n).

G-14.0507
청빙서를 제출하고 접수함

a. 만약 노회가 그 청빙이 합법적이고, 또 전체 교회에 유익한 것으로 인정하면 그 결정을 청빙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그 목사나 후보생의 관할권을 가진 노회를 통하여 청빙서를 제시하는 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

소속노회 통한청빙

b. 아무 목사나 후보생은 그이나 그녀의 소속 노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청빙서를 받지 못한다. 한 노회내의 어느 교회가 다른 노회의 목사나 후보생에게 청빙서를 제시할 때, 청빙하는 노회의 서기는 다른 노회의 서기에게 청빙서와 그 청빙이 그 노회에 의해 법대로 되었다는 증명서와 함께 보내주어야 한다. 그 목사나 후보생의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서류를 목회위원회에 보내야 하고(G-11.0502b), 그 위원회는 노회에 청빙 서류를 받았다는 것을 알리며, 그것에 관해 무슨 결의가 어떻게 취해져야 할 것인가를 노회에 추천해야 한다. 만일 그 노회가 그 목사를 현재 책임에서 해제하는 일이 현명하다고 생각되면, 거기서 시취받아 가입되도록 그 교회에 관할권을 가진 노회에 이명 허락과 함께 그이나 그녀에게 청빙서를 제시한다. 만일 그 노회가 그 후보생의 청빙을 받는 일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그 노회는 그 교회에 관할권을 가진 노회에 의해 시취받는 허락과 함께 그이나 그녀에게 청빙서를 제시한다. 만일 시취가 승인되지 않으면, 목사나 후보생은 그이나 그녀의 소속 노회의 관할권하에 머물러 있는다. 그 노회들은 그 교회의 청빙서와 목사나 후보생의 이명증을 확인하는 일에 그들 서기들을 통해 피차 직접 처리해야 한다.

청빙,권한의 대행

c. 청빙의 합법성을 찾는 권한, 청빙을 승인하고 제시하는 권한, G-11.0402에 요구한 타노회에서 이명한 목사의 시취 승인 권한, 목사가 함께 동의하는 경우 목회 관계를 해소하는 권한, 그리고 타노회로 목사를 이전하는 권한 등은 그런 모든 결정이 차기 정기노회에 보고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노회에 의해 노회 중앙협의회나 목회위원회에 취임될 수도 있다(G-9.0403, G-11.0103v과 G-11.0502h).

G-14.0508
타교파의 목사 청빙

a. 어느 교회가 타교파의 목사를 청빙할 때, 그 목사는 자기 교단 관할기관에 그이나 그녀의 정식 회원인 증서를 그 노회에 보내도록 요청하면서 그 노회에 회원권을 신청해야 한다. 그런 목사에게는 다음 사항이 요구된다:

(1) 본 교단의 적절한 사역에 종사하도록 초청받은 일;

(2) 인정된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나 그에 대등한 학위와 그 노회가 수락하는 신학교에서 받은 신학 학위, 그리고 3년 이상 신학교에서 수학한 사실의 제시;

(3) 안수 후보생에게 요구하는 시험에 만족할 만한 해답(G-14.0310b(4));

(4) 그들의 기독교 신앙의 분명한 선언과 신학(G-14.0310d(3))과 본 교단의 정치(G-14.0310d(5))의 수락할 만한 지식의 제시;

(5) 노회 앞에서 그들의 안수시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G-14.0405).

요구사항 유보

b. 노회는 이상의 요구를,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라도 유보할 수 없으며, 예외적 상황에는 노회가 G-14.0313에 요구한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G-14.0509
목사의 취임

a. 청빙서가 목사나 후보생에게 제시될 때, 그것이 그이나 그녀의 취임을 위해 교회로부터 온 충분한 청원서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청빙의 수락

b. 목사나 후보생에 의한 청빙서의 접수는 취임 요청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노회는 취임예식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야 한다.

G-14.0510
취임예식

a. 정해진 취임 날짜에 노회나 이 목적으로 임명된 전권위원회는 예식을 시작하고 교인들을 예식에 불러모아야 한다. 그 예식은 안수예식처럼 동일한 초점과 형식을 위해야 하고, 취임 받는 사람은 안수 때 물었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G-14.0405). 취임 받는 사람이 이 질문에 긍정적 대답을 한 연후에 장로 한 사람이 취임 받는 목사(또는 취임 받을 부목사)와 함께 교인들을 향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하도록 물어야 한다.

(1) 본 교회의 교인인 우리는(이름) ______________ 목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본 교회 교인들의 의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우리의 담임목사(부목사)로 받으십니까?

(2) 우리는 그이(그녀)를 격려하고, 그이(그녀)의 결정을 존중히 여기며, 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그이(그녀)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기로 동의하십니까?

(3) 우리는 그이(그녀)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불하며 그이(그녀)가 우리 가운데서 목회할 때 그이(그녀)의 복지를 마련해 드리며; 어려울 때 그이(그녀)의 곁에 있으며, 그이(그녀)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로 약속하십니까? 우리는 그이(그녀)가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이(그녀)의 목회적 돌봄을 환영하며 그이(그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고 순종할 때 그이(그녀)의 권위를 존경하시겠습니까?

기도와 안수

b. 교인들이 이런 질문에 긍정적 대답을 하면, 안수와 취임을 받는 그 후보생은 할 수 있으면 무릎을 꿇고, 그리고 노회는 기도와 안수로써 그 후보생을 말씀과 성례전의 직책에 안수하고 또 특별한 목회 책임을 맡도록 취임한다. 그 전에 이미 안수받았고 취임받는 목사는, 할 수 있으면, 취임 기도를 드릴 때 보통 일어서야 한다.

선언

c. 그 집례자는 그 때 다음과 같이 선포해야 한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리고 본 교회를 위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입니다. 말에나 행동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에 이미 안수를 받은 목사에게는 "당신은 이제 본 교회에서, 그리고 본 교회를 위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입니다. 당신은 말에나. . . 등"만 선포한다.)

환영

d. 그 다음에 노회원들과 다른 해당 인사들이 새로 안수받고 취임받았거나 새로 취임받은 목사에게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에서 그들의 친교에 동참하게 된 것을 환영해야 한다.

간단한 권면

e. 노회에 의해 초청받은 사람들이 목사(부목사)와 교인에게 그들의 관계에 있어서 또 상호 책임에 있어서 충실하도록 간단한 권면을 그때 할 수 있다.

축도

f. 그 예식 마지막에, 새로 취임받은 목사가 간단한 말로 인사와 축도를 선포해야 한다.

예식 기록

g. 노회는 취임 예식을 적절하게 기록해야 한다.

G-14.0511
환영

취임 예식이 끝난 후 교회 제직들과 교인들은 그들의 목사(부목사)에게 나와서 정중한 환영과 따뜻한 존경의 적절한 표현을 그이나 그녀에게 해야 한다.

G-14.0512
한 교회 이상의 경우

한 교회 이상 교회의 담임목사나 부목사로 위임은 각 교회가 참석해서 G-14.0510에 있는 헌법상의 질문에 각기 대답하면서 합동 예식으로 거행해도 된다.

G-14.0513
임시 목회 관계

교회에 목사가 없거나 목사가 그이나 그녀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그 당회는 본 교단 소속 목사와 임시 목회 관계를 가져야 한다. 교회가 한 사람 이상의 목사, 또는 한 사람의 담임목사나 한 사람이나 그 이상의 부목사를 채용하며 이 직분 중 하나가 공석일 때, 임시 목회 관계에서 목사의 사역을 받을 수 있다. 그 교회는 정식 청빙을 해서는 안 되고, 공식 취임이 이루어져서도 안된다. 임시 목회 관계는 노회 지정목사, 임시목사, 임시동사목사, 임시부목사, 잠정설교자나 조직 목사의 관계이다:

노회 지정목사

a. 노회 지정목사는 위임목사를 찾고 있지 않는 한 교회에서 목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회와 자문한 후에 노회에 의해 임명된 목사이다. 그 관계는 노회에 의해서만 설정해야 하고 기간은 한 때 12개월을 넘어서는 안된다. 노회 지정목사는 노회 목회위원회를 통해서 그이나 그녀의 목회 성과를 평가하기까지는 재임명받아서는 안된다. 노회 회원인 노회 지정목사는 노회의 승인하에 당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다.

임시목사

b. 임시목사는 그 교회가 담임목사를 찾고 있는 동안 위임목사가 없는 교회의 당회가 말씀을 전하고, 성례전을 거행하고 한 번에 1년을 넘지 않는 일정한 기간 목회 직무를 수행하도록 당회에 의해 초청받은 목사이다. 임시동사목사는 그 교회가 동사목사를 찾고 있는 동안, 한 번에 12개월을 넘지 않는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목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어도 3년간 실시해 온 동사목사의 모델을 가졌고 교인들이 영구 목회 관계의 그런 모델을 계속하기 원하는 위임동사목사가 없는 교회의 당회에 의해 초청받은 목사이다. 당회는 노회 목회위원회를 통해 노회의 승인 없이는 임시목사나 임시동사목사의 관계를 확보하거나 해소할 수 없다. 임시목사나 임시동사목사로 시무했던 목사는 그 교회의 차기 위임목사, 동사목사나 부목사로 청빙받을 수 없다.

임시부목사

c. 임시부목사는 그 교회가 새 부목사를 찾고 있거나 G-6.0202에 따라 동사목사로 시무할 목사를 찾고 있는 동안 이 직책에서 사역하도록 당회에 의해 초청받은 목사다. 당회는 목회위원회를 통해 노회의 승인 없이는 임시부목사의 관계를 확보하거나 해소할 수 없다. 임시부목사는 한 번에 12개월을 넘지 않는 일정기간 사역해야 하고, 임시부목사로 시무했던 교회의 위임목사나 부목사로 청빙받을 수 없다.

잠정설교자

d. 노회 잠정설교자는 목사가 직책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 예배를 인도하도록 당회가 모신 목사, 목회후보생, 평신도 파송목회자나 장로일 수 있다. 당회는 노회 잠정설교자를 구하기 전에 목회위원회를 통한 노회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

노회 잠정설교자는 노회 잠정설교자의 목회 관계가 끝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한, 노회 잠정설교자로 시무한 교회의 목사나 부목사로 청빙받을 수 없다.

잠정설교자인지망생이나후보생

e. 교회에 목사가 없을 때나 목사가 목회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당회는 목회위원회를 통해 그 교회에 관할권을 가진 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망생이나 목회후보생을 노회 잠정설교자로 구할 수 있다. 노회 잠정설교자로 봉사하는 이런 지망생이나 후보생을 위한 적절한 지도와 감독은 그 교회의 관할권을 가진 노회에 의해 보장되며 지망생이나 후보생의 소속 후보생위원회가 승인받아야 한다.

조직목사

f. 조직목사는 새로운 장로교회를 조직하는 과정에 있는 일단의 사람들에게 목회자로서 봉사하도록 노회에 의해 임명된 목사나 평신도 파송 목회자이다. 조직목사는 노회 행정직원인 노회원에게 위임해도 되며 G-9.0702, G-9.0704와 G-4.0403의 원칙에 따라서 채용해도 된다. 조직목사로서의 관계는 새 교회가 노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조직될 때 종결되어야 한다. 그때 새 교회는 목회위원회와 노회의 동의를 얻어서, 목사청빙위원회의 선출과 목사 청빙을 행하지 않고 그 조직목사를 그 교회의 목사로 청빙할 수 있으며, 또는 그 교회가 목사청빙위원회를 선출하고 정치 형태에 마련된 대로 전적으로 목사 청빙을 행할 수 있다.

G-14.0514
타교단의 목사

다른 기독교 교단의 안수받은 목사가 그들이 속한 교단의 품행이 좋은 회원의 증서를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가 임시목회 관계를 허락할 경우, 개체교회의 당회는 그런 목사를 임시 목회 관계에 채용할 수 있다.

G-14.0515
협동목사

a. 협동목사는 지교회보다는 어느 인정받은 목회에 봉사하거나 일반회원이거나 은퇴한 목사이지만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한 개체교회나 여러 교회와 관계를 유지하기 바라는 목사이다. 이미 노회의 계속회원으로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은 협동목사로 봉사할 수 있다. 그 관계는 담임목사의 추천에 의하여 협동목사, 당회와 노회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협동목사는 '필요하고 유용한' 근거에서 보수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직원의 수석인 담임목사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협동목사는 협동목사의 관계가 끝난 지 적어도 6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한 협동목사로서 시무한 교회의 차기 위임목사나 부목사로 청빙받을 수 없다.

목회위원회감독하에 임명

b. 협동목사의 지명은 개체교회 당회의 요구, 협동목사의 동의와 노회의 승인에 의해 노회 목회위원회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식 청빙이 있어서는 안된다. 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화이든 간에 노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보통 한 명 이상의 협동목사가 개체교회에 관련될 수 없다.

연례 검토

c. 노회 목회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한 번 지명에 관한 검토를 해야 한다

(1) 협동목사로서 요구되는 시간과 정력이 그이나 그녀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사역에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지;

(2) 개체교회의 위임받은 지도력이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보장받고 있는지;

(3) 협동목사가 한 개체교회에 대한 이전 관계 이외에도 노회에서 계속회원의 기준에 맞도록 계속하고 있는지.

강단이 공석일 때

d. 당회와 협동목사 사이의 계약은 교회 강단에 공석이 생길 때면 언제나 노회 승인을 받아서 당회나 협동목사의 통고로 종결되어야 한다.

G-14.0516

[본 항목은 제208차 총회(1996)에 의해 삭제되었고 항목이 G-14.0801로 옮겨졌다.]

G-14.0517
인준받은 목회, 청빙, 취임, 인정

a. 본 교단의 다른 봉사에(G-11.0410)나 교단의 관할권 밖에서 봉사하도록 인준받은 목회 청빙은(G-11.0411) 대개 봉사 목적과 사역 관계 진술서, 재정 조건, 목사의 서명, 노회의 대표, 또 가능하면 고용 기관의 대표 등을 포함한 서류 형식으로 보통 이루어져야 한다.

예식

b. 노회는 G-14.0510에 나오는 그것과 비슷한 취임예식이나 이 목회를 시작할 때 인정 예식을 집행하는 일이 적절하다.

G-14.0600 6. 목회 관계의 해소

G-14.0601
노회에 의해서

담임목사, 부목사나 보조목사와 교회의 목회 관계는 노회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G-6.0202c 참조).

G-14.0602
목사에 의한 요청

목사는 노회에 목회 관계를 해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목사는 그이나 그녀의 의도를 당회에 진술해야 한다. 담임목사나 부목사의 경우 당회는 그 요청에 대한 결의와 노회에 제안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노회는 교회와 목사가 동의하는 경우, 그 목회 관계를 해소하고 노회에 보고하도록 목회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만일 교회가 관계 해소에 응하지 않으면, 노회는 교인이 선출한 위원들을 통해서 노회가 그 관계를 해소시켜서는 안될 이유를 교회로부터 청취한다. 만일 교회 대표가 나타나지 않거나 그 관계 유지를 위한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 목사의 요청을 허락하고 그 목회 관계는 해소될 수 있다.

G-14.0603
교회에 의한 요청

만약 어느 교회가 목회 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유사한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 교회는 정당하게 소집된 공동의회 후 그 목사와의 관계 해소를 노회에 요청할 수 있다. 담임목사가 사회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담임목사가 공동의회를 사회해야 한다(G-7.0306에 따라서). 노회는 목사와 교회가 동의하는 경우, 그 관계를 해소하고 노회에 보고하도록 목회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만일 목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노회는 그 관계를 해소시켜서는 안될 이유를 그이나 그녀로부터 청취해야 한다. 만일 목사가 나타나지 않거나 관계 유지를 위한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그 관계는 해소될 수 있다.

G-14.0604

[이 부분은 제200차 총회(1988)에서 삭제되었다.]

G-14.0605
명예(원로)목사

어느 담임목사나 부목사가 은퇴하고 교회가 존경과 사랑에 감동되어 영예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 정기 공동의회에서 보수가 있거나 없거나 그러나 목회적 권한이나 의무는 없이 그이나 그녀를 명예(원로)목사로 할 수 있다. 이 결정은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이런 관계가 지혜로운 것인지의 여부를 노회 목회위원회와 자문을 한 후에만 취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노회의 승인에 달렸고 담임목사나 부목사의 관계의 정식 해소나 그 후 어느 때든지 효력이 발생한다.

G-14.0606
초청에 의해서만 집례

전임담임목사, 부목사들과 보조목사들은 당회장의 초청에 의해서만 또는 당회장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당회 서기의 초청에 의해서만 개체교회 교인을 위한 예식이나 교회 시설 안에서 행하는 예식에서 집례를 할 수 있다.

G-14.0607

[이 부분은 제200차 총회(1989)에서 삭제되었다.]

G-14.0700

7.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

G-14.0701
기독교 교육자

a. 기독교 교육자는 지교회나 교회들이나 치리회에서 교육 사역에 청빙되고 채용된 사람이다. 기독교 교육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신앙과 사랑을 제시하는 사람이며 신앙생활에 헌신하고 목적이 신중하고 성격이 정직하며 봉사를 즐기는 사람이다.

b. 지교회에서 봉사하는 기독교 교육자는 G-6.0202-.0203과 G-10.0102에 명시한 대로 그들이 사역하는 교인의 영적 성장을 마련하는 책임을 당회와 목사(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기독교 교육자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과 재료와 자원을 추천하고 평신도 일꾼을 훈련하고 지원하며 지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일을 포함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기독교 교육자는 당회에 책임을 지며 담임목사의 감독하에 있다.

c. 기독교 교육자는 성서해석, 개혁신학, 인간개발, 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 미국장로교의 정치, 프로그램, 선교에 대하여 기술과 훈련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기독교 교육자는 G-14.0703에 규정한 인정 요구 조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도록 준비하는 일에 당회와 노회에 의해 격려를 받아야 한다.

G-14.0702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

a. 인정이란 그것에 의해 교회가 그 교회의 교육 목회에 부름받고 채용된 이 사람들의 재능, 준비, 그리고 그 효과적 봉사를 인정하는 한 방편을 말한다.

b. 최고 수준의 인정은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가 되는 것이다.

G-14.0703
인정서

총회는 교육자의 학문적 준비와 시무 경험을 평가하고 다음의 지식과 재능 분야에서 능력을 시험하는 자격 인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a. *성경해석:* 이 시험은 용인된 주석 과정과 자료를 이용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현대적 교육 상황에서 성경을 적용시키는 교육자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b. *개혁신학:* 이 시험은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표현된 교회의 신앙고백 문서와 일치되는 교육자의 신학 이해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c. *인간개발:* 이 시험은 인간개발 이론, 신앙개발과 이것들을 교회의 교육적 목회에 융합시키는 교육자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d. *종교교육 이론과 실제:* 이 시험은 종교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교회의 교육적 목회에 융합시키는 교육자의 능력을 평가한다.

e. *정치:* 이 시험은 미국장로교 헌법을 다루는 교육자의 실제 지식을 평가해야 한다.

f. *미국장로교의 프로그램과 선교:* 이 시험은 미국장로교의 프로그램과 선교에 관한 교육자의 지식과 교회의 교육적 목회에서 이 프로그램과 선교를 해석하는 교육자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G-14.0704
교육자 인정위원회

a. 그 인정 절차는 총회 중앙위원회를 대신한 교육자 인정위원회에 의해 관리되고 거기에 의해 인정서가 수여된다.

b. 교육자 인정위원회는

(1) 인정 표준을 설정해야 한다;

(2) 노회와 자문하여 교육자 인정자문위원을 지정해야 한다;

(3) 인정 시험을 평가해야 한다;

(4) 인정서 수여와 총회 중앙협의회에(국내사부를 통해서) 보고해야한다.

G-14.0705
노회

a. 노회는 자격 인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여야 한다

(1) 교육자로 인정서를 얻도록 권장하는 일 ;

(2) 교육자 인정자문위원을 통하여 지도하는 일 ;

(3) 교육자가 인정서를 얻도록 당회에서 계속 교육기금과 시간을 마련하도록 권장하는 일.

b. 노회는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를 다음과 같이 지원해야 한다

(1) 인정예식(G-11.0103n) ;

(2) 보수 및 수당을 위한 지침서(G-11.0103n) ;

(3) 목회위원회와 의사소통(G-11.0503).

c. 노회는 유자격 기독교 교육자에게 노회 모든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야 한다(G-11.0407).

G-14.0800

8. 여타 유자격 고용직원

G-14.0801
평신도 파송 목회자

a. 평신도 파송 목회자는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인을 돌보고 그들의 양육과 봉사를 마련해 주도록 노회에 의해 일정지역에 파송을 받은 자로서 미국장로교의 장로이다. 이 파송은 노회가 지정한 한 교회나 그 이상의 교회, 개척교회나 노회의 다른 정당한 목회에서만 유효하다. 그런 장로는 노회에 의해 선출되고 노회가 허락한 훈련을 받는다. 그 장로는 성경, 개혁신학과 성례전, 장로교 정치, 설교, 예배인도, 목회적 돌봄과 가르치는 일에 교육받아야 한다. 그 장로는 노회의 해당위원회에 의해 개인의 신앙, 파송받고자 한 동기, 그리고 앞서 언급한 교육분야에 관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 파송을 받았다가 후에 지교회에서 사역을 중단한 장로는 계속 사역 후보 명단에 등록될 수 있으나 노회에 의해 지교회에 의해 다시 임명을 받을 때까지 평신도 목회자의 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

유효기간

b. 그 파송은 노회가 결정한 3년 기간 동안에만 유효하다. 노회의 재량으로 어느 때나 임기를 갱신하거나 끝내게 할 수 있다. 노회는 정기적으로 그 사람의 영적, 그리고 지적 개발을 위하여 자료를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평신도 파송 목회자의 사역 평가는 매년 해야 한다. 노회는 이러한 본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그의 사역이 지교회나 노회의 요구를 채우기에 적절치 않다고 평가받은 평신도 목회자의 파송을 취소해야 한다.

기능수행권한

c. 노회가 당회나 여타 책임진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에 지교회에서의 선교전략에 그것이 요구된다고 결정할 때, 그리고 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추가 지시사항을 마련한 다음에, 노회는 아래 (1) - (6)에 기술된 다음 기능의 어느 것 또는 전부를 수행하도록 평신도 파송 목회자에 권한을 줄 수 있다.

(1) 성찬식을 집례한다.

(2) 세례식을 집례한다.

(3) 노회의 감독하에 그리고 노회가 임명한 당회장의 초청이 있을 때 지교회 당회를 사회한다.

(4) 노회 회의시 발언권을 갖는다.

(5) 노회 회의시 투표한다.(그런 투표는 동률의 목적으로 장로총대로서 계수될 때의 경우다.)

(6) 당회나 책임진 다른 위원회에 의해 초청받았을 때, 그리고 그 주가 허락했을 때 결혼식을 집례한다.

감독

d. 평신도 파송 목회자는 봉사하는 교회의 당회장을 통해서나 목회위원회를 통해 노회의 감독하에서 사역해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한 사람을 조언자와 감독자로서 선임해야 한다.

질문

e. 노회 및 교회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 교회에 파송된 평신도 목사가 노회에서 충분히 훈련을 받았고 이에 충실하다고 생각될 때, 노회는 평신도 목사를 그녀 또는 그가 파송된 교회의 당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선도자 또는 감독자로서 평신도 파송 목사에 임명된 사람은 의장으로서 그 또는 그녀의 직무를 감독해야 한다.

f. 목회적 돌봄을 베풀 때, 평신도 파송 목회자는 진리와 비밀유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드러난 모든정보 및 그러한 돌봄의 수행에 관계된 모든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비밀 정보를 밝히는 것에 동의하는 표현을 했을 때, 평신도 파송 목회자는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밀 정보를 밝힐 수 있다. 평신도 파송 목회자는 그녀 또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손상의 긴박한 위협이 있음을 합리적으로 믿고있을 때 그 비밀 정보를 밝힐 수 있다.

g. 노회가 신청자의 자격에 만족할 때 그 신청자에게 다음의 질문을 해야 한다:

(1)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그가 만유의 주요, 교회의 머리이시요, 그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2) 당신은 구약과 신약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며, 전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독특하고도 권위 있는 증언이요, 또 당신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받아들이십니까?

(3) 당신은 장로교의 신앙고백서에 표현된 개혁신앙의 기본 교리가 우리로 믿고 행동하게 하는 성경의 순수하고도 믿을 만한 해설서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채택하며, 아울러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이들 신앙고백서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으시겠습니까?

(4) 당신은 성경의 권위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당신의 파송을 완수하고, 또 우리의 신앙고백서에 의해서 계속 지도를 받으시겠습니까?

(5) 당신은 우리 교단의 정치에서 순응하며 그 권징을 따르겠습니까? 당신은 선교 동역자들과 친구가 되어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6) 당신은 자신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의 화해를 위하여 노력하시겠습니까?

(7) 당신은 교회의 평화와 연합과 순결을 더욱 촉진시키기로 약속하십니까?

(8) 당신은 주의 백성을 온 정성과 지혜와 상상력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9) 당신은 주의 백성을 돌보고 예배를 준비하는 성실한 취임받은 평신도 파송목회자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목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도록 힘쓰시겠습니까? (G-14.0207)

기도와 선언

h. 그 신청자가 이 질문에 긍정적 대답을 하면, 노회장은 기도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 당신은 이제 본 노회가 지정한 때와 장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하고 설교하도록 위임받은 파송목회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G-14.0802
여타 유자격 평신도 고용직원

a. 여타 유자격 평신도 고용직원은 개체교회와 치리회와 교회 관계기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 개인들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반영하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를 강화하도록 힘쓴다. 그 목적 때문에 전문인 그룹은 공동체와 지원과 전문직 개발을 위해 조직됐다. 몇몇 이 협회들은 총회기관들과 공식 연락관계를 이루었다. 이 그룹들은 행정인사협회와 장로교 음악인협회와 장로교 사무행정가협회를 포함한다.

b. 행정인사협회(APA)의 회원은 사무직원, 행정부 부책임자, 장부계원, 교회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보조직원을 포함한다. 인정은 APA가 부여한다; 인정을 위한 요구조건은 국내 사역부에 의해 승인받는다. 요구조건은 정치, 개혁신학, 교회사, 개인 전문분야 등에 총 40시간의 교육과 더불어 협회의 대회에 참석하는 일을 포함한다.

c. 장로교 음악인협회(PAM)의 회원은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목사, 그리고 예배 경험에 있어서 음악의 자질과 성실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인정은 그 협회가 부여한다. 요구조건은 음악 석사학위와 정치, 성경, 예배, 인간의 신앙과 개발, 그리고 음악교육 등 추가 과목들을 포함한다. 인정서를 획득하는 이들은 추천 그룹에 의해 자문받으며 연구분야에 숙달한지를 시험받는다. 이 협회는 회중 목회부와 연락관계를 갖는다.

d. 장로교 사무행정가협회의 회원은 지교회와 교회 관련기관에 행정가로서 주로 봉사하는 목사와 평신도를 포함한다. 인정은 그 협회가 부여한다 ; 인정을 위한 요구조건은 국내 사역에 의해 승인받는다. 그것들은 10일 간 두 차례의 세미나에 참석하는 일과 교회 행정에 관해 승인받아서 하는 연구계획의 완료를 포함한다. 세미나에서의 연구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 재산관리, 재정과 투자, 인사관리, 교회사, 신학,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조직, 법적/세금관계, 청지기, 회계사무, 사무절차, 정치, 기타 관리기술.

G-14.0803
신분의 통보

이들 협회를 통해 인정을 획득한 이들의 이름은 국내 목회부에 있는 인정서 교부 사무국에 전달되어야 하며, 인정서 교부 사무국은 그것들을 총회 사무처와 이들이 사역하는 노회의 서기에게 전해야 한다.

G-14.0804
노회에 의한 인정

노회는 그들의 인정서 교부시 노회에서 그들을 인지하도록 하며 이들 고용인들은 노회 회의에 초청하여 그들에게 발언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유자격 평신도 고용인들의 기술과 헌신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G-15.0000

제15장 관련성

G-15.0100

1. 에큐메니칼 관여

G-15.0101
개방성

미국장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치를 더욱 가시화하도록 노력하며, 다른 교단 및 세속 그룹들과의 대화, 협력과 행동을 같이할 기회를 개방할 것이다.

G-15.0102
타교단들

미국장로교는 다른 장로교파 및 개혁파 교단, 또한 다른 기독교 교파, 연맹, 협의회, 협회와의 관계를 주도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며, 그들과 더불어 선교에 참여하기로 노력할 것이다.

G-15.0103
전체 수준

본 교단의 모든 치리회는 각기 차상급 치리회와 협의하에 타기독교 교단과 더불어 공동 선교를 위한 효과적인 에큐메니칼 기관들을 창시하고 강화하는 일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G-15.0104
비기독교
종교 단체

미국장로교는 기독교 외 다른 종교 단체와의 대화와 이해의 새 기회를 추구함으로써 흥미와 관심을 나누게 되고, 대립 없는 수단과 목적이 존재하는 곳에 공동 행동이 취해지도록 한다.

G-15.0105
세속 그룹

미국장로교는 세계 교회 선교를 완수하는 데 도움을 약속하는 운동, 조직, 사업기관, 교육, 문화 및 공공단체와도 대화와 공동 행동의 접근을 주도하고 반응할 것이다.

G-15.0200

2. 다른 교파와의 관계

G-15.0201
연락관계에
있는 교파들

미국장로교총회는 미국 밖에 있는 역사적 관계를 가져 온 여러 교파의 최고 치리회들과 통신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 우리 교단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에큐메니칼 연합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과도 연락하고 있으며 ; 총회가 승인한 에큐메니칼 합의서에 의해 인정받은 교파들과 완전교제를 갖는다.

G-15.0202
안수 인정

기독교의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가 노회의 관할권하에서 일하도록 적절한 청빙을 받을 때, 그 노회는 G-14.0508의 헌법적 조건이 충족된 후, 그 목사의 이전 안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목회 직책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본 교단에서 타교단으로 목사를 이적시킬 때도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G-15.0203
교회의 접수

a. 타교단의 개체교회가 본 교단의 노회에서 회원으로 받아 주기를 요청했을 때 그 노회는 그 교회가 그 관할권의 치리기관에 의해서 정식으로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및 해소

확인해야 하고, 또 교파간에 상호관계를 치리하는 그 교단의 최고 행정기관의 조언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책임과 권리에 일치시켜 그 교회를 받아들여야 한다(G-11.0103h).

교회의 해소

b. 본 교단의 개체교회가 타교파로 옮기고자 할 때도 비슷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G-11.0103i).

G-15.0204
연방, 또는 연합교회

a. 노회는 어느 개체교회가 타교파나 다른 교파들의 한 교회나 여러 교회와 연방 또는 연합교회를 조직하도록 권한을 줄 수 있고, 또는 타교파나 교파들의 대등한 치리회와 제휴하여 연방 또는 연합교회를 조직할 수도 있다. 연합교회의 형성에 관하여서는 G-16.0000을 참조하라.

연방 교회

b. 연방교회는 노회와 다른 치리회나 치리회들과의 합의 계획하에 그 교회생활과 사역을 진행시켜야 한다. 이 계획은 G-16.0000의 실재적 명세 규약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참여한 각 교단의 헌법(권징조례 또는 다른 조직 문서) 정책에 따라야 한다. 헌법이 다를 때에는 언제나 다른 교단의 규정이 허락하는 모든 경우에 한 교단의 의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언제나 의무 규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각 교단의 치리 해당기관에 상소하여 권위 있는 해석이나 헌법상의 수정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G-15.0300

3. 교회 연합

G-15.0301
조직적 연합

어느 다른 교파와 본 교단 교회의 완전한 조직적 연합은 다음의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

a. 총회의 연합안의 승인과 노회들에게 제안 ;

b. 노회의 3분의 2의 서면 찬성으로 승인 ;

c. 다음 총회에 의해서나 제안된 연합교회의 제안 안에 명시된 다른 총회에 의한 승인과 완결.

G-15.0302
에큐메니칼 선언

a.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미국장로교는 본 교단의 정규적으로 선택한 교회 대표가 도와서 만든 에큐메니칼 의견 일치의 안내 선언문을 때때로 받아도 된다. 그런 에큐메니칼 선언문을 받는 목적은 본 교단의 개체교회와 각 치리회가 교회의 일치를 모색하고, 가능한 미래적 형태를 발견하려는 공동 행동을 타교단과 취하도록 교회들을 지도하려는 데 있다.

총회에 의해 채택

b. 이 같은 에큐메니칼 선언문은 그런 공동 행동을 취하기 위한 지침으로써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각 노회에 선언문의 특수 목적과 승인의 효과와 함께 보내서 긍정이나 부정의 표결을 얻어야 한다. 다음 총회가 에큐메니칼 선언문을 각 노회의 다수 긍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을 때, 그 진술서가 에큐메니칼 활동 참여에 지침서 역할을 한다.

접수된 에큐메니칼 선언

c. 총회가 시인하고 다수 노회가 앞서 기술한 방법으로 긍정한 에큐메니칼 선언문은 "접수된 에큐메니칼 선언 지침서"로서 출판하여야 한다. 그런 선언문은 제18장

"개정"에 맞추어 채택되지 않는 한, G-1.0500에 정의된 대로 *미국장로교 헌법*의 일부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접수된 에큐메니칼 선언문의 지침하에서 이루어지는 에큐메니칼 활동은 오로지 헌법의 규정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d. 치리회들은 미국장로교가 완전 교제를 갖고 있는 교파들과는 상호 확인과 권고 아래 있으므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고 참여하도록 격려받고 허용되어야 한다.

제16장 연합교회

G-16.0000

G-16.0100

1. 개혁파 교회의 개체교회

G-16.0101
타개혁파
교회와 연합

본 교단의 개체교회는 타개혁파 교단의 한 개체교회나 여러 교회와 합하여 연합교회를 형성할 수 있다.

G-16.0200

2. 연합 계획안

G-16.0201
연합 계획안
총칙

이 규정들은 그런 교회들과의 연합 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

a. 각 교회가 각 교단 헌법이 요구한 통지와 정족수로 소집된 정기 공동의회에서 참석회원 2/3가 그 연합 계획을 승인하고 또 각 교단의 노회(또는 비등한 치리회)가 특별한 연합과 이 연합 계획안을 승인했을 때 ___________장로교회와 ___________교회에 의해 ____년 ____월 ____일부로 다음의 연합 계획안이 채택되었다.

목 적

b. 이 연합의 목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기독교 신앙을 배우며, 세계에서 교회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마련해 주고, 이 연합교회에 의해 우리는 연합하는 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을 함께 나누며, 연합교회를 위해 목사나 목사들의 사역을 마련해 준다.

명 칭

c. 본 연합교회 명칭은 ______________________ 교회라 칭한다.

종 속

d. 본 연합교회는 아래 항목 r, s, u, v에 설정한 대로 각 교단의 헌법에 종속해야 한다.

기록 검토

e. 당회(또는 비등한 치리회)는 매년 또는 요구하면 언제나 그 기록을 관할권의 각 치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 인

f. 연합교회의 교인은 연합 당시 교회 교인들과 연합교회의 당회가 받아들인 교인으로 한다.

교인 보고

g. 연합교회의 당회는 관할권의 각 치리회에 전체 교인수를 똑같이 보고해야 하고, 그 교인수를 총회(또는 비등한 치리회)의 회의록에 연합교회의 보고임을 밝히고 실제 전체 교인수도 지적해서 기록해야 한다. 교회학교 학생 숫자, 세례받은 자들 등의 유사한 보고, 그리고 재정 지출서도 당회가 만들어서 총회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제 직 h. 주로 연합교회의 제직, 곧 장로와 집사는 무엇보다도 연합하는 교회의 활동 제직들이어야 하고, 위의 항목 d와 아래 항목 r, s, u, v에 지적된 대로, 각 교단의 헌법 아래서 안수의 책임을 잘 수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제직 선거 i. 교회 연합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이어 모이는 첫 연례회의에서 상기항목 h에서 지적된 제직들을 대체하기 위한 새 연조별 제직은 아래 항목 v의 결과로서 유효한 헌법 절차에 따라 연합 공동의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연합교회의 목사들 j. 연합하는 교회 목사들의 목회관계는 이 계획을 승인한 노회의 결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해소된다. 그러나 그들은 연합교회의 뜻에 따르고 치리회의 승인하에 연합교회의 목사(담임목사나 부목사)가 될 자격이 있다.

정회원 k. 연합교회의 목사나 목사들은 직속 관할권의 각 치리회의 정회원과 책임 있는 회원이어야 하고, 아래 항목 s에 마련된 치리를 받아야 한다.

법인체 l. 연합교회는 해당 주 법하에서 법인체를 조직해야 한다. 이 법인체는 그 정관이나 헌장에 상기 항목 b, c, d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재 산 m. 연합교회의 모든 재산, 곧 부동산과 동산은 위의 항목 l항에 의해 형성된 법인체에 이양되어야 한다. 새 법인체는, 만일 있다면, 연합하는 교회의 법인체의 법적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새 법인체가 어떤 신탁, 재산, 또는 신탁의 본래 설정 규정에 따라서 받은 금전의 관리에 책임이 있다. 연합하는 교회의 모든 책임 부담은 연합교회의 책임 부담이어야 한다. 교회 법인체를 허락하지 않는 주에서는 이 항의 목적은 그 주 법과 조화를 이루어서 성취되어야 한다.

재단이사 n. 법인체의(또는 비법인체의) 이사는 아래 항목 v에 해석된 항목 d에 밝힌 헌법 규정에 따라 민법과 조화를 이루어 선출되어야 한다.

자선헌금 o. 어떤 목적이나 목적들을 지정해서 개인 선물을 바치는 기증자의 기본권은 인정하면서, 연합 당회는 일반 선교헌금이나 자선 프로그램 헌금을 바치도록 공동의회에 매년 제안해야 하며, 이것들은 각 교단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목적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 비율은 상급 치리회의 요청에 따라 당회가 결정하는 대로 정해야 한다.

상회비 p. 상회비나 부담금은 연합교회의 전체 활동 교인수에 근거해서 관할권의 치리회에 지불하되 그 관련 교단간에 공평히 분배되어야 한다.

당 회 q. 연합교회의 모든 교인은 당회의 치리하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각 교단의 헌법에 부합한 대로, 다른 편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한 교단 헌법의 의무규정에 부합한 대로, 그것들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선택에 따라 합의한 법규에 따라야 한다.

상소 또는 고소 r. 당회의 조처에 반대해서 하는 상소나 고소는 교인의 선택에 따라 다만 상급 치리회(노회 또는 비등한 치리회)에만 할 수 있고, 부가적 상소와 고소는 본래 교인들이 선택한 치리회 안에서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은 당회와 교인에게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사법 사건

s. 목사나 목사들은 노회나 그와 비등한 치리회의 권징에 속해야 한다. 어느 치리회가 어떤 행동을 취할 때는 타치리회로부터 위원을 초청하여 전권위원, 기소자나 고소 내용을 만들고 추진할 기소위원회에 참여케 해야 한다. 상소의 경우, 그 사건은 상소를 시작한 그 교회의 최상급 치리회에서 최종으로 결정하며, 그 결정 사항은 관할권의 치리회에게 똑같은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연 금

t. 목사나 목사들은 교단 중 어느 한 교단의 연금 계획에 참가해야 한다. 만일 목사가 이미 한쪽 교단의 연금 계획에 가담하고 있다면, 회원권은 그 계획에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만일 목사가 어느 연금 계획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둘 중 어느 한 연금 계획을 선택해야 한다.

행정적 고소

u. 당회의 행정관리 조처에 반대한 고소는 고소자의 선택에 따라서 한쪽 교단의 헌법적 규정하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일단 한쪽 상급 치리회에 고소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교단은 관할권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

헌법의 상치

v. 교단간의 헌법이 다를 경우에는 언제나 다른 교단이 허락하면 한쪽 교단의 의무 규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의무 규정이 상치되는 경우(상기 q항에 주어진 규정을 제외하고), 연합교회의 당회는 그 상급 치리회에 건의해서 최고 치리회로 하여금 권위 있는 해석이나 헌법 개정에 의해 상치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해 산

w. 연합교회는 1년 이하, 그리고 2년 이상 넘지 않는 기간에 소집된 두 공동의회에서 2/3 투표수에 의해 관련 치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산될 수 있다. 연합교회가 해산될 경우 연합교회의 모든 재산, 곧 부동산과 동산은 그 상급 치리회간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G-16.0300

3. 타교단의 개체교회

G-16.0301
타교단 교회와의 연합

노회의 승인과 총회의 동의를 얻어서 본 교단의 개체교회들은 개혁파 교회 이외의 타교단의 하나, 또는 더 많은 개체교회들과 연합교회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이며, 세례와 성찬의 성례전을 집행하는 교회일 때다.

G-16.0400

4. 연합 계획안

G-16.0401
연합 계획안
총 칙

다음의 연합 계획안이 연합교회를 형성시키려고 할 때 채택되어야 한다 :

a. 연합교회는 아래 항목 l, m, o, p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참여한 각 교단의 헌법에 따라야 한다.

교회의 치리

b. 연합교회는 그 교인 중에서 교인에 의해 선출한 대표기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한다. 이 치리회는 당회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 치리회의 회원이 장로들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연합 계획안이 장로들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 치리회는

장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회 원 c. 연합교회의 치리회의 회원은 상급 치리회의 회원과 직원이 될 자격이 있어야 한다.

동일하게 보고 d. 연합교회의 치리회는 관할권의 각 치리회에 전체 교인수를 똑같이 보고해야 하고, 각 교단의 회록에 연합교회의 보고임을 밝히고, 또 실제 전체 교인수도 지적해서 기록해야 한다. 교회학교 학생수, 세례받은 자들 등의 유사한 보고서, 그리고 재정 지출서도 치리회가 만들어서 회의록에 명시해야 한다.

목사들 e. 연합교회의 목사나 목사들은 직속 관할권의 각 치리회의 정회원 및 책임 있는 회원이어야 하고, 아래 조항 m에 마련된 치리를 받아야 한다.

법인체 f. 연합교회는 해당 주법이 허용하면 법인체를 형성해야 한다. 이 법인체는 그 정관이나 헌장에 상기 조항 a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재 산 g. 연합교회의 모든 재산, 곧 부동산과 동산은 상기 조항 f에 의해 형성된 법인체에 이양되어야 한다. 새 법인체는, 만일 있다면, 연합하는 교회의 법인체가 법적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새 법인체가 어떤 신탁, 재산이나 신탁의 본래 설정 규정에 따라서 받은 금전을 관장해야 한다. 연합하는 교회의 모든 책임 부담은 연합교회의 책임 부담이어야 한다. 교회 법인체를 허락하지 않는 주에서는 이 항의 목적은 그 주 법과 조화를 이루어서 성취되어야 한다.

이 사 h. 법인체(또는 비법인체)의 이사는 아래 조항 p에 해석된 상기 조항 a에 밝힌 헌법 규정에 따라 민법과 조화를 이루어 선출되어야 한다.

자선헌금 i. 어떤 목적이나 목적들을 지정해서 개인 선물을 바치는 기증자의 기본권은 인정하면서, 연합교회의 치리회는 일반 선교헌금이나 자선헌금을 바치도록 공동회의에 매년 제안해야 하며, 이것들은 각 교단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목적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 비율은 상급 치리회의 요청에 따라 치리회가 결정하는 대로 정해야 한다.

상회비 j. 상회비나 부담금은 연합교회의 전체 활동 교인수에 근거해서 각 관할권의 치리회에 내되, 그 관련 교단간에 공평히 분배되어야 한다.

치 리 k. 연합교회의 모든 교인은 피차 합의된 법규에 따라 치리회의 치리하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각 교단의 헌법에 부합한 대로, 한쪽 법규들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한 교단 헌법의 의무규정에 부합한 대로, 그것들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치리회의 선택에 따라 합의한 법규에 따라야 한다.

상소 또는 고소 l. 치리회의 조처에 반대해서 하는 상소나 고소는 교인의 선택에 따라 다만 하나의 상급 치리회에만 할 수 있고, 부과적인 상소와 고소는 본래 교인들이 선택한 치리회 안에서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은 그 치리회와 교인들에게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사법 소송 m. 목사나 목사들은 관할권의 치리회의 권징에 속해야 한다. 어느 치리회가 어떤 소송 행동을 취할 때는 타치리회로부터 위원을 초청하여 전권위원, 기소자나 고소 내용을 만들고 추진할 기소위원회에 참여케 해야 한다. 그 사건은 상소를

시작한 그 교회의 최상급 치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그 결정 사항은 관할권의 치리회에게 똑같은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연 금

n. 목사나 목사들은 여러 교단 중 어느 한 교단의 연금 계획에 참가해야 한다. 만일 목사가 이미 한쪽 교단의 연금 계획에 가담하고 있다면, 그 계획의 회원권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만일 목사가 어느 연금 계획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면, 둘 중 어느 한 연금 계획을 선택하여야 한다.

행정적 고소

o. 치리회의 행정적 관리 조처에 반대한 고소는 고소자의 선택에 따라서 한쪽 교단의 헌법적 규정하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일단 한쪽 교단에 고소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교단은 관할권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

헌법의 상치

p. 교단간의 헌법이 다를 경우에는 언제나, 다른 교단이 허락하면, 한쪽 교단의 의무 규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의무 규정이 상치되는 때(상기 k조항에 있는 규정을 제외하고), 연합교회의 치리회는 상급 치리회에 건의해서 최고 치리회로 하여금 권위 있는 해석이나 헌법 개정에 의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해 산

q. 연합교회는 1년 이하, 그리고 2년 이상 넘지 않는 기간에 소집된 두 공동의회에서 2/3 투표수에 의해 해산될 수 있으며, 관련 치리회의 승인을 얻어 해산될 수 있다. 연합교회가 해산될 경우 연합교회의 모든 재산, 곧 부동산과 동산은 그 상급 치리회간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G-16.0500

5. 예 외

G-16.0501
헌법 변경
불가

본장에 의해 조직된 연합교회, 그 교인들, 그 직원들이나 목사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항목 1, 2, 3과 4에 있는 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본 교단의 헌법을 완화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G-17.0000

제17장 연합 치리회

G-17.0100

1. 위임 수권

G-17.0101
위임 수권

본 교단의 노회는 각각 소속한 대회나 비등한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른 개혁파 교단에 속한 하나나 그 이상의 비등한 치리회와 연합노회를 형성할 수 있다.

G-17.0200

2. 연합 계획안

G-17.0201
연합 계획안

다음의 연합계획안은 간여한 각 노회(또는 비등한 치리회)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

총 칙

a. 본 계획안은____________ 노회와____________노회에 의해 정기노회 참석 회원 2/3 투표로써 각 노회가 그 계획안을 승인했고, 그 사안이 의사록에 이미 기록되었고, 그 연합과 이 계획안이 관할권의 대회(또는 비등한 치리회)의 승인을 얻었기에, ________________________(일자)로 채택되었다.

목 적

b. 연합의 목적은 연합된 증거와 선교의 촉진, 일원화한 양육 프로그램의 행정, 지속과 연합노회 경내에 있는 교회의 성장, 그리고 연합하는 치리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 증서를 보유하고 기능을 마련하며, 각 교단의 헌법에 명시된 대로 노회의 의무를 수행할 연합노회 경내에 있는 교회들을 관할하는 데 있다.

헌법상의 요구

c. 연합노회는 아래에 규정된 대로 각 교단의 헌법에 종속해야 한다 :

회 록

(1) 노회는 그 기록을 매년 또는 요구하면 언제나 관할권의 대회(또는 비등한 치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선교비

(2) 노회는 각 교단에 동등하며 완전한 책임이 있다. 노회는 그 개체교회에 매년 요구하여 자선 헌금과 일반 선교비를 조정해야 하고, 결국 노회는 각 교단의 프로그램을 동등하게 지지해야 한다.

상회비

(3) 상회비나 부담금은 연합노회의 활동교인의 능력에 근거해서 각기 관할권의 치리회에 지불하되 관련 교단 사이에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그런 절차가 불공평하다고 증명하는 경우에는, 각 교단의 관할권의 치리회의 승인으로 대안의 근거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런 대안이 채택되면 주기별로 검토해야 한다.

상설 법규

(4) 연합노회는 피차 합의된 법규에 따라 대회와 총회(또는 비등한 치리회)의 치

리하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각 교단의 헌법에 부합한 대로, 다른 편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각 교단법의 의무규정에 부합한 대로, 그것들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그 노회의 선택에 따라 합의한 법규에 따라야 한다.

상소 또는 고소

(5) 노회의 조처에 반대해서 하는 상소와 고소는 다만 한 교단의 대회에만 해야 한다. 그 교단은 노회에 의해 선택되어야 하고 같은 사건에 있어 부과적 상소나 고소는 본래 결의한 치리회 안에서 해야 하고, 이루어진 결정은 그런 사건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

행정적 고소

(6) 노회의 행정조처에 반대하는 고소는 노회의 결정에 따라 한쪽 교단의 헌법적 규정하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 그리고 일단 한 교단에 고소했으면 다른 교단의 치리회가 똑같은 문제에 있어서 관할권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

헌법의 상치

(7) 각 교단의 헌법이 다를 경우에는 언제나 타교단이 허락하면 한 교단의 의무규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한다. 의무 규정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상기 (4)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연합노회는 그 교단의 최상급 치리회에 헌의해서 권위 있는 해석이나 헌법 개정에 의해서 상치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면 제

(8) 미국장로교의 G-8.0500의 규정은 연합노회의 형성 이후에 조직된 연합교회에만, 그리고 전에 비슷하게 명시된 헌법 규정하에 있었던 연합 치리회에 속한 연합교회에 적용되어야 한다.

연합 노회의 회원

d. 연합노회의 회원은 연합하는 노회의 모든 목사들과 연합하는 노회의 모든 교회들(장로나 그 평신도 대표자), 그리고 연합 발효 일자 이후에 연합노회에 접수된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교단의 헌법이 장로나 평신도 대표자에 관해 서로 다른 경우, 최다수 대표성을 선호하는 규정을 적용시켜야 한다.

회원권

e. 연합노회의 교회들은 각 교단에 속한 연합교회로 간주되어야 한다. 각 개체교회는 전체 회원의 균등한 분할에 근거하여, 이런 일이 벌써 이루어졌다는 명시와 함께 각기 총회와 관할 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목 사

f. 연합노회의 목사는 각 교단의 정회원, 그리고 책임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목사들은 본 계획안에 마련된 대로 교단의 관할권과 치리에 속해야만 한다. 목사와 장로나 평신도 대표는 각 교단의 헌법에 규정된 대로 어느 총회의 총대로 봉사할 자격이 있다. 총회의 총대는 노회의 전체 활동회원의 공평한 분할에 근거해서 대표로 선출되어야 한다.

일반 선교비와 자선헌금

g. 연합노회는 그 개체교회에 일반 선교비와 자선 헌금 프로그램을 제안할 책임이 있으며 그것들은 총회와 대회의 요청, 그리고 노회의 필요에 대한 타당하고 공정한 응답이라고 판단된다. 각 당회는 교인들에게 일반 선교비와 자선 헌금 프로그램을 지원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법인체

h. 연합노회는 해당 주 법하에서 법인체를 조직해야 한다. 이 법인체는 그 정관이나 헌장에 상기 항목 b와 c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연합하는 노회의 모든 재산, 곧 부동산과 동산은 이 조항하에서 형성된 법인체나 법인체들에게 이양

되어야 한다. 새 법인체는, 만일 있다면, 연합하는 노회의 법인체의 법적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 법인체가 어떤 신탁, 재산이나 신탁의 본래 설정 규정에 따라서 받은 금전의 관리 책임이 있다. 연합하는 노회의 모든 책임 부담은 연합노회의 책임 부담이어야 한다. 교회 법인체를 허락하지 않는 주에서는 이 항의 목적은 그 주 법과 조화를 이루어서 성취되어야 한다.

상설 규정

i. 연합노회는 각 교단의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노회의 모든 기능을 완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회의 운영을 정의할 수 있는 상설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G-17.0201c(4)).

연금 계획

j. 목사의 소명 수행을 위하여 노회나 노회 소속의 어느 교회의 청빙을 받아야 하는 목사나 노회의 직원인 목사는 한 교단의 연금 계획에 참여하여야 한다. 만일 목사가 이미 한쪽 연금 계획에 가담하고 있다면 회원권은 그 계획에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만일 목사가 어느 계획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한 교단의 연금 계획을 선택하여 회원이 되어야 한다.

해 산

k. 연합노회는 1년 이하, 그리고 2년 이상 넘지 않는 기간에 소집된 노회의 두 정기회의에서 2/3 투표수에 의해 관련 대회의 승인을 얻어 해산될 수 있다.

(1) 연합노회가 해산될 경우 연합노회의 모든 재산, 곧 부동산과 동산은, 만일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면, 재산의 본래 소유에 근거해서 교단이나 관할 치리회 사이에 분할을 해야 한다. 만약 본래의 소유가 미결일 경우에는, 재산은 적절히 교단이나 관할 치리회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2) 해체된 연합노회 안에 있는 개체교회는 그들이 G-16.0201w의 규정에 따라 신분 변경을 위한 투표를 하지 않는 한, 연합교회로서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G-17.0300

3. 예 외

G-17.0301
헌법 변경
불가

본장에 의해 조직된 연합노회, 그 교회들이나 목사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연합 계획의 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서 본 교단의 헌법을 완화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18장 개 정

G-18.0000

G-18.0100

1. 개 혁

G-18.0101
개정에 의한
개혁

미국장로교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성령에 의해서 항상 개혁했고 항상 개혁 중인 교회의 그 역사적 전통에 충실해야 한다. 이런 신앙 가운데서 개정 절차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의 말씀을 통해 더 밝은 빛을 주시니 성실성의 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G-18.0200

2. 고백문서

G-18.0201
고백문서 개정

a. 본 교단의 고백문서들은 오로지 다음의 방편으로써만 개정될 수 있다 :

(1) 총회에 의한 개정안 승인과 각 노회에 그것의 제안 ;

(2) 각 노회의 2/3의 투표로 서면 승인 ;

(3) 차기 총회에 의한 승인과 제정.

특별위원회

b. 고백문서의 그런 개정이 각 노회에 송부되기 전에, 총회는 그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한 대회에서 2명 이하, 총위원수 15명 이상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나 개정안을 발의한 치리회(후자의 경우에는 대리인)와 협의해야 하며, 다음 총회에 그 제안을 보고해야 한다.

G-18.0300

3. *규례서*

G-18.0301
규례서 개정

규례서 개정은 다음의 방편으로써만 개정할 수 있다 :

a. 모든 *규례서*의 개정안은 다음 총회가 열리기 적어도 120일 이전에 총회서기에게 서면으로 통신 연락하여야 한다.

b. 총회서기는 그러한 모든 개정안을 헌법자문위원회(G-13.0112)에 회부해야 하고, 이 위원회는 언어의 명확성과 일관성, 그리고 *미국장로교 헌법*의 다른 규정과의 적합성을 위해 개정안을 검토해야 한다. 헌법자문위원회는 헌법적 변경을 제안한 개정안과 그 위원회에 이첩된 그 제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제안과 함께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총회는 헌법 자문위원회의 보고와 어떤 제안을 고려하기 전에는 어떠한

개정안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

c. 제안된 개정안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각 노회에 투표를 위해 회부해야 한다.

d. 그 다음 총회가 각 노회에 회부한 *규례서* 개정안이 다수 노회에 의해서 긍정적 투표를 얻었다는 서면 보고를 받았을 때, 총회는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해야 한다.

e. 만일 총회가 노회의 다수의 긍정적 투표를 얻은 다음에 총회가 그런 개정안이나 개정안들을 선언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정안은 각 노회의 다수 긍정적 투표가 보고된 총회와 함께 효력을 가져야 한다.

G-18.0302
개정 불가 조항

개정에는 다음에 지적된 바와 같은 제한이 있다.

a. 정치형태의 다음 조항은 개정될 수 없다 :
G-8.0701

b. 정치형태의 아래 조항은 미국장로교가 설립된 후 15년 이내에 개정될 수 없다 :
G-14.0202a(2)

G-18.0400

4. 특별 규정의 개정

G-18.0401
특별 규정의 개정

고백문서들의 개정과 완전한 유기적 연합을 이룬 특별 규정들은(G-15.0300) 그것들이 규정한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만 개정할 수 있다.

예배모범

The Directory For Worship

[본 문]

예배모범[1]

머리말

a. 이 예배모범은 교회생활은 하나이고 그 예배, 증언, 봉사는 불가분의 것이라는 확신을 반영시킨다. 그 신학은 성경에 근거되어 있고, 미국장로교의 *신앙고백서*에 의해 지시받으며, 또한 에큐메니칼 논의에 예민한 관심을 갖는다. 풍부한 전통 유산과 장로교 내의 문화적 다양성이 이 예배모범에 반영되어 있고 고무되어 있다. 예배모범은 고정된 예배 순서를 마련해 준 예배서도 아니고, 기도나 예식의 수집서, 또는 프로그램 안내서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개혁파 예배를 기저로 한 신학을 진술하며, 예배를 위한 적절한 형식의 윤곽을 말한 것이다. 이 예배모범은 예배를 위한 가능성 시사와 예배의 개발을 유도하고, 예배의 계속적인 개혁을 권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장로교 치리회와 개체교회 생활에서 예배 행위의 표준을 세우고 그 규범을 제공한다. 미국장로교의 예배질서를 위한 헌법적 문서로서 본 예배모범은 본 교단의 권위서이다.

b. 이 예배모범은 예배에 관해 단순히 서술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c. 이 예배모범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에 귀를 기울이고, 또 본 교단의 *신앙고백서*에 의해 지도받도록 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으로 기록했다. 성경에서 직접 인용한 말씀들 또는 고백서로부터의 인용어는 그 본문에 그렇게 표시되었다. 이 예배모범(W-)이나 정치형태(G-)와 권징조례(D-)의 어떤 부분에 대한 참조는 이 예배모범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본문의 괄호 안에 표기해 놓았다. 본문 아래쪽에 있는 각주는 이 예배모범의 발전과정을 형성했던 성경적이며 고백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들 각주에는 교회생활의 각 계층에 교육교재와 자료로 이 예배모범을 사용케 함으로써 독자를 성경과 신앙고백에로 인도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

1) 본서 전체를 통해서 다음 약자가 쓰여진다 :
G－정치형태
W－예배모범
D－권징조례

W-1.0000

제1장 크리스천 예배의 활력

W-1.1000

1. 크리스천 예배 : 서론

W-1.1001
크리스천 예배

크리스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존귀, 영광과 능력을 기쁨으로 돌려 드리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임재하심을 인정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장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적 행위에 응답함으로써, 신자들은 변화되고 새로워진다. 예배에서 신자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세계에서 하나님의 봉사에 동참할 준비를 갖춘다.

W-1.1002
하나님의 주도권

a. 하나님의 성령이 백성들을 일깨워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삶을 주장하심을 자각케 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호소하고, 언행으로 자기 계시를 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기억하고 선포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그들의 삶을 헌신하면서 응답하도록 그들을 감동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면하심

b. 하나님의 백성이 최초로 기억하는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들과 대면하시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창조와 언약, 회개의 촉구와 용서를 주시는 일에 주도권을 취하신다. 하나님은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며 ;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하신다(렘 1 : 10).

하나님이 인간 조건 속으로 들어오심

c.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계시, 구속 및 용서의 행위로써 온전히 인간생활 속에 들어오셨다. 깨어져 버린 세상 속에 들어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인간생활을 회복시키셨다. 이렇게 창조된 세계 속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창조주를 알고 찬양하는 방편으로써 시간과 공간, 물질과 인간생활을 완성케 하셨다.

W-1.1003
예수 그리스도

a.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서 하나님과 인간생활은 혼동이 아니라 일치를 이루었고, 분리가 아니라 구별을 이루었다.

W-1.1001 : 사 6 ; 계 4 : 11 ; 스콧고백 3.01 ; 제2스위스고백 5.023, 5.135 ; 웨스트민스터고백 6.112, 6.113 ; 대요리문답 7.214, 7.215 ; 소요리문답 7.046, 7.047, 7.050, 7.051 ; 1967년도 고백 9.35－9.37

W-1.1002 : 롬 10 : 13 ; 고전 11 : 26, 12 : 3 ; 스콧고백 3.02, 3.04－3.06, 3.12 ; 1967년도 고백 9.07－9.09, 9.18, 9.20

완전한 인간의 응답

b.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 온전한 인간적 응답으로 바치셨다. 구속의 생명이신 그가 구속받은 삶의 형태와 목적을 계시하신다. 예수의 삶이 본래적 크리스천 예배의 본질을 나타내신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 살아 계신 하나님

c. 예수 그리스도는 공동생활 속에 임재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신앙의 증언 가운데서 선포된 그가
(1) 창조시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2) 계약의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3)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는
(a)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b) 십자가에 처형당한 후 권능으로 부활하시고,
(c) 승리하사 심판과 통치하시려 다시 오신다.

W-1.1004 말씀과 성례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선포된 말씀인 설교, 그리고 수행되고 인증된 말씀인 성례전은 살아 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한다. 성경과 선포와 성례전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현존하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간생활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불어넣으며 유지하는 일을 하신다. 크리스천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1)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2) 성례전에서 수행되는 말씀을 받으며,
(3) 세상에서 말씀을 발견하며, 그리고
(4) 세상 안으로 말씀을 따라가도록 보냄 받은 것이다.

W-1.1005 공동체 내에서 신자의 응답

a. 태초부터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하여 남녀를 창조하셨고 계약으로 백성을 부르셨다. 예수는 그의 이름으로 모이는 백성들을 부르셨고 파송하셨고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성령은 계약의 새 공동체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질서를 유지케 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신다. 성령은 각 교인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룩하는 은사를 주셨고, 또 목회사역에 임하도록 준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드리는 크리스천의 응답은 공동체 안에 있다.

예배와 봉사에서 응답

b.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 선포, 기념과 헌신의 행위 안에서 찬양과 감사의 말과 행동으로 응답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 크리스천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1) 삶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서,

W-1.1003 : 렘 33 : 1-9 ; 요 1 : 1-14 ; 빌 2 : 9-11 ; 히 1 : 2 ; 계 19 : 11-16 ; 스콧고백 3.06, 3.09-3.11 ; 제2스위스고백 5.062, 5.064, 5.146 ; 웨스트민스터고백 6.043-6.047 ; 1967년도 고백 9.07-9.11, 9.19
W-1.1004 : 요 1 : 14-18 ; 롬 10 : 8 ; 고후 4 : 4b-6 ; 빌 2 : 5-11 ; 골 1 : 15 ; 바르멘선언 8.11, 8.14, 8.17 ; 1967년도 고백 9.07, 9.20, 9.27, 9.30, 9.35-9.37
W-1.1005 : 마 28 : 20 ; 요 14 : 18- ; 롬 12 : 6, 8 ; 고전 12 ; 엡 4 : 12- ; 벧전 4 : 10 ; 하이델베르크문답 4.055 ; 1967년도 고백 9.17-9.19, 9.20, 9.22, 9.31-9.33

(2) 개인적 제자직에서,
(3) 상호 목회에서, 그리고
(4) 세상에서의 공동 목회를 통해서 한다.

W-1.2000

2. 예배의 언어

W-1.2001
하나님께
응답의 언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존재케 하신다.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백성은 예배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도적 행위에 응답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임재하심을 간구하고, 기도로써 하나님께 빌고, 침묵과 명상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손을 들어 찬양의 소리를 외치며, 노래하고, 노래를 지으며 춤을 춘다. 마음과 영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한가지로 그들은 예배의 언어, 연극, 그리고 아름다운 행렬에 참여한다.

W-1.2002
상징적 언어

백성이 하나님께 응답하고 서로간에 하나님 경험을 소통할 때, 그들은 상징적 방편을 이용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물을 초월해 계시므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게 격하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단순히 인간의 상징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적절히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실재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 계시로써 인간에게 적응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사용하는 상징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활동에 응답하고, 함께 참여하고 이해하는 데 적절할 수가 있는데,

a.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b. 계약역사의 사건들 가운데서, 그리고
c. 성육신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하셨다.

말로 표현된 또는 행동화된 상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성실히 표현하기에 그것들은 크리스천의 예배를 위해 순수하고 적절한 것들이다.

W-1.2003
구약의 상징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자를 예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자, 계약을 만든 분, 해방자, 심판자, 구속자, 목자, 위로자, 최고 통치자, 생산자, 또는 사자(使者)라고 말함으로써, 인간 경험에서 나온 상징들을 구사하였다. 자연계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바위, 생수, 불, 독수리, 암탉, 사자 또는 빛의 성격으로 묘사했다. 그들의 예배는 역시 상징적인 행동 언어로 가득 차 있다 :

금식하고 잔치하고,
기뻐하고 통곡하고,
행진하고 쉬고,
춤추고 손뼉 치고,

W-1.2000 : 제2스위스고백 5.217 ; 1967년도 고백 9.50
W-1.2002 : 사 40 : 18-25, 55 : 8, 9 ; 요 1 : 1-18 ; 롬 11 : 33-36 ; 골 1 : 15-20 ; 히 1 : 1-3
W-1.2003 : 시편, 이사야 또 다른 시가와 예언서들

정화하고 헌신하고,
할례하고 기름 붓고,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음악하고 노래로 주를 찬양한다.

W-1.2004
신약의 상징들

a. 예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구약의 상징들과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예배의 상징적 행위에 참여했다. 많은 경우에 그는 하나님을 개인화하고, 익숙한 하나님 상징들을 새롭게 심화시켰다. 특히 그가 친근한 하나님 관계를 아바 아버지라고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자신을 구약의 상징적 용어-선한 목자, 이스라엘의 신부, 사람의 아들-로 말하였고, 그 의미를 강화하였다. 그는 구제, 세례, 떡을 떼는 일 같은 그 당대의 종교적 관례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예수는 인간적 연민의 행동-병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발을 씻기신 일-을 보통 하셨고, 그것들을 하나님 섬기는 방법으로 변화시켰다.

그리스도는
새 상징의 초점

b. 부활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상징의 초점이 되었다. 신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를 제2아담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묘사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면서 새로운 실재를 위해 구약의 상징적 용어를 자주 사용했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상징 언어를 구사하였다 : 영원한 말씀, 만물의 첫열매, 갈라진 원수의 벽을 헐어 치우는 우리의 평화 등. 찬송과 다른 찬양 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신 참된 상징으로서 영광을 받았다(W-1.1003-.1005).

W-1.2005
확실하고
적절한 언어

각 시대를 통하여 모든 문화에서 교회는 성경적 상징들, 이미지, 이야기, 그리고 말들을 예배에서 사용했고 채택하였다. 교회가 사용한 이런 용어들은 언제나 확실하고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 개혁파의 전통을 위한 그 다양한 표현 가운데서, 그 역사적이고 문화적 언어 사용은 다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 성서적 증언을 반영할 때에만 확실한 것으로 인정된다. 언어는 예배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것을 가치있게 사용할 때 적절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본질상 적절한 언어는

a. 합리적인 것보다 더 뜻깊은 표현이어야 하고,
b. 건설적이고 설득력이 있음과 동시에 전달하고 서술적 표현이어야 하고,
c. 정열과 동시에 질서를 창조하고,
d. 개인의 헌신과 동시에 전체 신앙공동체의 언어이어야 한다.

적절한 언어는 그들 자신의 말과 행동양식에 있어서 확실하게 성서적 진리를 반영하는 전통의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전통의 언어를 존중하고 또 적절히 사용한다. 그렇지만 교회는 예배에 적절한 언어를 찾아 새롭게 혁신하려는 자유가 있다. 오랜 전통의 형식과 정한 순서를 존중하면서 교회는 각

W-1.2004 : 요 1 : 1, 36 ; 고전 15 : 45 ; 엡 2 : 14 ; 골 1 : 15

시대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심에 자유로이 응답하도록 그것들을 재형성할 수 있다.

W-1.2006
포괄적인 언어

a. 미국장로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여러 백성의 한가족이므로 그 예배에 쓰일 적절한 언어는 이 백성들의 풍부한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한다. 예배의 형식, 행동, 언어, 또는 장치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배제하거나 신자의 요구와 주체성을 부인하는 경우, 그런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에 충실하지 않게 된다.

다양한 언어

b. 교회는 성경과 우리의 신학적 전통들이 그렇듯이 의도적으로 다양하고 서로 다른 하나님에 대한 용어를 예배에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회가 그런 방법으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신앙공동체의 모든 교인들은 자신들이 포함되었고, 인정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대우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온 세계에 복음 증거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교회는 성경의 진리에 충실한 언어, 그리고 성별, 피부 색깔, 또는 그 밖의 생활환경 때문에 사람들을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W-1.3000

3. 시간, 장소, 물질

W-1.3010

a. 시 간

W-1.3011
안식일, 주의 날

(1) 크리스천은 어느 때나 예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계약 공동체는 날마다 예배드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께 거룩히 지키도록 7일 중 하루를 선별하셨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전적으로 선별하여 하나님께 바친 날로 이해했었다. 신약에서는 주간의 첫째 날, 부활의 날을 계약의 새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날로 지켰다. 그들은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말씀과 성례전

(2) 아주 초창기부터 교회는 말씀선포와 해설과 성례전의 축하를 위해 주의 날에 함께 모였다. 개혁파 전통은 말씀 듣고 부활의 주를 만날 기대 가운데서 성례전을 축하하며, 기도와 예배 가운데서 응답하는 때로써 주의 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W-3.2001 ; W-5.5001).

W-1.3012
매일 드린 예배

(1) 이스라엘의 예배에서는 날마다 몇 시간씩 설정해 놓고 찬송과 감사의 희생제사를 드렸다. 비록 성전을 잃어버린 후에도 아침, 정오, 저녁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설정해 두었다. 예수는 정기적 기도시간을 설정했고, 신앙공동체는 날마다 성전에서,

---

W-1.2006 : 고전 9 : 19-23 ; 10 : 23, 24, 31-33 ; 갈 3 : 28 ; 약 2 : 1-9

W-1.3011 : 창 1 : 3, 14- ; 2 : 3 ; 출 20 : 8-11 ; 신 5 : 12-15 ; 행 20 : 7 ; 계 1 : 10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103 ; 제2스위스 고백 5.223-5.226 ; 웨스트민스터 고백 6.118-6.119 ; 소요리문답 7.060 ; 대요리문답 7.226-7.227

W-1.3012 : 행 1 : 14 ; 2 : 42 ; 3 : 1 ; 10 : 9 ; 웨스트민스터고백 6.117

다락방에서, 그리고 그들의 집에 모여 기도했다. 신약의 저자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교회에 권고했다. 세기를 거쳐, 교회는 역사적으로 일과로 알려진 매일 기도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지속해 왔다.

기도와 성경

(2) 개혁파 교회 전통은 일과의 패턴을 조절했는데, 기도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성경봉독 및 그 해설을 듣는 경우를 마련한 것이다. 매일의 공중예배는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역하고 있으니 교회의 생활과 증거의 차원으로서 인정되었다. 생활양식의 변화는 가정과 개인예배에서 매일 기도를 드리도록 했고, 그것은 크리스천 생활의 정기적 훈련의 일부로서 권장되어 왔다(W-3.4000 ; W-5.2000 ; W-5.7000).

W-1.3013
교회력

하나님이 날들을 창조하셨고 때를 정하셨으므로 하나님은 때의 주기를 만드셨고 예배드리는 계절도 정하셨다. 구약에서 백성은 하나님 예배의 축제 행사로써 금식과 축제의 절기를 지켰었다. 예수는 이 축제 절기를 지키셨다. 신약의 교회에게는 이 축제의 절기들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의해서 변형되었다.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의 약속은 계절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계절이 연례 예배의 주기적 리듬을 정하고 교회생활에서 봉독하고 선포할 본문의 선택을 지도한다(W-3.2002).

W-1.3020 b. 장 소

W-1.3021
구 약

크리스천은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은 공간도 창조하셨고 질서를 주셨기 때문이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여러 다른 장소에서 만나 주셨음을 말해 준다. 하지만 특정 장소는 백성이 특별히 하나님을 만났전 장소로써 인정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만남을 기억하고 강화할 방편으로 장소를 마련했다. 그 곳이 족장들의 돌로 쌓은 제단이든, 방황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막이든, 예루살렘에 있는 왕국의 성전이든, 또는 흩어진 유대인의 가정-회당이든 간에 각기 그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며 표현하는 장소로 지정되었다.

W-1.3022
예 수

예수의 생애는 예배 장소에 대한 계약공동체의 이해를 반영시킨다. 그는 정기적으로 회당과 성전에서, 광야와 갈릴리 언덕에서 예배하였다. 예수는 특별히 어느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을 한정시켜 놓은 생각을 거부했다.

W-1.3023
초대교회

크리스천 예배의 실재를 확인하는 일은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이었던 까닭에 초대 크리스천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가정에서, 카타콤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예배할 수 있었다. 말씀을 해석하고 빵을 떼는 무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 어디나 그 장소는 거룩히 여겨졌다. 그렇지만 교회는 부활의 그리스도의 현

W-1.3013 : 롬 14 : 5, 6 ; 골 2 : 16, 17
W-1.3020 : 웨스트민스터고백 6.117
W-1.3022 : 요 4 : 21-24

존 가운데서 모이고 찬양과 예배로 응답하는 특정한 장소를 선별하기 시작했다. 오늘날까지 교회가 모일 때, 그것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특징짓는 공동체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이 중심이다.

W-1.3024
장소 배치

한 예배 장소가 선별되었을 때, 그 곳은 교인들이 접근과 모임을 용이하게 해야 하며, 공동체 의식을 촉진시켜야 하며, 또 교인에게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갖게 해야 한다. 그 곳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설교하거나 강해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 곳은 세례반이나 세례못, 그리고 주의 만찬을 교인들이 축하하는 데 적당한 상과 함께 성례전의 축하와 적절한 관리를 마련해야 한다. 장소의 배치는 말씀과 성례전, 그리고 기독교 예배의 중심 사이에 필수적 관련성을 가시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W-1.3030

c. 물 질

W-1.3031
구 약

하나님께서는 물질 세계를 만드셨고 그것을 좋다고 선언하셨다. 계약공동체는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고 이해했다. 그들은 또한 물질이 하나님을 적절히 찬양하고 감사하는 표현의 방법일 수 있다고 보아 왔다. 법궤, 진설병, 짜서 만든 수놓은 천, 대야, 기름, 등불, 악기, 곡식, 과일, 동물 등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표현물이 되었다. 그렇지만 예언자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대용으로 물질을 드리는 행위를 경고했다.

W-1.3032
예 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은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은 물질적 실재를 거룩하게 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쳤다. 그는 그의 목회활동에서, 그물, 생선, 광주리, 항아리, 기름, 진흙, 수건과 대야, 물, 빵과 포도주 등 흔히 있는 물건들을 이용하였다.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안에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그는 백성을 축복하고 치유했으며, 그들을 화해시키고 공동체에 개입시켰으며, 하나님 나라의 은총과 능력과 임재를 나타냈다.

W-1.3033
교회 : 성례전

(1) 초대교회는 예수를 따르면서 마치 예수께서 그의 삶을 제물로 바쳤듯이 세 가지 생활의 기본 물질들—물과 빵과 포도주—을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기본적 상징으로 삼았다. 세례수로 씻음 받음으로 크리스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고,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쳤다. 빵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속적 임재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계약의 약속을 기억했으며 그들의 순종을 새롭게 맹세했다.

개혁전통 :
성례전

(2) 개혁파 교회의 전통은 세례와 주의 만찬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성례전으로 이해한다. 성례전은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의 징

W-1.3024 : 제2스위스고백 5.214-5.216

W-1.3031 : 암 5 : 21-24 ; 사 1 : 11-17 ; 미 6 : 6-8 ; 참조 시 50편 ; 1967년도 신앙고백 9.16

W-1.3033 : 스콧고백 3 : 21 ; 하이델베르크문답 4.066-4.068 ; 제2스위스고백 5.169-5.180 ; 웨스트민스터고백 6.149-6.153 ; 소요리문답 7.092-7.093 ; 대요리문답 7.272-7.274

표요, 하나님의 행동의 상징이다. 성례전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는 자의 구원을 인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갱신하며 섬기도록 그들을 인치신다.

W-1.3034
예배시에 물질 이용

(1) 교회는 크리스천의 삶과 그들의 모든 소유는 다 창조주께 속하고, 예배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자신을 드리는 징표와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만든 것과 소유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색채의 풍요함, 구조, 형식, 소리, 움직임 등이 다 예배 행위에 도입되었다.

예술적 표현

(2) 개혁파 교회 유산은 예배드리러 오는 백성들이 물질의 예물을 가져오도록 권장했으며, 그것들은 단순한 형태와 기능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사실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해준다. 하나님의 백성은 건축조각, 비품, 설비, 복장, 음악, 연극, 언어와 운동 안에서 창조적 표현을 통해 응답해 왔다. 이 같은 예술적 창조력이 우리로 하나님의 실재하심을 깨우쳐 줄 때, 그것들은 다 예배에 적절한 것들이다. 그런 것들이 그들 자체에 관심 갖게 하거나 아름다움 그 자체가 목적으로 제시되면, 그것들은 우상숭배가 된다. 예술적 표현물은 하나님의 실재하심과 그의 은혜에 대한 예배자들의 의식을 자극하고 교화하고 앙양시키고 증진시켜야 한다.

W-1.3040
선 교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거룩하게 된 것들이다. 크리스천의 예배는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선물을 사용하면서, 교회로 하여금 시간을 구원하고, 공간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토록 세상의 생활 속으로 인도해야 한다.

W-1.4000

4. 예배의 책임과 책임 소재

W-1.4001
책 임

예배에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는 성경의 명령,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크리스천 예배는 미리 정해진 형식을 따를 필요가 없는 한편, 부주의하고 무질서한 예배는 하나님께 불경스럽고 또 교인들에게 거리낌이 된다. 예배에 책임 맡은 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 보편 교회의 역사적 경험, 개혁파 교회의 전통, *신앙고백서*, 예배공동체의 필요와 특수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정치형태의 규정과 이 예배모범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W-3.1001 ; W-3.1002).

W-1.4002
평가와 감독

이 같은 지도 원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노회를 대신하여 개체 예배 회중의 사역을 감독하고 평가할 책임자들은 당회와 함께 예배의 질적 요소, 그것을 주관하는 수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전하고 기쁨과 정의를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W-1.3034 : 제2스위스고백 5.020-5.022 ; 1967년도 고백 9.50
W-1.3040 : 미 6 : 8 ; 롬 12 : 1 ; 엡 6 : 16 ; 약 1 : 22-27 ; 웨스트민스터고백 6.174
W-1.4001 : 갈 5 : 1 ; 고전 14

삶 가운데서 맺는 열매 등을 논의해야 한다(G-11.0502c).

W-1.4003
예배에 참여자
와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예배는 모든 사람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의 공동 목회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 어느 사람도 종족, 피부색, 계급, 나이, 성, 또는 신체장애자라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공중예배에 참여나 지도력으로부터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은사와 훈련에 의해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특수 활동에 부름받을 수 있다. 그런 재능을 가진 안수받은 제직과 평신도를 권장하여 예배 인도를 하게 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W-1.4004
당 회

개체교회에서 당회는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고 교인들을 권장하여 빠짐없이 정기 예배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당회는 정기적으로

a. 말씀의 설교,
b. 성례전의 축하,
c. 공동 기도, 그리고
d. 노래로써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W-2.0000 ; W-3.0000).

당회는

e. 목사에게만 위임한 책임을 제외하고 개체교회 생활에 있어 모든 공중예배를 감독하고 승인하며(W-1.4005),
f. 예배를 위한 행사, 날짜, 시간, 그리고 장소를 결정하는 권리를 갖는다.

당회가 책임질 일은

g. 배열과 비품을 포함한 예배드릴 장소의 마련,
h. 꽃, 촛대, 촛발, 헌금접시, 기타 장식도구 같은 특별한 비품의 사용,
i. 교회의 음악과 다른 예술의 전체 프로그램,
j. 음악, 연극, 댄스, 기타 예술을 통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다(G-10.0102c).

W-1.4005
목 사

a. 목회자인 목사는 당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어떤 정해진 책임을 갖는다. 특별한 예배에서 목사가 책임질 일은

(1) 봉독할 성경본문의 선택,
(2) 설교 또는 말씀 해석의 준비와 전파,
(3) 교인은 대표하여 드리는 기도와 예배시 교인들이 사용할 기도문을 준비,
(4) 부를 찬송,
(5) 연극, 댄스, 그리고 다른 예술 형식을 마련하는 일이다.

목사는 특별한 예배의 계획을 위해서 예배위원회와 협의할 수도 있다(G-6.0202).

목사와
성가 지휘자

b. 성가대 지휘자나 다른 음악 지도자가 있는 곳에서는 목사와 그 사람은 찬양과

W-1.4003 : 벧전 2 : 9- ; 1967년도 고백 9.39
W-1.4004 : 1967년도 고백 9.50
W-1.4005 : 제2스위스고백 5.163

기타 음악순서가 그 특별한 예배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협의할 것이다. 당회는 이런 협의가 적절하게 정기적으로 행해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W-1.4006
당회와 목사

예배의 순서와 그 요소의 균형은 당회와 협의하여 진행시킬 목사의 책임이다. 공중예배에서 회중이 사용할 찬송가, 성가집, 예배서, 성경, 그 밖의 다른 자료들의 선택은 목사의 동의를 얻고 또 당회에 해당이 되면 음악 지휘자와 교육 담당자 등과 협의해서 정할 당회의 책임이다.

W-1.4007
당회의
교육 책임

예배에 참여하도록 교인들을 격려하는 당회의 책임 이행에 있어서, 당회는 회중의 나이, 관심, 그리고 환경을 고려해서 크리스천 예배에 관한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W-3.5202 ; W-6.2000 ; G-10.0102d, e, f). 당회는 또한 교회 제직교육에 있어서 이 예배모범을 정규적으로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G-10.0102k, l).

W-1.4008
노회에 책임소재

예배를 위한 책임 이행에 있어서, 목사와 당회는 교인들에 대한 헌법적 감독권 행사에 있어서 노회에 대해 책임이 있다(G-11.0502c).

W-1.4009
노회의
교육 책임

회원교회에게 예배의 격려, 지도와 재료를 마련하는 책임 이행에 있어서, 노회는 적절한 교육 행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회는 안수후보생과 계속회원권을 위해 목사들을 시취할 때 이 예배모범의 정기적 사용을 통해 예배교육을 마련해야 한다(G-11.0103f ; G-14.0402 ; G-14.0508).

W-2.0000

제2장 크리스천 예배의 구성 요소

W-2.1000

1. 기 도

W-2.1001
크리스천의
기도

기도는 예배의 심장부이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기도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신 한 분, 참 하나님을 찾고 발견케 된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 자신을 헌신한다. 기도는 말로써, 노래로써, 침묵 가운데서 또는 실천적 행동 가운데서 드려질 수 있다. 기도는 성령에 응답하는 개인생활의 중심에서부터 자란다. 기도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공동체의 생활에 의해 형성된다. 기도는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결단을 하게 한다.

W-2.1002
기도의 내용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우리는 경배하는 중에서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는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고마움을 표시한다. 우리는 고백하는 중에서 개인으로 그리고 교인으로서 행한 일 또는 행치 못한 일에 대한 회개를 시인한다. 우리는 간구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자신과 함께 모인 공동체를 위해 기원한다. 우리는 중재기도 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또한 온 세계를 위한 기원을 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해 스스로를 바친다.

W-2.1003
기도로서의 음악
: 회중의 찬송

찬송은 기도로써 자기 전체를 드리는 응답이다. 찬송은 교회에서, 집에서 또는 어느 특별한 곳이든지 간에 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곳이면 어디이든 공동의 기도 가운데서 교인들을 연합한다. 계약 백성은 언제나 기도드리기 위해 노래의 선물을 사용해 왔다. 시편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중에 불리어지도록 지어졌다. 교인들이 시편을 한목소리로 읽든지 교대로 응답하면서 불리어지도록 지어졌다, 찬송으로 불리어질 때 힘찬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시편에 덧붙여서 신약의 교회는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러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문화로부터, 교

W-2.1000 : 하이델베르크문답 4.116-4.118 ; 제2스위스고백 5.218-5.221 ; 웨스트민스터고백 6.114-6.115 ; 소요리문답 7.098-7.099 ; 대요리문답 7.264, 7.288-7.296 ; 1967년도 고백 9.50

W-2.1003 : 엡 5 : 19 ; 골 3 : 16

회는 공중기도를 위한 음악형식을 추가하여 발전시켰다. 교인들은 이같이 다양한 음악형식을 기도 대신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화적 음악생활에서 우러나온 그것들을 사용토록 격려받았다.

W-2.1004
기도로서의 음악 : 성가대와 악기

기도의 찬송을 하도록 교인들을 인도하는 것은 성가대와 다른 음악 지도자의 으뜸가는 역할이다. 그들은 입진송(introits), 응답송, 그리고 다른 음악 형식으로 교인들을 대신하여 기도를 할 수도 있다. 말이 기도에 대한 본질이 아니므로 악기로 찬양하는 것도 기도의 한 형식일 수 있다. 예배에서 음악은 연주회나 예술적 전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음악이 단지 침묵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도로서의 찬양은 교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가치 있는 헌신이다(W-2.2008 ; W-3.3101 참조).

W-2.1005
기도의 행동화

신·구약에서 그리고 여러 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말과 노래와 마찬가지로 행동을 통해서 표현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예배시에

a.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또는 일어서서 손을 높이 올리면서 기도하는 일,
b. 춤을 추고, 손뼉을 치며, 기쁨과 찬양으로 얼싸안는 일,
c. 중재와 간구, 파송과 안수에 기름을 붓고 손을 얹는 일은 합당하다.

W-2.2000

2. 성경봉독과 선포

W-2.2001
성경의 중심

교회는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고백한다. 어디서나 그 말씀이 봉독되고 선포되면, 살아 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내적 증거로 인하여 현존하신다. 이런 이유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하고, 고백하는 것은 크리스천 예배의 중심이 된다. 당회는 공중예배시에 그 개체교회의 공통 언어로써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선포하는 일을 확인해야 한다.

W-2.2002
본문 선택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모든 공중예배시에 봉독할 성경본문을 선정할 책임이 있고, 또 이 때에 교인들이 성경의 전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주의를 경주해야 한다. 주일 대예배시에는 구약, 신약의 서신, 복음서에서 본문을 읽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예배시에 시편의 전 범위가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W-2.2003
성구집

공중예배시 읽도록 한 성구집은 교회력의 절기, 개체교회의 목회적 관심, 세계적으로 관심두는 사건과 상황, 그리고 교회의 특별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지침이어야 한다. 교회가 마련한 이 성구집은 봉독하는 폭 넓은 범위와 마찬가지로 보편교회와의 일관성과 관련성을 확실히 한다.

W-2.2004
성경을 읽는 훈련

하나님의 백성은 가정에서와 개인예배에서 읽는 성경의 선택에 있어서 성구집과 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W-5.3000).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

W-2.2000 : 스콧고백 3.18-3.19 ; 제2스위스고백 5.001-5.007 ; 웨스트민스터고백 6.001-6.010, 6.116 ; 소요리문답 7.088-7.090 ; 대요리문답 7.113-7.115, 7.264-7.270 ; 바르멘선언 8.11-8.12, 8.26 ; 1967년도 고백 9.27-9.30, 9.49

은 그들이 개인예배시 성경 본문의 전체를 읽는 훈련을 할 특별한 책임을 가진다.

W-2.2005
번역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공중예배 때 봉독할 성경본문의 번역본을 선택할 책임이 있다. 만일 어떤 의역을 사용하거나, 사역을 채택했거나, 새 번역이 마련되었으면 교인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W-2.2006
성경봉독과 경청

성경의 공중봉독은 분명하고, 들릴 수 있게, 또 분문의 뜻에 관심이 집중되도록 하며 봉독을 준비한 자에게 맡겨야 한다. 성경봉독을 들을 때 기대와 집중이 요청되며 예배자들을 위해 인쇄된 본문을 이용하는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다. 교인들은 성경을 교독하고 교송하거나, 예배의 일부로서 한목소리로 다같이 읽을 수도 있다(W-3.3401).

W-2.2007
말씀 설교

선포된 말씀 또는 설교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은혜를 제공하며 순종을 하게 하는 확신 가운데서 외치는 성경의 선포이다. 설교는 성경연구에 근면성과 분별성, 날마다 기도드리는 훈련, 백성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과 문제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속적이고 개인적 복종을 요청한다. 설교는 백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단순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 직제상의 이유로 말씀선포는 대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행해야 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노회가 위임한 다른 사람이 당회의 동의하에 담임목사에 의해 초청받거나 담임목사 부재시 당회에 의해 초청받을 수 있다. 노회가 어느 사람을 보내서 설교케 할 수도 있다(G-6.0304 ; G-11.0103g, k ; G-11.0502f ; G-14.0307 ; G-14.0513 ; G-14.0516).

W-2.2008
선포의 다른 형식

말씀은 역시 성경본문에 근거한 찬양과 독창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는 칸타타와 오라토리오로서, 시편과 아가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적 신앙의 진리를 제시하는 찬송, 영가, 신령한 노래로서 선포된다. 예배시의 찬송은 역시 봉독하고, 노래하고, 행동화하거나 선포된 그 말씀에 대한 백성의 응답을 표현할 수도 있다. 연극과 댄스, 시와 축제 행렬, 다른 대부분의 인간 예술형식은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선포했으며 하나님께 응답했다는 표현인 것이다. 예술적 형식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방법으로 복음이 충실하게 전해지도록 주의해야 한다.

W-2.2009
신조와 신앙고백

교인은 역시 신조와 신앙고백을 통하여 말씀의 봉독과 선포에 응답함으로써 말씀을 표현한다(G-2.0100). 교회는 다음에 관련하여 그 신앙을 고백한다.

a. 보편교회,

b. 그것의 특별한 역사적 유산, 그리고

c. 개체교회의 상황.

교회가 세례와 성찬식을 축하하는 동안 그 신앙을 고백할 때는, 보편교회의 신조를 사용해야 한다(W-3.3603). 고백된 말씀은 언제나 성경이 입증하는 살아 있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판단받는다.

W-2.2010

말씀선포에 참여하는 백성은 무엇보다도 들으며 :

말씀을 듣는 일

a.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며,
b. 그가 제공하는 은혜를 받으며,
c. 그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한다.

그런 참여는 성령의 조명에 의존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추구되어야 한다. "들음"과 "경청했다"는 말은 오로지 예민한 감지력의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W-2.3000

3. 세 례

W-2.3001
예수와 세례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표징과 인증이다. 예수는 자신의 세례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하였다. 예수는 자신의 세례에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임을 입증했고,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난 종의 길을 택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받았다. 부활의 주 예수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며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 : 19-20)고 그들을 파송하셨다. 그의 제자들은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섬기는 생활을 하며, 사랑과 정의와 자비가 넘치는 생활을 피차 나눔으로써 포괄적인 예배공동체를 이루는 능력을 받았다.

W-2.3002
세례에서 죽고 살아남

세례에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 세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갈라진 생활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새로움에로 부활한다.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위해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게 한다.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그 동일한 그리스도를 지향해 볼 수 있게 한다.

W-2.3003
계약과 세례수

세례에서 성령은 그 교회를 그것의 창조주며, 주님에게 계약으로 묶는다. 세례의 물은 창조의 물, 홍수, 그리고 출애굽의 물을 상징한다. 이와 같이 세례의 물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과 노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맺은 하나님의 계약의 은혜에 연결시킨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한 그들 세대 가운데 나타나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요구하였다(암 5 : 24).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의 선함의 새로운 표현-정화수의 뿌림으로

W-2.3000 : 스콧고백 3.21-3.23 ; 하이델베르크문답 4.069-4.074 ; 제2스위스고백 5.185-5.192 ; 웨스트민스터고백 6.154-6.160 ; 소요리문답 7.094-7.095 ; 대요리문답 7.275-7.277, 7.286-7.287 ; 1967년도 고백 9.51
W-2.3001 : 마 3 : 15 ; 28 : 19-20 ; 막 10 : 38-40 ; 행 2 : 38-47
W-2.3002 : 롬 6 : 3-11 ; 골 2 : 12
W-2.3003 : 창 1 : 2 ; 렘 31 : 31-34 ; 겔 36 : 25-27 ; 요 4 : 7-15 ; 7 : 37, 38 ; 고전 10 : 1-2 ; 벧전 3 : 20-21

이루어지는 새 계약의 환상을 가졌다. 그의 사역에서 예수는 생명수의 선물을 제공했다. 그러므로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약의 표징이며 인증이다.

W-2.3004
은혜의 계약에 포함

할례가 과거에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과 은혜 가운데서 포괄성의 징표와 상징이었던 것처럼 세례는 현재 교회와 맺은 하나님의 계약과 은혜 가운데서 포괄성의 표징과 상징인 것이다. 마치 확인하는 표와 같이 세례는 다음을 의미한다.

a. 하나님의 신실하심,
b. 죄악을 씻어 버림,
c. 재생함,
d.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음,
e.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봉됨,
f. 교회의 계약 가족에로 양자됨,
g.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고 조명됨.

W-2.3005
그리스도와 서로가 연합함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고,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의 결속이다. 그들이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듯이,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피차에 연합하고 언제 어디서나 교회와 연합한다. 종족, 성, 신분, 그리고 나이의 장벽은 다 초극된다. 국적, 역사, 그리고 관습의 장벽은 다 극복된다.

W-2.3006
세례 : 은혜, 회개, 파송

세례는 말씀이 전파하는 바를 실제화하고 인증한다 : 모든 백성에게 제공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세례는 하나님의 은총이 선물이고 또한 그 은혜에 응답하도록 초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세례는 회개와 신실성과 제자됨을 촉구한다. 세례는 교회에 그것의 정체를 제공하고, 교회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사역을 하도록 파송하는 것이다.

W-2.3007
하나님의 신실성의 징표와 인봉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신실성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도, 세례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신실성은 불변하며 확실하다. 세례는 오로지 한 번만 받는다. 세례의 효력은 세례를 집행하는 그 순간에 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의 시작을 뜻하고 완성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와 새 생명으로 부르면서 부단히 역사한다. 하나님의 신실성은 갱신이 필요없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성실성은 갱신의 반복이 필요하다. 세례는 생의 모든 단계에서, 세례를 통해 그들의 신앙고백을 한 사람들과 신앙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양육받은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한다.

W-2.3008
'한 세례' : 그 뜻

a. 신자와 그 자녀들은 둘 다 하나님의 계약의 사랑에 포함된다. 신자의 자녀는 지나치게 지체하거나 지나치게 서두름 없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준 세례이든, 신자의 자녀로서 세례받도록 바쳐진 자들이든 간에

W-2.3004 : 창 17 : 7-14 ; 요 3 : 5 ; 행 2 : 39, 22 : 16 ; 고전 6 : 11, 12 : 12-13 ; 고후 1 : 22 ; 갈 3 : 27 ; 엡 1 : 13-14, 5 : 14 ; 골 2 : 11-12 ; 딛 3 : 5
W-2.3005 : 고전 12 : 12-13 ; 갈 3 : 27-28 ; 엡 2 : 11-22, 4 : 4-6
W-2.3006 : 마 28 : 18-20 ; 눅 3 : 3, 8-14 ; 행 2 : 38, 41-47 ; 참조 사 44 : 3 ; 요 4 : 7-15, 7 : 37-38 ; 계 7 : 17, 22 : 17

세례는 하나이며 동일한 성례전이다.

어린이

b. 유아세례는 그들이 신앙으로 응답을 할 수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 인

c. 자기 자신의 신앙고백에 의하여 계약에 들어간 자들의 세례는 하나님이 은총의 선물을 통해 신실한 응답으로 완성할 것을 바란다는 진리를 증거한다.

W-2.3009
각자의 세례를 기억함

세례는 단 한 번만 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적 역사를 인정하는 때가 예배드리는 중에 여러 번 있다. 다른 사람의 세례예식에 참여할 때, 주의 성만찬의 지속적 양육을 경험할 때, 또한 세례받으면서 했던 결단을 재확인할 때, 그들은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필요성을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약에 순종할 것을 새롭게 맹세한다.

W-2.3010
한 몸, 한 세례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세례도 하나이다(엡 4 : 4-6). 미국장로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른 교단이 집행한 모든 물세례를 인정한다.

W-2.3011
세례에 대한 책임

a. 직제상의 이유로, 세례는 당회가 인정하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집행하거나 당회가 초청하고 노회가 권한을 부여했을 때 평신도 파송 목회자가 집행하고, 말씀의 봉독과 선포가 따라야 한다(G-11.0103p ; W-3.3602-.0608). 세례는 공식 예배시에 집행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전체 교인이 예배드리는 때가 아니더라도 세례를 집행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를 해야 한다.

(1) 교인을 대표하는 당회원 1명이나 2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고,
(2) 목사가 성례전의 의미에 관한 적절한 이해를 시켜 주어야 하고,
(3) 가능한 때 당회와 협의해야 하고,
(4) 세례를 집례한 목사가 보고하고 당회록에 기록해 두어야 한다.

기관목사들

b. 치리회는 병원, 교도소, 학교 또는 그 밖의 기관들과 같이 치리회가 인정한 목회나 공공기관에서 봉사하는 교목 또는 다른 목사에 의해, 군인과 그 가족에게 사역하는 군목에 의해, 치리회의 관할권하에서 개척교회에 관여하는 목사가 집행하는 예식을 인정해 준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을 경우에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새로이 세례받은 사람을 개체교회 교인으로 등록시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등록은 미리 개체교회의 당회와 협의하여 마련하거나 새로이 세례를 받은 교인은 그 치리회에 의해 지정받고 그 관할권하에 있는 개체교회의 교인으로서 부재자 명부에 등록되거나, 또는 개척교회가 새로이 조직되기까지 치리회에 의해 보유된 명부에 등록되는 일을 치리회는 마련해 준다.

W-2.3012
당회의 책임

세례에 관한 당회의 책임은

a. 어린이 세례를 받게 하도록 부모를 권장하되, 믿는 자의 자녀는 지나치게 지체하거나 지나치게 서두름 없이 세례받아야 할 것을 상기시키고 이들의 세례를 승인해 준다(W-2.3014) ;

b. 부모(들)이나 부모의 책임을 정당히 행하는 이(들)과의 적절한 지시와 토의를 거친 후, 믿는 자의 자녀를 세례받도록 허락하고,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중요성과 신앙생활 안에서 세례받은 자를 양육할 부모와 교회의 특

별한 책임을 그들에게 알린다 ;

c. 교회에 출석하면서 아직 세례받지 않은 자에게 적절한 지시와 시험을 치르고, 개인적 신앙고백을 공개적으로 한 후 세례를 허락한다 ;

d. 세례받은 자들을 다 교인으로서 적절한 명부에 등록한다 ;

e. 세례받은 자들이 세례와 주의 성찬의 의미, 그리고 그 상호관계를 이해하도록 양육받았는지를 확인하며, 그들이 신자들의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킨다(G-10.0102b, d, e ; G-10.0302 ; W-2.3011).

W-2.3013
교회의 책임

전체 교인은 보편교회를 대신하여 세례받은 사람들이 크리스천 생활을 영위하도록 교육시킬 책임이 있다. 이 같은 목적 실천을 위하여, 당회는 어떤 교인들을 교회대표로 지정하여 특별한 교육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 세례받으려는 사람을 위하여, 당회는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 자신이나 그 자녀와 상의하여 후원자를 임명하며, 이미 세례받은 자를 양육할 특별한 역할을 부여한다(W-6.2001 ; W-6.2005).

W-2.3014
부모의 책임

어린이를 세례받도록 바칠 때, 대개 그 부모(들)이나 부모의 역할을 책임진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의 활동교인이어야 한다. 세례받도록 어린이들을 바치는 부모는 어린이가 개인적 신앙고백을 하고 활동교인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신앙공동체 안에서 양육과 지도를 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W-4.2002 ; W-4.2003). 당회는 다른 교회의 활동교인인 믿는 부모로부터 그 자녀를 세례받게 해달라는 요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만일 당회가 그런 요청을 승인하는 경우, 그 다른 교회의 치리회와 협의해야 하고, 성례전이 집행되었을 때 그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W-2.4000

4. 주의 성찬

W-2.4001
예수와 만찬

a. 주의 성찬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는 표징이며 인증이다. 예수님은 지상사역 중에서 공동체와 용납의 표징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위한 기회로서 그의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계약의 축하 잔치를 기념하였다.

최후 만찬

b. 예수는 그가 죽으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그의 몸과 피를 새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하면서 빵과 잔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다. 그는 빵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써 그의 죽음을 기억하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였다.

부 활

c. 그가 부활하신 날에도 부활하신 예수는 떡을 떼심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

W-2.4000 : 스콧고백 3.21-3.23 ; 하이델베르크문답 4.075-4.082 ; 제2스위스고백 5.193-5.210 ; 웨스트민스터고백 6.161-6.168 ; 소요리문답 7.096-7.097 ; 대요리문답 7.278-7.287 ; 1967년도 고백 9.52

W-2.4001 : 마 14 : 13-21, 15 : 32-39 ; 눅 5 : 27-32, 7 : 36-50, 10 : 38-42 ; 비교 요 2 : 13, 5 : 1, 7 : 2-37, 10 : 22-33, 12 : 1-3, 13 : 1-4 ; 공관복음서 비교 마 26 : 17-29 ; 막 14 : 12-25 ; 눅 22 : 7-20, 24 : 41-43 ; 요 21 : 13 ; 행 1 : 4

내셨다. 그는 계속 축사하고 떡을 떼시면서, 또 공동의 식탁을 준비하고 섬기고 나누면서 그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W-2.4002
신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는 그 자체를 사도들의 교훈, 친교, 기도, 그리고 공동의 식사에 바쳤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로부터 받은 전승을 교회에 전하기를, 부활의 주는 그가 오실 때까지 자기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로써 떡을 떼고 잔을 마시라고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셨다고 했다. 신약은 이 식탁을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고 신자 피차간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메시야 왕국의 향연을 미리 맛보는 것으로서 묘사하고 있다.

W-2.4003
감 사

주의 성찬에서 함께 모아 예배드리는 교회는,

a. 하나님이 그의 창조, 구속, 성화를 통해 이룩하신 모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
b.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온 세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
c.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왕국의 완성을 감사히 기대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의 봉사를 한다.

W-2.4004
기억함

주의 식탁에서 교회는

a.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또한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여 새롭게 갱신하며 힘을 얻는다 ;
b.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함께하신다는 약속으로 지속된다 ;
c.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제물이 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으로 인증받는다.

신자들은 기념함으로써 그들에게 나타났고, 또 세상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 그들은 화해하고, 화해됨으로써 은혜의 계약의 실재를 증거한다 ; 그리고 그들은 정의와 평화로써 세계를 갱신하는 그리스도의 통치 권능을 선포하는 것이다.

W-2.4005
기 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고 감사하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그들은 성령을 불러

a. 그들을 그리스도의 현존에로 높여 주도록 ;
b. 그들의 떡과 잔의 제물을 받아들이도록 ;
c.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케 하도록 ;
d. 그리스도께 연결됨과 동시에 서로간에 연합할 수 있게 하도록 ;
e. 하늘과 땅 위에 사는 모든 믿는 자들과 더불어 사귐을 갖게 연합하도록 ;

W-2.4002 : 행 2 : 42, 46 ; 고전 11 : 23-26, 마 8 : 11, 22 : 1 ; 고전 10 : 16-17 ; 계 19 : 9 ; 비교. 시 107 : 1-3 ; 사 25 : 6-8, 43 : 5-7
W-2.4005 : 고전 10 : 16

f.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영양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완성에까지 성숙하게 하도록 ;

g.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충성을 다하되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도록 기원한다.

W-2.4006
믿는 자의 교제

주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과 교제한다. 그리스도와의 화해는 서로간의 화해를 촉진한다. 세례받은 모든 신자는 다 주의 식탁에 나오도록 환영받아야 되고, 아무도 종족, 성, 나이, 경제상태, 사회계급, 신체장애 조건, 문화나 언어의 차이, 또는 인간적 불공평으로 인해 생긴 여하한 장애물 때문에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주의 식탁에 임한 후 신자는 그들과 이웃간에 있는 모든 알력과 분열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화해를 모색하여야 한다. 주의 식탁에 모일 때마다 신앙공동체는,

a. 세상 어느 곳에 있는 교회와도 하나가 되고 또 전체 교회는 그 식탁에 임재한다 ;

b. 천지간에 사는 모든 믿는 자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연합한다 ;

c. 세례받을 때 행한 맹세를 갱신한다 ;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 서로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새로운 결단을 한다.

W-2.4007
천국잔치를 미리 맛봄

이 식탁에서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즐거운 잔치를 축하하고 큰 축제와 어린양의 결혼 잔치를 기대한다.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인도받아서 교회는 열심히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것과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도래를 기도하며 기대한다. 이 희망으로 양육받아서 교회는 주의 식탁에서 일어서서 성령에 의해 보냄 받아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참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동정을 행사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마침내 임할 때까지 정의와 평화를 위한 사역을 하는 것이다.

W-2.4008
말씀과 성례전은 함께 있음

예배하는 공동체의 생활 가운데서 말씀과 성례전은 절대로 필요한 관계를 갖는다. 언제나 주의 성찬이 집행될 때면,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W-1.1005).

W-2.4009
시간, 장소, 빈도

주의 성찬은 주의 날 정기예배 장소에서 집행하며, 개체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적합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주의 성찬은 주의 날마다 자주 축하하는 것이 합당하다. 주의 날의 예배에 절대로 필요한 요소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리만큼 정기적으로 또 자주 주의 성찬을 축하한다.

W-2.4010
특별한 경우

성례전이 전체 신앙공동체에 개방되어 있는 한, 기독교 공동생활에서 특별한 의미

W-2.4006 : 마 5 : 23-24, 18 : 15-18 ; 고전 11 : 18-22, 27-29 ; 갈 3 : 28 ; 약 2 : 1-7
W-2.4007 : 마 22 : 1-10 ; 눅 14 : 15-24 ; 고전 15 : 20-28 ; 엡 1 : 23 ; 빌 2 : 10, 11 ; 골 3 : 1-4 ; 살전 4 : 16, 17 ; 계 19 : 9 ; 시 72 : 2-4, 12-14 ; 사 2 : 1-4 ; 미 4 : 1-4, 6 : 8 ; 마 5 : 21-26, 28 : 18-20 ; 눅 3 : 10-14, 4 : 18-21 ; 행 1 : 3-8 ; 약 2 : 14-17 ; 요일 3 : 16-18

를 갖는 경우에 주의 만찬이 집행되는 것은 합당하다. 주의 성찬은 그들에 대한 교회의 사역을 넓히는 방편으로 병자와 공중예배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방문과 관련하여 집행하는 것이 좋다. 성례를 축하하는 그런 모든 경우에 반드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그 같은 성찬 축하는 소수의 교인이 같이 참여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축하형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전체 교회의 행동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 같은 성찬에는 목사나 노회의 성례전 집행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표한 당회의 위임맡은 한 사람이나 다수의 교인들도 참여함이 좋다(W-2.4013 ; W-3.3609-.3618 ; W-3.6204).

W-2.4011
성찬을 받을 사람

a. 주의 성찬에의 초대는 세례받은 모든 교인에게 하되, 주의 식탁에 나오는 일은 자격을 갖춘 사람의 참여가 아니고 다만 믿음과 회개와 사랑 안에서 성찬 참여에 나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 성례전에서 그리스도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신자는 죄와 상처받은 심정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이웃간에 화해를 구하고, 그리고 정화와 새로운 갱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비록 의심과 주저함으로 인하여 성찬 참여를 포기할 심정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기 위하여 참여함이 좋다.

세례교인

b. 주의 식탁에 초대의 뜻과 그들의 응답의 의미를 배우고 양육받은 유아 세례자들도 그들의 성숙의 정도에 따라 참여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을 깨달으면서 주의 성찬을 받도록 초청받는다(W-4.2002).

W-2.4012
책 임

a. 당회는 개체교회의 생활에서 성찬식 거행에 관한 권한에 책임을 지며, 성례전의 축하는 어떤 경우에도 1년에 네 번 이하가 안 되도록 정규적으로 자주 함이 좋다. 또한 교회의 다른 치리회 회의 중에 주의 성찬의 축하를 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다. 치리회는 그 관할권하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에서 드리는 공중예배나 선교적 증언이나 인정된 목회를 하는 기관에서 드리는 예배와 관련하여 성례전을 축하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치리회는 성례전의 축하를 승인할 권한을 그 책임을 가진 기관에 있는 적절히 감독할 조직체에 위임할 수 있다(비교 W-3.6205).

기관목사들

b. 병원, 교도소, 학교,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봉사하는 원목이나 다른 목사들, 군인이나 그 가족을 위해 사역하는 군목은 특수 목회자에 의해 행사되는 목회의 관할권을 가진 치리회가 위임해 줄 때 주의 성찬의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다. 주의 성찬의 성례전을 집행할 권한은 목사 청빙서나 승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목사가 집례

c. 직제상의 이유로, 주의 성찬의 성례전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나 당회가 초청하고 노회가 권한을 준 평신도 파송목회자가 집행해야 한다. 선교적 관심에는 노회가 결정하고 권한을 부여한 대로 예외가 있다(G-11.0103k, p, z ; G-14.0516).

W-2.5000

5. 자신을 드림

W-2.4011 : 대요리문답 7.281-7.282

W-2.5001
그리스도께
응답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이다. 예배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자기 희생과 더불어 자신을 바치며 그에게 붙잡힌 바 되고 그에 의해 해방을 얻게 되고 또 그들의 삶, 그들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 그리고 물질을 그에게 바침으로 응답하기에 이른다.

W-2.5002
영적 은사를
바침

예배는 언제나 신앙을 고백함으로, 교회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를 수행함으로, 제자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생을 헌신하는 일과 세상에서 그의 선교를 갱신하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성령이 교인 각자에게 선교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튼튼케 하려고 특별한 선물을 은혜로 주심같이, 예배는 이런 선물들을 인정하고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그것들을 제공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W-2.5003
재물을 바침

a. 예배시에 물질을 바치는 일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기 헌신의 공동 행위이다. 그것은 생명과 모든 물질의 수여자시며 죄와 악으로부터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에 의해 다음을 확인하는 일이다.

(1) 모든 피조물에 대한 청지기가 된다는 헌신 ;
(2) 말씀을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고, 그들을 돌보기 위한 책임 ;
(3)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편교회에 관련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열망 ;
(4)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갖는 공통의 유대.

규율적이며
너그러운 협조

b.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 일과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협력하기 위해서 그들 수입의 십일조를 바치도록 명령하였다. 신약에서 사도들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 잘 훈련된 물질적 협조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스라엘에서와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후히 대해 주도록 격려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교회의 사역을 돕는 일에 잘 훈련받고 관대하도록 부르신다(W-5.5004).

예배시 드림

c. 공중예배 중 적절한 시간에 감사의 행위로서 교인들은 십일조와 헌물을 모아서 바친다.

W-2.6000

6. 상호간,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

W-2.5001 : 제2스위스고백 5.110-5.123 ; 웨스트민스터고백 6.088
W-2.5002 : 롬 12 : 4-8 ; 고전 12 ; 엡 4 : 7-16
W-2.5003 : 창 1 : 28-, 2 : 15 ; 레 23 : 22 ; 민 18 : 21-29 ; 신 28 : 7-12 ; 대하 24 : 8-14 ; 말 3 : 8-10 ; 마 28 : 19 ; 행 1 : 8, 2 : 44-45, 4 : 34-37 ; 고전 16 : 1, 2 ; 고후 8 : 1-15, 9 : 5-15 ; 딤전 5 : 17, 18 ; 약 2 : 4 ; 요삼 5-8 ; 제2스위스고백 5.211
W-2.6000 : 제2스위스고백 5.135 ; 웨스트민스터고백 6.146-6.147 ; 1967년도 고백 9.35-9.38

W-2.6001 공동체의 관심

예배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생활의 활동이며, 거기서 교인 서로간에 돌보고 또 그들의 생활의 본질과 사역에 관심하는 일은 죄악 세상의 한복판에서 공동체를 창출하고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실재를 표현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이 일상생활의 모든 사건에 관여하심과 같이, 공동체의 교인들도 예배에서 피차간에 또 세상에서 그들의 사역에 대한 관심을 적절히 표현한다.

인 사

a. 그들은
(1) 서로 인사하고 예배 인도자의 인사를 받는다 ;
(2) 방문자를 환영하고 그들의 출석을 기록하고, 크리스천의 친절을 베푼다 ;

화 해

b. 그들은
(1) 마음에 상처받았거나 오해가 생겼거나 교인간에 깨어진 관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제공하는 기회를 갖는다 ;
(2) 화해와 그리스도의 상징표와 말을 피차 교환하면서 하나님의 화해 행동에 응답한다 ;

기도 준비

c. 그들은
(1) 교인 가운데 궁핍한 자들과 교회와 세계를 대신하여 관심과의 표현과 기도를 요청하면서 중재기도를 준비한다 ;
(2)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슬퍼하면서 생활의 변화와 삶을 위해 감사한다 ;

해 석

d. 그들은
(1) 일상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다 ;
(2)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해석한다 ;
(3) 신앙과 봉사에 대해 증언한다 ;

선 교

e. 그들은
(1) 언약을 체결하며 갱신한다 ;
(2) 동정, 정의, 평화조성, 화해, 그리고 증거의 특별히 집단적이고 개인적 사역에 자신을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 파송받는다.

W-3.0000

3장 크리스천 예배의 순서

W-3.1000

1. 순서의 원칙과 자료

W-3.1001
성경과 역사

크리스천 예배 순서에 책임을 진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성령의 권위에 충실해야 한다. 성경 이외에 예배 순서를 위한 유일의 보장이란 없지만, 교회의 예배는 역사, 문화, 현대적 필요에 의하여 정보를 얻고 틀을 얻게 된다. 이같이 미국장로교의 예배는, 특히 개혁파 교회의 전통에서 각 시대를 통하여 예배드린 교회의 역사적경험에 의해 지시받아야만한다(W-1.4001).

W-3.1002
형식과 자유

a. 교회는 언제나 예배에 있어서 형식과 자유 사이에서 긴장을 경험해왔다. 교회 역사상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 순서를 위한 제정된 형식을 제공했다. 또 다른 이들은 말씀에 충성하려는 노력으로 예배공동체에 어떤 고정된 형식을 만들어 주는 것에 반대해 왔다. 미국장로교는 예배의 모든 형식이 잠정적이고 개혁에 종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예배 순서에 있어서 교회는 성령의 창조성에 개방적이어야 하고, 성령은 질서는 있으나 자발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성을 지니며, 하나님의 미래의 새로움에 개방적인 예배에로 교회를 인도하신다(W-1.4001).

당회의 지도

b. 예배에 있어서 성령의 나타남이 전체 교회를 세워간다. 예배 행위가 개인적 표현으로만 나타내어지고 그들 자신에게만 집중하거나 예배에 임한 회중에게는 무감각할 때, 그것들은 질서에 어긋난 것이고 당회의 자문과 인도를 받는다.

W-3.1003
참여와 지도력

예배 순서는 그 안에서 교회가 지역 환경과 마찬가지로 교인의 필요까지를 보살펴주는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역시 반영해야 한다. 예배 순서의 권위는 지정된 자들에게 속하고(G-6.0202; G-10.0102d; W-1.4000) 예배의 지도력은 은사를 받고, 훈련받고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W-1.4003) 예배 순서는 모든 교인들의 참여를 위해 마련되고 장려해야만 한다.

W-3.1004
예배시의 어린이들

어린이들은 예배에 특별한 은사를 더하며, 또 교회의 예배에 정규적으로 포함되어 참여함으로 신앙 안에서 자란다. 어린이들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계획하고 인도할 책임자들은 어린이들의 예배에 반응하는 이해와 능력의 정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지나친 형식이나 생색을 내는 태도를 삼가야 한다. 당회는 주의 날 교회의 정규 프로그램에 어린이들이 예배와 말씀과 성만찬에 전 교인들과 함께 전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막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야 한다 (W-3.3201; W-3.5202; W-6.2001; W-6.2006).

W-3.2000

2. 날과 절기

W-3.2001
날들

하나님께서는 7일 중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함께 예배드리도록 구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나 또는 집에서나 매일 예배하도록 권하셨다(W-1.3011-.3012; W-5.5001).

W-3.2002
교회의 절기

하나님께서는 삶을 질서있게 하며 교회의 예배에 영향을 주는 계절의 리듬을 주셨다(비교 W-1.3013).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업은 예수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경우와 관계에서 예배 순서의 중심적인 형식을 교회에 제공한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의 날들과 절기들을 지켜왔다.

W-3.1000 : 스콧고백 3.20 ; 웨스트민스터고백 6.006
W-3.1002 : 고전 12-14
W-3.2002 : 제2스위스고백 5.226

a. 강림절, 오시는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희망을 회상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

b.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탄생 축하;

c. 현현일, 만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기념하는 날;

d. 사순절, 재의 수요일에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축하를 대망하면서 영적 훈련과 준비의 절기;

e. 성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때;

f. 부활절, 주의 부활하신 날이며 그의 승천까지의 사역을 기념하는 기쁨의 절기, 그리고 계속하여;

g. 오순절, 교회에 내리신 성령의 은사를 축하함.

교회는 또한 이 절기 등 이외에도 주의 수세일, 주의 변화일, 삼위일체 주일, 모든 성현들의 날, 왕 되신 그리스도의 날들을 지킨다.

W-3.2003 그 밖의 절기들

공동체 안에서 인간생활은 역시 크리스천의 예배에 영향을 주는 리듬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이것들 중에는 시민생활, 농업, 학교, 사업의 연례 주기: 특별한 가족의 기념일과 축하일; 또 문화적 축하행사와 기념일과 행사의 다양한 양식 등이 있다. 교회가 그 선교적 사명을 수행해 가는 데 있어서 역시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 기념일의 주기를 만들기도 한다. 그런 사건들이 적절히 크리스천 예배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주의할 점은 그것들이 주의 날에 선포되는 복음을 모호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W-3.3000

3. 주일 예배

W-3.3100

a. 적절한 행동들

W-3.3101 포함되는 것들

주일 예배에서:

성경

(1) 성경을 읽고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한다(W-2.2001). 반드시 신/구약에서 본문이 봉독되어야 한다(W-2.2002). 성경은 설교나 강해 형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W-2.2007-.2008).

기도

(2) 기도를 드려야 한다(W-2.1001). 기도는 회중을 대표해서 드리는 것이 좋고, 회중은 집단적 응답으로 긍정하는 '아멘'으로 참여한다. 기도의 형식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와 교독으로, 설교 전 기도와 자발적인 기도를 통해 참여하도록 한다. 묵도시간이 명상과 기도를 위해 제공되어도 좋다(W-2.1000).

음악

(3) 음악은 시편, 기도 성가, 찬송가와 찬양, 신령한 노래, 영가를 통하여 성경의 제시와 해석으로써, 복음에 대한 응답으로써, 기도로써 제시된다(W-2.1003-.1004; W-2.2008).

세례

(4) 세례 예식은 교인들의 어린이들과 어른들 자신을 교회에 합일하기 위해 바침으로 집행된다(W-2.3000).

성만찬

(5) 주의 성찬예식은 당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리고 자주 축하해야 한다(W-2.4000).

십일조와 헌금

(6) 교인들의 십일조와 헌금은 모아서 드려야 한다(W-2.5000).

특별 시간

(7) 모이고, 인사 나누고 예배에 초청하는 시간; 공동의 관심을 나누는 시간; 축복하고 내어 보내는 시간은 개체교회의 생활에 알맞은 예배 중 어느 시간에 마련되어야 한다(W-2.6000).

특별 예배

(8) 새 교인을 받아들이는 예식; 안수하고 임직하고 파송하는 예식; 계약을 하고 갱신하는 예식; 생의 전환을 인지하고 나누는 예식은 교회의 생활에서 요청되는 대로 마련되어야 한다 (W-2.5000-.6000; W-4.0000).

W-3.3200

b. 집행의 순서

W-3.3201
예배 순서 설정

주일날 예배 순서를 설정함에 있어서 목사는 당회의 승인하에 최연소자로부터 최연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인이 다 하나님께 찬양을 뜻 깊게 바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W-1.4004-.4007; W-3.1004).

W-3.3202
순서의 제안

여기서 제공되는 순서는 논리적 진행이어야 하고, 구약과 신약에 뿌리를 내리고 보편교회 전통과 우리의 개혁적 유산을 반영시킨 것이어야 한다. 다른 예배 순서도 역시 개체교회의 필요에 따라 질서있게 진행되며, 성경에 충실하고 역사적 원리에 성실한 것이어야 한다. 다음의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섯 가지 중요한 행동으로 제시된 것이다:

(1) 말씀 중심으로 모임;

(2) 말씀의 선포;

(3) 말씀에 응답;

(4) 말씀의 인침;

(5)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세상에 나아감.

W-3.3300

(1) 말씀 중심으로 모임

W-3.3301
모임

(a)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가 시작된다. 다음 행동의 한두 가지 정도의 순서가 적합하다; 교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거나; 교인들이 묵도나 명상으로 준비하거나; 회중의 관심사를 광고할 수도 있고; 또는 음악을 들려줄 수도 있다.

(b) 교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부름을 받는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선포하도록 낭독되거나 찬양되어진다.

(c) 기도나 경배와 찬양의 찬송이 드려진다.

(d) 개인적인, 그리고 공동생활 속의 죄의 실상을 고백하는 기도가 따른다. 용서의 선언에서 복음이 선포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가 선언된다. 인간 생활 위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기억된다.

(e) 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이 때에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의 상징을 나누는 것이 좋다.

W-3.3400

(2) 말씀의 선포

W-3.3401
선포

(a)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듣도록 준비함에 있어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가 적절히 드려진다.

(b) 그 날의 적절한 성경말씀은 목사나 교인 중 한 명이나 회중이 교독으로, 교송으로, 또는 다 한 목소리로 봉독한다.(W-2.2006)

(c) 성경의 교훈이나 주제를 선포하거나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편이나 성가, 그리고 다른 음악적 형식이나 예술적 표현이 성경 봉독에 포함되어도 좋다.

(d) 말씀은 목사가 전하는 설교로 또는 당회나 목사가 인정한 다른 형식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W-1.4004-.4006; W-2.2007-.2008). 이 선포는 기도, 환호, 또는 찬양하는 말씀으로 끝맺는다. 교인들은 제자직 사명에 부르는 것은 역시 적절한 일이다(W-2.2007; W-2.2009)

W-3.3500

(3) 말씀에의 응답

W-3.3501
응답: 확신

말씀의 선포에 대한 응답은 신앙의 확신과 결단으로 표현된다. 공동의 확신은 교인들이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다른 적절한 음악적 반응으로써 또는 교회의 신조를 고백하거나 노래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다. 성가대가 찬양으로나 다른 음악 형식으로 교인들을 인도할 수도 있다. 개인적 응답의 기회도 역시 이 시간에 제공될 수 있다.

W-3.3502
결단의 확인 및 재확인

말씀에의 응답은 역시 위탁과 깨달음의 행위를 포함한다. 세례예식이 집행되어도 좋다(W-3.3601-.3607). 세례교인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신앙고백을 하거나, 그 신앙을 재확인하거나 교적을 이명해 옴으로써 개체교회의 새 교인으로 받아들인다(환영과 파송예식은 다음 조항 참조 W-4.2000; W-4.3000; 비교 G-5.0000; G-10.0102b). 개인이나 회집된 교인들로 하여금 세례 때 행한 결단의 재확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일도 역시 합당하다(W-4.2005)

W-3.3503
다른 결단의 행위

말씀에 대한 응답에 적절히 포함되는 결단의 행동들은,

(a) 크리스천 결혼식 (W-4.9000),

(b) 교회 제직의 안수 및 임직식 (W-4.4000; cf. G-14.0206-.0209; G-14.0405; G-14.0510),

(c) 기독교 교육자, 교회학교 교사, 조직기관 임원 또는 그룹 상담자의 역할로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는 일을 위한 파송식이다 (W-4.3000; cf. W-3.3701).

W-3.3504
인정의 행위

말씀에의 응답으로서 삶과 삶의 변화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일은 적절한 것이다.

(a) 개인과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의미 깊은 사건들을 기념하는 일;

(b) 재회를 축하하고 이별을 고하는 일;

(c) 고인이 된 분들의 생애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비교 W-4.5000; W-4.7000; W-4.8000)

W-3.3505
선교적 관심

신앙 간증, 봉사, 교회의 선교와 프로그램의 해석은 말씀에의 응답으로 예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것들은 말씀에의 응답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역을 후원하는 그들 자신의 헌신이나 헌금을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인들의 중보와 탄원의 기도를 준비하도록 한다.

W-3.3506
기도

교인들이 말씀에 응답할 때 중재기도는 다음을 위해서 드려진다.

(a) 보편교회와 그 목회 사역 또 목회하는 사람들, 그리하여 세상이 믿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b) 세상, 슬픔과 특별한 필요에 처한 사람들, 또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 그리하여 세상에 평화와 정의가 승리하기 위해서;

(c) 국가, 주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이들, 그리하여 그들이 무엇이 바른지를 알고 실행할 힘을 갖기 위해서.

탄원의 기도는 다음을 위해서 드려진다.

(d) 개체교회, 그 교회가 특별한 문제나 필요에 직면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e) 그들의 신앙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확신이 주어지도록;

(f) 생의 변화 한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도록;

(g) 결정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사람들, 그들이 지혜를 얻도록;

(h) 병들고 슬프고 외롭고 근심 있는 자들, 그들이 위로받고 치유받도록;

(i) 모든 교인들, 은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W-2.1000)

이 때에 고백의 기도도 포함된다(W-3.3301). 그 예배가 성찬식을 포함하지 않을 때 감사기도를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끝맺도록 한다(W-3.3613).

W-3.3507
헌금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십일조와 헌금은 낭송이나 찬송으로 드리는 기도와 함께 모아서 드려진다(W-2.5003).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화해와 평화의 징표가 교환되는 것이 좋다(W-3.3301). 성만찬이 축하될 때는, 빵과 포도주 선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감사로서 성찬상에 가져오는 것이 좋다(W-2.4003; W-3.3609)

W-3.3600

(4) 말씀의 인침: 성례전

W-3.3601
인침으로서의
성례전

세례와 성찬의 성례전은 교인이 예배드릴 때 신앙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약속을 인침하는 하나님의 행동이고, 또 성례전에서 선포되고 행동화된 말씀에 대한 신앙인의 응답을 포함한다.

W-3.3602
세례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응답의 표징과 인침인 세례예식은(W-2.3000) 크리스천 결단의 기본적 인정이다. 세례식은 말씀의 봉독과 선포에 이어 적절히 축하되며, 세례의 성서적 의미, 어른이나 어린이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담당할 책임 그리고 교회가 시행하는 교육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W-3.3603
결단과 서약

자기 자녀들이나 본인들을 위한 세례의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해야 한다.

(a)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서 믿는 그들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b) 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신뢰를 확인하고,

(c) 교회의 예배와 선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참여할 의도를 선언하고,

(d) 그들 자녀의 신앙양육을 마련할 의도를 선언한다.

교회의 회중은

(e) 사도신경을 사용하여 그 신앙을 고백하고,

(f) 세례받은 사람들을 협조하기로 동의하며,

(g) 세례받은 교우들을 교육시킬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표현한다.

장로 중 한 분이 이 같은 신앙고백과 확인을 하도록 교인들을 인도할 수 있다 (W-2.2009; W-2.3011-.3014)

W-3.3604
기도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세례예식의 기도를 올린다. 이 기도는

(a) 서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며,

(b) 하나님의 화해의 행위를 찬양하고,

(c) 성령으로 하여금세례식에 임재하여 능력을 부어 주고,물로 구속과 재생의 물이 되게 하고,충성스런 교회로 갖추어지도록 간구한다.

W-3.3605
물

세례에 사용되는 물은 보통 물이어야 하고, 또 세례자에게 붓거나 뿌리거나 또는 침수하여 적용시킬 것이다. 어떤 형식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물을 볼 수 있게, 그리고 넉넉히 사용해야 한다.

W-3.3606
세례의 말씀

목사는 세례자의 이름을 불러서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세례의 형식은 이렇다; "________________,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W-3.3607
다른 행위

물로서 세례를 베푸는 중심 뜻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례의 역사에 있어서 깊이 뿌리박힌 다른 행동들, 즉, 축복의 안수, 성령영의 은사가 내리도록 기도, 기름을 부음, 그리고 새로 세례받는 이들을 교인들에게 특별히 소개하는 일이 포함되도록 한다. 그 같은 행동을 할 때, 특히 잘못 해석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깊은 설명을 하여야 한다.

W-3.3608
환영

새로 세례받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새 교인임을 선포해야 한다. 전체 교인의 환영이 있어야 한다. 그 예식이 그렇게 진행될 때는 언제나 예배시 적당한 시간, 세례 후에 성찬식이 뒤따라야 한다.

W-3.3609
주의 성만찬:준비

교인들은 주의 만찬의 예식 축하를 스스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W-2.4006; W-2.4011; W-5.2001). 만일 매주일 주의 성만찬을 축하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한 주일 전에 성만찬이 있음을 공고해야 한다. 성만찬을 축하할 때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나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성찬 테이블을 마련하고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 놓아야 한다.

W-3.3610
떡

그 공동체의 문화적 유산에 알맞은 빵을 집례자가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해야 한다. 한 덩어리의 빵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을 표시한 것이다. 전체 교인을 위한 빵은 한 덩어리로부터 떼어 주거나 분배를 위해 적당한 다른 방법으로 준비해도 좋다.

W-3.3611
잔

포도주 잔과 주전자는 집례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공동의 잔을 쓰는 것은 성례전의 공동 성격을 표현하고, 또 한 개의 잔에 대한 일관성 있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반영한다. 포도주를 잔에 붓는 뜻은 세상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한다. 개체의 신앙공동체에 의한 분배의 방법은 한 개의 잔을 준비하거나 교인들을 위해 적절하게 마련된 여러 개의 잔을 포함한다. 어떤 종류의 포도 열매를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당회의 소관이다. 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당회는 성서적 전례, 교회역사, 에큐메니칼적인 사용, 지방 관습, 도 교인들의 건강과 양심의 문제에 관한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주의 성만찬에서 포도주가 사용될 때는, 언제나 발효되지 아니한 포도즙인지 확인하고, 또 그것을 원하는 교인에게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W-3.3610 : 고전 10 : 16-17

W-3.3611 : 막 14 : 23- ; 병행성구 고전 10 : 16, 21 ; 11 : 25-28 ; 롬 14 : 1-23 ; 고전 8 : 1-13, 10 : 14-33, 11 : 17-32

W-3.3612
초대

목사나 집례자는 성경의 적절한 말씀을 사용하여 교인들을 성만찬에 초대해야 한다(W-2.4011). 만일 제정의 말씀이(고전 11:23-26, 또는 복음서 병행) 빵을 뗄 때에 언급되지 않고 또는 감사기도 때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면, 성찬에 초대의 일부로서 언급되어진다.

W-3.3613
기도

집례자는 기도로써 교인들을 인도한다.

(a) 창조와 섭리, 언약의 역사와 계절에 따른 축복을 위해 찬양의 환호로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b)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 그의 탄생, 삶, 죽음, 부활, 재림의 약속, 그리고 성만찬의 제정을(달리 언급이 없었을 경우) 다 함께 믿음의 환호로써 기억하고;

(c) 성령을 통해 교인들을 부활의 그리스도의 현존에 이르도록 이끌어 들여서 그들이

(1') 양식을 공급받으며,

(2')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부활의 그리스도에게 연합케 되며,

(3') 충실한 제자로서 섬기려 보냄을 받는다; 그리고 이어서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d) 주의 기도를 드린다.

W-3.3614
빵을 뗌

집례자는 빵을 들어 전체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 그것을 뗀다. 만일 제정의 말씀이 초대의 일부로서 또는 성찬 기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면, 이 때에 고린도 전서 11:23-24를 사용해야 한다.

W-3.3615
잔을 제공함

집례자는 잔을 채운 다음에 그것을 전체 교인이 보는 가운데 그것을 제공해야 한다. 만일 제정의 말씀이 초대의 일부로서 또는 성찬기도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면, 이 때에 고린도 전서 11:25~26을 사용해야 한다.

W-3.3616
빵과 잔을 분배함

빵과 포도주는 개체교회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분배한다.

모임

a. 교인들이 성찬상 주변에 모여서 빵과 잔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성찬을 받기 위하여 집례자에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봉사하는 이들이 교인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성찬을 분배할 수도 있다.

빵

b. 빵은 성찬 상에서 떼어 가지고 교인들 손에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분배를 위해 제공된 떼어 놓은 덩어리나 다른 빵 덩어리에서 떼어 받을 수 있고; 또는 분배를 위해 준비된 빵 조각을 받을 수 있다.

잔

c. 공동의 잔은 참여하는 자 모두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몇 개의 잔을 마련하여 나눌 수도 있고; 또는 낱개의 잔을 마련하여 분배할 수도 있다. 공동의 잔에서 마시는 것보다 성찬 참례자는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먹을 수도 있다.

분배

d. 빵과 잔은 안수받은 교회 제직원이 나누어 줄 수 있고, 아니면 당회나 권한 있는 치리회가 초청한 교회 교인이 분배할 수 있다.

e. 빵과 잔의 제공은 2명 이상의 안수를 받은 교회 직원들을 통해 다음 조건 하에서 공동체의 예배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확장해서 분배할 수 있다.

(1) 빵과 잔이 회중들에 대한 성찬식 제공의 직접적인 확장의 일환으로 동일 일자에서의 예배 후에 성찬식을 받기 위한 교회의 초청을 수락한 회원들에게 제공된다.

(2) 성경 봉독과 기도 제공을 통해 말씀과 성례전의 일치하심이 준수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3) 성찬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이 목사의 신학적 및 목회자적 기반에 있어서, 그리고 그 예배적 기원에 있어서 당회 또는 인가된 치리회로부터 지시를 받았어야 한다. (W-6.3011)

W-3.3617
성찬을 받을 때

빵과 잔을 나누는 동안,

(a) 교인들은 시와 찬미, 영가와 그 밖의 적절한 찬송을 부를 수 있다;

(b) 성가대가 성가나 그 밖의 적절한 찬양을 부를 수 있다;

(c) 상황에 알맞게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다;

(d) 적절한 성경말씀을 낭독할 수도 있다;

(e) 교인들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다.

W-3.3618
만찬 후 축복

온 교인이 다 성찬에 참여했고 남은 빵과 잔이 성찬상에 제대로 놓였을 때, 집례자는 교인들이 기도에 참여케 하고, 성찬을 통하여 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찬에서 교인들이 결단한 서약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약속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구 기도를 올린다. 교인들은 시와 찬미와 성가와 영가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 부른다.

W-3.3619
남은 빵과 포도주의 처분

성찬식이 끝날 때, 남은 빵과 포도주는 식탁에서 치우고 당회가 승인하고 성례전의 개혁교회의 이해와 선한 청지기 원리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되거나 처리되어야 한다.

W-3.3700

(5)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세상에 나아감

W-3.3701
결단과 인정의 행위

(a) 제자직의 결단 행위, 세례받기로 한 의도의 선언, 또 수세시에 행한 서약의 재확인하는 일은 성례전에서 받은 말씀에의 응답이다(W-2.4005; W-2.4007). 예배가 끝날 무렵에 결단과 인정하는 다른 순서를 거행할 수도 있다. 교인들이 특별히 집단적 또는 개인적 복음전도, 동정, 정의, 화해, 그리고 세계 안의 평화 조성의 활동을 위한 결단과 파송을 받기도 하고 그것에 헌신하기도 한다(W-4.3000).

교인이 떠날 때

(b) 개체교회의 친교관계를 떠나는 사람들,

(1') 이 같은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2') 교육, 국가적 봉사, 생업에 변화, 가정환경, 또는 건강의 목적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을

송별회로써 인정해 주어야 한다. 교인 중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으면 이 때에 기억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

W-3.3702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감

예배는 공식 폐회로 끝맺는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도록 교인들에게 하는 권면을 포함한다. 그것은 성삼위의 축도나 성경의 다른 말씀으로, 가령 고린도 후서 13:13의 사도적 축도를 사용한 축복의 말씀을 포함해야 한다. 화해와 평안의 징표로 교인들이 떠나갈 때에는 서로 인사를 교환할 수 있다.

W-3.4000 4. 매일 기도회

W-3.4001 매일 기도

a. 매일 기도회는 주중에 정기적으로 지키는 공적 예배이다(W-1.3012; W-3.2001). 이 예배는 그 교회와 목회하는 공동체의 필요성에 맞추어 아침이나 한낮에, 일과가 끝났을 때, 또는 저녁 때 밤에 드려질 수도 있다.

말씀과 기도

b. 그 예배는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포함해야 한다.

W-3.4002 성경

성경본문을 읽고 반성하고 명상하는 기회를 갖는다. 성경을 강해할 수도 있다. 말씀은 음악으로, 연극으로, 또는 댄스로 표현될 수도 있다. 시편과 송영 성구는 특히 날마다의 기도에 적절한데, 이는 예배자들이 이를 사용하여 말씀에 대한 표현과 응답을 하기 때문이다(W-2.2000).

W-3.4003 기도

기도는 말로, 노래로, 행동으로 그리고 침묵 가운데서 드려질 수도 있다. 매일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침묵과 명상의 독특한 기회를 제공한다. 어떤 차원에 속한 기도이든, 기도는 공동체에 관한 공적 또는 개인적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W-2.1000).

W-3.4004 순서

매일 기도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드려야 한다.

(1) 찬양,

(2)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

(3) 명상, 기도, 찬송으로 말씀에 응답함,

(4)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함.

W-3.4005 인도자

당회가 인정하는 예배는 반드시 담임목사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고, 적절히 준비된 제직이나 교인이 인도할 수도 있다.

W-3.5000 5. 그 밖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W-3.5100 a. 주일 예배

W-3.5101 다른 주일 예배

주일에 드리는 대예배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여 주의 날에 드리는 예배이다. 이 밖에 주일에 정기적으로 정해진 아침, 오후, 또는 저녁에 정기적으로 정해진 다른 예배를 드린다. 이런 예배의 시간과 성격은 교인들과 공동체의 필요를 고려하여 당회가 결정한다. 이런 예배를 계획할 때에는, 주의 날 예배의 성실성을 보존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W-3.5102 예배 내용

이 예배는 말씀을 읽고 들으며, 기도하고 또 자신을 드리는 일, 교인 상호간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를 짓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W-2.1000-.2000; W-2.5000-.6000). 그 예배에서는 기도, 회중의 찬송, 성경의 교훈, 도 예술을 통한 말씀의 해석에 특별한 강조점을 갖는 것이 좋다. 이런 예배는 말씀 선포나 목사와 당회가 승인한 다른 선포 형식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W-1.4000; W-2.2000; W-3.3400). 이 같은 예배시에 성례전을 역시 축하할 수 있다.

W-3.5103 순서

각 예배 순서는 특별한 경우에 관련될지라도 이 예배 모범에 나오는 예배의 원리를 반영해야 한다.

W-3.5200 b. 교회학교

W-3.5201 교회학교

교회학교의 여러 학급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에 기도와 찬송,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헌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세계에 관련시키는 적절한 표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W-3.5202
예배 내용과 순서

교회학교의 각급 반에서도 정기적인 예배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런 예배는 큰 그룹에서보다는 덜 형식적이고 더 자발적일 수 있다. 그렇지라도 기도와 말씀을 생각함으로 나오는 찬송을 포함해야 한다. 또 자기 헌신과 결단의 행동과 표시를 포함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1) 세례의 요청,

(2) 주의 성찬에 참여,

(3) 세례 때 맹세한 서약을 재확인하는 일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교회학교의 예배가 주일에 전체 교인이 참여하는 예배를 대신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W-3.1004; W-3.3201; W-6.2001).

W-3.5300

c. 기도회

W-3.5301
기도회

교회생활에서 교인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도회로 모일 수 있다. 당회는 그런 기도회의 모임을 승인할 책임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정기 기도회는 몇 가지 형식을 취할 수 있는데, 주중 저녁 기도회, 아침 기도회, 낮 기도회 또는 오후 모임과 조찬 및 점심 기도회 등을 포함한다. 작은 그룹들은 기도회 서클, 중재적 친교, 또는 계약 그룹으로서 정기적 모임을 가질 수도 있다. 지역사회, 국가와 세계 교회의 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날이나 행사에 교인들을 기도회 모임에 오게 할 수 있다.

W-3.5302
기도회 내용

이런 기도회에서 말씀을 읽고 들으며,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또 토의하고 음악으로 또는 다른 예술로 표현할 수 있다. 기도는 말로써, 노래로써, 행동으로 또 침묵으로 드릴 수도 있다. 인정과 헌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의 헌신을 위한 기도가 주어지도록 한다. 서로간에 갖는 관심은 환영하는 말과 행동, 화해, 그리고 상호 목회에서 표현할 수 있다. 또 세계에 대한 관심을 기도로써 그리고 구제, 공의, 평화 조성과 증거의 사역으로써 행동화할 수 있다.

W-3.5400

d. 치유의 예배

W-3.5401
치유의 예배

치유는 예수님의 목회의 중심 부분이었으며 이로써 교회는 그 일을 전체 교인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한 차원으로서 알고 계속하도록 부름받고 있다.치유의 예배를 통하여,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예배에서 그 사역을 행동화할 수 있다.

W-3.5402
당회의 시인

치유의 예배는 당회의 시인을 받아야 하고 목사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예배는 정기적으로 정해진 예배로써, 가끔 드리는 예배에서 또는 주일 예배의 일부로써 드릴 수 있다(W-3.3506). 이 예배는 모두에게 공개해야 하고, 자신들의 치유나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예배는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서 가져야 한다.

W-3.5403
기도의 형식

치유의 예배의 긴요한 요소는 기도인데 이것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약속을 위한 감사, 중재의 기도와 간구기도를 드려야 한다. 침묵 기도의 시간을 적절히 마련하기도 하고 말로나 찬송으로 기도하는 기회도 마련해야 한다. 안수와 기름을 바르는 형식에서 드리는 행동화된 기도가 적절하다(약 5:14). 기도하는 일에는 신앙공동체의 대표들과 함께 사회하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포함된다.

W-3.5404
말씀과 성례전

이런 기도는 읽고 선포된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특별한 초점은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에 관한 복음의 약속을 선포하는 데 있어야 한다. 이 약속의 인봉은 주의 만찬에서 축하되고, 이어서 기도와 안수가 뒤따라야 한다. 목회를 위한 자신의

삶과 예물을 바치는 기회가 마련되고 동시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에 대한 새로운 결단과 화해의 기회도 마련된다.

W-3.5405
치유의 근원

치유의 예배가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는 일도 포함할 때, 이런 행동화된 기도는 잘못된 해석과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소개되어야 한다. 치유는 성화, 열성, 또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술이나 또는 낫고자 원하는 자의 믿음의 결과라고 이해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W-3.5500

e. 전도 예배

W-3.5501
제자직에 초대

주일 예배시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답하는 초대를 해야 한다(W-2.5002). 당회는 전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 예배를 승인하고, 정기적으로 계절에 따라 그런 예배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W-3.2003; W-7.2000).

W-3.5502
순서

전도 예배시 중심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말씀을 선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삶에 관하여 하신 주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제자직의 생활에서 그의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들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 선포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성경을 읽고 듣는 것,

(2) 설교와 증거,

(3) 찬송과 행동과 고백으로 된 말씀.

이러한 중심적인 행동은 기도이어야 하는데,

(4) 예배의 준비에서,

(5) 찬양, 감사, 신앙고백, 중보기도, 그리고 간구기도로써 예배에서,

(6) 예배에 이어서 새 제자는 그들의 결단에 지원을 받고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W-3.5503
결단

이 예배는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단이나 새로운 결단,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계약공동체 안에 있는 생명에로 분명한 초청을 해야 한다. 그러한 결단은 은총의 표징이고, 자기 헌신의 행동이며 그것은

(1) 피차간 새로운 관계,

(2) 선교적 사명감을 위한 재능의 새로운 자각,

(3)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새롭게 참여하는 결과에 이르러야 한다.

W-3.5504
새로운 결단에의 응답

초빙에 응답하는 자들은 그들의 결단을 지원하고 제직자의 생활을 갖추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G-5.0501). 처음으로 결단을 하는 자들은 그 예배에 세례를 받은 자들과 함께 주일 예배 때에 그들의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결단을 다시 하는 자에게는 주일 예배 때 그들의 공개적 재확인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W-3.3502; W-4.2000).

W-3.5600

f. 프로그램과 선교 해석

W-3.5601
선교 강조 예배

교회의 프로그램과 선교의 해석은 연중 적절한 절기에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목적을 위해서 갖는 예배에서 행해진다(W-3.2003). 이 예배에서 중요한

W-3.5500 : 웨스트민스터고백 6.055-6.058, 6.187-6.190

초점은 당회가 이런 예배(들)를 승인한 프로그램이나 선교의 해석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이런 예배의 중심 강조점은 세계와 상호간의 관계에 있다(W-2.6000).

W-3.5602
예배 내용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을 들어야 한다. 감사 기도, 간구기도, 중재기도는 예배에서 해석된 사역 대신 드려야 한다. 헌금을 드리고 삶의 결단을 하는 기회가 적절히 포함된다.

W-3.5700

g. 개체교회 내의 특별 그룹

W-3.5701
특별 그룹들

모든 개체교회에는 연령별로, 성별로 또는 관심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이는 특별 그룹들이 있다. 이런 그룹들은 모임이 있을 때 보통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이 예배모범의 원리를 반영시켜야 한다. 성례전의 축하를 제외하고 제2장에 있는 예배의 모든 요소가 이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성례전은 당회가 승인한 예배 행위로서 보통 전체 교인이 참여한다.

W-3.6000

6. 특별한 모임

W-3.6100

a. 치리회

W-3.6101
치리회의 예배

치리회는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이 예배모범의 원리에 의한 예배 순서대로 해야 한다. 모든 치리회는 예배를 책임 맡고 감독할 그룹을 세워야 한다. 치리회는 역시 그 회의시 예배의 계획과 수행을 위한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W-3.6102
말씀과 성례전

당회 위 상급 치리회에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듣고, 그리고 자주 또는 정기적으로 주의 만찬을 축하하는 규정을 만든다(G-9.0301).

W-3.6103
기도

치리회의 모든 회의는 기도로써 개회하고 폐회하며(G-9.0301), 안건 심의과정 중에도 적절한 기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 기도는 치리회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찬양과 감사, 고백, 중재, 또 간구를 표현해야 한다.

W-3.6200

b. 수양회, 캠프, 특별 모임

W-3.6201
수양회와 대회 때의 예배

치리회는 그들 관할권 하에 있는 특별 집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승인할 책임이 있다. 예배는 수양회, 캠프, 그리고 대회 기간의 중심 부분이다. 그 예배는 이 예배 모범의 원리와 해당 치리회가 마련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W-3.6202
순서

예배의 성격과 초점은 모임의 유형, 목적, 참여자, 장소, 계절, 생활의 리듬과 순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매일 기도서의 순서에 따라 예배할 수도 있고(W-3.4000), 주일 예배의 순서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고(W-3.3000), 또는 이 예배 모범에서 설명한 다른 예배 형식을 응용할 수 있다(W-3.5000).

W-3.6203
예배 내용

모든 모임을 위한 적절한 예배의 요소들은 기도, 성경의 봉독과 들음, 헌신, 피차간, 그리고 세계와의 관련성이다(W-2.1000; W-2.2000; W-2.5000; W-2.6000). 예배의 제반 요소들은 다른 상황에 따라 강조될 수 있는데 곧,

(1) 조용한 기도나 윤택한 결혼을 위한 수양회,

(2) 자연 캠프나 선교 카라반,

(3) 청년지도자 양성 또는 음악 훈련 집회 같은 요소들이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나 말씀은 성실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적절한 기도가 드려져야 한다(W-2.1000-.2000).

W-3.6204
특별한 모임 때 성찬

주의 성찬은 어떤 모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1) 그 모임에 책임 있는 치리회나 그 행사가 행해질 지역 안에 있는 노회가 승인할 때,

(2)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사회하고 교회 제직원이 참석할 때,

(3) 말씀의 선포나 치리회가 승인한 선포의 다른 형식에 뒤이어 갖는 예배를 드릴 때,

(4) 소수를 위한 경건회보다는 오히려 전체 신앙 공동체의 생활에 전체 교인이 다 참여한 것으로 이해될 때. (W-2.4010-.4012)

크리스천들이 각기 다른 교회에서 또는 각기 다른 종족이나 다른 문화 그룹에서, 또는 에큐메니칼 회의에서 주의 성만찬을 축하하려고 모일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을 강하게 증거한다. (W-2.4006)

W-3.6205
에큐메니칼 성찬

에큐메니칼 모임에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거나 축하하도록 초청받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은 그 참여가 개혁파 교회의 성례전 이해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게 할 권한을 갖는다.

W-4.0000

제4장 특별한 목적을 위한 예배순서

W-4.1000

1. 특별한 행사와 인정

W-4.1001
특별한 행사와 목적의 예배

교회생활과 교인들의 생활에는 예배에서 적절히 인정받는 특별한 경우와 변화가 있다. 이들 중 많은 경우는 주일낮 예배에서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보통 축하한다. 다른 경우에는 주일낮 예배에서, 정기적으로 계획한 다른 예배에서, 또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정한 예배에서 축하한다. 특별한 인정순서가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즐거운 기대 중에서 성례전을 축하하는 중요성을 감소시킬 때, 그것이 주일예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W-1.3011).

W-4.2000

2. 환영과 영접예배

W-4.2001
세례와 교인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인은 성령으로 인침받고, 교회의 교인으로 인정되며, 주의 성만찬에 초대되고, 그리스도인의 봉사생활을 하도록 선별된다(W-3.3602-.3608 ; W-3.5504). 세례의 이 같은 면은 세례받은 자들을 환영하는 일, 입교시키고 파송하는 일, 그리고 새 교인을 영접하는 일을 통해 예배에 더 깊은 표현을 하게 된다(W-6.2001). 이런 순서는 보통 주일낮 예배시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써 갖게 된다(W-3.3502).

W-4.2002
성찬에의 초대

세례받은 사람들을 주의 만찬의 초대에 응답하도록 교육하는 일은 특별히 당회가 할 일이긴 하지만 전체 교인의 책임이다. 유아세례를 받을 때, 당회는 그 어린아이가 주의 성만찬을 받도록 교육시킬 과제를 맡은 부모(들)나 부모의 책임을 진 사람들을 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W-2.3012). 그 어린이가 성만찬을 받고자 할 때, 당회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인정과 환영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W-4.2003
입교와 파송

교회는 유아세례받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 개인의 신앙고백과 교회생활에서 책임지는 일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들이 준비가 다 될 때, 당회가 그들을 시험을 해야 한다(G-10.0102b). 당회가 그들을 활동교인으로 받아들인 후에 공중예배시 그들을 교회 회중 앞에 내세워야 한다. 그 예배시 교회는 그들의 세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그들은 세례 때 행한 서약을 다음과 같이 재확인해야 한다.

a.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고백,

b. 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한다는 확인,

c. 교회의 예배와 선교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참여할 의도를 선언(W-3.3603).

그들은 교회의 선교와 교회의 치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위탁받고 온 교인들이 환영한다(W-3.3502 ; W-3.3602-.3608 ; W-3.3701).

W-4.2004
다른 교인의 영접

교인 이명증서에 의해 또는 신앙의 재확인에 의해 교인이 되는 교인 영접예배는 그의 첫 세례, 신앙고백, 그리고 제자직에의 결단을 회상케 하는 기회이다. 당회가 시험하고 받아들인 후에, 새 교인은 공식예배 석상에서 인정받아야 한다(W-3.3502). 그들이 세례받을 때의 결심을 재확인하고,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고, 그리고 교회의 예배와 선교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도를 표시하는 일은 아주 적절하다(W-3.3602). 그들은 신앙공동체의 생활에 영접받고, 교인으로서 봉사하도록 위임받는다.

W-4.2005
전체에 의한 재확인

개체교회 교인으로 가입하는 자가 공개적으로 신앙고백을 하는 경우, 세례받은 예배자들이 각기 세례받을 때 행한 결심을 재확인하는 일이 아주 적절하다.

W-4.2006
갱신과 새 결단

신자의 생활 중에 공적인 표현, 인정, 그리고 축하를 해야 할 특별한 자각, 갱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할 때가 있다. 교인들은 이같이 결정적 계기와 성령에 의한 감동을 목사(들)과 당회와 나누도록 격려받아야 한다. 이따금 공식예배 때 전체 교인이 이런 깊은 경험을 나누고, 교회가 기도와 감사로 그 일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W-3.3502 ; W-3.3701).

W-4.2007
환영과 인정의 행위

이 모든 예배에서 환영, 인정, 파송과 시인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적절한 행동은

a.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눔,

b. 환영하는 악수를 함,

c. 기름을 부음,

d. 포옹,

그리고 그 밖에도 참여자의 문화(들)에 맞는 인정과 축하의 행동을 포함한다.

W-4.3000

3. 제자직의 특별 파송행위

W-4.3001
제자직 승인

크리스천 공동체의 생활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 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그들의 재능을 사용하여 제자직의 특별한 행위에 참여하도록 하신다. 이 같은 특별한 행위는 예배시 공식적 인정에 의해 격려와 확인을 받게 된다.

W-4.3002
제자직의 형태

제자직은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표현된다.

a. 교회학교 교사, 재단이사, 성가대원, 교회 조직에서 제직, 상담자 또는 각종 교회 내의 그룹을 돕는 자의 봉사를 통하여 개체교회에서 ;

b. 지역사회 내외에서 하는 목회를 통해 개체교회를 대신하여 ;

c. 노회나 대회 또 총회의 사역, 그리고 에큐메니칼 기관과 협의회의 사역에서 봉사하는 전체 교회에서 ;

d. 구제와 화해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하는 교회 범위를 넘어서(W-7.3000-.4000).

W-4.3003
인정과 위임

제자직 수행에 부름받는 사람들의 인정과 파송은 말씀선포에 대한 응답으로서(W-3.3500), 또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행위로서 주일낮 예배 때 행하는 것이 좋다(W-3.3700). 제자직의 특별 행위의 인정과 파송은 이 목적으로 준비된 예배나 다른 적절한 예배 때 행하는 것이 좋다(W-3.5100 ; W-3.5300 ; W-3.5600).

W-4.4000

4. 안수와 취임식

W-4.4001
안수와 취임식

안수를 통해 교회는 집사, 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봉사하도록 교회의 선거를 통해 부름받은 사람들을 기도와 안수함으로써 선별해 놓는다(W-2.1005). 취임을 통해 교회는 집사, 장로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이미 안수를 받고 그 직책에 봉사하도록 새로이 부름받은 이들을 기도로 선별해 놓는다.

W-4.4002
예배 환경

안수식과 취임식은 말씀선포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일낮 예배시에 거행할 수도 있다(W-3.3503). 안수식과 취임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선교와 목회에 초점을 두고 말씀의 선포를 포함하는 특별 예배시 역시 거행할 수도 있다.

W-4.4003
형식과 순서

안수식과 취임식에서 당회장은 예식의 성격과 목적을 말하고 후보자(들)에게 헌법상의 질문을 해야 한다(G-14.0207과 G-14.0405). 장로가 교인들에게 헌법상의 질문을 물어야 한다(G-14.0208과 G-14.0510). 후보자(들)과 교인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후에, 안수받을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기도와 안수를 받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G-14.0209 ; G-14.0405과 G-14.5010 ; W-2.1005). 전에 안수받고 취임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기도하기 위하여 보통 기립해야 한다. 기도 후에 당회장은 안수나 취임 선언을 하고, 안수와 취임받은 사람은 직책에 환영받아야 한다(W-4.2007). 간단한 권면을 새로 취임받은 자에게 또 교인들에게 할 수 있다. 예배가 끝날 때 새로 안수나 취임을 받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축도를 선언해야 한다.

W-4.5000

5. 목회에 있어서 변화

W-4.5001
변화의 인정

제자직의 특별한 활동을 위해 특별히 파송받은 사람들 ; 집사, 장로, 또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안수받은 사람 ; 또는 교회에서 시무한 다른 사람들이 시무기간을 마칠 때, 교인과 그 목회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재능과 봉사를 인정해 주는 일은 아주 적절하다.

W-4.5002
인정 형식

이 인정은 말씀선포에 대한 반응으로서 주일낮 예배시에 할 수도 있고(W-3.3503), 또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행위로서 행할 수도 있고(W-3.3701), 또는 달리 정한 예배에서 할 수도 있다. 그 예배는 그 사람의 목회를 위한 치하와 감사의 표현을 포함하고, 그들이 목회에 있어서 이런 변화를 갖는 데 그들을 대신한 감사와 중

재의 기도를 포함해야 한다.

W-4.6000

6. 책벌과 회복

W-4.6001
책벌과 회복

책벌과 회복에 관한 형식은 이 *규례서*의 권징조례에 설정되어 있다(D-12.0102 ; D-12.0103 ; D-12.0100 ; D-12.0105 ; D-12.0202 ; D-12.0203). 이런 형식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것들이 목회적 관심의 정신과 해당 신앙공동체 안에서 갖는 예배의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다루어져야 하는 데 있다.

W-4.7000

7. 신앙공동체에의 봉사 인정

W-4.7001
봉사 인정

개체교회의 특별선교를 넘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는 예배시 적당한 시간에 기도와 감사와 함께 크리스천 제자직의 표현으로서 적절히 인정받도록 한다. 크리스천 생활에서 성취한 중요한 일 또는 명예, 그리고 다른 인정받을 만한 형태의 일들을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축하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

W-4.8000

8. 용납과 화해의 예배

W-4.8001
상처와 치유

크리스천은 상처로 고통받으며 그들이 일으킨 상처 가운데 처해 있는 죄 많은 세상에서 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이 같은 실정을 인정하면서 치유로 향하는 중요한 과제는 상처와 관계의 실패에서 자신의 책임의 인정과 인식을 하는 일인데,

a. 우정과 결혼에 있어서,
b. 가족과 교회에 있어서,
c. 직장과 학교에 있어서,
d. 이웃과 지역사회와 세상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 일이다.

W-4.8002
용납과 화해의 예배

이 밖에도 크리스천 공동체는 죄에 있어서, 깨어진 사회구조에 있어서, 그리고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 참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의 인식과 인정을 하고 관계의 상실을 함께 슬퍼하고 신앙공동체 안에서 상호 용서와 화해를 위한 특별예배를 드릴 적절한 기회가 주어진다(W-2.6001 ; W-3.3301 ; W-3.5400 ; W-6.3007-.3008 ; W-6.3011 ; W-7.4004).

W-4.8003
예배 형식

이런 예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a.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성경봉독,
b. 고백, 중재와 간구의 기도,
c. 사죄의 선언 및 죄와 수치에서의 자유,
d. 용서와 화해를 위한 감사와 찬양의 표현,

W-4.8000 : 고후 5 : 18-20 ; 약 5 : 16 ; 웨스트민스터고백 6.068 ; 1967년도 고백 9.07, 9.22

e. 상호 결심과 화해의 행동화.

W-4.9000

9. 결 혼

W-4.9001
신자의 결혼

결혼은 전체 인간 가족의 복리를 위해 하나님이 전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다. 결혼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간에 맺은 시민계약이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결혼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가운데서 맺은 계약이다. 신자의 결혼에서 일생의 결단은 신앙공동체에 의해 공적으로 증거받고 인정받아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서로에게 하는 것이다.

W-4.9002
결혼 준비

a. 결혼 예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목사는 아래에 관해 남자와 여자와 함께 의논해야 한다.

(1) 적어도 한 사람은 신앙고백을 한 크리스천임을 확인하면서 그들의 크리스천의 결단의 성격,
(2) 해당 주 법의 요구사항,
(3) 크리스천 결혼의 특권과 책임,
(4) 결혼 예식의 본질과 형식,
(5) 그들이 질문받아서 행할 서약과 결단,
(6) 제자직의 삶에 대한 이런 결단의 관계,
(7) 그들 결혼의 결단을 성취시키도록 지원하는 신앙의 자원과 크리스천 공동체.

이 같은 의논은 첫 번째 결혼의 경우나, 배우자의 사망 후 결혼이나, 이혼 후 결혼하는 경우에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만일 결혼이
현명치 않으면

b. 만약 목사가 결혼하겠다는 두 사람과 논의한 후 그들의 결심, 책임성, 성숙성, 또는 기독교적 이해가 모자라서 성혼시키기에 현명치 못하다고 확신이 되면, 목사는 교회가 계속 그들에게 관심하리라는 확신을 주고 결혼식을 집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목사는 당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W-4.9003
결혼식의
장소와 시간

크리스천의 결혼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에서 축하해야 한다. 크리스천 예배로서의 결혼식은 담임목사의 집례와 당회의 감독하에서 행하여야 한다(W-1.4004-.4006). 결혼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크리스천 생활의 축복의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특별 예배식으로 보통 거행한다. 다른 사람들이 목사의 재량에 따라 그 예식에 인도자들로서 참여토록 초청받는다. 결혼식에서 성찬식을 축하하려면 당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주의 성찬에의 초대는 참석한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데 조심해야 한다. 당회의 승인하에 주일예배 때 결혼식을 거행할 수도 있다. 그것은 말씀선포에 응답으로서 예배순서에 넣어야 한다. 그 다음 혼인식 후 주의 성찬을 거행할 수도 있다(W-2.4010 ; W-3.3503).

W-4.9004
예식 형식과
순서

결혼 예식은 성경구절과 간단한 목적의 선언으로서 시작한다. 남자와 여자는 크리

W-4.9000 : 제2스위스고백 5.245-5.251 ; 웨스트민스터고백 6.131-6.139

스천 결혼에 참여하겠다는 의도를 선언해야 하고, 사랑과 신실성의 맹세를 서로 교환해야 한다. 그 예식은 선포의 여러 형식에서 해석될 수 있는 적절한 성경구절을 포함한다. 기도는 신랑 신부를 위해서, 제자직의 새로운 차원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한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는 그 여자와 그 남자가 결혼으로 이제 하나가 된 것을 공적으로 선포해야 한다. 권면을 해줄 수도 있다. 이런 행동이 기독교적 결혼 이해를 감소시키지 않을 때, 공동체와 그 문화에 알맞는 다른 행동이 적절히 시행된다. 결혼식은 축도로써 끝난다.

W-4.9005
음악과 장식

결혼식에 적합한 음악은 하나님께로 관심을 이끌어 가고 교회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다(W-2.1004). 회중은 찬송과 찬양의 다른 음악적 형식과 기도에 동참할 수도 있다. 꽃과 장식, 그 밖의 설비는 예배 장소에 알맞는 것이어야 하고,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인식시키고 또 크리스천 생활의 순수성과 소박함을 반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W-1.3034 ; W-1.4004-.4005 ; W-5.5006).

W-4.9006
시민법에 의한
결혼 승인

시민법을 인정하고 신앙공동체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예식은, 부부가 요청할 때, 적절히 시행할 수도 있다. 그 예식은 결혼식과 비슷한데 단, 예외는 개회사, 의도선언, 신랑 신부의 서약 교환,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주 법에 의해 서로 결혼식을 이미 했다는 사실을 반영시키는 목사의 공적 선언 등이다.

W-4.10000

10. 장례식

W-4.10001
그리스도인과
죽음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 교리의 하나이고, 죽음 사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반응을 형성한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상실감, 슬픔과 비애를 가져온다. 죽음에 직면하여 그리스도인은 눈물과 기쁨을 갖고서 복음의 희망을 확인한다. 크리스천은 사별을 고립으로 생각지 않고, 오히려 성령의 힘과 신앙공동체에 의해 견디는 것이다. 교회는 슬픔을 당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희망의 목회를 제공한다(W-6.3006).

W-4.10002
준비 계획

정서적 압박감 아래서는 지혜롭게 계획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회는 교인들에게 죽음을 당할 때 필요한 준비를 미리 의논하고 계획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매장, 화장, 또는 의학적 목적으로 하는 기증에 관한 기독교적 선택에 대하여 결정하는 일까지 포함한다. 이런 계획들은 단순하고 부활의 희망을 증거하며, 거기서 기독교 신앙공동체가 중심이라는 사실에 알맞는 준비를 마련해야 한다. 당회는 장례식 때 거행할 예식에 관한 일반적 규칙을 만들 책임이 있다(W-1.4004).

W-4.10003
장례식 환경

장례식은 신앙공동체의 계속적 삶에 이 예식을 연관 지으며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보통 거행되어야 한다. 장례식은 목사의 지시 아래서 거행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목사의 재량에 따라 그 예식에 인도자들로서 참여하도록 초청받는다. 이 장례식은 어느 날에든지 거행할 수 있다. 주일낮 예배의 일부로서

W-4.10000 : 제2스위스고백 5.235-5.236

W-4.10004
형식과 순서

장례식을 요청하거나 또는 장례식의 일부로서 성찬식을 원할 경우 당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장례식은 성경말씀으로써 시작한다. 죽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의 부활 신앙, 그리고 모든 성도의 교제를 확신시키는 찬송, 시편, 영가 또는 영적인 노래를 예배자들이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성경을 봉독하고 ; 설교 또는 말씀의 해설이 선포되고 ; 교인들이 신앙고백을 할 수도 있다. 죽은 사람의 생애를 여러 모로 회상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 다음의 사실을 위해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

(1)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복음의 약속을 위해,
(2) 고인의 생애에 받은 은사를 위해서,
(3) 성령의 위로를 위해서,
(4) 신앙공동체를 위해서 ;

중재의 기도를 해야 하는데,

(5) 슬퍼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6) 유족들을 돌보고 협력한 자들을 위해서,
(7) 상실감으로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

간구기도를 드리는데,

(8) 참석한 모든 조객의 신앙과 은혜를 위하여 ;

그리고 주기도로 마친다.

그 예식은 죽은 자를 영원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부탁하고 축도로써 조객들을 보내면서 마친다.

W-4.10005
대안과 취사 선택

이 예식은 시체의 안치 전후에 거행한다. 그 예식에서 관심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기 위해 안치된 관은 보통 닫아 둔다. 관은 장례보로 덮어 둔다. 그리고 크리스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해가 위축되거나 오해되는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그 예식은 각기 신앙공동체와 그 문화에 통용되는 다른 행동을 포함시킬 수 있다. 예식은 예식 자체로서 끝내야 하고 그 밖의 어떤 우애의 표시, 시민법 의식, 또는 군대의식 같은 것을 행할 경우에는 예식과 별개의 것으로 행하여야 한다.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평상시의 예배 장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정, 장의사, 화장터, 또는 묘지 같은 적당한 곳에서 장례식을 집행할 수도 있다.

W-4.10006
하관식

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묘지나 화장터에 모여 마지막 작별 예식을 갖는데, 이는 단순하고 품위 있고 간단하게 거행되어야 한다. 그 예식은 성경봉독, 기도, 하관에 관한 간단한 말씀, 축복을 포함하여 죽음의 실재를 반영시키고 고인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고 죽음에서 부활하는 믿음의 증거를 포함한다.

W-5.0000

제5장 예배와 개인의 제자직

W-5.1000

1. 개인예배, 제자직, 신앙공동체

W-5.1001
개인과 공동의 예배

크리스천은 공동의 예배와 봉사로, 그리고 개인의 예배 행위와 제자직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교회의 예배에서 흘러나오며 거기에서 신자의 정체성이 확인되고, 제자직의 삶과 하나님께 향한 개인적 응답의 삶에로 파송받는다. 신자의 응답과 제자직의 생활은 교회의 예배와 봉사의 생활 속으로 흘러들어 간다 (W-1.1006 ; W-2.1001).

W-5.1002
예배와 생활

예배를 통하여 교인들은 그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로부터 예배의 필요성이 나오고 ; 또 예배드리는 중에 신자는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보게 되며 ; 예배로부터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환상과 능력이 나온다.

W-5.1003
예배와 목회

예배에서 선포되고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각 신자에게 세상에서 충실한 제자가 되도록 요청한다. 그렇게 봉사함으로써 제자는 감사하고, 고백하고, 중재하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음성을 듣는다. 신자의 생활리듬은 예배에서 목회로, 목회에서 예배로 움직이는 것이다.

W-5.1004
예배와 훈련

크리스천의 생활은 은총으로 힘을 얻고 순종으로 표현되고 훈련으로 형성된다. 하나님이 공동체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나 개인에 의해 사용되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예배의 요소들을 주셨다(W-2.0000). 당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순종과 제자직의 표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성장하는 방편으로서 이 예배모범에 기술된 훈련 내용을 사용하도록 격려해야 한다(W-5.2000-5.5000).

W-5.2000

2. 매일 개인예배 훈련

W-5.2001
매일 개인예배

매일 개인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종의 훈련이다. 날마다 제자직에 도전은 날마다 예배로 양육받음을 요구한다. 매일 개인예배는 신앙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고(W-1.1006 ; W-1.3012 ; W-3.4000), 집에서와 식구들과(W-5.7000) 또는 사적으로 드릴 수 있다. 성경읽기, 기도, 자기 헌신, 또 봉사하기 위한 결심 등은 매일 개인예배의 요소이다. 세례와 주의 성만찬은 그 성격상 집합적

이지만, 이런 성례전을 준비하고 기억하는 것은 매일 개인예배에 중요하다. 매일 개인예배의 훈련의 한 국면은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추고, 그의 말씀을 듣고, 기도, 개인 헌신과 봉사의 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다.

W-5.3000

3. 개인예배 때의 성경

W-5.3001
성 경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기록인데 이를 통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신앙생활을 위한 권위 있는 방향 제시를 해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읽고 들을 때 개인예배는 성경에 중점을 두게 된다(W-2.2000).

W-5.3002
성경 사용

a. 우리는 인도, 지원, 위로, 격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부딪힐 때 오는 도전을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성경 연구

b.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히 듣고, 또 더욱 충실히 순종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의 문학적 형식, 역사적 상황,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

명 상

c. 우리는 말씀을 명상할 수도 있는데,

(1) 성경구절들을 기억하려고 결심하며,
(2)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회상과 반성을 하며,
(3) 성경의 주제들, 이미지들, 그리고 형식들을 분석하고 비교하며,
(4) 성경과 실제생활 사이에 있는 상관성을 찾아보고 관계시킬 수 있으며,
(5)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약속에 참여하기 위하여 성경에 묘사된 세계와 그 사건들 속으로 상징적으로나마 개입해 들어가 볼 수 있으며,
(6) 복음의 도전과 요구를 붙잡고 씨름하며,
(7)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면서 명상할 수 있다.

W-5.3003
성경 이용에 도움

성경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명상하면서 개인의 통찰과 반응을 기록하고, 또는 다른 사람과 그것들을 자주 나누는 일은 도움이 된다. 풀어서 적어 두는 일, 요약하는 일, 간단한 성찰, 창의적 반응을 하는 일, 그리고 일지를 적는 일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도록 보조해 주는 훈련이 된다. 개인예배에서 성경을 폭 넓게 읽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성구집과 각종 번역과 의역서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메시지를 찾아 듣는 데 도움이 된다(W-2.2004).

W-5.4000

4. 개인예배 때의 기도

W-5.4001
기 도

기도는 우리와의 교제와 대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의식적 개방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받고 응답하고, 말하고 듣고, 또 기다리고 행동하는 것이다.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중재하

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다(W-2.1000).

W-5.4002
기도의 표현

개인예배에 있어서 기도는 여러 방법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의식적인 대화에 관여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쁨과 관심, 공포와 희망, 생의 필요와 갈망 등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세심하게, 그리고 기대하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명상할 수 있다. 우리는 말로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교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께 접근해 갈 수 있다.

우리는 개인적 또는 사적 훈련으로써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댄스, 육체적 운동, 음악, 또는 은혜에 응답하는 표현으로써 다른 능동적 표현을 통하여 행동화된 개인기도 훈련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철야기도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감당하는 행동이나 항거를 통하여, 또는 훈련된 봉사의 상징적 행동을 통한 공적 증거로서 기도를 행동화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 거래, 그리고 세상에서 생기는 일상적 사건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훈련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기도의 계약을 할 수 있고, 또는 함께 기도하는 정기 훈련에 관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롬 12 : 12, 살전 5 : 17)하는 생활로 부름받았다.

W-5.4003
기도에의 도움

개인예배에서 기도의 훈련을 쌓으면서, 우리는 기도의 형식과 내용을 형성하는 도움을 찾을 수 있는데

a. 성경에서 특히 주기도와 다른 기도들, 시편과 또 다른 성경의 송가들에서 ;

b. 찬송, 영가와 그 밖의 송가들에서 ;

c. 예배서, 기도서, 또 예배의 보조 서적들에서 ;

d. 문학과 시각 예술에 표현된 기도와 헌신의 유산에서 도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마치 일간 뉴스와 교회가 만든 성경해석 자료와 지침이 개인예배에 도움이 되듯 우리가 기도의 기회와 제목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W-5.5000

5. 개인예배와 제자직을 위한 기타 훈련

W-5.5001
주일날
성수주일 훈련

a. 하나님은 성경과 성례전, 그리고 기도 이외에도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

b. 크리스천은 주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주의 날을 받았다(W-1.3011 ; W-3.2001). 주일은 신자의 일주일의 시작이며 제자직의 삶에 모습을 부여한다. 주일을 잘 지키

W-5.4002 : 시 119, 130 ; 마 6 : 6 ; 눅 11 : 1-4 ; 롬 8 : 26- ; 고전 12-14

W-5.5001 : 하이델베르크 문답 4.103 ; 웨스트민스터고백 6.119 ; 소요리문답 7.061 ; 대요리문답 7.227

는 훈련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공중예배의 참여,

(2) 말씀 증거와 봉사, 그리고 구제의 목회에 참여,

(3) 영적 재창조에 공헌하는 활동과 일상적 직업으로부터의 휴식.

이런 훈련을 쌓으면서 주일에 일하는 크리스천은 주중 다른 날을 이렇게 지킬 목적으로 구별해 놓아야 한다.

W-5.5002
계 절

교회력의 계절은 개인예배와 제자직에 리듬과 내용을 제공한다(W-1.3013 ; W-3.2002). 특별한 계절, 행사, 그리고 각자 생활의 변화 등이 개인예배와 제자직을 또한 지시해 준다.

W-5.5003
금식훈련과 행동화한 기도

크리스천은 금식, 철야, 또 다른 행동화된 기도의 훈련을 위한 특별한 때와 절기를 지킨다. 특별히 제자직의 특별 행동을 준비하거나 회개, 화해, 평화운동, 사회적 항거, 동정의 행동으로서 어느 때나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역시 적절하다.

W-5.5004
기독교인의 봉헌

봉헌은 언제나 크리스천의 결단과 제자직의 표징이 되어 왔다. 신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선물과 개인적 재능과 시간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신 일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하고 그들과 함께 참여하라고 분부하신 데 대한 충성된 응답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십일조는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훈련의 기본적 표현이다(W-1.3030 ; W-2.5000).

W-5.5005
삶의 청지기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훈련을 따라 사는 자들은 스스로 단순성, 관용, 정직성, 후대, 동정심, 수용성, 그리고 이 지구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계에 관심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W-7.5000).

W-5.6000

6. 크리스천의 직업

W-5.6001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

a.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

b. 순종하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고 ;

c.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셨는데,

(1) 개인생활에서,

(2) 가정과 가족으로,

(3) 일상 직업에서,

(4) 지역사회, 국가와 세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W-5.6002
우리의 응답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또 신앙공동체의 예배와 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W-5.5004 : 제2스위스고백 5.227-5.231

우리들은 세상 안에서 또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목회를 통하여 제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우리들은 인간생활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기도록 부름받았는데,

a. 일을 하고 노는 중에,

b. 생각하고 행동하는 중에,

c. 사적인 관계와 공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한다.

W-5.6003
예배와 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또 일상생활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크리스천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김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일과 예배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

W-5.7000

7. 가정과 가족예배

W-5.7001
가정예배

그리스도인들이 가족 또는 가정에서 다함께 살 때, 그들은 다같이 예배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 날마다 다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 집안 식구들은 다음 일에 관여한다.

a. 성경 읽고 찬송이 따르는 식탁기도 ;

b. 아침과 저녁기도 ;

c.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찰하고 암송 ;

d. 시편, 찬송, 영가 및 그 밖의 찬가를 부름 ;

e. 주고 함께 나누는 헌신의 표현.

날마다 직장으로 인한 일과의 복잡성과 분산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가정예배의 훈련을 개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한가족 식구들이 다함께 예배하러 모일 수 없을 경우에는, 각기 식구가 공동 성경읽기와 기도 제목으로 개인예배의 공동시간을 지킬 수 있다.

W-5.7002
가정예배시의
어린이

부모(들)과 부모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들)은 모범을 보이고 가정예배를 마련하고, 토의와 교훈에 의해 기독교 예배에 관해서 자녀들을 교육해야 한다. 자녀들은 가정예배에서

a. 기도하고 찬송하며,

b. 성경 이야기를 듣고 말하며,

c. 성경구절을 읽고 암송하며,

d. 인도하고 경험을 나누며,

e. 실천하고 응답하는 일에 참여한다.

자녀들은 주일예배 때 정규적으로 사용하는 예배의 적절한 자료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W-2.3012-.3013 ; W-3.1004 ; W-3.3100 ; W-3.5202 ; W-6.2000).

W-5.7003
특별한 경우와
계절

가정예배는 교회생활과 가족들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특별한 인정과 축하의 기회들을 반영시켜야 한다. 생일, 세례받은 날, 그 밖의 특별 기념일은 특별히 지켜야 할 적절한 기회이다. 또한 가정예배를 통하여 주의 날과 세례와 성찬식의 성례전

을 기대하고 기억하는 일은 중요하다. 교회력에 의한 절기는 특별히 가정예배에서 적절히 지켜지는 대강절과 사순절, 성탄절과 부활절의 축하 계절과 더불어 가정예배를 위한 방향과 내용을 마련해 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배는 자연의 계절 변화와 지역사회, 국가 및 세상의 삶의 리듬과 마찬가지로 신자로 하여금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부르신 부름을 상기시키는 사건과 필요성을 역시 인정해 준다(W-2.3014 ; W-3.2000 ; W-3.3600).

W-6.0000

제6장 신앙공동체 내에서의 예배와 목회

W-6.1000

1. 교회 내의 상호 목회

W-6.1001
목회에서
하나님께 응답

개인과 공동의 예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신앙과 제자직에로 부르신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과 하나님이 세계와 상호간에 목회하도록 신앙공동체의 생활에서 사용하도록 주신 재능을 바친다(W-1.1000 ; W-5.1000 ; G-3.0300 ; G-4.0200 ; G-4.0400).

W-6.1002
상호 목회

교회 안에서의 상호 목회는 선포되고 들려진 말씀에 의해, 축하받고 참여한 성례전에 의해, 그리고 예배를 통해 드려지고 함께 나눈 기도에서 흘러나오며 그것들에 의해 육성된다..

W-6.1003
양육 및 목회적
돌봄

양육과 목회적 돌봄은 크리스천이 상호간에 사역하는 방편들이다.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신자와 자녀들의 양육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전적인 성숙성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목회적 돌봄이란 크리스천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이따금 개인적으로나 공동체 생활에서 오는 필요와 위기에 처할 때 크리스천 상호간에 서로 돌보는 협조를 의미한다. 종종 양육은 목회적 돌봄을 내포하고 또한 목회적 돌봄은 크리스천의 양육을 증진시킨다.

W-6.2000

2. 기독교 양육

W-6.2001
공동체에
가담함

크리스천 공동체는 모인 교인들의 생활과 삶의 변천 과정을 통해서 그 교인들에게 양육을 제공한다. 교회는 신앙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양육을 제공해야 하는데,

a. 세례를 준비하면서,
b. 신앙공동체의 생활에 교인들을 가담시킴으로써,
c. 그들을 예배에 참여케 하고 주의 만찬에 나오도록 초대함으로써,
d.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의 정체를 주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W-6.1003 : 롬 12 : 15 ; 갈 6 : 2 ; 엡 4 : 126-16 ; 제2스위스고백 5.233-5.234 ; 웨스트민스터고백 6.147

e. 세상 속에서 파송받은 제자로 살도록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양육한다(W-2.3012 ; W-2.3013 ; W-4.2002 ; W-4.2003).

W-6.2002
책임의 인식

교회는 이 세상에서 책임을 감당하도록 교인들을 양육시키며 그들을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a. 자기 발견 및 세계 인식으로,

b. 자기 훈련과 제자직으로,

c.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가치에 대한 결단을 개발시킴으로,

d. 교육과 직업에 관한 선택을 함으로,

e. 개인적 관계와 결혼관계에서 지혜로운 결단을 함으로 지원한다.

W-6.2003
소명생활

교회가 크리스천의 소명감을 발견한 사람에게 목회하듯이, 교회는 공적이며 활동적 생활에서 크리스천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양육을 제공한다(W-5.6000). 교회는 교인들의 제자직에 있어서 그들을 인도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a. 신앙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목회자로서,

b. 물질적 자원, 시간과 재능의 청지기로서,

c. 특히 가정 식구들과 함께 각자의 신앙을 나누는 역할 속에서 가족원으로서,

d.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e.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지원한다.

W-6.2004
변화에 응답함

교인이 새로운 제한과 새로운 자유를 부여하는 환경에서 그들의 제자직을 계속해 나갈 때, 교회는 교인들을 인도하고 지원할 양육을 제공해야 한다.

W-6.2005
교회의 양육 제공자

세례 예식을 통해 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믿고, 보편교회를 대신하여, 기독교 양육을 제공할 책임을 서약한다(W-2.3013 ; W-3.3603). 당회와 장로들은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감독을 위해, 교회 제직을 훈련하기 위해, 그리고 교인 중에서 제자직을 개발하기 위해 그 방편을 마련하는 책임을 진다(G-6.0304 ; G-10.0102e, f, h, j, l). 목사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를 통하여 교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공식 및 비공식 교육을 통하여, 그리고 모범에 의해 그 공동체를 양육해야 한다(G-6.0106 ; G-6.0202). 신앙공동체 내에서 특별한 재능과 교육을 통해 교육 목회를 위해 준비한 어떤 이들이 양육하는 지도자의 과제를 맡도록 부름을 받는다. 교사들, 상담자, 또 당회의 임명을 받은 그 밖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교육과 양육을 책임진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 잘 준비하도록 한다(W-3.3503). 부모와 부모의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교회의 신앙을 자녀들과 함께 나눈다(W-4.3002 ; W-5.7000).

W-6.2006
양육자료와 기회

교회교육을 위한 기본 자료와 표준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교육을 위한 중요한 기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축하되는 주일낮 예배이다. 교회공동체의 모든 교인, 곧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참석하고 참여하도록 권해야 한다. 주일낮 정기예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교육 활동을 계획해서는 안 된다(W-3.1004). 기독교 양육을 위한 중요하고도 계속적인 현장은 예배와 교육과 실제 모범을 통해 신앙을 서로 나누는 가정이다. 교회는 양육을 위해 다른 기회

를 제공한다.

a. 교회학교의 교실에서,

b. 교육과 양육을 위하여 조직된 다른 그룹과 친교 그룹에서,

c. 봉사의 선교를 위해서 모인 그룹과 연합체에서,

d. 위원회, 이사회, 또는 치리회에서,

e. 수양회, 캠프, 또는 대회에서.

교회의 신앙고백적 문서는 양육의 안내 역할을 한다(G-2.0000). 연구 및 교육을 위한 형태와 내용은 교회의 예전적, 문화적, 그리고 인종적 유산의 풍부한 자료에 의해서 마련된다. 교회의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방도로 개발된 각종 교육자료는 당회의 승인하에 적절히 사용된다(G-10.0102f).

W-6.3000

3. 목회적 돌봄

W-6.3001
목회적 돌봄

크리스천 공동체는 교인들의 개인생활 및 공동생활에 대한 목회적 돌봄을 제공한다. 교회는 상호 돌봄의 목회의 다른 수준을 마련할 수 있다.

W-6.3002
모든 신자에 의한 돌봄

모든 크리스천은 날마다의 생활에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과도한 긴장과 필요의 시간에 협조하고, 또 서로 용서와 화해를 제공하면서 피차간에 돌보도록 부름받았다. 이와 같은 돌봄은 신앙공동체가 다함께 예배드릴 때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이것은 교인들이 공동체에서 상호 활동할 때, 그룹으로 모여서 교육할 때, 또는 교회의 목회사역을 수행해 갈 때 제공된다. 장로, 집사, 그리고 목회자는 이런 공동의 목회적 돌봄을 위한 특별한 책임을 다하도록 부름받았다(G-6.0202 ; G-6.0304 ; G-6.0402).

W-6.3003
목회 상담

신앙공동체 내에서 특별히 재능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어떤 사람들은 이 목적을 위해 개인이나 그룹을 상대로 목회상담의 특별한 목회를 하도록 교회에서 부름받았다.

W-6.3004
상담 소개

어떤 환경에서는 목회적 돌봄의 사역은 전문가인 목사나 전문 자격증과 신앙적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소개하여 적절한 상담과 치료요법을 마련하게 한다.

W-6.3005
환자의 돌봄

교회는 특별한 필요와 생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한다. 교인이 아플 때, 크리스천들은 기도로써, 문병으로써, 그리고 아픈 사람과 그 가족과 식구들, 그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다른 행동으로써 응답해야 한다. 병이 심각하거나 오래 갈 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자들은 이 일에 관계된 사람들의 필요와 긴장감에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 치명적 중병의 경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중재하고, 고난 중에 격려하고, 비통함을 위로하고, 그리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희망을 주는 일 등 특별한 돌봄이 요청된다.

W-6.3006
사망시의 돌봄

죽음에 임할 때, 목회적 돌봄에 있어서 교회는 즉시 현장의 목회, 상실과 고통을 함께하는 목회, 부활의 능력 안에서 신앙과 희망의 목회, 그리고 돌봄과 사랑의 평범한 행동의 목회를 해야 한다. 교회는 슬픔과 적응의 때에 특별한 목회적 돌봄을 계속해야 한다(W-4.10000).

W-6.3007
상실의 돌봄

생활하는데 상실당하는 다른 경우가 있다. 즉,

a. 권력 상실의 때,

b. 한때 중요했던 관계가 사라질 때,

c. 자녀들이 집을 떠날 때,

d. 중요한 직장, 생계 유지 수단, 또는 경제적 안정을 상실당했을 때,

e. 결혼생활이 별거나 이혼으로 끝나게 되었을 때, 이런 경우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갱신과 적응 과정에서 실제적인 도움과 지원을 주는 목회적 관심을 요청한다.

W-6.3008
깨어진 관계의 돌봄

교회는 교인들을 치유하고 가족과 가정, 학교와 직장, 이웃과 지역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깨어진 관계에 이르게 하는 상처와 적대감과 일상생활의 갈등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목회적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W-4.8000).

W-6.3009
죄와 용서에서 돌봄

목회적 돌봄에 있어서 치유의 요청은 모든 인간적 깨어짐의 근원인 죄의 실재를 각자의 삶 속에서 인식하는 일을 포함한다. 신앙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복된 소식을 선포한다.

a. 그들의 죄와 깨어진 관계의 복잡성을 고백하도록,

b. 슬픔과 변화할 의향을 보이면서 회개하도록,

c.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타인에게 전하도록,

d. 타인을 용서하고 타인의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e. 깨어진 관계의 화해를 위해서 일하도록,

f. 치유와 화평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W-4.8000).

죄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새 삶을 향한 투쟁을 지지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도록 격려하고, 그리고 화해를 조정하는 일등이 목회적 돌봄의 적절한 행위이다.

W-6.3010
삶의 변천기에 돌봄

교회는 인간생활에 기쁨과 슬픔을 가져오는 변천이 있음을 인정한다 :

a.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나고 독립하고 그들의 부모는 나이들어 그들에게 의존하게 된다 ;

b. 사람들은 일하기 시작하고, 직업을 바꾸고, 은퇴한다 ;

c. 가족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거처로 옮겨 가고, 가족수가 늘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

d. 사람들은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고, 새 결단을 한다.

목회적 돌봄의 사역은 사람들로 이런저런 적응의 때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축하하도록 하며, 삶의 새로운 역할을 향해 일하도록 지지하고, 생의 변천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는 일을 돕는다.

W-6.3011
목회적 돌봄을 위한 예배자료

신앙공동체는 예배를 통하여 상호 목회적 돌봄에 참여하고, 교인들은 목회적 돌봄을 주기 위해 예배자료를 사용한다.

a. 성경은 지원, 위로와 인도의 기본자료이다. 설교와 찬양으로 하는 말씀의 선포는 궁핍을 인정하도록 하며 돌봄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W-2.2000 ; W-

3.3400).

b. 기도-침묵, 언어와 찬양으로-는 감사하고, 중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인식토록 한다. 손을 얹으며 기름을 붓고 하는 기도는 치유받고 능력을 얻고 유지하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일이다(W-2.1000 ; W-3.3506 ; W-3.5400).

c. 성찬식을 병원에서나 가정에서 시행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축하하는 것이고, 또 성전 너머로 신앙공동체를 확대시키는 것이 된다(W-2.3000-.4000 ; W-3.3600).

d. 주기도, 시편, 송영, 축도, 그리고 그 밖의 회중예배에서 사용하는 익숙한 순서들을 통해 신앙공동체의 지원과 돌봄을 특별한 요구나 환경 때문에 고립된 사람들에게까지 확대시키며, 그들로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위치가 어떠함을 깨닫게 한다.

e. 회상의 시간, 사람들에 대한 관심, 중재의 기도, 그리고 그 밖의 공동예배를 드리는 기회를 통해 출석하지 못한 사람들을 신앙공동체의 예배에로 이끌어야 한다(W-3.3500 ; W-3.3700).

W-6.4000
예배와 목회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드리는 하나님 예배는 신앙양육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목회적 돌봄의 사역을 위한 기초요 정황이다.

W-7.0000

제7장 세계 속에서의 교회의 예배와 목회

W-7.1000

1. 예배와 선교

W-7.1001
예배와 목회

교회는 그 목회와 예배를 통하여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예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최종 갱신으로서 약속하신 거룩한 통치의 실재를 보여 준다. 말씀 앞에서 그 순수성을 나타내고 기도와 성례전에서 그 일치를 이루는 예배하는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현존의 표징이다. 교회는 그 목회를 통해 복음 선포를 통하여, 동정과 화해의 사역을 통하여, 창조와 생명의 청지기 직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통치의 표징은 성령이 사람들로 정의를 찾고 평화를 이룩하게 인도하는 세상 어느 곳에서나 역시 나타난다(G-3.0000).

W-7.1002
예배와 선교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교회를 불러 세계에 봉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케 하신다. 교회가 세계 선교에 참여할 때, 교회는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G-1.0200).

W-7.2000

2. 복음 선포와 전도

W-7.2001
전도의 범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음을 이룩하기 위해 교회를 보낸다.

a.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 화해한다는 복음을 선포하며,
b. 모든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회개와 신앙과 순종으로 부르신다는 소식을 전하며,
c. 백성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그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며,
d.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와 영원히 생명의 풍요함을 제공하며,
e.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믿고 따르도록 어디에서나 백성들을 부르시며,
f.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신앙공동체로 그들을 초청한다(G-

W-7.2001 : 고후 5 : 19-20 ; 웨스트민스터고백 6.055-6.058, 6.187-6.190

1.0200 ; G-3.0300).

W-7.2002
전도의 맥락

예배는 거기서 백성들이 복음의 선포를 정규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과 결단의 행동으로 응답할 기회를 얻으며, 그리고 공동체의 양육과 지지를 받는 기본적인 정황이다(W-2.2000 ; W-2.5001 ; W-3.3501-.3503 ; W-3.5500). 교회 생활 중에서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중에서 자기 희생과 용납을 통해서 나타나며, 백성들을 그들의 분리된 관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서로 나누는 신앙공동체로 이끌어들인다. 크리스천이 날마다 세상에서 그들의 소명을 따라 살 때,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나오도록 초청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나누도록 하고 예배에 참여케 한다.

W-7.3000

3. 동정심

W-7.3001
동정심의 목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상에 내보내서 동정의 일을 하게 하신다.
a.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b. 슬픔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고,
c. 병든 자들을 돌보고,
d. 감옥에 갇힌 자들을 방문하고,
e. 포로된 자들을 석방하고,
f. 집 없는 자들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며,
g.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준다.

W-7.3002
동정과 예배

동정에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배에서 선포된다. 부름받은 자들은 말씀선포와 성례전의 축하로 인하여 목회에 임하도록 잘 준비되고 강화된다. 그 부르심은 고백과 중재의 기도에서, 자기 헌신의 행동에서, 그리고 동정의 목회에서 나누어 쓰여질 물질을 바치는 가운데서 신실한 응답으로 받아들여진다(W-2.1002 ; W-2.5000 ; W-3.3505-.3507). 부름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동정의 일들을 하도록 교회에 의해서 파송받고 보냄을 받는다(W-2.6000 ; W-3.3701 ; W-4.3000).

W-7.3003
동정과 주창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행한 동정의 행위는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사역이다. 교회는 백성의 직접적인 필요와 상처에 대응하여 사역하도록 부름받았다. 또한 교회는 파괴하고 왜곡시키는 일을 꾸미고 조장하는 구조와 체제에 개입하는 일에도 부름받았다. 그리스도인은 주창과 동정의 행동을 통하여, 교회의 공동사역의 봉사를 통하여, 또 이 같은 목적에 위탁된 기관과 조직체들과 협력을 통해 부름에 응답한다 (G-3.0300).

W-7.3004
성실한 동정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오늘날 성실한 제자들은 다음의 동정을 표현하는데,
a. 궁핍한 자들의 존엄성을 존경함으로,

W-7.3001 : 마 25 : 31-46 ; 눅 4 : 18-21 ; 롬 12 : 6-8 ; 갈 6 : 9-10 ; 약 1 : 27, 2 : 14-17
W-7.3004 : 막 1 : 32-38 ; 눅 6 : 12

b. 비록 동정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일지라도 돕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c. 스스로의 평안과 안전에 위험이 따를지라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d. 주고받는 일에 응할 용의를 갖고서,
e. 목회적 봉사활동의 한복판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심정으로, 항상 예배하는 공동체의 갱신의 능력과 교통 가운데서 할 것이다(G-3.0400).

W-7.4000

4. 화해 : 정의와 평화

W-7.4001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보내사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 평화, 그리고 사랑의 통치를 수립하게 하려 하신다(G-3.0300).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화해는 정의와 평화에 근거한 것이다(1967년도 신앙고백 9.45). 교회는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해를 선포하고, 영접하고, 실천하며, 교회 자체 내의 생활에서와 세계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자신을 결단한다.

W-7.4002
정의 실행

정의는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서 공평하고 정직한 거래관계를 갖게 하려고, 또 제 권리를 주장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권리를 주기 위하여 설정해 놓으신 질서이다. 정의 실현의 성경적 비전은 다음을 요청한다.

a. 개인사업에서나 공공사업에 있어서 정직한 거래를 하는 일,
b. 공동의 선을 위한 힘의 행사를 하는 일,
c. 그들이 부정당해 온 존엄성, 자유, 그리고 존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일,
d. 공평한 법률과 공정한 법의 집행을 위해서 하는 일,
e. 그 땅에 나그네된 자들을 환영하는 일,
f.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간에 생긴 괴리를 극복하도록 노력하는 일,
g. 정치적 억압과 착취에 대항해서 증언하는 일,
h. 교회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또는 전세계에서, 개인과 그룹 그리고 백성을 억압하는 과오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는 일을 한다.

W-7.4003
평화 조성

정의 없는 평화는 없다.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폭력과 불의가 있는 곳이면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은 평화 조성에 부름받는다.

a. 역사와 문화의 차이로 단편화되고 분리된 보편교회 안에서, 상호 불신에 의해 내적으로 양극화된 교단에서, 분열과 알력으로 병들어 있는 개 교회 안에서 ;

W-7.4000 : 1967년도 신앙고백 9.43-9.47
W-7.4002 : 출 22 : 21-27 ; 레 19 : 33, 34 ; 시 34, 82 ; 사 2 : 1-5, 32 : 1-8, 16, 17 ; 암 5 : 6-15 ; 미 6 : 8 ; 마 23 : 23-24 ; 눅 4 : 16-21 ; 웨스트민스터고백 6.127-6.128 ; 대요리문답 7.246, 7.251, 7.252, 7.254, 7.255 ; 1967년도 신앙고백 9.43-9.47
W-7.4003 : 사 2 : 1-5, 32 : 16, 17 ; 미 6 : 8 ; 약 3 : 13-18 ; 웨스트민스터고백 6.128 ; 대요리문답 7.245, 7.246 ; 1967년도 고백 9.43-9.47, 9.53-9.56

b. 국가들이 국가안보를 다른 무엇보다 우위에 두는 세상에서, 종교나 민족이나 이념의 열광적 행위가 폭력을 도발하는 세상에서, 경제적 또는 정치적 권력을 쟁취하고 보존하려는 욕망이 폭동과 전쟁을 유발하는 세상에서 ;

c. 범죄와 공포 분위기에 휩싸인 공동체 내에서, 잔악한 경쟁과 질서를 뒤집어엎는 반동으로 점철된 학교와 일터에서, 스스로 분열하고 폭력으로 상처 입고 공포로 마비된 가족과 가정에서.

W-7.4004
화해 예배

화해, 정의 및 평화의 목회는 교회의 하나님 예배에서 시작되고 양육된다. 하나님의 말씀선포 가운데서 백성은 그들로 이 같은 목회 봉사를 이룩할 수 없도록 얽어 매는 죄책과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확신을 얻는다. 세례와 주의 성찬에서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성령을 통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모든 경계선과 분열을 뛰어넘어 신앙의 형제자매로서 피차간에 인정한다(W-2.3000-.4000). 기도 가운데서 신실한 신자는 모든 인간관계의 파괴와 폭력과 불의를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중재의 기도를 올리며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룩한 화해, 평화 및 정의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 그리고 스스로 정의를 구하며 평화를 추구하면서 화해자가 될 것을 결단한다(W-2.1000 ; W-2.6000 ; W-3.3506 ; W-3.3700).

W-7.5000

5. 창조계와 생명의 돌봄

W-7.5001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불러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의 작업에 동참하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지구를 다스리고 경작하며, 그것을 유지하고 재형성하며, 그것을 보충하고 재생시킬 경외로운 힘과 모험적 책임을 주셨다.

W-7.5002
예배와 창조계의 이용

크리스천은 예배에서 창조된 우주, 지구, 모든 생명과 모든 물질을 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린다. 그들은 청지기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한다. 그들은 창조계와 생명을 돌보는 일에 스스로 실패했음을 고백한다. 그들은 말씀에서 선포되고 성례전에서 인증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의 구속과 갱생의 약속을 즐거워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날까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 것을 결심한다(W-1.0000).

W-7.5003
창조계의 청지기

지구를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음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

a. 지구의 자원을 착취, 오염, 또는 파괴하지 않고 책임 있게 이용하도록,

b. 지구의 주위 환경을 보존하고 생명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일하는 기술적 방법과 과정을 개발시키도록,

c. 모든 사람의 삶에 충족하리만큼 적절한 방법으로 생산하고 소모하도록,

d. 생산과 재생에 있어서 책임 있는 태도와 실천으로 일하도록,

e. 모든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아름다움, 질서, 건강,

W-7.5001 : 창 1 : 26-28, 2 : 15-20 ; 시 8편

그리고 평화를 창조하기 위해 지구의 모든 물질을 사용하고 형성하도록.

모든 창조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신자는 예배시에 찬양을 표현하는 방편으로서, 자기 헌신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결심의 표징으로서 하나님께 물질을 바친다(W-2.5000 ; W-3.3507 ; W-5.5005-.5006 ; W-5.6000).

W-7.6000

6. 교회와 하나님의 통치

W-7.6001
교회와 신국

교회는 예배와 봉사에 있어서 현재적 실재와 미래의 약속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징표이다. 교회의 예배와 봉사가 하나님 나라를 오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하고 있는 시대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수립되었다는 신념과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가 나타나리라는 굳은 희망을 가지고서 예배하고 봉사한다.

W-7.6002
확신과 희망

현시대에서 전도와 창조계의 돌봄, 동정과 화해에 대한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통치의 징표이며, 생명 부정의 각박한 상황의 한복판에서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 희망은 교회 사역의 성공이나 교회 예배의 효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사역하고 예배드릴 때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보존된다.

W-7.7000

7. 찬양으로서의 예배

W-7.7001
찬양을 돌림

예배에서 교회는 변화되고 갱신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진력하도록 보냄을 받는다. 교회는 그 날을 바라본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 : 9-11).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유 1 : 24).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계 7 : 12).

권징조례

The Rules of Discipline

[본 문]

(1996년 승인, 1996년 7월 6일 발효)

D-1.0000

제1장 교회권징의 원리

전 문

D-1.0101
교회권징

교회권징은 교회의 교인들을 인도하고 통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교육시키며, 또 범법자에게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비판하여 선도하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회의 권위행사이다. 이 같은 권징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에 교인됨의 의미를 분명히 밝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 신앙공동체의 생활 가운데서 개인을 양육시킴으로써 교회의 순결성을 보존하고 ; 잘못 행동하는 교인의 언동을 교정하거나 제재하여 회개와 회복에 이르도록 하고 ; 불화와 분열의 원인들을 제거하여 교회의 일치를 회복하고 ; 과정의 올바르고 신속하고 실속 있는 결정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 모든 점에서 교인들은 절차상 안전과 합당한 과정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하며, 이 조례를 마련하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D-1.0102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여된 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 주신 그 권위, 곧 교회가 권징을 행사하는 데서 나타난 권위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며, 또 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자는 것이다. 권징은 분노로 할 것이 아니라 자비한 마음으로 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교회의 큰 목적을 달성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흠없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D-1.0103
조정과 중재

분쟁 없이 견해 차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고 조절하려는 전통적인 성서적 의무는 본 권징조례로 인해 감소되지 않는다. 권징조례가 교회 내에서 필요시 사법절차가 수행되어야 할 방편을 설명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떤 방식의 사법절차를 권장하거나 비용을 더 들게 하거나 더 힘들게 하려는 데 그 의도나 목적이 있지 않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마태 5 : 25)는 교인에 대한 성서적 의무가 줄어들거나 감소되지 않는다. 모든 교회 교인의 의무는 불화, 불평, 비행이나 변칙의 조절이나 해결을 (기도함으로 신중히) 하려고 노력하는 일과 또 기도하는 심정으로 논의한 후 그것들이 교회의 순결과 목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확정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본 권징조례 하에서 공식 절차를 피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D-2.0000

제2장 사법절차의 정의

D-2.1000

1. 사법절차

D-2.0101
교회권징

사법절차는 목회적 돌봄과 감독의 정황에서 교회권징이 수행되는 수단이다. 그것은 다음 사항을 위해 교회의 치리회들에 의한 권위 행사이다.

변칙과 비행의 방법의 시정

a. 치리회들이나 총회 중앙협의회나 총회 기관에 의한 변칙과 비행의 방지와 시정(교정사건, D-6.0000) ;

방법의 시정

b. 개인들에 의한 범법의 방지와 시정(징계사건, D-10.0000).

D-2.0102
교회
치리회들

사법절차상 교회의 치리회들은 당회,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이다. 당회는 그 자체가 심리를 행사한다. 노회, 대회, 그리고 총회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통하여 심리하고 청문한다.

D-2.0103
해결의
대안형식

D-1.0103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는 만일 적절하게 생각하고 관여한 모든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를 얻어서,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공인된 조정자들과 중재자들에 의해 수행하는 대안형식을 발의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의 목적은 조정과 해결을 통해 간여한 모든 당사자들을 위해 정의와 동정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런 과정에서 또는 그것에 관련하여 생긴 서면이나 구두이든 간에 여하한 진술은 차후 조사나 재판에서 증거로서 그 자체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D-2.0200

2. 사건의 형태

D-2.0201
교정이나 징계

사법절차는 사건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 교정과 징계.

D-2.0202
교정사건

교정사건이란 하급 치리회나 총회 중앙협의회나 총회의 기관의 변칙이나 비행이 상급 치리회에 의해 시정될 수 있는 사건이다.

변 칙

a. 변칙이란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을 뜻한다.

비 행

b. 비행이란 행동의 생략이나 불이행을 뜻한다.

D-2.0203
징계사건

징계사건이란 교회 교인이나 제직원이 범법으로 책벌받을 수 있는 사건을 뜻한다.

교회제직원

a. 교회의 제직원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이다.

범 법

b. 범법이란 그 교회 교인이나 교회 제직원이 성경이나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나 그것의 생략을 뜻한다.

D-3.0000

제3장 사법절차 관할권

D-3.0101
관할권

사법절차에 있어서 각 치리회는 다음과 같은 관할권을 갖는다;

당 회

a. 개체교회의 당회는 그 교회 교인들을 포함하는 징계사건에 있어서 원 관할권을 갖는다.

노 회

b. (1) 노회는 그 노회 목사 회원들과 그 노회 경내 지교회에서 사역하는 평신도 파송 목회자들 (G-11.0520f)을 포함하는 징계사건에 있어서 원 관할권을 갖는다.

(2) 회원 노회이외의 노회 구역에 속하는 일에 종사하는 목사는, 그 일이 노회의 관할권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일을 함으로써, 징계와 관련하여 노회의 관할권에 따라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징계 절차가 목사에 대해 발의되어야 한다면, 회원 노회에 통지되어야 한다. 본 단락은 구역 외부 또는 구역 내에서의 사역 허가에 관련된 조항 G-11.0401b 를 이행해오지 않았을지라도 적용한다. 본 단락은 목사가 조항 G-11.0410에 다랄 인정된 목회 구역 내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노회, 대회
총회

c. 노회, 대회와 총회는 교정사건(D-6.0000)과 항소(D-8.0000과 D-13.0000)에 있어서 관할권을 갖는다.

교회해산

d. 교회가 해산될 때, 노회는 당회에 의해 시작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어떤 징계사건을 결정해야 한다.

D-3.0102
더 이상 사법적
결의 못함

어떤 교정사건이나 징계사건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송부되었을 때, 발의한 치리회는 그 사건에 관하여 그 이상 사법적 결의를 해서는 안 된다.

D-3.0103
하급 치리회가
결의 못함

하급 치리회가 교정사건에 있어서 불평이나 징계사건에 있어서 고소를 제기한 이후 90일 동안에 특정 교정사건이나 징계사건을 처리 못할 경우, 상급 치리회는 당사자 어느 편의 요청에 따라 그 사건에 관한 관할권을 맡을 수 있다. 상급 치리회는 하급 치리회에 그 처리에 관하여 분명한 지시를 하거나 그 문제 자체를 결말지을 수도 있다.

D-3.0104
이명한 목사의
관할권

한 노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명한 목사는 두 번째 노회에서 받아들이기까지는 첫번째 노회의 관할권에 속한다. 한 노회에 의해 다른 교단으로 이명한 목사는 그 교단에 의해 받아들이기까지는 그 노회의 관할권에 속한다.

D-3.0105

각 치리회는 권징 규칙 조항에 따라 활동하는 다른 모든 치리회의 판결, 결정 및 규례들을 시행하고 인정해야 한다.

D-3.0106
관할권의
종결시

사법절차에 있어서 관할권은 교회 제직원이나 교인이 그 교회의 관할권을 파기할 때 종결된다. 만일 징계사건에 있어서 피소자가 G-6.0501과 G-6.0503에 따라 그 교회의 관할권을 파기하면, 당회서기나 상회서기는 **피소인의 이름, 조사 또는 심리 및 접수된 고발 동안의 파기 사실과 날짜를 포함하여** 그 파기와 그 당시 사건의 상태를 해당 치리회에 보고해야 한다.

D-4.0000

제4장 조 회

D-4.0100

1. 조 회

D-4.0101
정 의

조회란 당회나 노회나 대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차상급 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하는 것으로써 아직 미결 상태인 교정이나 징계사건에 있어서 심리와 결정이나 상소의 청문을 위한 서면 요청이다.

D-4.0102
해당 주제

조회의 해당 주제는 상급 치리회가 그 사건을 결정하는 데 바람직한지 또는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나 질문을 포함한다.

D-4.0103
하급 치리회의 의무

상급 치리회에 서면 조회를 요청하면서 하급 치리회는 그 요청의 이유를 명기해야 하고 그 사건에 있어서 절차상의 전체 기록을 전달하고 그것에 관하여 더 이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만일 조회가 접수되면, 심리나 상소의 청문을 포함한 모든 절차는 그 후부터 상급 치리회에서 관장해야 한다.

D-4.0200

2. 조회의 결의

D-4.0201
상급 치리회 의무

조회를 위한 요청을 접수한 후, 상급 치리회의 서기는 그 사건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도록 그 요청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D-4.0202
접 수

만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그 조회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심리와 결정 또는 상소의 청문을 진행시켜야 한다.

D-4.0203
거 절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조회를 위한 그 사건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그 거절 이유를 진술하여 하급 치리회로 돌려 보낸다. 그러면 하급 치리회는 심리나 상소의 청문을 시행해야 하고 결정에 이르러야 한다.

D-5.0000

제5장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D-5.0100

1.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봉사

D-5.0101
선 출

총회, 각 대회와 각 노회는 그 관할권에 속하는 목사와 장로 중에서 상임사법 전권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각 전권위원회는 가능한 한 목사와 장로가 거의 동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권위원회는 각 산하 대회로부터 오는 1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총회의 전권위원회는 각 산하 대회로부터 오는 1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회의 전권위원회는 가능한 한 산하 노회 가운데서 균등하게 배분된 11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된다. 11개 이하의 노회를 갖고 있는 대회에서는 각 노회가 적어도 1명을 보내야 한다. 노회의 전권위원회는 노회 산하 각 개교회로부터 장로 위원 1인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노회의 전권위원회 위원 중 2인을 징계사건의 조사가 진행중인 동안 조사 위원회 절차 검토에 대한 청원 검토(D-10.0204) 및 고발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결정 검토에 대한 청원 검토(D-10.0303)를 하기 위해 선정한다. 이 두 위원은 추후의 심리에 참여할 수 없다. 당회는 노회의 전권위원회에 청원 양식 중 하나를 회부한다.**

D-5.0102
임 기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각 위원의 임기는 6년이어야 한다. 단, 총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회원권은 그 위원이 공천받은 대회 밖에 있는 개 교회 또는 노회로 회원권을 이명할 때 끝난다. 매 홀수 연도에 총회는 그때 생긴 공석을 메꾸기 위해 6년 임기로 위원들을 선출해야 한다. 그들의 임기는 그들을 선출한 총회가 폐회될 때부터 시작한다.

D-5.0103
연 조

대회나 노회는 전권위원들은 각 3개조로 선출받되, 한 조 내의 위원수가 반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처음으로 설립되었을 때 한 조는 2년 간, 두 번째 조는 4년 간, 그리고 세 번째 조는 6년 간 봉사해야 한다.

D-5.0104
공 석

사임, 사망 또는 그 밖의 어떤 이유로 생긴 공석은 어떤 회의에서든지 잔여 임기를 채울 위원을 선출한 그 선출 치리회에 의해 메울 수 있다.

D-5.0105
자 격

6년의 전체 임기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서 봉사한 사람은 6년 임기가 만료된 후 4년이 경과한 후라야 재선될 자격이 있다. 아무도 동시에 하나 이상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봉사해서는 안 된다. 총회에 의해 선출된 다른 어느 기관의 위원인 사람은 그가 그 회원권을 사임하기까지는 총회 상임사법 전권위원으로 봉사해서는 안 된다. 어느 치리회의 의장이나 서기나 직원 또는 그 소속 기관이나 협의회의 직원은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봉사해서는 안 된다.

D-5.0106
위원회 비용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모든 필요한 경비는 그 선출 치리회에서 지불해야 한다.

D-5.0200

2. 회의

D-5.0201
임 원

각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그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선출해야 한다.

D-5.0202
권한의 근거

송부된 사건의 경우,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의해 규정된 권한만을 가지며 그것에 따라 그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

D-5.0203
회 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회의는 선출 치리회가 지시한 때와 장소에서 모이거나, 그런 지시가 없었을 때는 그 전권위원회가 결정한 때와 장소에서 모여야 한다.

D-5.0204
정족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단, 징계사건에 대한 노회 전권위원회는 정족수가 D-10.0204 또는 D-10.0303에 따라 선정된 2인의 위원을 제외한 회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법 절차에 대한 당회의 정족수는 당회장 및 장로 회원들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D-5.0205
참여치 못할 자

개체교회 또는 하급 치리회가 어떤 사건의 대상자라면, 그 교회나 그 하급 치리회나 그 하급 치리회 지역 내에 있는 교회의 교인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그 사건의 심리나 상소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D-5.0206
정족수 부족

만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수가 결석이나 무자격이나 신체장애로 인해 정족수에 미달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정족수를 얻을 때까지 회의를 휴회해야 한다.

정족수 확보 불능

a.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들을 선출한 치리회의 서기에게 정족수 미달을 보고해야 한다.

전임 위원의 명단

b. 치리회의 서기는 과거 6년 이내에 임기가 끝난 상임사업 전권위원회 위원의 최근 명단을 보관해야 한다. 그 명단은 가장 최근 연조로 시작하여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정족수를 얻을 수 없다고 보고하면, 서기는 정족수를 이루기 위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이전 위원 중에서 충분한 수를 그 명단에서 윤번으로 즉시 선택해야 한다. 서기는 그 치리회에 매년 그 명단을 보고하여야 한다.

참석자 비용

c. 만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사건 심리를 하지 못하면, 그 치리회는 참석하도록 요청한 사람들에게 들었던 비용을 지불해 주어야 한다.

D-6.0000

제 6장 교정사건

D-6.0100

1. 교정사건의 착수와 집행유예

D-6.0101
착수 방법

교정사건은 관할권을 가진 치리회의 서기에게 고소를 접수함으로 시작된다.

D-6.0102
고소의 정의

고소란 어느 특정한 결정이나 결의에 있어서 변칙을 주장하거나 비행을 주장하는 서면 진술을 말한다. (D-2.0202) 고소의 제기는 그 자체가 결정이나 결의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다.

D-6.0103
집행유예

치리회나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나 D-6.0202b에 명시된 피고인의 결의나 결정은 집행유예에 의해 정지될 수 있다 집행유예란 고소나 상소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결정이나 결의의 시행이 지연되도록 요구하는 서면 진술이다.

제기할 수 있는 사람

a. 고소 또는 상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 어느 개인이나 치리회는 그 결정이나 결의가 있은 후 30일 이전에 그 치리회나 전권위원회 또는 그 결의나 결정이 유예되어야 할 피고인에게 다음에 하나를 제기함으로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1) 치리회에 의해 그 결정과 결의를 내려졌을 때 출석한 위원의 적어도 1/3 이 서명한 집행유예; 또는

(2) 그 사건을 결정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의 적어도 1/3이 서명한 집행유예; 또는

(3) 그 결정이나 결의에 관해 고소나 상소를 청문할 관할권을 가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적어도 3명의 위원이 서명한 집행유예, 단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그런 위원들에게 고소의 사본이나 상소의 통보나 제기할 고소나 상소의 내용이 그 이유와 함께 제출되었을 경우, 그리고 그런 위원들이 그들의 판단에 그 결정이나 결의에 오류가 발견될 개연적인 근거가 있다고 확인하는 경우이다.

사본 제공

b. 집행유예의 사본은 고소나 상소를 청문할 상임사법 전권위원에게도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유효기간

c. 집행유예는 고소나 상소의 통보 제기의 기일이 만료되기까지나, 또는 기일에 맞추어 접수했으면 차후에 있을 조건을 제외하고, 그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릴 때까지 유효해야 한다.

집행유예에
대한 반대

d.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제기 30일 이내에 그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집행유예에 대한 반대의사를 접수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이 집행유예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양편 당사자들이 그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대표를 보낼 수 있다. 그런 청문회에서 집행유예는 조절되든지, 종결되든지,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그 사건의 공과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계속되든지 할 수 있다.

D-6.0200

2. 교정사건의 고소 제기

D-6.0201
당사자들

교정사건에 있어서 고소를 제기한 당사자나 당사자들을 고소인이나 고소인들이라 하고 고소를 받은 당사자나 당사자들을 피고인이나 피고인들이라 한다.

D-6.0202
고소 제기자

변칙의 고소나 비행의 고소는 어느 치리회의 관할권에 종속하면서 거기에 조치를 상신하는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 또는 치리회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다.

노회, 대회나 동등한 수준의 치리회 상대

a. 노회나 대회를 상대로 하는 고소나 어느 치리회가 동등한 수준의 다른 치리회를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 변칙의 고소는 변칙협의가 발생한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비행의 고소는 비행협의가 발생한 후 90일 이내 다음 회의 때 제기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서면 요청서가 상기 회의 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고소를 제기할 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1) 회원 등록 기간 중 노회를 상대로 대회에 변칙이나 비행에 대해 제기한 노회원으로 등록된 목사나 장로;

(2) 총대의 등록기간 중 대회를 상대로 총회에 변칙이나 비행에 대해 제기한 대회의 총대;

(3) 노회를 상대로 대회에 제기한 당회;

(4) 대회를 상대로 총회에 제기한 노회;

(5) 동일 수준의 타 치리회를 상대로 그 치리회가 소속한 차상급 치리회에 고소를 제기하는 어느 한 치리회;

(6) 치리회나 기관에 의해 개인이나 재산에 상해나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노회를 상대로 당회에 혹은 당회를 상대로 총회에 제기한 노회, 대회 또는 노회나 대회 기관의 고용직원.

당회,총회 중앙협의회나 그 기관 상대

b. 당회나 총회 중앙협의회나 총회의 기관을 상대로 고소하는 경우, 변칙의 고소는 그 변칙협의가 발생한 후 90일 이내에 접수시켜야 한다 비행의 고소는 변칙협의를 치유하는 데 실패했거나 피고인이 거부한 후 90일 이내 다음 회의 때 제기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서면 요청서가 상기 회의 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고소를 제기할 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1) 해 교회의 당회를 상대로 노회에 제기한 지교회 교인;

(2) 총회 중앙협의회나 총회의 기관을 상대로 총회에 제기한 당회, 노회나 대회;

(3) 총회 중앙협의회나 총회 기관에 의해 개인이나 재산에 상해나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총회에 제기한 총회 중앙협의회 의회나 총회기관의고용직원;

(4) 교회의 당회를 상대로 당회 또는 당회의 기관에 의해 개인이나 재산에 상해나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노회에 제기한 지교회의 고용직원.

D-6.0300

3. 사전 심리 절차

D-6.0301
고소 진술

고소는 다음 사항을 진술해야 한다:

a. 고소인의 이름과 피고인의 이름.

b. 날짜, 장소, 그리고 그 환경을 포함한 특별한 변칙 ; 또는 그 비행을 치유하기 위한 서면 요구서의 날짜와 피고인이 그렇게 하는데 실패했던 차기 회의의 날짜를 포함한 특별한 비행.

c. 변칙 또는 비행에 대한 고소 사유.

d. 당사자가 고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는 이유를 밝힌 고소인의 관심과 관계.

e. 요청한 구제책.

f. 고소 사본이 피고인에게 배달 증명 우편이나 인편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실. 고소인은 수취인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이나 인편 전달의 공술서를 첨가하여 상급 치리회의 서기에게 서류를 접수시켜야 한다.

D-6.0302
변호인단

치리회나 총회 중앙협의회나 총회의 기관이 고소인이나 피고인이 될 때, 세 명 이하의 변호인단을 지명해야 한다. 이 변호인단은 그 사건을 상소한 상급 치리회에서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사건에 있어서 고소인이나 피고인을 대표해야 한다.

규칙에 따라 마련

a. 치리회나 총회 중앙협의회나 총회의 기관은 규칙에 따라 변호인의 임명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봉사 못함

b. 당회 서기, 노회나 대회의 서기나 총무는 봉직하는 치리회의 변호인단에 봉사해서는 안된다.

D-6.0303
고소에 대한 답변서

피고인의 변호인단은 고소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간명한 답변서를 상급 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해야 하고, 고소인에게 답변서의 사본을 주어야 한다. 그 답변서는 고소에 협의 사실이 진실함을 인정해야 하고, 진실이 아니거나 잘못 진술된 그 주장을 부인해야 하고, 또한 변칙이나 비행으로 확인된 상황을 설명할 다른 사실들을 내세워야 한다. 답변서는 D-6.0307에 언급된 어떤 다른 문제도 역시 제기할 수 있다.

D-6.0304
피고인의 의무

a. 고소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당회 서기나 응답할 치리회의 서기, 피고인의 기관이나 중앙협의회는 관할 상급 치리회의 서기에게 그 사건에 관련된 모든 회의록과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고소인에게 사본을 주어야 한다.

추가 서류

b. 그 후 10일 이내에, 그 고소인은 서면으로 그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의 추가 회록철 또는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것들은 가능하면 지체함이 없이 상급 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해야 한다.

D-6.0305
심리 이전 절차

그 회의록과 서류가 상급 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되었을 때, 그 서기는 즉시 그들 서류를 그 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넘겨야 하고, 그 위원회는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예상 심리 날짜의 통보와 함께 그 사거니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D-6.0306
심리 요약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원 절차 진행에 있어서 당사자 어느 편에게 출판할 수 있도록 증거의 개요를 담은 심리 요약서와 그 증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론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D-6.0307
서류 검사

어느 사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하면, 그 사건을 심리할 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과 서기는 신속히 다음 사항을 결정짓기 위하여 서류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a. 그 치리회의 관할권 여부;

b. 그 고소인이 그 사건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c. 그 고소가 적시에 상소 접수되었는지 여부;

d. 그 고소가 구제책의 부여를 요구하고 있는지 여부.

D-6.0308
예비 질문 결정

위원장과 서기는 그들의 조사 결과를 당사자들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a. 만일 사건의 당사자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에 의해 위원장과 서기의 조사결과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논의 중인 조사결과에 관한 증거와 논의를 할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b. 만일 논의 중인 조사 결과를 결정하는 데 청문이 필요하면, 금전적 고려를 포함하여 고소에 관한 심리 바로 전에 예비 질문의 처리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한, 그 청문은 고소에 관한 심리 이전 적어도 30일 전에 일정을 정해야 한다.

c. 만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D-6.0307에 열거한 어느 사항이라도 부정적으로 해답되었다고 확정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

D-6.0309
사전 심리회의

한 사건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접수된 이후 어느 때나, 그 위원회는 당사자들이나, 만일 있다면, 그들의 변호인에게 해결 가능성들을 모색토록 규칙에 따라 마련해 줄 수 있다; 또는 사전 심리회의에서 사실 진술과 논쟁 이슈에 관해 합의를 구하고, 문서와 기타 증거를 교환하고, 그 논쟁을 합리적으로 편견 없이 좁히고 그것의 해결을 진척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결의를 하도록 한다.

D-7.0000

제7장 교정사건의 재판

D-7.0100

1. 재판의 집행

D-7.0101
재판—교정적

교정사건의 재판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집행해야 한다.

D-7.0102
정식으로 집행

재판은 그 상황에 적합한 중립적인 장소에서 예의범절이 분명하게 정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D-7.0200

2. 소환과 증언

D-7.0201
당사자와
증인 소환

어느 한편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당사자들이나 증인들을 재판에 출두하도록 하는 소환장은 그것들을 전달하도록 시켜야 할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소환받는 회원

a. 미국장로교 교인만이 출두하도록 소환받을 수 있다.

요청받는 타인들

b. 다른 사람들은 출석을 요청받을 뿐이다.

타치리회의
증인

c. 교단의 다른 치리회의 관할권하에 있는 사람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재판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청원에 의하여 당회서기나 다른 치리회의 서기가 재판 장소에 출두하여 요구하는 증거를 제공하라고 증인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비 용

d. 어느 증인이나 재판에 출석함으로 발생한 비용의 상환은 증인을 부른 당사자로부터 받아야만 한다.

D-7.0202
소환장 전달

소환장은 인편으로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사건을 재판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인편이나 우편 전달의 사실과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D-7.0203
이차 소환

만일 미국장로교 회원인 당사자나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2차 소환장은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여서 보내야 한다. 즉, 만일 당사자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를 말하지 않고 정한 시일에 출두하지 아니하면, 당사자나 증인은 불순종과 모욕의 과오를 범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런 범법으로 인해 징계 결의를 받을 수도 있다.

D-7.0204
증인의 증언 거부

증인으로 소환받아 출두한 미국장로교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하기를 거부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또 계속 증언을 거부하면 징계 결의를 받을 수 있다.

D-7.0205
선서 증언

선서에 의한 증언은 D-14.0304의 규정에 따라서 행해지고 받아들여진다.

D-7.0300

3. 재판 절차

D-7.0301
변호인

교정사건에 있어서 각 당사자들은 출두해야 하며 변호인에 의해 대신할 수도 있으나, 단 미국장로교의 회원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변호인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재직 중 변호인으로서 그 위원회 앞에 출두해서는 안 된다.

D-7.0302
자료의 회람

교정사건의 어느 당사자나 어느 누구도 상임사법 전권위원들에게 사건의 최종처리 이전에, 사건에 관련된 어떤 기록되거나 인쇄되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배포하거나 또는 배포되도록 시켜서도 안 된다. 이런 금지에도 불구하고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추가 자료들을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철하여 보관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

D-7.0303
재판 집행 통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재판의 집행과 그들을 해임하는 일까지 포함하여 양편 당사자, 증인, 변호인, 그리고 일반인들의 행동을 통괄할 전적인 권위와 권한을 가져야 하며 종국에는 적절한 권위와 예의범절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절차에 관한 질문

a. 절차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증거물의 허용에 대한 질문은 양편 당사자들이 청문할 기회를 가진 다음에 위원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전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는 다수표에 의해 그 질문을 결정해야 한다.

결 석

b. 재판이 시작된 후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어느 위원의 결석은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 후로부터 그 사람은 그 사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D-7.0304
정족수 미달

정족수의 미달은 그 사건을 미결 재판으로 끝나게 하고, 그 정족수 미달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D-7.0400

4. 재 판

D-7.0401
교정사건의 절차

교정사건의 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한다 :

위원장에 의한 선포

a. 위원장은 D-1.0101과 D-1.0102를 큰소리로 읽고 치리회가 재판을 진행시키려고 한다고 선언하고, 위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치리회에 속한 판정관들로서의 높은 인격과 그들이 수행하려는 엄숙한 의무를 기억하며 중시하도록 일러야 한다.

전권위원의 자격

b. 당사자들이나 그들의 변호인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조직과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이 청취되도록 할 수 있다.

부적격성 (1)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그가 개인적으로 그 사건과 관계되었거나, 어느 한편 당사자와 혈연관계나 결혼관계가 있거나, 어느 한편 당사자를 적극 지지나 반대해 왔거나 또는 D-5.0205의 규정에 의해 적절치 못한 사람이면 실격하게 된다.

항 의 (2)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나 당사자 어느 편으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항의의 타당성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나머지 위원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절차상 반론 c.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모든 예비적 반론과 절차 진행의 질서나 규칙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어떤 반론을 확정해야 한다.

고소 개정 d. 고소인에게 재판시 그 고소를 개정하는 일이 허락되어야 한다. 단, 그런 개정은 고소의 본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또는 피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한다.

개정 진술 e. 당사자들에게 개정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증거의 규칙 f. D-14.0000에 있는 증거의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증 거 g. 증거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여겨지고,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고소인과 피고인을 대신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최종 진술 h. 당사자들에게는 최종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고소인이 그 논의를 시작하고 마감할 권리를 갖는다.

D-7.0402
결 정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다음 비공개로 모여야 한다. 전권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심 의 a. 교정사건에 있어서 어떤 고소도 증거의 우세가 증명되지 않는 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우세란 그것에 대립하여 평가해 볼 때 더욱 설득력 있는 힘과 보다 큰 진실의 개연성을 갖고 있는 그런 증거를 의미한다. 심사숙고한 후 그 전권위원회는 그 고소에 명기된 각 변칙이나 비행에 대해 투표해야 하고, 그 회의록에 투표를 기록해야 한다.

결 정 b.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다음에 그 사건을 결정해야 한다. 만일 고소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인정되면, 그 전권위원회는 그러한 결의가 적절하다고 명령하든지, 아니면 하급 치리회로 그 문제를 더욱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서면 결정서 c. 서면 결정서는 회기 중에 준비해야 하고 서면 결정서의 사본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서명할 때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다. 서면 결정서의 등본은 인편으로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그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즉시 배달되어야 한다.

즉시 접수 d. 재판 종료의 30일 이전에 그 결정서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임명했던 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공 개 e.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지시하는 대로 그 결정서를 배포해야 한다.

D-7.0500

5. 상소의 규정

D-7.0501 상소시일

각 당사자를 위한 상소를 접수할 시일은 그 결정이 그 당사자에게 전달되었거나 그에 의해 거절된 일자로부터 산출해야 한다.

D-7.0502 상 소

상소는 원 당사자들의 한 사람이나 그 이상에 의해서만 주도될 수 있다. 상소의 규칙은 D-8.0000에 나온다.

D-7.0600

6. 절차의 기록

D-7.0601 절차의 기록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

구두 기록

a. 모든 증언과 구술 절차에 대한 정확한 구두 기록을 미리 마련한다.

증거물

b. (증거물로 접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명시해서) 증거로 제시한 모든 증거물을 확인하고 보존하고 모든 증거물의 목록을 작성한다.

회의록

c. 그 절차의 회의록을 기록하는데 거기에는 투표와 함께 그 사건에 관련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어떤 결의나 지시를 포함해야 한다.

기 록

d. 다음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의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1) 고소와 그에 대한 답변 ;
(2) 그 사건에 접수된 모든 회의록과 문서들 ;
(3) 만일 요청이 있다면, 증명받은 등본 ;
(4) 적절히 표시된 증거물, 기록, 문서, 그리고 기타 서류 ;
(5) 서면 결정서 ;
(6) 그 사건에 관련된 투표를 포함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어떤 결의나 지시.

보 존

e. 최종 판결이 난 후 14일 이내에 선출 치리회의 서기에게 그 사건의 기록을 증명하고 전달해야 하는데, 그는 그것을 적어도 2년 간 보관해야 한다.

등 본

f. 청원에 따라서 그리고 요청하는 측의 비용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신속히 재판과정에 있었던 모든 증언과 구두 절차의 정확하고 완전한 등본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 등본은 정확하고 완전하다고 그 사람이 확인할 때, 만족할 만한 비용 지불절차에 따라 그것을 요구한 각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또 D-8.0000에 의한 상소에 대비하여 발송될 수 있도록 추가 사본 1부는 기록부에 포함시켜 놓아야 한다.

D-7.0602 기록에 추가

아무도 그 재판 집행에 책임을 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느 사건의 기록에 보충을 하거나 추가해서는 안 된다. 그 기록을 보충하겠다는 요청은 하급 치리회의 서기로부터 서면으로 받기 전까지는 고려할 수 없으며, 그 서기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에게 전달해야 한다. 요청서의 사본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각 당사자는 서면으로 응답하는 데 10일 기한을 가져야 한다.

D-7.0700

7. 서기의 임무

D-7.0701
결정의 보고

만일 치리회가 그 결정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로부터 접수할 때가 회기 중이면, 그 서기는 그 결정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치리회의 회의록에 결정 전부를 기록해 넣어야 한다. 만일 치리회가 회기 중이 아니면, 그 서기는 그 첫 번째 정기회의나 그 후 휴회한 회의 또는 그 목적을 위해 소집한 회의에서 그 결정을 치리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치리회의 회의록에 결정 전부를 기록해 넣어야 한다.

D-8.0000

제8장 교정사건의 상소

D-8.0100

1. 상소의 착수

D-8.0101
정 의

교정사건의 상소는 절차와 결정을 교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취소하거나 그 결정을 번복시키려는 검토의 목적으로 하급 치리회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차상급 치리회에 이첩하는 일이다.

D-8.0102
상소의 착수

상소는 그 사건의 원 당사자들 중 하나나 그 이상에 의해서 착수될 수 있으며 서면 상소장을 접수함으로 이루어진다.

D-8.0103
상소의 효력

상소장은 집행유예가 D-6.0103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지 않는 한, 상소 중인 그 결정을 시행하는 앞으로의 어떤 결의도 더 이상 보류시켜서는 안 된다.

D-8.0104
상소의 철회

신청에 따라 상급 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상소의 철회를 위한 청원을 승낙할 수 있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만일 그것의 승인이 정의의 목적을 좌절시킨다면 청원을 거부해야 한다.

D-8.0105
상소의 근거

상소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절차상 변칙 ;
b. 한편 당사자에게 청문이나 증거를 얻거나 제시할 합리적 기회를 거부 ;
c. 부적절한 증거나 증언을 얻거나 적절한 증거나 증언을 얻는 일 거절 ;
d. 증거나 증언을 충분히 얻기 전에 결정을 조급히 서두름 ;
e. 사건 처리 과정에서 편견의 명시 ;
f. 과정이나 결정에 있어서 부정 ;
g. 헌법적 해석에 있어서 과오.

D-8.0200

2. 상소 과정의 접수

D-8.0201
서면 상소장
접수기간

서면 상소장은 판결문의 사본이 상소하는 당사자에게 배달(서면)증명 우편이나 인편으로 전달된 후 30일 이내에 접수시켜야 한다.

a. 서면 상소장은 그 판결로 인해 상소가 취해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선출한 하급 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b. 상소하는 당사자는 상소장의 사본을 상대 당사자 각 사람에게와 그 상소를 청

문할 치리회의 서기에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

D-8.0202
서면 상소장
내용

서면 상소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포함시켜야 한다.

a. 상소인 또는 상소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상소를 접수시키는 당사자나 당사자들과 만일 있다면, 그들의 변호인 성명 ;
b. 피소인 또는 피소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상대편 당사자나 당사자들과, 만일 있다면, 그들의 변호인의 성명 ;
c. 그 판결로부터 상소가 취해진 치리회 ;
d. 상소가 취해진 판결이나 결정, 그리고 날짜와 장소 ;
e. 상소를 위한 근거의 진술서(D-8.0105) ;
f. 상소장의 사본이 상대 당사자들 각 사람에게와 상소를 청문할 치리회의 서기에게 배달 증명 우편이나 인편으로 마련되었다는 확인서.

D-8.0203
상소기록
기록의 목록

상소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

a. 서면 상소장의 접수 후 30일 이내에, 하급 치리회 서기는 그 사건의 기록을 이루는 모든 서류와 기타 자료들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목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D-7.0601d).

추가기록

b. 그후 10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나 서기에 의해 목록이 만들어진 사건 기록의 정확성이나 완결성에 항의하는 서면 진술서를 하급 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시킬 수 있다. 그 서면 항의서는 사건의 기록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D-7.0601d에 열거된 항목이나 항목들을 명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상소기록의
접수

c. 상소장의 접수 후 45일 이내에, 하급 치리회의 서기는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고 상급 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하는데 거기에는 그 기록 부분의 인증 사본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기록의 완결성과 정확성을 논박하는 서면 항의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기록의 교정

d. 만일 당사자 어느 편에게 보낸 자료의 어느 부분이 실수나 우연으로 그 기록에 누락되었거나 그 안에 허위진술이 되었으면 누락이나 허위진술은 교정될 수 있다. 당사자들 이 그 교정을 명기하거나, 당회나 하급 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보충기록을 확인하고 전달하거나, 상급 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누락이나 허위 진술을 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그 기록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다른 모든 질문서는 상급 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접수일자 통보

e. 상급 치리회의 서기는 상소에 관한 기록이 접수된 일자 통보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본제공
비용

f. 서면 요청에 따라서 상급 치리회의 서기는 상소 당사자 어느 편이든지 그들의 비용 부담으로 상소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연 장

g. 이유가 합당하면 상급 치리회의 서기는 D-8.0203에 있는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D-8.0204
상소인의
적요서 접수

상소 기록을 접수한 일자 후 30일 이내에, 상소인은 오류혐의 명세서와 변론서, 논의서, 그리고 자세히 열거한 오류 혐의에 관해 상소인의 주장을 지지하는 당국의

소환장을 포함한 서면 적요서를 상급 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상대편에게 사본 전달

a. 그 적요서에는 사본 한 통이 상대편 당사자나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동반해야 한다.

연 장

b. 이유가 합당하면, 상급 치리회의 서기는 이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적요서 접수 실패

c.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내에 적요서의 접수를 상소인이 하지 못할 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이를 상소의 포기로 판단해야 한다.

D-8.0205 피소인의 적요서 접수

상소인의 적요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피소인은 거기에 응하는 서면 적요서를 상급 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상대편에게 사본 전달

a. 그 적요서에는 사본 한 통이 상대편 당사자나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동반해야 한다.

연 장

b. 이유가 합당하면, 상급 치리회의 서기는 이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적요서 접수 실패

c.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간 내에 적요서의 접수를 피소인이 하지 못할 때 적요서 접수와 출두와 청문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D-8.0206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전달

기록과 적요서의 접수나 그것들의 접수 시한의 만료에 따라, 상급 치리회의 서기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에게 그 기록과 적요서를 전달해야 한다.

D-8.0300 3. 청문 이전 절차

D-8.0301 서류 검사

상소에 관한 서류 접수시, 그 사건을 청문할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는 다음 사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류를 즉시 검사해야 한다.

a. 그 치리회의 관할권 여부 ;

b. 그 상소인이 상소를 제기할 자격 여부 ;

c. 그 상소 서류가 적절히 그리고 적시에 접수되었는지 여부 ;

d. 그 상소가 D-8.0105에 정해진 상소를 위한 한 가지나 그 이상의 근거를 진술하고 있는지 여부.

D-8.0302 예비질문 결정

위원장과 서기는 당사자들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게 그들의 소견을 보고해야 한다.

a. 만일 사건의 당사자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에 의해 위원장과 서기의 소견에 항의가 행해지면, 논의 중인 소견에 관한 증거와 논의를 제시할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b. 만일 논의 중인 항목을 결정하는데 청문이 필요하면, 재정적 고려를 포함해서, 상소에 관한 청문 바로 전에 예비 질문의 처리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한 그 청문은 상소에 관한 청문 이전, 적어도 30일 전에 일정을 정해야 한다.

c. 만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D-8.0301에 열거한 어느 사항이라도 부정적으로 해답되었다고 확정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한다.

D-8.0400

4. 상소의 청문

D-8.0401
청문 통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상소를 제기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본인 자신이나 변호인에 의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앞에 출두할 수 있는 일자를 그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D-8.0402
출두 실패

어느 편 당사자가 본인 자신이나 변호인에 의해 출두하지 못하면 상소에 관한 청문 참여의 포기로 간주해야 한다.

D-8.0403
청 문

청문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한다.

새 증거

a. D-14.0502의 규정하에서 그런 새 증거의 구술 기록을 마련한 새로이 발견된 증거를 접수할 것인지 여부 결정해야 한다.

청 문

b. 상소인이 변론의 개시와 종결의 권한을 가지면서,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한 당사자들에게 상소의 근거에 관해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D-8.0404
상임사법 전권 위원회의 결정

청문과 심의 후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오류혐의의 각 세목을 분리해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시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오류의 세목이 입증되는가?" 회의록에는 오류의 각 세목에 대한 투표수를 기록해야 한다.

만일 오류가 발견 안 되면

a. 만일 오류의 세목 중 어느 하나도 입증되지 않고 다른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하급 치리회의 결정은 확인되어야 한다.

만일 오류가 발견되면

b. 만일 한 가지나 그 이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하급 치리회의 결정을 확인하든지, 조절하든지, 파기하든지, 번복하든지, 그 사건을 새로운 심리를 위해 반송하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면 결정서

c. 서면 결정서는 회기 중에 준비해야 하고 서면 결정서의 사본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서명할 때 그것은 최종 결정이 되어야 한다. 결정의 사본을 인편이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즉시 전달되어야 한다.

각 오류의 판결

d. 그 결정서는 상세한 오류의 판결을 포함해야 하고 D-8.0101에 마련된 대로 구제책을 진술해야 한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중복을 피하여 실질적인 모든 질문을 처리할 방법으로 그 결정서를 마련한다. 그것은 그 판결의 설명서를 포함한다.

즉시 접수

e. 청문의 종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는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임명했던 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공 개

f.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지시하는 대로 그 결정서를 배포해야 한다.

D-9.0000

제9장 결백 입증의 요청

D-9.0101
결백 입증의
요청

소문이나 험담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미국장로교 회원은 혐의 사실에 대한 분명한 구술서와 진술서를 당회서기나 노회서기에게 제출함으로 결백입증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치리회에 의한
검토

a. 만일 치리회가 그 회의 해당위원회를 통해 그 요청을 허락하는 일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D-10.0201에 마련된 대로 조사위원회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조사위원회

b. 조사위원회는 그 사실과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치리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D-9.0102
사건의 결론

그 보고서는, 조사위원회가 결백 입증을 요청한 사람을 상대로 고발이 접수되었다고 보고하지 않는 한, 그 문제를 결정지어야 한다. 만일 고발이 접수되었으면, 그 문제는 D-14.0402에 따라 시작하는 적절한 사법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

D-10.0000

제10장 징계사건

D-10.0100

1. 징계사건에 대한 예비절차

D-10.0101
예비절차의 착수

징계사건에 대한 예비절차는 범법 혐의의 서면 진술서를 입증 자료와 함께 그 회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당회서기나 노회서기에게 제출함으로 착수된다(D-3.0101). 그 진술서는 구술 내용이 분명해야 하고 만일 진실이 증명되는 경우 징계 결정에 귀결할 만한 혐의 사실을 주장해야 한다. 그런 주장은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D-10.0201).

D-10.0102
범법의 진술

서면 진술은 다음 사람에 의해 제출될 수 있다.

고 소

a. 다른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는 미국장로교의 치리회의 관할권하에 있는 개인;

치리회

b. 징계의 목적으로 조사받아야 할 범법이 발생했으리라는 정보를 어떤 출처로부터 얻은 치리회의 회원;

자 책

c. 자책감을 갖고 나서는 미국장로교회 치리회의 관할권하에 있는 개인.

D-10.0103
조사위원회에 회부

범법 혐의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접수하면, 당회서기나 노회서기는 더 이상 조사하지 말고 피소인의 이름이나 범법 혐의의 성격을 밝히지 않고 범법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을 그 치리회에 보고해야 하고 그 진술서를 조사위원회에 즉시 회부해야 한다.

D-10.0104
타치리회의 고소

한 회원이 본인에 대한 관할권을 갖지 않는 다른 치리회에 제출된 서면 진술에 의해 범법이 있다고 고소받게 될 때, 그 당회서기나 그 노회서기는 그 회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당회서기나 노회서기에게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이다. 연루된 치리회들은 사법 절차를 상호 협력하여 진행시켜야 한다.

D-10.0105
이명 불가

조사나 고발이 심리 중이면, 당회는 교인에 대한 이명 증서를 발부해서는 안 되고 노회는 목사에 대한 이명 증서를 발부해서는 안 된다. 이명 증서를 발부할 수 없는 이유가 당회서기나 노회서기나 노호서기에 의해 해당된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D-10.0200

2. 조사

D-10.0201
조사위원회

조사는 고발이 접수되어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그 회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치리회가 임명한 조사위원회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회원권

a. 조사위원회는 5명이 넘지 않으면서 3명 이하가 아닌 위원을 가져야 하며, 만일 적절하다면 D-10.0104에 따라 타 치리회에서 온 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당 회는 당회 회원들을 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b. 노회는 규칙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임명을 마련할 수 있다.

D-10.0202
조사위원회 책임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a. 피소인에게 D-10.0101에 기술된 범법 혐의에 대한 진술서의 사본을 마련해 준다;

b. 범법 혐의에 대한 사실과 상황을 철저히 조사한다;

c. 그것에 해당되는 모든 관련 서류와 문서와 기록을 조사한다;

d. 모든 해당되는 증인들을 확인하고 그들을 심리한다;

e. G-9.0102와 D-2.0203b에 따라 범법이 피소인에 의해 범행되었다고 믿을 수 있는 가능한 근거와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f. 그 성격, 유효성과 증인들의 신용도와 유효한 증거를 적절히 검토한 후, 접수된 고발(들)이 – 서류, 문서, 기록, 증언이나 다른 증거의 근거 위에서 – 합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의한다;

g. 통상적으로 조사가 완결되고, 개연적 원인이 결정된 후에, 그러나 고발이 접수되기 전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결의의 대안형식을 발의한다. 해결의 대안형식의 목적은 만일 접수될 어떤 고발에 관련하여 관여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다.

(1) 어떤 조정이나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연기가 허락되지 않는 한 120일 이내에 완결되어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어떤 해결 합의점을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승인을 위해 보고해야 한다.
(3) 모든 당사자들은 타결 협상의 전 과정을 통해 옹호자를 마련해야 한다.
(4) 만일 해결이 조정에 간여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사위원회는 고발의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h. 피소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치리회에 고발을 접수시킬 것인지 안할 것인지 여부를 보고한다.

기소위원회 지명

i. 만일 고발이 접수되면, D-10.0401-.0404의 규정에 따라 그것들을 준비하고 접수하며 그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그 회원 중에서 한 사람이나 더 많은 사람을(기소위원회로 알려진 위원회에) 지명한다.

D-10.0203
피소인의 권리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사람과 더불어 갖게 되는 회의마다, 그리고 모든 회의를 시작할 때, 조사위원회는 그 사람에게 묵비권과 변호인에 의해 대표될 수 있는 권한과, 만일 고발이 늦게 접수되어 변호인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변호인을 지명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D-10.0204

조사 과정동안, 피소인은 조사위원회의 절차를 검토하도록 전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그러한 청원을 위한 합당한 사안은 조사위원회가 적법하게 증거 수집과정을 따랐는지 여부, 고려 증인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했는지 여부, 조사위원회가 피소인이 제출한 관련 증거를 면밀하게 조사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a. 청원의 검토는 양 당사자 및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D-5.0101에 따라 선정된 전권위원회의 위원 2인이 주관하는 청문회에서 행해야 한다. 청문회는 청원접수 30일 이내에 열려야 한다. 청문회 후 15일 이내에 결정이 양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b. 검토 결과를 전권위원회 의장에게 전달해야 하고 D-10.0405의 고발 검토를 통지한다.

D-10.0300

3. 결정의 전달

D-10.0301
결정의 전달

만일 조사위원회가 해결의 대안 형식을 발의하면, 그 위원회는 해당 당회서기나 상회서기를 통해 치리회에 통지해야 한다.

D-10.0302
만일 고발이 접수되면

만일 조사위원회가 고발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면, 심리시 이 고발을 뒷받침할 증거를 댈 수 있는 사실의 개요를 포함하여, 그 고발을 서면으로 피소인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그 위원회는 그 개인이 정식 재판을 피하기 위해 그 고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 바라는지를 피소인에게 물어야 하고,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제안할 견책을 지적해야 한다.

D-10.0303
검토청원

만일 아무런 고발이 접수되지 않았다면, 조사위원회는 당회 서기나 노회서기에게 그 사실의 서면 보고서만을 접수해야 하며,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던 그 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a. 그 보고서의 접수 후 30일 이내에, 그 개인은 고발을 접수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해 줄 것을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그 청원서는 조사위원회가 D-10.0202에 명시된 의무를 완수하지 않았다는 사례들을 주장해야 한다.

b. 조사위원회는 청원서에 나타난 혐의사실에 대해 서면 응답서를 제출해야 한다.

c.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지명 위원들은**, D-10.0202에 명시된 의무와 고발을 접수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교회 징계의 원리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청원과 응답을 고려해야 한다. 그 청원과 응답에 관한 **전권 위원회의 지명 위원들**의 결정은 90일 이내에 교부되어야 한다.

d. **이 지명 위원들이 청원을 승인할 경우**, 새 조사위원회가 당회나 노회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e. 만일 또다시 고발이 접수 안되면, 그 사건은 종결된다.

f. 만일 고발이 접수되면, 조회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D-4.0000).

D-10.0304
기록의 처리

만일 고발이 접수 안 되면, 조사위원회의 기록의 처리는 당회나 노회의 정책과 일치해야 한다.

D-10.0400

4. 고소

D-10.0401
시간제한

범법 혐의가 다른 사람의 성희롱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고소도 범법 혐의가 있던 때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일자로부터 1년이 넘어서 접수되어서는 안 된다. 단, 둘 중 먼저 일어난 일이 적용된다.

a. 다른 사람의 성희롱의 경우, 고소를 접수시킬 유일한 시간 제한은 범법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어느 일자에 상관없이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일자로부터 1년이어야 한다.

b. 다른 사람의 성희롱은 다른 사람에 관련된 성적행위를 포함하는 범법이다.

(1) 18세 이하나 동의할 정신적 능력이 없는 18세 이상의 어느 개인;
(2) 그 행위가 강제, 위협, 강요, 협박, 또는 직책이나 직위의 오용을 포함할 때의 어느 개인.

c. 만일 해결의 대안 형식이 발의되면, 여기에 마련된 시간 제한은 그 과정의 지속기간 동안 연장되어야 한다.

D-10.0402
사건의 기소

만일 고발이 접수되면, 기소위원회는 그 사건을 기소하고 어떤 상소가 있는 동안 교회를 대표해야 한다(D-10.0202h).

당사자들

a. 모든 징계사건은 미국장로교의 이름으로 조사위원회와 기소위원회를 통해서 치리회에 의해 접수되고 기소되어야 한다. 기소위원회는 그 교회의 대표이며 그런 자격으로 그 사건에 있어서 해당 치리회의 모든 권리를 갖는다.

두 당사자들만

b. 징계사건에서 당사자들만이란 기소치리회와 피소인이다.

D-10.0403
고소의 형식

한 건의 고발은 단지 한 건의 범법만을 주장해야 한다(D-2.0203b).

여러가지를

a. 동일인을 상대로 여러 고소를 동시에 치리회에 접수시킬 수 있다.

고소의 명세서

b. 매 고소는 번호를 매겨야 하고 범법을 구성한 행위를 설명해야 한다. 매 고소는 (가능하면) 혐의받은 행위의 수행의 시간, 장소,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매 고소는 기소를 위해서 증인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그것의 뒷받침을 위해 소환될 기록과 문서의 설명서가 역시 첨부되어야 한다.

함께 심리

c. 동일인에 대한 여러 개의 고소는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재량으로 함께 심리할 수 있다.

D-10.0404
고소의 접수

매 고소는 서면으로 준비되어서 당회서기나 노회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당 회

a. 고소의 접수와 함께 당회서기는 차기 회의시 당회에 고소를 제출해야 한다. 당회는 그 사건을 심리할지 아니면 노회에 회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D-4.0000).

노 회

b. 고소의 접수와 함께 노회서기는 그 노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

D-10.0405
사전 심리회의

그 사건을 심문할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고소들의 접수 후 30일 이내에 사전 심리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시간과 장소

a. 당회장과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는 피소인, 만일 있다면, 피소인의 변호인 그리고 기소위원회에 사전 심리와 시간과 장소를 통보해야 하고, 고소장(들)의 사본을 피소인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참석자들

b. 사전 심리회의의 시간이 정해지면, 당회장과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 기소위원회, 피소인, 만일 있다면, 피소인의 변호인 그리고 위원장(당회장)과 당회서기의 재량에 따라 다른 해당되는 사람들이 보통 출석해야 한다. 위원장(당회장)은 이렇게 해야 한다.

(1) 피소인에게 고소를 읽어 준다;
(2) 피소인에게 변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D-11.0301);
(3) 피소인에게 그때 알려진 모든 증인들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고소를 뒷받침할 만한 기록과 문서의 명세서를 전해 준다;
(4) 논쟁의 여지가 없는 고소 내용들을 피소인과 기소위원회에 결정해 주고 정식재판에 대한 대안을 토의한다;
(5) 조사 위원회의 작업 검토를 위한 청원보고서를 검토하고, 고발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 사건의 해제 또는 고발 내용의 수정을 허가하기 위한 예비 행동을 취하면서, 고발의 적절함과 관련한 추가적인 신청들을 심리한다. 그와 같은 예비 결정들은 D-11.0402c에 따라서 노회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가 검토해야 한다.
(6) 모든 당사자들이 고소에 포함된 사실들이 진실이고 제안된 책벌의 정에 동의하면, 책벌 청문 일정을 정한다.
(7) 모든 당사자들의 출두를 명령한다.

아무 일도 못함

c. 그 회의에서는 그 이상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D-10.0406
증인 공개

피소인은 주소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증인들의 명단을 적어도 재판 일자 20일 전에 당회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와 기소위원회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소위원회와 피소인은 재판 일자 전 10일보다 늦지 않게 증인들의 최신 명단을 그 전권위원회와 상대편 당사자에게 각각 제공해야 한다.

D-11.0000

제11장 징계사건의 재판

D-11.0100

1. 재판의 집행

D-11.0101
재판-징계적

징계사건의 재판은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D-11.0102
정식으로 집행

재판은 그 상황에 적합한 중립적인 장소에서 예의범절이 분명하게 정식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D-11.0200

2. 소환과 증언

D-11.0201
당사자와
증인 소환

당사자들이나 어느 편 당사자가 요구하는 증인들이 재판에 출두하도록 하는 소환장은 당회장이나 당회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소환받는 회원

a. 미국장로교 회원만이 출두하도록 소환받을 수 있다.

요청받는 사람들

b. 다른 사람들은 출석을 요청받을 뿐이다.

타치리회의
증인

c. 교단의 다른 치리회의 관할권하에 있는 사람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할 필요가 있을 때, 사건을 재판하는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청원에 의하여 당회서기나 다른 치리회의 서기가 재판 장소에 출두하여 요구하는 증거를 제공하라고 증인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해야 한다.

비 용

d. 어느 증인이나 재판에 출석함으로 발생한 비용의 상환은 증인을 부른 당사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D-11.0202
소환장 전달

소환장은 인편으로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사건을 재판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인편이나 우편으로 전달한 사실과 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차 소환

a. 만일 미국장로교 회원인 당사자나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2차 소환장은 다음과 같은 단서를 붙여서 보내야 한다. 즉, 만일 당사자나 증인이 정당한 사유를 말하지 않고 정한 시일에 출두하지 아니하면, 당사자나 증인은 불순종과 모욕의 과오를 범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그런 범법으로 인해 징계 결의를 받을 수도 있다.

피소인이 출두

b. 징계사건에서 피소인이 이차 소환에도 출두하지 않으면,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

아니함

위원회는 피소인을 대신하여 변호할 어느 사람이나 사람들을 임명한 후, 피소인의 궐석으로 재판이나 판결을 진행할 수 있다.

D-11.0203
증인의 증언 거부

증인으로 소환받아 출두한 미국장로교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하기를 거부하고, 경고를 받은 후에도 또 계속 증언을 거부하면 징계 결의를 받을 수 있다.

D-11.0204
선서 증언

선서에 의한 증언은 D-14.0304의 규정에 따라서 행해지고 받아들여진다.

D-11.0300 3. 재판 절차

D-11.0301
변호인

징계사건에 있어서 각 당사자들은 출두해야 하며 변호인에 의해 대신할 수도 있으나 단, 미국장로교의 회원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변호인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재직 중 변호인으로서 그 위원회 앞에 출두해 서는 안 된다. 변호인은 유급 대표나 변호사일 필요가 없다.

D-11.0302
변호인을
얻지 못함

만일 징계사건에 있어서 피소인이 변호인을 얻지 못하면,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피소인을 위한 변호인을 임명해야 한다. 합리적 변호 비용은 사건이 발단한 치리회에 의해 위임하고 상환받아야 한다.

D-11.0303
자료의 회람

징계사건의 어느 당사자나 어느 누구도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들에게 사건의 최종처리 이전에 사건에 관련된 어떤 기록되거나 인쇄되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배포하거나 배포되도록 시켜서도 안 된다. 이런 금지에도 불구하고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추가 자료들을 요구할 수 있고 또는 철하여 보관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D-11.0304
재판집행 통괄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재판의 집행과 그들을 해임하는 일까지 포함하여 양편 당사자, 증인, 변호인, 그리고 일반인들의 행동을 통괄할 전적인 권위와 권한을 가져야 하고, 종국에는 적절한 권위와 예의범절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절차에
대한 질문

a. 절차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나는 증거물의 허용에 대한 질문은 양편 당사자들이 청문할 기회를 가진 다음에 위원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당사자나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 당회나 전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으며, 그 위원회는 다수표에 의해 그 질문을 결정해야 한다.

결 석

b. 재판이 시작된 후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어느 회원의 결석은 기록해 두어야 한다. 그 후로부터 그 사람은 그 사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D-11.0305
정족수 미달

정족수의 미달은 그 사건을 미결 재판으로 끝나게 하고 그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D-11.0306
비공개 회의
절차

그 절차는 일반적으로 공개회의로 진행되어야 한다 ; 그렇지만 어느 편의 요구나 그 자체의 발의로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절차의 어느 과정에서 출석회원 2/3의 투표로서 당사자들이나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제외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D-11.0400 4. 재 판

D-11.0401
무죄의 추정

징계사건에 있어서 피소인은 그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 한 피소인은 무죄로 인정된다.

D-11.0402
징계사건의 절차

징계사건의 재판은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한다 :

위원장에 의한 선포

a. 위원장은 D-1.0101과 D-1.0102를 큰 소리로 읽고 치리회가 재판을 진행시키려 한다고 선언하고 위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치리회에 속한 판정관들로서의 높은 인격과 그들이 수행하려는 엄숙한 의무를 기억하며 중시하도록 일러야 한다.

전권위원의 자격

b. 당사자들이나 그들의 변호인은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조직과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이 청취되도록 할 수 있다.

부적격성

(1)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그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관계되었거나 어느 한편 당사자와 혈연관계나 결혼관계가 있거나, 어느 한편을 적극 지지나 반대를 해왔거나, 또는 D-5.0205의 규정에 의해 적절치 못한 사람이면 실격하게 된다.

항 의

(2) 어느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은 어느 편 당사자로부터 항의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항의의 타당성은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나머지 위 원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예비적 반론

c.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모든 예비적 반론과 절차 진행의 질서나 규칙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어떤 반론을 확정해야 한다. 당회나 전권위원회는 그 사건을 기각하거나 정의의 촉진을 위해 고소에 대한 개정을 허용할 수 있다. 단, 그런 개정이 고소의 본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또는 피소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한다.

변 론

d. 만일 절차가 질서 있게 되어 있고 고소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피소인이 매 고소에 대해 "유죄"나 "무죄"를 주장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 그 변론 주장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만일 피소인이 답변을 거절하거나 "무죄"라고 주장하면, "무죄"의 주장을 기록해 두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만일 피고인이 "유죄"를 주장하면 그 치리회는 D-11.0403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개정진술

e. 당사자들에게 개정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증거의 규칙

f. D-14.0000에 있는 증거의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기 소

g. 기소위원회는 피소인에 의한 반론과 대질심문을 조건으로 고소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반 론

h. 피소인은 기소위원회에 의한 반론과 대질 심문을 조건으로 증거를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반 박

i. 기소위원회는 그때 추가 증거를 소개할 수 있는데, 다만 피소인을 대신하여 소개된 증거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추가 증거는 피소인에 의해 반론과 대질 심문을 조건으로 한다.

최종 진술

j. 당사자들에게 최종 진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소위원회가 그 논의를 시작하고 마감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D-11.0403 결 정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다음 비공개로 모여야 한다.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a. 신중한 심의 후에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매 고소를 분리해서 투표하고 회의록에 투표를 기록해야 한다. 피소인에게서 고소의 유죄를 찾기 위해서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고소 내에서 그 타당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음을 발견해야 한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은 모든 증거의 비교와 고려에 의해 고소를 입증할 물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시켜 줄 때 나타난다.

2/3 투표에 의한 유죄판결

b. 투표권이 있는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의 적어도 2/3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고소에 대한 유죄 판결은 할 수 없다.

서면 결정서

c. 매 고소에 대한 판결과, 만일 있다면, 책벌의 정도의 결정을 진술한 서면 결정서는 회기 중에 준비되어야 한다. 그것은 당회장과 당회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가 서명했을 때 최종 결정이 된다.

공개회의에서 공포

d.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결정에 도달했을 때, 당회장(위원장)은 공개회의에서 고소에 대한 평결을 각각 분리해서 공포해야 한다.

책벌의 정도

e. 만일 피소인이 유죄로 판명되거나 유죄 변론 후,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손상입은 정도, 경감, 복권과 배상에 관한 증거를 청문할 수 있다. 이 증거는 당사자의 어느 편이나 원고나 그 사람의 대리인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때 부과할 책벌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비공개로 모여야 한다(D-12.0000). 그런 결정에 이어 공개회의에서, 당회장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은 그때 책벌을 선포해야 한다.

즉시 접수

f. 그 결정은 당회서기나 치리회의 서기에게 즉시 접수시켜야 한다.

당사자들의 통보

g. 당회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인편으로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그 결정에 이름이 적힌 매 당사자에게 결정서의 사본을 전달해야 한다.

공 개

h. 당회장이나 당회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지시하는 대로 그 결정을 배포해야 한다.

D-11.0500

5. 상소의 규정

D-11.0501 상소의 시일

상소를 접수할 시일은 그 결정이 유죄로 판명된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그에 의해 거절된 일자로부터 산출해야 한다.

D-11.0502 상 소

유죄로 판명된 사람만이 상소의 첫 단계를 주도할 수 있다. 당사자 어느 편이나 항소 결정의 상소를 주도할 수 있다. 상소의 규칙은 D-13.0000에 나온다.

D-11.0600

6. 절차의 기록

D-11.0601 절차의 기록

당회의 서기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

구두기록 증거물

a. 모든 증언과 구술 절차에 대한 정확한 구두 기록을 미리 마련한다.

b. (증거물로 접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명시해서) 증거로 제시한 모든 증거물을 확인하고 보존하고 모든 증거물의 목록을 작성한다.

회의록

c. 그 절차의 회의록을 기록하는데 거기에는 투표와 함께 그 사건에 관련된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어떤 결의나 지시를 포함해야 한다.

기 록

d. 다음 사항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의 기록을 준비해야 한다.

(1) 고 발 ;

(2) 매 고소에 관해 피소인에 의해 제기된 변론의 기록 ;

(3) 만일 요청이 있다면, 증명받은 등본 ;

(4) 적절히 표시된 증거물, 기록, 문서, 그리고 기타 서류 ;

(5) 매 고소를 위한 평결과, 만일 있다면, 치리회가 부과한 책벌의 정도를 포함한 서면 결정서 ;

(6) 그 사건에 관련된 투표를 포함한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어떤 결의나 지시.

기록의 보존

e. 모든 기록의 원본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존한다 :

(1) 당회서기는, 최종 결정 후에, 사건의 기록을 적어도 2년 간 보유해야 한다.

(2)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는, 최종 결정 이후 14일 이내에, 선출 치리회의 서기에게 그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고 전달해야 하며, 그는 그것을 적어도 2년 간 보관해야 한다.

등 본

f. 청원에 따라서 그리고 요청하는 측의 비용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신속히 재판 과정에 있었던 모든 증언과 구두 절차의 정확하고 완전한 등본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 등본은 정확하고 완전하다고 그 사람이 확인할 때, 만족할 만한 비용 지불 절차에 따라 그것을 요구한 각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또 D-13.0000에 의한 상소에 대비하여 발송될 수 있도록 추가 사본 1부는 기록부에 포함시켜야 한다.

D-11.0602 기록에 추가

아무도 그 재판 집행에 책임을 진 당회장과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어느 사건의 기록에 보충하거나 추가해서는 안 된다. 그 기록을 보충하겠다는 요청은 당회서기나 하급 치리회의 서기로부터 서면으로 받기 전까지는 고려할 수 없으며, 그 서기는 당회장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에게 전달해야 한다. 요청서의 사본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각 당사자는 서면으로 응답하는 데 10일 기한을 가져야 한다.

D-11.0700

7. 서기의 임무

D-11.0701 결정 보고

만일 노회가 그 결정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로부터 접수할 때가 회기 중이면, 그 서기는 그 결정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노회 회의록에 결정 전부를 기록해 넣어야 한다. 만일 노회가 회기 중이 아니면 그 서기는 그 첫 번째 정기회의나 그 후 휴

회한 회의나 그 목적을 위해 소집한 회의에서 그 결정을 노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노회의 회의록에 결정 전부를 기록해 넣어야 한다.

D-11.0800

8. 집 행

D-11.0801
치리회에 의한 집행

당회가 재판을 끝내고 피소인의 유죄가 판명되고 그 결정이 선언되었을 때, 또는 상급 치리회의 서기가 피소인이 유죄하다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을 접수했을 때, 당회나 상급 치리회는 그 결정의 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당회나 노회가 상소 계류 중에 그에게 직무를 계속하도록 허락하는 요구를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상소가 결정되거나 상소 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상황에 따라서 직무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를 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D-12.0000

제12장 징계사건의 책벌과 회복

D-12.0100

1. 책 벌

D-12.0101
교회 책벌의 등급

교회 책벌의 등급은 견책, 감독 복권 상담의 견책, 안수식이나 회원권으로부터의 일시 정지, 그리고 안수 직책이나 회원권으로부터의 박탈이다.

D-12.0102
기도가 따른
견책

견책은 범법에 대한 책벌의 최하 등급이고 선포했을 때 완료된다(D-11.0403e). 그것은 범법의 성격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책망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또는 아래 형식으로 선포해야 한다 :

당신__________________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범법내용을 기입해 넣는다)의 범법으로 유죄하며 그런 범법(들)에 의해 당신은(성경과/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위배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 그러므로 이제__________ 노회(또는 당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이 범법의 잘못을 지적하고 당신을 견책합니다. 당신은 이제 이후로 더욱더 조심하여 그런 범법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더욱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끝까지 사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순종하도록 당신에게 권고합니다.

기 도

이 공식적 견책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가 따라야 한다.

D-12.0103
감독 복권
상담의 견책

감독 복권 상담의 견책은 책벌의 최하등급의 바로 위다. 그것은 책망, 그리고 당회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부여된 감독 복권 상담의 기간을 명하는 일과 함께, 범법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D-11.0403e). 이 책벌은 다음과 같이 또는 아래 형식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당신 __________________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의 범법으로 유죄하며 그런 범법(들)에 의해 당신은 성경/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 그러므로 이제 ______________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또는 당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이 범법의 잘못을 지적하고 당신을 견책하며, 아래 ______________에 기술된 대로 ______________의 지도하에 감독 복권 상담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명령합니다.

당신은 이제 후로 더욱 조심하여 그런 범법을 피해야 합니 다. 우리는 당신이 더욱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을 끝까지 사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순종하도록 당신에게 권고합니다.

기 도
a. 그 견책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가 따라야 한다.

복권 상담의 목적 전달
b.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감독관(들)에게 주어진 구체적 권한과 복권 상담의 목적을 감독기관과 책벌받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평가와 복권 상담의 진술
c. 복권 상담 프로그램의 기술서는 진전 사항을 어떻게 평가할 것과 만일 감독 복권상담이 만족스럽게 완수되었다면 그 시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진술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D-12.0104 일시 정지

안수 직책이나 회원권으로부터의 일시 정지는 더욱 심한 범법에 대한 보다 높은 책벌의 등급이고, 일정한 기간 또는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부여된 감독 복권 상담의 완료까지의 기간이여야 한다(D-11.0403e). 이 책벌은 다음과 같이 또는 아래 형식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

당신________________은 ____

(범법내용을 기입해 넣는다)의 범법으로 유죄하며 그런 범법(들)에 의해 당신은(성경과/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 그러므로 이제____________ 노회(또는 당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__________ 부터 __________동안 또는__________의 감독하에서 아래 기술된 대로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복권 상담 프로그램의 완성시까지 이제 일시 정지처분을 선언합니다.

기 도
a. 이 공식적 선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가 따라야 한다.

감독 복권 상담
b. 만일 일시 정지 기간이 감독 복권 상담의 완료에 의해 한정되었다면,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감독관에게 주어진 구체적 권한을 감독기관과 유죄받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직책수행의 자제
c. 안수 직책으로부터의 일시 정지의 기간 동안, 유죄받은 사람은 안수 직책의 어떤 기능의 수행을 그만두어야 한다.

투표권이나 직책 못 가짐
d. 회원권으로부터 일시 정지의 기간 동안, 유죄받은 사람은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하는 일과 어떤 직책을 갖거나 수행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목사의 일시 정지의 영향
e. 만일 목사가 안수 목사 직책의 수행으로부터 일시 정지되었다면, 노회는, 만일 사건의 상소가 계류 중이 아니라면, 목회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다.

일시 정지의 통지
f. 일시 정지의 책벌이 목사에 관련하여 선언되었을 때, 노회서기는 총회서기에게 취해진 결의의 정보를 즉시 보내야 하며, 총회서기는 교단 산하 모든 노회에 그런 모든 정보에 대한 계간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일시정지 책벌의 종료
g. 일시 정지의 책벌하에 있는 사람은 당회서기나 상회의 서기를 통해 정지 기일의 종료나 감독 복권 상담의 완료에 근거하여 회복을 치리회에 서면으로 청원해야 한다. 책벌을 부과했던 치리회는 정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는 치리회가 감독 복권 상담의 완료에 전적으로 만족할 때, 회복을 승인해야 한다.

조기 복권
h. 안수 직책의 수행이나 회원권으로부터 일시 정지의 책벌하에 있는 사람은 정지 기간의 완료나 책벌에 정해진 감독 복권 상담의 종결 이전에 회복되도록(서기를 통해) 책벌을 부과했던 치리회에 서면으로 청원해야 한다. 그 치리회는 그 결의

의 정당함에 전적으로 만족할 때, 그런 회복을 승인할 수 있다.

D-12.0105
직책이나
회원권 박탈

직책이나 회원권으로부터의 박탈이 책벌의 최고 등급이다.

직책 박탈

a. 직책으로부터의 박탈은 유죄받은 사람의 안수와 선출을 취소하고, 그 사람의 회원권으로부터의 박탈은 없이, 모든 직책에서 박탈되는 책벌이다.

회원권 박탈

b. 회원권으로부터의 박탈은 유죄받은 사람의 회원권이 종결되며, 그 사람이 모든 명부에서 삭제되고 그 사람의 안수와 모든 직책에의 선출이 취소되는 책벌이다. 이 책벌은 다음과 같이 또는 아래 형식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
당신＿＿＿＿＿＿은＿＿＿＿＿＿＿＿＿(범법내용을 기입해 넣는다)의 범법(들)로 유죄하며 그런 범법(들)에 의해 당신은 (성경과/또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습니다 ; 그러므로 이제 ＿＿＿＿＿＿＿ 노회(또는 당회)는 미국장로교의 이름과 권위로 당신을 ＿＿＿＿＿＿＿＿＿
(여기에 박탈이 안수받고 선출된 직책으로부터인지 또는 모든 직책으로부터의 삭제를 포함하는 회원권으로부터의 박탈인지를 기술한다)로부터 취소하고 박탈합니다.

기 도

c. 이 공식적 선언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가 따라야 한다.

직책으로부터
박탈의 결과

d. 만일 목사가 회원권으로부터의 박탈이 아닌 직책으로부터 박탈되면, 노회는 그 목사에게 회원 증명을 주어 그 목사의 선택에 따라 어떤 기독교회로 보내야 한다. 만일 목사가 목회자면, 그 목회 관계는 책벌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소된다.

박탈 통지

e. 박탈의 책벌이 목사에 관련하여 선포되었을 때, 해 노회의 서기는 총회서기에게 취해진 결의의 정보를 즉시 보내야 하며, 총회서기는 교단 산하 모든 노회에 그런 모든 정보에 대한 계간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D-12.0200

2. 회 복

D-12.0201
치리회의 결정

직책이나 회원권으로부터 박탈의 책벌하에 있는 사람은 치리회가 그 결의의 정당함에 전적으로 만족할 때와 그 사람이 회원권 회복을 위해 신앙의 재확인을 하거나 직책에 회복하기 위해 재안수를 받을 때 그 책벌을 부여한 치리회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 회복의 양식은 D－12.0202와 D－12.0203에 기술되어 있다.

D-12.0202
박탈 후 직책
회복 양식

목사, 장로나 집사의 직책에 회복은 다음과 같이 또는 아래 형식으로 치리회장에 의해 선언되어야 한다.

양 식

a. 당신(이름)＿＿＿＿＿＿＿＿,은 교회를 만족시킬 만한 회개를 분명히 보여 주었으므로,＿＿＿＿＿＿＿＿＿ 노회(또는 본 교단의 당회)는 이제 당신을＿＿＿＿＿＿＿＿＿＿의 직책에 회복시키고, 본 교단의 헌법에 따라 이 안수 행위에 의해 그 직책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명부에 회복

b. 그 후에 정식 안수 예식이 거행되고 그 이름이 해당 명부에 회복되어야 한다

(G-14.0206과 G-14.0405).

D-12.0203
박탈 후 회원권
회복양식

회원권에 회복은 다음과 같이 또는 아래 형식으로 치리회의 회의에서 치리회장에 의해 선언되어야 한다 :

양 식

a. 당신(이름)____________________,은 교회를 만족시킬 만한 회개를 분명히 보여 주었으므로, ________________________ 노회(또는 당회)는 이제 당신을 이 재확인 결의에 의해 교회의 완전한 회원권에 회복합니다.

명부에 회복

b. 그 후에 재확인 결의가 취해져야 하고, 그 이름이 해당 명부에 회복되거나 회원증명서가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 어느 기독교회로 발부되어야 한다.

직책에 회복

c. 만일 회원이 안수직에 역시 회복되려면, D-12.0202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D-13.0000

제13장 징계사건의 상소

D-13.0100

1. 상소의 착수

D-13.0101
정 의

징계사건의 상소는 절차와 결정을 교정하거나, 수정하거나, 취소하거나 그 결정을 번복시키려는 검토의 목적으로 하급 치리회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차상급 치리회에 이첩하는 일이다.

D-13.0102
상소의 착수

유죄받은 사람만이 서면 상소장을 접수시킴으로 상소의 첫 단계를 착수할 수 있다.

D-13.0103
항소판결의 상소

어느 편 당사자나 서면 상소장을 접수시킴으로 항소 판결의 상소를 착수할 수 있다.

D-13.0104
상소의 효력

상소장은, 만일 적절하게 시간에 맞추어 접수되었다면, 하급 치리회에 의한 앞으로의 절차를 중지시켜야 한다. 단, 예외는 안수직책의 수행이나 회원권의 일시 정지 또는 직책이나 회원권으로부터 박탈의 경우, 그를 상대로 그 판결의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상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 직책의 수행이나 회의에 참여하여 투표하는 일을 그만두는 일이다.

D-13.0105
상소의 철회

신청에 따라 상급 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상소의 철회를 위한 청원을 승낙할 수 있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만일 그것의 승인이 정의의 목적을 좌절시킨다면 청원을 거부해야 한다.

D-13.0106
상소의 근거

상소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절차상 변칙 ;
b. 한편 당사자에게 청문이나 증거를 얻거나 제시할 합리적 기회를 거부 ;
c. 부적절한 증거나 증언을 얻거나 적절한 증거나 증언을 얻는 일 거절 ;
d. 증거나 증언을 충분히 얻기 전에 결정을 조급히 서두름 ;
e. 사건 처리 과정에서 편견의 명시 ;
f. 과정이나 결정에 있어서 부정 ;
g. 헌법적 해석에 있어서 과오 ;
h. 책벌의 지나친 가혹성.

D-13.0200

2. 상소 과정의 접수

D-13.0201
서면 상소장의 접수 기간

서면 상소장은 판결문의 사본이 상소하는 당사자에게 배달 증명 우편이나 인편으로 전달된 후 30일 이내에 접수시켜야 한다.

a. 서면 상소장은 당회서기나 그 판결로 인해 상소가 취해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선출한 하급 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b. 상소하는 당사자는 당사자 각 사람에게와 그 상소를 청문할 치리회의 서기에게 상소장의 사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D-13.0202
서면 상소장의 내용

서면 상소장은 다음 사항을 명시하고 포함시켜야 한다.

a. 상소인 또는 상소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상소를 접수시키는 당사자나 당사자들의 성명 ;
b. 피소인 또는 피소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상대편 당사자나 당사자들의 성명 ;
c. 그 판결로부터 상소가 취해진 치리회 ;
d. 상소가 취해진 판결이나 결정, 그리고 날짜와 장소 ;
e. 상소를 위한 근거의 진술서(D-13.0106) ;
f. 상소장의 사본이 상대편 당사자들 각 사람에게와 상소를 청문할 치리회의 서기에게 배달 증명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공되었다는 확인서.

D-13.0203
상소기록

상소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록의 목록

a. 서면 상소장의 접수 후 30일 이내에, 당회서기나 하급 치리회 서기는 그 사건의 기록을 이루는 모든 서류와 기타 자료들을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목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D-11.0601d).

추가기록

b. 그후 10일 이내에, 어느 당사자나 서기에 의해 목록이 만들어진 사건 기록의 정확성이나 완결성에 항의하는 서면 진술서를 당서기나 하급 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 시킬 수 있다. 그 서면 항의서는 사건의 기록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D-11.0601d에 열거된 항목이나 항목들을 명확하게 진술해야 한다.

상소기록의 접수

c. 상소장의 접수 후 45일 이내에, 당회서기나 하급 치리회의 서기는 사건의 기록을 확인하고 상급 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하는데, 거기에는 그 기록 부분의 인증 사본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기록의 완결성과 정확성을 논박하는 서면 항의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기록의 교정

d. 만일 당사자 어느 편에게 보낸 자료의 어느 부분이 실수나 우연으로 그 기록에 누락되었거나 그 안에 허위 진술되었으면, 누락이나 허위 진술은 교정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그 교정을 명기하거나, 당회나 하급 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보충 기록을 확인하고 전달하거나, 상급 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누락이나 허위 진술을 교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그 기록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다른 모든 질문서는 상급 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접수일자 통보

e. 상급 치리회의 서기는 상소에 관한 기록이 접수된 일자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본 제공 비용

f. 서면 요청에 따라서 상급 치리회의 서기는 상소하는 당사자 어느 편이든지 그들의 비용 부담으로 상소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연 장

g. 이유가 합당하면 상급 치리회의 서기는 D-13.0203에 있는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D-13.0204
상소인의
적요서 접수

상소 기록을 접수한 일자 후 30일 이내에, 상소인은 오류 혐의 명세서와 변론서, 논의서, 그리고 자세히 열거한 오류 혐의에 관해 상소인의 주장을 지지하는 당국의 소환장을 포함한 서면 적요서를 상급 치리회의 서기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상대방에게
사본 전달

a. 그 적요서에는 사본 한 통이 상대편 당사자나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동반해야 한다.

연 장

b. 이유가 합당하면, 상급 치리회의 서기는 이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적요서 접수
실패

c.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내에 적요서의 접수를 상소인이 하지 못할 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이를 상소의 포기로 판단해야 한다.

D-13.0205
피소인의
적요서 접수

상소인의 적요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피소인은 거기에 응답하는 서면 적요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상대방에게
사본 전달

a. 그 적요서에는 사본 한 통이 상대편 당사자나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었다는 확인서를 동반해야 한다.

연 장

b. 이유가 합당하면, 상급 치리회의 서기는 이 시간 제한을 적당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적요서 접수
실패

c. 정당한 이유 없이, 적요서의 접수를 피소인이 하지 못할 때 적요서 접수와 출두와 청문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

D-13.0206
상임사법 전권
위원회에 전달

기록과 적요서의 접수나 그것들의 접수 시기의 만료에 따라 상급 치리회의 서기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에게 그 기록과 적요서를 전달해야 한다.

D-13.0300

3. 청문 이전 절차

D-13.0301
서류검사

상소에 관한 서류 접수시, 그 사건을 청문할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과 서기는 다음 사항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류를 즉시 검사해야 한다.

a. 그 치리회가 권할권 여부 ;

b. 그 상소인이 상소를 접수시킬 자격이 있는지 여부 ;

c. 그 상소 서류가 적절히, 그리고 적시에 접수되었는지 여부 ;

d. 그 상소가 D-13.0106에 정해진 상소를 위한 한 가지나 그 이상의 근거를 진술하고 있는지 여부.

D-13.0302
예비 질문 결정

위원장과 서기는 당사자들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게 그들의 소견을 보고해야 한다.

a. 만일 사건의 어느 당사자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에 의해 위원장과 서기의 소견에 항의가 행해지면, 논의 중인 소견에 관한 증거와 논의를 제시할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b. 만일 논의 중인 항목을 결정하는 데 청문이 필요하면, 재정적 고려를 포함해서,

상소에 관한 청문 바로 전에 예비 질문의 처리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닌 한, 그 청문은 상소 청문 이전 적어도 30일 이내에 일정을 정해야 한다.

c. 만일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D−13.0301에 열거된 어느 사항이라도 부정적으로 해답되었다고 확정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상소를 기각해야 한다.

D-13.0400

4. 상소의 청문

D−13.0401
청문통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서기는 상소를 제기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본인 자신이나 변호인에 의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앞에 출두할 수 있는 일자를 그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D−13.0402
출두실패

어느 편 당사자가 본인 자신이나 변호인에 의해 출두하지 못하면 상소에 관한 청문 참여에 포기로 간주해야 한다.

D−13.0403
청 문

청문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한다.

새 증거

a. D−14.0502의 규정하에서 그런 새 증거의 구술 기록을 마련한 새로이 발견된 증거를 접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청 문

b. 상소인이 변론의 개시와 종결의 권한을 가지면서,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한 당사자들에게 상소의 근거에 관해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D−13.0404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청문과 심의 후에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오류혐의의 각 세목을 분리해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시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오류의 세목이 입증되는가?" 회의록에는 오류의 각 세목에 대한 투표수를 기록해야 한다.

만일 오류가 발견 안 되면

a. 만일 오류의 세목 중 어느 하나도 입증되지 않고 다른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하급 치리회의 결정은 확인되어야 한다.

만일 오류가 발견되면

b. 만일 한 가지나 그 이상의 오류가 발견되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하급 치리회의 결정을 확인하든지, 파기하든지, 번복하든지, 조절하든지, 그 사건을 새 심리를 위해 반송하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면 결정서

c. 서면 결정서는 회기 중에 준비해야 하고, 서면 결정서의 사본이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와 위원장이 서명할 때 그것은 최종 결정이 되어야 한다.

각 오류의 판결

d. 그 결정서는 상세한 오류의 판결을 포함해야 하고 D−13.0101에 마련된 대로 구제책을 진술해야 한다.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중복을 피하여 실질적인 모든 질문을 처리할 방법으로 그 결정서를 마련한다. 그것은 그 판결의 설명서를 포함한다.

즉시접수

e. 그 결정서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를 임명한 치리회의 서기와 그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인편이나 배달 증명 우편으로 즉시 접수시켜야 한다.

공 개

f. 위원장이나 서기는 그 전권위원회가 지시하는 대로 그 결정서를 배포해야 한다.

D−13.0405
징계사건의 상소번복 효력

징계사건의 상소를 맡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유죄의 모든 판결을 번복할 경우, 그것은 사실상 무죄 방면이며 그 사람은 교회의 직책이나 회원권에 자동적으로 회복된다. 이 효력에 대한 선언은 하급 치리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D-14.0000

제14장 교정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

D-14.0100

1. 증 거

D-14.0101
증거의 정의

증거는, 증인들의 구술 증언 외에, 기록, 서신, 물건이나 사실의 실재나 부재를 증명하기 위해 제시된 어떤 것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증거는 받아들이기에 적절해야 한다. 입증할 증거의 정도에 관하여는 직접 증거와 상황적 증거 사이에 구별을 지어서는 안 된다.

D-14.0200

2. 증 인

D-14.0201
항 의

어느 당사자나 증언할 증인의 능력에 항의할 수 있으며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렇게 항의받은 증인의 적격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D-14.0202
남편이나 아내

남편이나 아내는, 달리 증언할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상대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증인이 될 수 있으나 아무도 상대를 반대해서 증언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D-14.0203
상담자

치리회의 관할권 안에서 사람들에게 상담 봉사를 마련하도록 치리회에 의해 적절히 임명받은 사람은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앞에서 증언해서는 안 된다. 단, 예외는 그 제한이 증언을 받아야 할 사람에 의해 포기되는 경우다.

D-14.0204
당사자들의 변호인

어느 사건에 관여한 당사자들을 위한 변호인은 기밀 사건에 관해 증언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며, 그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당사자의 명확한 허락이 없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증언하지 않을 수 있다.

D-14.0205
증인의 신임도

신임도란 증인의 증언에서 주어지는 신뢰의 정도를 의미한다.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증인의 신임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가해지는 어떤 문제든지 고려할 수 있다

D-14.0300

3. 증 언

D-14.0301
분리심문

어느 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어떤 증인도 다른 증인의 심문 중에 출석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피소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출석하고 감정인들을 출석하게 하는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D-14.0302
증인의 심문

징계사건이든 교정사건이든지 간에 증인들은 그들을 내세운 편에 의해 먼저 심문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반대편에 의해서 대질 심문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느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이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다.

선 서

a. 증언을 하기 전에 증인은 다음 질문에 긍정적 대답을 함으로 선서를 해야 한다 :
"당신이 이 사건에 있어서 제공하는 증거는 진실하며, 전적으로 진실하고 진실 아닌 것이 전혀 없음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심을 바랍니까?"

확 인

b. 만일 증인이 선서를 하는데 반대한다면, 그 증인은 다음 질문을 긍정적으로 대답해야 한다 :
"당신은 당신이 증언하도록 소환받은 사건에 관하여 진실을, 전적인 진실을, 그리고 진실 외에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확인합니까?"

D-14.0303
증언의 기록

각 증인의 증언은 공인받은 기록 작성자나 다른 방편에 의해 정확하고 완전히 기록되어야 한다.

D-14.0304
선서증언의
용인

그 앞에 어느 사건이 계류 중인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어느 편 당사자의 청원에 의해 선서 증언의 형식으로 증언을 취택하고 기록할 한 사람이나 더 많은 사람들을 임명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타치리회에서
온 사람

a. 필요하면 그렇게 임명받은 사람이나 사람들은 다른 치리회의 지역 내로부터 올 수도 있다.

증언시행

b. 그렇게 임명받은 사람은 누구나 당사자들 모두에게 증인들이 조사받게 될 장소와 시간을 통보한 다음에, 어느 편 당사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증언을 취해야 한다. 당사자 모두는 출석하여 대질 심문을 허락받을 권리가 있다.

증거제공

c. 그렇게 임명된 사람이나 사람들의 서명이나 서명들에 의해 적절히 확증받은 이런 증언은 그 앞에 그 사건이 계류 중인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에게 즉시 전달되어야 하고, 어느 편 당사자에 의해서나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용인성의 질문

d. 선서 증언으로 한 진술의 용인성에 관한 모든 질문은 그런 증언의 기록이 증거로 제시될 때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D-14.0305
증인으로서 회원

그 앞에 그 사건이 계류 중인 당회원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이 증언할 수 있으나 그 후에는 그 사건에 전혀 참여해서는 안 된다.

D-14.0400

4. 증거로서의 기록

D-14.0401
기록의 용인성

치리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확증된 서면 기록은 어떤 절차에나 증거로 용인되어야 한다.

D-14.0402
증언의 용인성

한 치리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취해지고 정식으로 확인된 증언의 어떤 기록이나 사본은 다른 치리회에서 하는 어떤 절차에도 용인되어야 한다.

D-14.0500

5. 새 증거

D-14.0501
새 재판의
청원

상소장을 접수시키기 이전에, 그러나 상소할 일자를 연기하지 않고서, 범법으로 기소된 어느 사람 또는 그를 상대로 교정사건에서 지시나 결정이 이미 제기된 어느 편 당사자는 새로이 발견된 증거의 근거에서 새 재판을 청원할 수 있다. 그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그런 증거가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또 다른 결정에 귀결될 수 있으며, 그것이 합리적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재판 기일까지 제출될 수 없다는 점을 납득했을 때—그런 신청을 허락할 수 있다.

D-14.0502
상소의 고려

만일 상소장이 어느 편 당사자에 의해 접수된 다음에, 합리적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상소장 접수 이전에 발견될 수 없었던 새 증거가 발견되면, 상소를 접수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그 자체의 재량으로 새로이 발견된 증거를 접수하고 청문을 진행하며 그 사건을 확정을 지을 수 있다. 그렇지만 새로이 발견된 증거는 그것을 제출하는 당사자가 적어도 청문 30일 이전에 반대측에게 줄 사본과 함께 청원하지 않으면 용인될 수 없다. 그 청원서에는 증거의 요약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부 록

1. 사법절차 양식
   (반대와 항의 포함)
2. 한국어 어휘
3. 색 인
4. 합의조항
5. 공식 본문 합의 약정서

양 식

치리회의 결정에 불찬성을 기재하는 양식

양식 No. 1
반대, G-9.0303

본인______________은 _________________(치리회 명칭)에 회원 또는 총대로서 ____________________(결정 또는 결의)에 나의 반대를 기재한다.

____
(서명)

[반대는 결정이 취해진 특별회기의 휴회 이전에 구두로 표현해야 한다. 상기 양식은 그의 반대를 확인할 당회서기나 상회서기 또는 그 사람의 보좌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대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

양식 No. 2
항의, G-9.0304

본인______________은 _________________(치리회 명칭)에 회원 또는 총대로서 _________________(변칙 또는 비행)에 항의하고자 한다.

나의 항의 이유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다.

____
(서명)

[항의의 서면 통보는 그 일이 발생한 치리회의 특정회의시에 제안되어야 한다. 그 항의는 폐회 이전에 당회서기나 상회서기에게 접수되어야 한다.]

교정사건의 양식

양식 No. 3
집행유예
치리회의 3분의 1의 서명, D-6.0103a(1)

________________________,

고소인

대

____

피소인

아래 서명한 사람들은 ______________(유예되기 바라는 결정을 삽입)에 대한 그 결의나 결정이 취해졌을 때 출석했고 그 결정이 변칙이었음을 믿는 ______________(치리회 명칭)의 회원의 적어도 3분의 1을 구성한다.

[본 집행유예는 고소나 상소의 통보제기의 기일이 만료되기까지 또는 기일에 맞추어 접수되었으면,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유효해야 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제기 30일 이내에 집행유예에 대한 반대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존속하거나 아니면 제거할 여부에 관한 청문의 결과에 따라, 그 집행유예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그 사건의 공과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수정되거나 종결되거나 계속되어야 한다.]

____________, 날짜 ________ ____________, 날짜 ________
____________, 날짜 ________ ____________, 날짜 ________
____________, 날짜 ________ ____________, 날짜 ________
____________, 날짜 ________ ____________, 날짜 ________

본인은 상기 기명자들이 그 결의나 결정의 시간에 출석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본인은 오늘 요구되는 수의 서명을 접수했다.

____________ ____________

날짜 치리회 서기나 당회서기의 서명

[주 : 필요한 수의 서명자를 기록하도록 충분한 폐지를 사용하라. 그러나 각 서명은 본인의 실제 서명이어야 한다. 인쇄된 성명이나 서명된 폐지의 사본은 요구 조건에 맞지 않는다.]

양식 No. 4
집행유예
사건을 결정하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3분의 1의 서명, D-6.0103a(2)

______________________,
고소인, 상소인, 항소인
대

______________________,
피소인, 상소인, 항소인

__________(치리회 명칭)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아래 위원들은 상기 사건의 통보 결의에 참여했고, 그 사건이 상급 치리회에 의한 항소 청문을 할 때까지 집행유예가 부여되어야 함을 믿으면서, 이에 우리는 서명한다.

__________, 날짜 ______ __________, 날짜 ______
__________, 날짜 ______ __________, 날짜 ______
__________, 날짜 ______ __________, 날짜 ______
__________, 날짜 ______ __________, 날짜 ______

본인은 오늘 요구되는 수의 서명을 접수했다.

__________ __________
날짜 상회서기나 당회서기의 서명

[주 : 고소인/상소인은 서명한 각자에게 결정이 유예된 당회서기나 상회서기에게 그 양식을 직접 보내도록 요청하면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집행유예의 사본을 보내도록 한다.]

양식 No. 5
집행유예, 고소나 상소 접수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3인의 서명, D-6.0103a(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소인, 상소인, 항소인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소인, 상소인, 항소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아래 위원들은 ________________(날짜)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결의나 결정의 주제 삽입)에 관한 ____________________(치리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나 D-6.0202b(3)에 기명된 피소인 성명)의 결의나 결정에 대한 고소나 항소를 청문할 관할권이 있고, 고소나 항소 또는 고소나 항소의 내용을 접수하였고, 그들의 판단으로는 그 결의나 결정에 오류를 발견할 만한 개연적 근거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에 집행유예를 부여한다.

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 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
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 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
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 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
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 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

본인은 오늘 필요한 수의 서명을 접수했다.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상회서기나 당회서기의 서명

[주 : 고소인/상소인은 서명한 각자에게 결정이 유예된 당회서기나 상회서기에게 그 양식을 직접 보내도록 요청하면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집행유예의 사본을 보내도록 한다.]

양식 No. 6
고소, D-6.0301

________________________,
고소인(들)
대
________________________,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중앙협의회나 총회 기관)
피소인

고소의 진술

본인(우리) __________(고소인〈들〉 성명〈들〉)는 ________(치리회나 기관)이 ______________(변칙적인 결의나 결정, 또는 고소된 비행을 기술) 행한 바와 같이, 19_____년 _____월 _____일에 ____________(장소)에서 이루어진 ____________________(변칙이나 비행)에 관해서 ______________(치리회, 총회중앙협의회 또는 총회기관 명칭)을 상대로 ______________(차상급 치리회나 총회)에 고소를 제기한다.

고소인(들)은 그 결의나 결정이 변칙적이거나 치리회가 아래 사항 ________________(그 결의나 결정이 변칙적이거나 결의하는데 실패한 일이 비행인 사유)에 있어서 헌법적 요구대로 결정하지 못한 사실을 믿는다.

고소인(들)은 이런 이유 ________________(D-6.0202a,b에 정해진 고소의 입장을 서술) 때문에 고소할 권한을 갖는다.

고소인(들)은________(고소가 제기된 치리회 명칭)가 ________(고소의 대상인 치리회 명칭)에게 ________________(요구되는 구체적 구제책을 서술)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날짜　　　　　　　　　　　　　고소인(들)의 서명

[고소인(들)의 명심사항 : 양식 No.7도 역시 접수시켜야 한다.]

양식 No. 7
고소전달의 확인증, D-6.0301f

본인은 19 _____년 _____월 _____일에__________(배달 증명 우편이나 등기우편, 영수증 반신 요청이나 인편 전달)에 의해 ____________(당회서기, 상회서기, 총회 중앙협의회 또는 총회기관)에게 보낸 우편을 통해 __________(고소대상인 치리회나 기관 명칭)에게로 상기 고소 사본이 배달되었음을 이에 확인한다.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날짜　　　　　　　　　　　　　고소인(들)의 서명

양식 No. 8
피소인에 의한 고소장 접수, D-6.0301f

본인, ______________(치리회나 총회 중앙협의회나 총회기관 명칭)의 ________________(당회서기, 상회서기, 총회 중앙협의회나 총회기관 대표의 성명)은 ___________(고소인의 성명)의 고소장을 19_____년 _____월 _____일에 _____________(인편전달이나 영수증 반신을 요구하는 배달 증명 우편이나 등기우편)에 의해 접수했음을 확인한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당회서기나 상회서기나 대표

양식 No. 9
고소에 대한 답변, D-6.0303

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소인(들)
대
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중앙협의회나 총회기관)
피소인

답 변 서

____________(피소인의 변호인단)은 _____________(고소인〈들〉 성명)의 고소에서 주장한 _________________(변칙이나 비행)의 고소에 대해 아래 답변서를 제출한다.
[그 답변서는 고소에서 주장한 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하거나, 이 주장들이 진실이 아니거나 잘못 진술되었다고 부인하거나, 변칙이나 비행이라고 확인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사실들을 주장해야 한다. 그 답변서는 D-6.0307에 열거된 어느 사안을 역시 제시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당회서기나 상회서기나 대표
[피소인(들)의 명심할 사항 ; 양식 No.10을 역시 접수시켜야 한다.]

양식 No. 10
고소인에게 답변서 전달의 확인증, D-6.0303

본인 _____________(성명)은 동봉 서류를 _____________의 고소에 대한 답변서로서 제출하며 사본이 19_____년 _____월 _____일________(영수증 반신을 요구하는 배달 증명 우편이나 등기우편이나 인편 전달)에 의해 고소인(들)에게 제공되었음을 확인한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고소인(들)의 서명

양식 No. 11
교정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소환장, 사전심리회의, D-6.0309

수신 : ___________________(고소인이나 변호인단)
발신 : ___________________(당회장이나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 이나 서기)

귀하가 _______________(당회서기, 노회나 대회나 총회의 서기)에게 19_____년 _____월 ______일에 귀하에 의해서, 또는 귀하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 관하여 권징조례 D-6.0309에 서술된 대로 예비절차를 위해 _____________(도시)의 ________________(장소)에서 19____년 _____월 _____일에 모이는 _____________(치리회 명칭)의 _______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출두하도록 소환한다.

____
날짜

____
당회장이나 서기,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2
교정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소환장, D-7.0201, .0202

수신 : ___________________(고소인이나 변호인단)
발신 : ___________________(당회장이나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 이나 서기)

귀하가 ________________(당회서기나 노회, 대회 또는 총회서기)에게 19______년 ______월 ______일에 귀하에 의해 제기된 고소나 귀하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 반대하여 변호를 하기 위해, 그렇게 하므로 그 문제가 충분히 청문하고 결정되도록 ___________(도시)의 __________(장소)에서 19_____년 _______월 ________일에 모이는 회의에 _____________(치리회 명칭)의 _______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출두하도록 소환한다.

____
날짜

____
당회장이나 서기,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3
증인에게 소환장, 교정사건, D-7.0201, .0202

수신 : ____________________(성명)
발신 : ____________________(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_______________(고소인(들)이나 피소 치리회나 기관의 명칭<들>)의 요청에 따라, 귀하가 _____________(사건명) 교정사건에 증언하기 위해_________(도시)의 _____________(장소)에서 19______년 ______월 ______일에 모이는 _____________(치리회 명칭)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출두하도록 소환한다.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4
증인에게 2차 소환장, 교정사건, D-7.0203

수신 : ____________________(성명)
발신 : ____________________(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본 소환장은 일자와 장소에 필요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양식 No.13과 동일해야 하며 추가로 아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

이는 귀하의 2차 소환장이므로, 귀하가 사유의 해명 없이 __________ (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앞에 정한 시간과 장소에 출두하지 않으면 D-7.0203에 따라 귀하는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한다.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5
소환장 전달 명령, 교정사건, D-7.0202

수신 : ________________(성명)
발신 : ________________(당회장이나 서기,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귀하는 별첨 소환장을 상기 ________________(성명)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할 지시를 받았다. 전달 확인증은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6
소환장 전달 확인증, 교정사건, D-7.0202

수신 : ________________(성명)
발신 : ________________(소환장 전달자)

본인은 ______________(성명)에게 19______년 ______월 ______일에 소환장을 개인적으로 전달했음을 확인한다. [또는 본인은 ___________(성명)의 거주지 확인과 확인증 전달을 할 수 없었음을 확인한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서명

양식 No. 17
미국장로교 회원이 아닌 사람을 증인으로 요청,
교정사건, D-7.0201b

수신 : ___________________(증인의 성명)
발신 : ___________________(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명칭)

________________ (고소인〈들〉이나 피소 치리회나 기관 명칭〈들〉)의 요청에 따라, 귀하가 ________________________(사건명) 교정사건에 관련하여, ______________(도시)의 ______________(장소)에서 19_____년 _____월 _____일에 모이는 _________________(치리회 명칭)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이에 요청한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18
선서 증언 청취의 요청,
교정사건, D-7.0205, 14.0304

수신 : ___________________(상임사법 전권위원회)
발신 : ___________________(고소인〈들〉이나 피소인의 성명)

본인 __________은 ________________________(이유 열거) 때문에 ______________(사건명)의 재판에서 ________________(증인 성명)의 증언을 선서 증언으로 하도록 요청한다.

본인은 본 요청서의 사본이 _____________________(고소인이나 피소인)에게 제공되었음을 확인한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서명

양식 No. 19
상소장, 교정사건, D-18.0100, .0201, .0202

수신 : ____________________(판결을 내린 치리회에 상소한 치리회 서기)
발신 : ____________________(상소인)

관련 :

____
상소인(고소인이나 피소인)
대

____
피상소인(피소인이나 고소인)

상소 통보는 19____년 _____월 _____일에 ______________(장소)에서 ________________(노회 명칭)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행해진 결정으로부터 ______________(대회나 총회)에 제출한다.

(D-8.0202에서 요구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상소인 서명

[상소인(들)의 명심할 사항 : 양식 No.20을 역시 접수시켜야 한다.]

양식 No. 20
상소장 전달 확인증, 교정사건, D-18.0202f

본인은 상소장을 _____________(배달 증명 우편이나 등기우편이나 영수증 반신 요청 또는 인편 전달)에 의해 ______________(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상소를 청문할 상급치리회의 서기)와 _____________(상대방과 그들의 변호인)에게 19_____년 ______월 _____일에 전달하였음을 확인한다.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상소인 서명

양식 No. 21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적요서 양식, 교정사건, D-8.0204, .0205

____

상소인(고소인이나 피소인)

대

____

피상소인(피상소인이나 고소인)

오류의 명세서

[하급 치리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범해진 오류의 협의, 상소의 근거를 위해서 D-8.0105 참조. 피상소인은 상소인의 적요서에 열거된 오류의 명세서를 명기해야 한다.]

사실의 선언

[상소에 이르게 된 사건에 관한 사실의 분명하고 간결한 구두 설명을 한다.]

논 증

[각 명세서에 적용되는 논쟁의 부분들을 지시하는 적절한 항목을 제시하면서, 오류의 각 명세서에 대한 논증을 서술한다. 그런 주장들을 지원하는 이유와 판례의 인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결 론

[만일 상소인이면, 요구하는 구제책이나 교정을 서술한다. 만일 피상소인이면, 요구하는 상소의 처리를 서술한다.]

부 록

[만일 적절하면, 하급 치리회에 의한 어떤 결정의 사본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만일 적요서에 관련된 것이면, 치리회 회의록의 적합한 부분들을 첨부해야 한다.]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날짜 상소인 서명

[상소인(들)의 명시할 사항 : 양식 No.22을 역시 접수시켜야 한다.]

양식 No. 22
적요서 전달 확인증, 교정사건, D-18.0204a, .0205a

본인____________________(성명)은 ________________(상소인, 피상소인)의 적요서의 사본이 __________________(배달 증명 우편이나 등기우편, 영수증 반신 요청 또는 인편전달)에 의해 19______년 _____월 _____일에 ____________(상대방과 그들의 변호인)에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한다.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날짜 상소인이나 피상소인 서명

결백 입증 양식

양식 No. 23
결백 입증 요청, D-9.0101

수신 : ____________________(당회서기, 노회서기)
발신 : ____________________(결백 입증을 요구하는 사람의 성명)

본인 ________(성명)은 본인이 ______________의 범행을 범했다고 주장하는 ________________(소문이나 험담)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___________(당회나 노회)가 범행혐의에 관한 사실과 상황을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지명할 것을 요청한다.

[혐의 사실의 설명과 진술을 제공한다. 소문이나 험담이 범행을 이루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과 귀하가 답변에서 주장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기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서명

양식 No. 24
결백 입증 요청의 검토, D-9.0101a

수신 : ____________________(당회서기나 노회서기)
발신 : ____________________(목회위원회나 기타 해당위원회)

____________(성명)에 의해 제기된 결백 입증 요청을 검토한 결과, ___________(위원회 명칭)는 조사위원회 임명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받아서, 조사위원회가 D-10.0201에 마련된 대로 진행하도록 임명__________(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을 __________(날짜)에 결정했다.

________________(당회서기나 노회서기)는 D-10.0201의 조항에 따라 그런 조사위원회의 임명을 마련해야 한다.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서명

양식 No. 25
조사위원회 보고, 결백 입증 절차, D-9.0101b

수신 : ____________________(결백 입증을 요청한 사람이나 당회서기나 노회서기)
발신 : ____________________(조사위원회 위원)

이것은 __________(사람의 성명)에 관한 소문과 험담을 조사하도록 __________(조직날짜, D-10.0401)에 조직된 조사위원회가 __________(고발이 되지 않아야 한다. 아니면 고발이 제기되어야 한다) 행한 결론이다.

[소문과 험담이 생긴 사실과 상황이 보고되어야 한다.]

[만일 조사회원회가 그 고발을 제기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D-10. 0402에서 시작되는 적절한 사법절차가 따라야 한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서명

징계사건의 양식

양식 No. 26
개인 범법진술서로 고발, D-10.0102a

수신 : ____________________(당회서기나 노회서기)
발신 : ____________________(고발하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성명)

본인 __________(성명)은 ______________(당회나 노회 명칭)의 관할권하에서, 성경과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______________의 범법을 행했으므로 ________________(고발자 성명)을 고발하며 상기 고발을 지지할 아래 정보를 제출한다.

상기 ____________(피고발자 성명)은 ____________(날짜)나 그 무렵에 __________________(고발을 지지한다고 믿는 구두 설명과 혐의 사실을 첨부한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고발자 서명

양식 No. 27
치리회 회원의 범법 진술서로 고발, D-10.0102b

수신 : ____________________(당회서기나 노회서기)
발신 : ____________________(고발하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성명)

본인 _________(성명)은 ______________(당회나 노회 명칭)의 회원으로서, 성경과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_____________의 범법을 행했기에 ___________________(피고발자 성명)을 고발하며 상기 고발을 지지하는 아래 정보를 제출한다.

상기 ______________(피고발자 성명)은 ________(날짜)나 그 무렵에 ___________________(고발을 지지한다고 믿는 구두설명과 혐의 사실을 첨부한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고발자 서명

양식 No. 28
회원의 범법 진술서로 자신을 고발, D-10.0102c

수신 : ____________________(당회서기나 노회서기)
발신 : ____________________(자의고발을 하는 사람의 성명)

본인은 _________(당회, 노회)의 관할권하에서, 성경과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범법에 유죄함을 선언하며 본인의 자의고발을 지지하는 아래 정보를 제출한다.

본인 ___________은 _______(날짜)에 _____________(자의고발을 실증하는 구술 정보를 첨부한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서명

양식 No. 29
조사의 종결, D-10.0202g, .0300

수신 : ____________________(당회서기나 노회서기,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사람이 나 혐의의 상대가 되는 사람)

발신 : ____________________(조사위원회 위원)

이것은 ________________(사람의 성명)을 상대로 혐의를 조사하도록 ________________________(조직날짜, D-10.0401)에 조직된 조사위원회가 ________________(고발이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 아니면 고발이 제기되어야 한다) 행한 결론이다.

[D-10.0300의 조항에 상술된 그런 결정 곧 고발을 제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결정에 뒤이어 오는 그런 결정은 조사위원회가 해야 한다.]

양식 No. 30
조사위원회의 보고 접수, D-10.0300

이것은 19____년 ____월 _____일에 조직된 ______________(치리회 명칭)의 조사위원회의 보고의 접수를 확인한다. 이 보고는 19 ____년 ____월 ____일에 접수되었는데, 이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__________________(고발을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아니면 고발을 제기해야 한다)을 선언한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당회서기나 상회서기 서명

양식 No. 31
고발 접수하지 않기로 한 결정의 검토 청원, D-10.0303a

수신 : ___________________(당회서기나 노회서기)
발신 : ___________________(범법의 원 진술서를 제출한 사람)

본인 _______________은 본인이 ________________(당회나 노회 명칭)의_________________(당회서기나 노회서기)에게 제출한 범법의 서면진술서와 관련하여 고발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사위원회로부터 __________(날짜)에 통보받았으므로, 이에 고발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하도록 __________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청원한다.

[고발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이른 조사위원회가 범한 오류가 있다고 귀하가 믿는 바를 설명하는 구두 설명을 하라.]

[본 청원은 조사위원회의 답변과 함께 당회나 노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검토될 것이다. 그 검토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의 확인이나 아니면 새로운 조사에 이르게 된다.]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서명

양식 No. 32
검토 청원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답변서, D-10.0303b

수신 : ___________________(당회서기나 노회서기)
발신 : ___________________(조사위원회)

본 조사위원회는 ____________(성명)을 상대로 __________(성명)에 의해 제출된 범법의 서면진술서를 조사하도록 임명받아서, 고발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결정 검토의 (그이나 그녀의) 청원에 있어서 ___________(성명)에 의해 주장된 사실에 아래와 같은 응답을 제출한다.

[혐의사실 각각에 대한 응답]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조사위원회 위원 서명

양식 No. 33
상임사법 전권원회에 의한 검토 종결, D-10.0303

수신 : ____________(당회서기나 노회서기,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사람이나 협의의 상대가 되는 사람)

발신 : ____________(당회장이나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이것은 __________(사람의 성명)을 상대로 고발을 접수하지 않기로 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이 ________(적절하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조사에 근거했다는 사실에 대한 __________(당회나 상임사법전권위원회)의 결론이다. ________(청원인 성명)의 그 청원이 ________(인정 안 된다 아니면 인정된다).

[만일 청원이 인정되면, 새 조사위원회가 임명되어야 한다(D-10. 0303d). 만일 청원이 인정 안 되면, 그 시건은 종결된다.]

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 당회장이나 당회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주 : 뒤따를 심리에 있어서 조회할 필요를 방지하기 위해(D-4.0000), 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내규를 마련하여 당회장이나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에게 청원의 검토와 답변을 행할 2, 3명의 위원을 지명하도록 하는 일이 좋을 것이다. 이 위원들은, 만일 심리를 차후에 하게 되면, 심리에 참여하지 못한다.]

양식 No. 34
고발, D-10.0403, .0404

미국장로교는 당신 ______________(교인이나 노회 명칭)을 아래 범법(들)을 들어 고발한다 :

["범법이란 그 교회의 교인이나 제직원이 성경이나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나 그것의 생략을 뜻한다."]

_________(날짜)에나 그 무렵, 귀하 ________________(성명)는 ______________의 범법을 행했는데 거기에서 귀하는 ________________.

[매 고발은 번호를 매겨야 하고 범법을 구성한 행위를 설명해야 한다. 매 고발은 (가능하면) 혐의받은 행위의 범행의 시간, 장소와 상황을 제시해야 한다. 매 고발은 기소를 위해서 증인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그것의 뒷받침을 위해 입증할 기록과 문서의 설명서가 역시 첨부되어야 한다.]
고발을 지지하는 증인들(성명과 주소를 기록) :
고발을 지지하는 기록과 문서(각각을 열거하고 기술) :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조사위원회 서명

양식 No. 35
피소인에게 소환장,
사전 심리회의, D-10.0405a

수신 : ________________(피고인 성명)
발신 : ________________(당회장이나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귀하가 _____________(당회나 노회 명칭) 대 _________(피고인 성명)을 통한 미국장로교의 사건에 있어서, 권징조례 D-10.0405에 서술된 대로 예비절차를 위해 __________(도시)의 _________(장소)에서 19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에 모이는__________(교회나 노회 명칭)의 ____________(당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출두하도록 소환한다. 고발(들)의 사본을 첨부한다.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당회장이나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36
기소위원회에 소환장, 사전 심리회의, D-10.0405a

수신 : ________________(기소위원회 명칭)
발신 : ________________(당회장이나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귀하는 ______________(당회나 노회 명칭) 대 _________(피고인 성명)을 통한 미국장로교의 사건에 있어서, 권징조례 D-10.0405에 서술된 대로 예비 절차를 위해 __________(도시)의 __________(장소)에서 19____년 _____월 ____일 _____시에 모이는__________(교회나 노회 명칭)의 ____________(당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출두하도록 소환한다. 고발(들)의 사본을 첨부한다.

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 당회장이나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37
피소인에게 소환장, D-11.0201a, .0202

수신 : ________________(성명)
발신 : ________________(당회장이나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귀하______________(성명)는 _________(당회나 노회 명칭)을 통한 미국장로교에 의해 당신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에 대한 답변을 위해 ________(도시)의 __________(장소)에서 19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_시에 모이는 ___________(교회나 노회 명칭)의 ________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출두하도록 소환한다.

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 당회장이나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38
피소인에게 2차 소환장, D-11.0201a, b

수신 : ____________________(성명)
발신 : ____________________(당회장이나 서기, 또는 상임 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본 소환장은 일자와 장소에 필요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양식 No.37과 동일해야 하며 추가로 아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

이것이 귀하의 2차 소환장이며, 귀하는 D-11.0202b에 따라 통보를 받았으므로, 만일 귀하가 사유의 해명 없이 위에 정한 시간과 장소에 출두하지 않으면, ___________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을 귀하를 대표할 변호인으로 임명한 후, 마치 귀하가 출석한 것으로 알고, 귀하의 사건에 증언을 듣도록 진행할 것이다. 추가하여 귀하가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는 불복종과 모욕행위로 인해 유죄가 될 수도 있다(D-11.0202a).

____

날짜

____

당회장이나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39
기소위원회에 소환장, D-11.0201a, .0202

수신 : ____________________(특별징계위원회)
발신 : ____________________(당회장이나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귀하가____________(당회서기나 노회서기)에게 19_____년 ______월 ______일에 제기한 _________(성명)을 상대한 고발(들)을 기소하기 위해, 그렇게 함으로 그 문제가 충분히 청문하고 결정되도록 ____________(도시)의 ______________(장소)에서 19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_시에 모이는 ____________(교회나 노회 명칭)의 ___________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출두하도록 소환한다.

____

날짜

____

당회장이나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40
증인에게 소환장, 징계사건, D-11.0201a, .0202

수신 : ________________(성명)
발신 : ________________(당회장이나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귀하가______________(당회나 노회 명칭)을 통한 미국장로교에 의해 ____________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 ________(도시)의 __________(장소)에서 19____년 _____월 _____일_____시에 모이는 ____________________(교회나 노회 명칭)의 _________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출두하도록 소환한다.

____
날짜

____
당회장이나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41
증인에게 2차 소환장, 징계사건, D-11.0202a

수신 : ________________(성명)
발신 : ________________(당회장이나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본 소환장은 일자와 장소에 필요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양식 No.40과 동일해야 하며 추가로 아래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귀하의 2차 소환장이며 D-11.0202a 따라 통보받았으므로, 만일 귀하가 사유의 해명 없이 ______________________(교회나 노회 명칭)의 ________________(당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정한 시간과 장소에 출두하지 않으면 귀하는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____
날짜

____
당회장이나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42
소환장 전달 명령, 징계사건, D-11.0202

수신 : ____________________(성명)
발신 : ____________________(당회장이나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귀하는 별첨한 소환장을 상기 ________________(성명)에게 개인적으로 전달할 지시를 받았다. 전달 확인증은 _______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서기에게 보내야 한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당회장이나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43
소환장 전달 확인증, 징계사건, D-11.0202

수신 : ____________________(서기)
발신 : ____________________(소환장 전달자)

본인은 ____________(성명)에게 19_____ 년 _____월 _____일에 소환장을 개인적으로 전달했음을 확인한다(또는 본인은 ____________〈성명〉의 거주지 확인과 확인증 전달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서명

양식 No. 44
미국장로교 회원이 아닌 사람을 증인으로 요청, 징계사건, D-11.0201b

수신 : ____________________(성명)
발신 : ____________________(당회장이나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귀하는____________(당회나 노회 명칭)을 통해 미국장로교에 의해 제기된 ____________을 상대한 고발(들)에 관련하여 ____________(도시)의 ____________(장소)에서 19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_시에 모이는 ____________(교회나 노회 명칭)의 _________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출석하고 증언하도록 이에 요청한다.

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 당회장이나 서기 또는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양식 No. 45
선서증언 청취의 요청, 징계사건, D-11.0204, 14.0304

수신 : _______________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명칭)
발신 : ____________________(고소인〈들〉이나 피소인의 성명)

본인______________은 ______________________(이유 열거) 때문에 ____________(사건명)의 재판에서 ____________(증인 성명)의 증언을 선서 증언으로 하도록 요청한다.

본인은 본 요청서의 사본이 ____________(고소인이나 피소인)에게 제공되었음을 확인한다.

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 서명

양식 No. 46
상소장, 징계사건, D-13.0100, .0201, .0202

수신 : ________________(판결을 내린 치리회에 상소한 치리회 서기)
발신 : ________________(상소인)
관련 :

____
상소인(유죄로 인정된 자나 치리회〈D-13.0103〉)
대

____
피상소인(치리회나 유죄로 인정된 자)

상소 통보는 19____년 _____월 _____일에 ___________(장소)에서 ________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행해진 결정으로부터 _____________(노회, 대회나 총회)에 제출한다.

[D-13.0202에서 요구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상소인 서명

[상소인(들)의 명심할 사항 : 양식 No.47을 역시 접수시켜야 한다.]

양식 No. 47
상소장의 전달 확인증, 징계사건, D-13.0202f

본인은 상소장을 _______________(배달 증명 우편이나 등기우편이나 영수증 반신 요청, 또는 인편전달)에 의해 _____________(그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상소를 청문할 상급 치리회의 서기)와 _____________(상대방과 그들의 변호인)에게 19_____년 _____월 _____일에 전달하였음을 확인한다.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상소인 서명

양식 No. 48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적요서 양식, 징계사건, D-13.0204, .0205

____

상소인

대

____

피상소인

오류의 명세서

[하급 치리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의해 범해진 오류의 협의. 상소의 근거를 위해서 D-13.0106 참조. 피상소인은 상소인의 적요서에 열거된 오류의 명세서를 명기해야 한다.]

사실의 선언

[상소에 이르게 된 사건에 관한 사실의 분명하고 간결한 구두설명을 한다.]

논 증

[각 명세서에 적용되는 논쟁의 부분들을 제시하는 적절한 항목을 제시하면서, 오류의 각 명세서에 대한 논증을 서술한다. 그런 주장들을 지원하는 이유와 판례의 인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결 론

[만인 상소인이면, 요구하는 구제책이나 교정을 서술한다. 만일 피상소인이면, 요구하는 상소의 처리를 서술한다.]

부 록

[만일 적절하면, 하급 치리회에 의한 어떤 결정의 사본들이 첨부되어야 한다. 만일 적요서에 관련된 것이면, 치리회 회의록의 적합한 부분들을 첨부해야 한다.]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날짜 상소인 서명

[상소인(들)과 피상소인(들)의 명심할 사항 : 양식 No.49를 역시 접수시켜야 한다.]

양식 No. 49

적요서 전달 확인증, 징계사건, D-13.0204a, .0205a

본인________________(성명)은 __________(상소인, 피상소인)의 적요서의 사본이 __________(배달 증명 우편이나 등기우편, 영수증 반신요청, 또는 인편전달)에 의해 19____년 _____월 _____일에 ______________(상대방과 그들의 변호인)에게 전달하였음을 확인한다.

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 상소인 서명

조회양식

양식 No. 50

조회, D-4.0000

수신 : ____________________(차상급 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발신 : _______________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_____________(교회, 노회, 대회)의 __________(당회,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아래 사건에 있어서 ________________(심리와 결정 또는 상소 청문)을 위한 관할권을 맡도록 ________________(상급 치리회 명칭)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에 요청한다 :

____
고소인
대
____
피소인
또는
____
미국장로교
대
____
피고인

그 사건을 아래 이유(상급 치리회가 사건을 처리하는 일이 바람직한지 그 이유를 설명) 때문에 조회하도록 한다.

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_ 치리회장

________________________ 서기

양식 No. 51
조회에 대한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정, D-4.0200

수신 : ___________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발신 : ________________(차상급 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이것은________________(징계나 교정)건을 본 치리회가 처리하라는 ________________________(당회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요청이 ________________________(승인했거나 승인치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__________(노회, 대회나 총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의 결의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치리회 명칭)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의 사건에 있어서 원 관할권을 ________________(맡는다 **아니면** 거절한다).

[거절의 이유를 기술한다(D-4.0203).]

[만일 상급 치리회의 상임사법 전권위원회가 관할권 수락을 거부하면, 하급 치리회가 심리나 상소청문을 집행하고 결정하도록 진행해야 한다.]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상임사법 전권위원장이나 서기

한국어 어휘
Korean Glossary

A

1. Absentee	1. 결석자
2. Administration	2. 행정
3. Administrative Commission	3. 행정 전권위원회
4. Administrative Operation	4. 행정 운영
5. Administrative Review	5. 행정 조사, 평가, 검열, 검토
6. Administrative Staff	6. 행정 직원(간사)
7. Administrator	7. 행정 책임자
8. Admission to the Lord's Table	8. 성찬 참여 허락
9. Admission to Membership	9. 회원 가입
10. Adult Members	10. 성인 교인
11. Advisory Committee on the Constitution	11. 헌법자문위원회
12. Affiliate Member	12. 관련교인
13. Affirmative Action	13. 소수계보호법
14. Agency	14. 대행기관
15. Amend	15. 수정/개정하다
16. Amendment	16. 수정/개정(안)
17. Annual Consultation	17. 연례 자문/협의
18. Annual Report	18. 연례 보고(서)
19. Annual Review	19. 연례 평가
20. Answer to Protest	20. 항의서 회신
21. Appeals	21. 항소(문)/상소(문)
22. Appellant	22. 공소인/상소인
23. Appellee	23. 피고인/피소인
24. Approval	24. 승인
25. Article of Agreement	25. 합의조항
26. Assistant Pastor	26. 보조목사
27. Associate Pastor	27. 부목사
28. Automatic Termination	28. 자동(적) 해임

B

29. Ballot	29. 투표용지
30. Baptism	30. 세례
31. Baptized Member	31. 세례교인
32. Bereaved	32. 유가족
33. Bible	33. 성경
34. Bicameral System	34. 양원제도
35. Unicameral System	35. 단원제도
36. Book of Order	36. 규례서
37. Bounds of Presbytery	37. 노회 구역
38. Budget of Particular Church	38. 지교회 예산
39. Building	39. 건물

C

40. Call to Minister	40. 목사 청빙
41. Called Meeting	41. 정기회의
42. Calling to Office in the Church	42. 교회 직분에 청빙
43. Candidacy	43. 교회 직분 후보
44. Candidate for the Ministry of the Word & the Sacrament	44. 목회후보생
45. Candidates	45. 후보자(생)
46. Care of Persons	46. 교인/회원관리
47. Cases	47. 사례(사건)
48. Censures of Church	48. 교회의 책벌
49. Certificate	49. 자격증(서)/인정증(서)
50. Certified	50. 유자격
51. Chaplain	51. 기관목사
52. Charge	52. 권면/고소, 죄과(유죄)
53. Catechism, Larger and Short	53. 대·소요리 문답
54. Choir	54. 성가대
55. Christian Nurture	55. 교인 양육
56. Church	56. 교회
57. Church Discipline	57. 교회 권징
58. Church Government	58. 교회(정치) 체제/형태
59. Church Officers	59. 교회 제직원
60. Church Orders	60. 교회 규례
61. Church Polity	61. 교회 운영제도/정치
62. Church Power	62. 교회 권한
63. Church Property	63. 교회 재산

64. Church School	64. 교회학교
65. Church Unions	65. 교회 연합
66. Church Vocations	66. 교회 직책
67. Citations	67. 소환장/표창장
68. Civil Jurisdiction	68. 민사 관할권
69. Clerk	69. 서기
70. Commission	70. 전권위원회
71. Commissioned Lay Pastor	71. 평신도 파송 목회자
72. Commissioners	72. 총대/전권위원
73. Commissioning	73. 파송/위임
74. Committal	74. 하관(식)
75. Committee	75. 위원회
76. Committee on Ministry	76. 목회위원회
77. Committee on Preparation for Ministry	77. 목회후보생(준비)위원회
78. Committee on Representation	78. 대표위원회
79. Communion	79. 성찬
80. Complaint	80. 불평자, 상소자, 고소자
81. Confessional Statement	81. 신앙고백문
82. Congregation	82. 교회 회중
83. Congregational Meeting	83. 공동의회
84. Conscience	84. 양심
85. Constituancy	85. 구성계층
86.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ruch(U.S.A.)	86. 미국장로교 헌법
87. Constitutional Questions	87. 헌법 질문
88. Co-Pastor	88. 동사목사
89. Corresponding Member	89. 객원회원
90. Corporation	90. 재단
91. Council	91. 협의회
92. Covenant Relationship	92. 언약관계

D

93. Deacons	93. 집사
94. Board of Deacons	94. 집사회
95. Death	95. 사망
96. Service of Witness to the Resurrection	96. 장례식
97. Deletion	97. 삭제
98. Delinquency	98. 위반(사항)/비행

English	한국어
99. Deposition	99. 조서/공술/선서증언
100. Designated Pastor	100. 임명목사
101. Directory for Worship	101. 예배모범
102. Disciplinary Cases	102. 권징/징계사건/징계사례
103. Accused	103. 피고인
104. Charge	104. 위법사항
105. Counsel	105. 자문(하다)/변호인
106. Disciplinary Committee	106. 징계위원회
107. Preliminary Hearing	107. 예비/초심 청문(회)
108. Preliminary Procedure	108. 예비/초심절차
109. Prosecution of Case	109. 사건의 고소/기소
110. Renunciation	110. 파기
111. Vindication	111. 평결/결백 입증
112. Discipline	112. 징계/권징
113. Dissent	113. 반대자/불복자
114. Dissolution of Pastoral Relations	114. 목회관계 해소
115. Dissolving Active Relation of Deacon or Elder	115. 집사 또는 장로 시무직 해소
116. Dissolving Church	116. 교회 해산/해체
117. Divested of Office	117. 면직(되다)
118. Doctrine	118. 교리

E

English	한국어
119. Ecclesiastical Jurisdiction	119. 교회 관할권
120. Ecumenical Committment	120. 범교회 운동참여/관여
121. Ecumenical Statements	121. 초교파적 선언문(서)
122. Educational Program	122. 교육 프로그램
123. Elders	123. 장로
124. Election	124. 선거
125. Election of Pastors(or Associates)	125. 담임목사(또는 부목사) 선거
126. Election of Trustees	126. 재단이사 선거
127. Emerita or Emeritus, Pastor	127. 원로목사/명예목사
128.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128. 평등 고용기회
129. Evidence in Remedial/Disciplinary	129. 교정/징계의 증거
130. Examination	130. 시험/심사
131. Exceptions	131. 예외(항)
132. Executive Presbyter	132. 노회총무
133. Ex-Officio	133. 직책상/당연직
134. Expenses Attending	134. 치리회가 지불한 참가 경비

Governing Bodies Paid	
135. Extraordinary Inquirer or Candidate	135. 특례적 지망생 또는 후보생

F

136. Family Worship	136. 가정예배
137. Fasting & Thanksgiving	137. 금식 및 감사
138. Federated Church	138. 연방 교회
139. Finance	139. 재정
140. Form of Call to Minister	140. 목사청빙서
141. Funeral	141. 장례

G

142. General Assembly(GA)	142. 총회
143. General Assembly Council(GAC)	143. 총회 중앙협의회/실행위원회
144. Manual of Operation	144. 운영세칙서
145. Gifts	145. 희사금/은사
146. Governing Bodies	146. 치리회(기관)
147. Session	147. 당회
148. Presbytery	148. 노회
149. Synod	149. 대회
150. General Assembly	150. 총회
151. Governing Bodies Relations	151. 치리회 관계
152. Government, Church	152. 교회 정치
153. Government, Form of	153. 정치형태

H

154. Higher Governing Body	154. 상회(상급 치리회)
155. Holy Spirit	155. 성령
156. Honorably Retired Minister	156. 명예 은퇴목사

I

157. Inactive Roll	157. 비활동교인 명부
158. Incorporated Church	158. 법인 등록된 교회
159. Individual Worship	159. 개인 예배
160. Infants	160. 유아
161. Inquirer for Ministry of the Word & the Sacrament	161. 말씀과 성례전의 목회 지망생
162. Inquiry	162. 문의/지망
163. Installation of Minister of	163. 목사 위임(식)/취임

the Word & the Sacrament	
164. Instruction	164. 지시사항
165. Interim Supply	165. 임시 설교자
166. Interpretation	166. 해석/해설
167. Irregularity	167. 오판/변칙

J

168. Judgment of Court	168. 판정
169. Judicial Process	169. 사법절차
170. Judicial Case	170. 사법사례(사건)
171. Jurisdiction	171. 관할권/교직권
172. Jurisdiction of Governing Bodies	172. 치리회 관할권
173. Jurisdiction of Judicial Process	173. 사법절차 관할권

L

174. Laboring Outside Bounds	174. 노회구역 밖 사역/목회
175. Lay Preacher	175. 평신도 설교자
176. Laying on of Hand in Ordination	176. 안수
177. Local Congregation	177. 지교회/회중
178. Lord's Day	178. 주일
179. Lord's Supper	179. 성찬
180. Administration	180. 집례
181. Lower Governing Body	181. 하급 치리회

M

182. Manual of Administrative Operations	182. 행정운영 지침서
183. Marriage	183. 결혼
184. Members, Church	184. 교인/회원
185. Active Member	185. 활동교인
At-large Member	일반회원
186. Inactive Member	186. 비활동교인
187. Affiliate Member	187. 관련교인
188. Baptized Member	188. 세례교인
189. Manse	189. 목사사택
190. Manse Allowance	190. 사택수당
191. Minister	191. 목사
192. Designated Pastor	192. 임명목사
193. Parish Associate	193. 협동목사
194. Pastor	194. (담임)목사

195. Associate Pastor	195. 부목사
196. Assistant Pastor	196. 보조목사
197. Co-Pastor	197. 동사목사
198. When Removed from Office	198. 교회직분 면직시(목사직 면직)
199. Temporary Exclusion	199. 잠정정지
200. Restoration	200. 복직(목사직)
201. Ministry	201. 목회/사역
202. Committee on Ministry	202. 목회위원회
203. Committee on Preparation for Ministry	203. 목회후보생(준비)위원회
204. Minutes	204. 회의록
205. Moderator	205. 회장(각 치리회장)
206. Music in Public Worship	206. 공중예배 음악

N

207. Nominating Committee	207. 공천위원회
208. For Deacons & Elders	208. 집사, 장로 공천위원회
209. For Pastor	209. 목사청빙위원회
210. Nominating Committee of General Assembly	210. 총회 공천위원회
211. Nonresident Member	211. 타지역 거주교인/회원
212. Notice of Appeal	212. 항소 통지서(문)
213. Notice of Meeting	213. 회의소집 통지(문)

O

214. Oaths Administered to Witness	214. 증인채택 서약
215. Obligation	215. 의무(사항)
216. Offense	216. 위반(사항)/범법
217. Offerings	217. 헌금
218. Officers of Church	218. 교회 제직원
219. Order of Public Worship	219. 공중예배 순서
220. Ordination	220. 안수
221. Ordination for the Ministry of the Word & Sacrament	221.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안수(식)
222. Ordination of Deacons & Elders	222. 집사 및 장로안수(식)
223. Ordination Obligations	223. 안수의무(사항)
224. Organic Union	224. 기구적 연합
225. Organization of a Particular Church	225. 개체교회 조직
226. Original Jurisdiction in Judicial Process	226. 사법절차에 관한 원 관할권

227. Overture	227. 헌의(안)

P

228. Parish Associate	228. 협동목사
229. Parliamentary Procedure	229. 회의진행 절차
230. Particular Church	230. 개체교회
231. Federated Church	231. 연방교회
232. Union Church	232. 연합교회
233. Partner in Mission	233. 선교동역자
234. Pastor	234. 목사/담임목사
235. Election of Pastor	235. 목사선거
236. Pastor Emerita, Emeritus	236. 원로목사/명예목사
237. Pastoral Relations	237. 목사(목회) 관계
238. Associate Pastor	238. 부목사
239. Co-Pastor	239. 동사목사
240. Pastor	240. (담임)목사
241. Interim Supply	241. 임시설교자
242. Stated Supply	242. 노회 지정목사
243. Temporary Supply	243. 잠정설교자
244. Pension Plan	244. 은급보험(계획)
245. Permanent Judicial Commission	245. 상임사법 전권위원회
246. Polity, Church	246. 교회 운영제도/정치
247. Power	247. 권한
248. Prayer	248. 기도
249. Preaching & Hearing	249. 설교와 경청
250. Preparation for Worship	250. 예배준비
251. Presbyteries' Cooperative Committee on Examinations	251. 노회 목회후보고시위원회
252. Presbytery	252. 노회
253. Principles of Church Order	253. 교회규례 원칙
254. Principles of Prebyterian Government	254. 장로교 정치원리
255. Private Judgment	255. 개인 판단/사적 소견
256. Private Worship	256. 사적 예배
257. Procedure in Trials	257. 재판절차
258. Profession of Faith	258. 신앙고백
259. Property	259. 재산
260. Prosecution of Call	260. 청빙절차 시행
261. Protest	261. 항의(서)
262. Pulpit Supply	262. 임시설교(자)

Q

263. Quorum	263. 성원/정족수

R

264. Rebuke	264. 견책
265. Reception of Member	265. 교인/회원가입
266. by Certificate	266. 이명증서로
267. on Profession of Faith	267. 신앙고백으로
268. on Reaffirmation of Faith	268. 신앙 재확인으로
269. Record of Proceedings	269. 회의진행 기록(서)
270. Records of a Governing Body	270. 치리회 기록
271. References	271. 참조/조회
272. Remedial Case	272. 교정사건
273. Removal from Membership	273. 회원 이명/제적
274. Removed Minister	274. 이명/제적된 목사
275. Renouncing Jurisdiction of Church	275. 교회 관할권 파기선언
276. Representation	276. 대표
277. Committee on Representation	277. 대표위원회
278. Representative Government of Church	278. 교회 대의정치(체제)
279. Responsibilities	279. 책임(사항)
280. Restoration	280. 복직/회복
281. Review & Control	281. 평가 검토 및 조정관리
282. Robert' s Rules of Order	282. 만국통상회의법
283. Ruling Elders	283. 시무장로/치리장로

S

284. Sacraments	284. 성례전
285. Scripture	285. 성경
286. Sentence	286. 판결
287. Separation of Church & State	287. 교회와 정치 분리
288. Sermon	288. 설교
289. Service of God	289. 하나님 예배
290. Service of Witness to the Resurrection	290. 장례식
291. Session	291. 당회
292. Special Organizations	292. 특별기관
293. Special Meetings	293. 특별회의
294. Standing/Permanent Committee	294. 상임위원회
295. Standard Ordination Examinations	295. 정규 안수 고시
296. Standards of Church	296. 교회 표준

297. Stated Clerk — 297. 서기(노회, 대회, 총회)
298. Stated Meeting — 298. 정기회의
299. Stated Supply — 299. 노회 지정목사
300. Stewardship of Resources — 300. 자원 청지기직
301. Structures of Governing Bodies — 301. 치리회 구조
302. Supervised Rehabilitation — 302. 감독복권상담
303. Supper, Lord's — 303. 성찬/주의성찬

T

304. Task Force — 304. 소위원회
305. Teaching Elder — 305. 목사/가르치는 장로
306. Temporary Exclusion — 306. 일시정직
307. Temporary Pastoral Relation Term(s) — 307. 임시목사 관계 임기/규정
308. Term of Office — 308. 직분임기
309. Termination of Censure & Restoration — 309. 징계 종결 및 회복
310. Testimony — 310. 증언
311. Title — 311. 명칭/등기
312. Trials — 312. 재판/심리

U

313. Union Church — 313. 연합교회
314. Union Governing Bodies — 314. 연합치리회
315. Unity of Visible Church — 315. 가시적 교회의 일치
316. Universal Church — 315. 보편(세계)교회
317. Unity — 317. 일치

V

318. Visit Church — 318. 교회심방
319. Visiting Minister — 319. 심방목사
320. Voters — 320. 투표자

W

321. Waiver — 321. 포기/보류/잠정
322. Witness — 322. 증인

색 인

본 색인의 참조는 항목번호에 대한 것이다.
(역자주-원문대로 영어 알파벳 순서를 따랐으며, 머리 항목에는 영문과 한글 번역을, 그리고 나머지는 한글 번역만을 실었다.)

합의조항
Articles of Agreement

서 문

본 합의조항은 두 교회의 고백적 문서, 회원, 제직원, 치리회, 법정, 대행 기관, 단체와 재산이 미국장로교의 고백적 문서, 회원, 제직원, 치리회, 법정, 대행 기관, 단체와 재산이며, 또 그렇게 되는 방편에 관하여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계약적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본 합의조항은 재연합의 세목을 기록한다. 그 내용들은 각기 그 전례를 가진 재연합한 교회의 지속성을 제시한다. 재연합한 교회는 모든 교회적, 사법적, 법적, 그리고 다른 모든 사항에 있어서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지속적인 실재가 될 것이다.

두 교회가 그들의 개별적 헌법에 따라서 그 계획을 승인했고, 재연합이 효력을 발생했으므로 재연합한 단일 교회로 존재하며, 두 교회의 개별적 존재는 해소된다. 원래 합의에 따라 두 당사자들은 개별적 교회로 더 이상 존재치 않으며, 따라서 그 합의는 향후 변경할 수 없다. 재연합의 행위에 의해 그 합의에 반영된 두 당사자의 개별적 이해관계는 하나의 재연합한 교회로 연합을 이루었으며, 그 합의에 있어서 어떤 변경이 제안되지 않는 한, 그 교회는 이전 조직의 관심을 대표할 수 없을 것이다.

재연합한 교회의 형성에 곧이어, 그 새 헌법(G-1.0500)[1]이 유효하게 될 것이다. 본 합의조항보다는 새 헌법이 단일 교회의 기본 문서이며 그 규정에 따라서 개정될 것이다.

---

1) 다음 약자가 쓰여진다 :
G-정치형태
D-권징조례
S-하나님 예배 지침서(1988년 이후 이 책은 예배모범으로 불리워진다.)

제 1 조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가 더불어 갖는 미국장로교의 지속성

1.1 본 합의조항은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가 미국장로교라고 불리우는 한 교회를 형성하도록 의도하고 규정하는 것이다. 연합 이후 미국 남장로교나 미국 연합장로교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미국장로교가 각자의 후계자이고 그렇게 되어야 하며 그 후계자가 그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미국장로교의 역사는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역사이며 그것을 실현해야 한다. 본 조항들은 전술한 내용과 일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미국 남장로교, 미국 연합장로교회와 미국장로교는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재연합으로 일어난 지속적 교회인 단일 교회적 실재를 이루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일이 각자의 의도임을 확인한다.

1.2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각기 모든 교인은 미국장로교의 교인이어야 한다.

1.3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각기 모든 안수 제직원은 목사나 치리장로나 집사이든 간에, 미국장로교의 대등한 안수 제직원,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되어야 한다.

1.4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각기 모든 지교회는 미국장로교의 지교회여야 한다.

1.5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에 있는 담임목사, 동사목사, 부목사나 보조목사와 지교회와의 모든 목회관계는 미국장로교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평신도 설교자나 파송 교회 사역자로서의 현존하는 관계는 미국장로교의 형성에 의해 방해 받아서는 안 되며,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이 동일한 지교회와 그 관계를 계속하는 한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1.6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각기 모든 당회, 노회와 대회는 미국장로교의 대등한 치리회여야 한다.

1.7 미국장로교의 총회는 그 교회의 최고 치리회이며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총회의 후계자여야 한다.

1.8 미국 남장로교나 미국 연합장로교, 또는 두 교회의 공동 감독하에 있는 각기 모든 이사회, 대행기관, 단체와 위원회는 지금 미국 남장로교나 미국 연합장로교의 치리기관에 대해 가진 것처럼, 미국장로교의 해당 치리회의 동일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

1.9 미국 남장로교나 미국 연합장로교의 총회의 지시에 의해 채택되었거나 공포된 각기 모든 정책 선언은, 미국장로교의 총회의 행동으로 폐기, 변경, 또는 대치하기까지는 그것을 채택했거나, 공포한 교회에서와 같이 미국장로교에서 동일한 권한과 효력을 가져야 한다.

제 2 조 재단이사회와 법인체 기구

2.1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지교회, 치리회, 이사회, 대행 기관과 단체의 각기 모든 수탁자와 법인체 기구는 그들에 의해 보관된 모든 재산, 곧 부동산 및 동산과 함께 미국장로교의 지교회, 치리회, 이사회, 대행 기관과 단체의 수탁자와 법인체 기구가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법적 절차는 필요하게 신속히 확인하도록 지체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그런 수탁자와 법인체 기구는 그들에 의해 신탁된 모든 재산, 곧 부동산 및 동산과 함께 미국장로교의 수탁자, 법인체 기구와 재산으로 분명히 확인되어야 한다.

2.2 그런 수탁자나 법인체에 의해 신탁 보관된 모든 기금의 지속과 보전은 유지되어야 하며, 신탁 증

서에 명백히 설정된 대로 재산 양도자나 유언자의 의도는 엄격히 따라야 한다. 필요하면, 미국장로교의 적절한 실체가 그런 신탁증서에 지명된 수익자를 계승했음을 제시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제 3 조 고백적 문서들

3.1 두 선행 교회의 고백적 문서들은 재연합한 교회의 고백적 문서들이어야 한다. 미국장로교의 임시 서기는 G-1.0501에 정의된 대로 고백적 문서들의 공식적 원문을 마련해야 한다.

3.2 재연합한 장로교의 총회는 초기 회의에서 견해의 다양성과 재연합한 교회 내 그룹을 대표하는 위원회를 임명하여 G-18.0201에 마련된 대로 신앙고백서에 삽입할 만한 개혁신앙의 간추린 선언을 준비토록 해야 한다.

3.3 개혁신앙의 간추린 선언이 신앙고백서에 통합되기까지 미국장로교는 성경에 진술되었고, 미국장로교의 고백들에 포함된 역사적 기독교 교리의 개혁적 이해의 개요로서 1962년 미국 남장로교의 제102차 총회에 의해 채택된 "간추린 신앙선언"(A Brief Statement of Belief)을 받아들인다. 그 기간 "간추린 신앙선언"은 교인과 제직의 교육, 안수 이전 안수 후보자와 타노회나 타교단에서 이명 와서 노회 회원권을 구하는 목사의 오리엔테이션과 고시를 하는데 교회의 고백들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 4 조 총회 사무국

4.1 재연합에 바로 이어서 총회 사무국의 사역은 다음과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

연합한 교회의 두 최고 치리회의 사무국은 새로운 최고 치리회에 기록과 기능을 질서 있게 이전하기 위해 재연합의 유효일자 이후 1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과도기 기간에 미국 남장로교의 서기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서기는 총회의 임시 서기들의 자격을 가져야 하며, 총회 중앙협의회와 협의하여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 임시 서기들은 총회 중앙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연합의 유효일자 이후 일년내에 총회 사무국에 대한 임무와 조직적 기구를 제안해야 한다.

4.2 연합의 유효일자 이후 9개월 이전에, 총회 중앙협의회는 총회서기 공천특별위원회를 선정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9명의 위원과 재연합한 교회의 모든 지리적 구역을 대표해야 한다. 그 위원회의 위원은 아무도 서기직을 위한 공천 자격이 없다. 그 위원회는 재연합한 교회 내 개인이나 치리회에 의해 제출되는 모든 사람들의 유효성과 자격을 고려해야 하며, 그 위원회의 판단으로 그 직무에 고려되어야 할 사람들을 주도권을 갖고 찾아야 한다. 이 위원회는 차기 총회의 위원회에 이 특별위원회가 공천에 적합하다고 고려한 세 사람을 넘지 않는 이름을 직접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한다.

총회는 상기 항목에서 거론된 특별위원회가 제안과 함께 보고해야 할 총회서기 공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총회위원회는 특별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사람들의 이름에만 그 선택을 제한할 필요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와의 충분한 고려와 협의를 거친 다음, 총회위원회는 2명을 넘지 않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며, 그들의 이름들은 총회 폐회 48시간 이전에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만일 단일 후보이고 현장에서 공천이 더 이상 없으면 선거는 구두 투표로써 될 수 있다. 만일 두 사람이나 그 이상의 후보자가 있으면, 선거는 총회장을 위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되어야 한다. 투표의 과반수를 받은 후보자가 선출된 것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제 5 조 총회 중앙협의회와 대행 기관의 과도기적 구성과 사역

5.1 재연합 바로 이후에, 총회 중앙협의회는 총회장, 직전 총회의 두 총회장들과 아래 5.2에 마련된 대로 총회에 의해 선출된 48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 외에 총회서기와 총회 중앙협의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가 수시로 지명하는 직원들이 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이 없는 객원위원이 되어야 한다.

5.2 미국장로교의 첫 총회는 총회 중앙협의회의 48명 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24명은 이전 미국 남장로교 총회에 의해서 추천되어야 하는데, 21명은 그 총회 선교 이사회 위원 중에서, 그리고 3명은 이 기관들의 추천에 의해 총회 운영위원회 중에서 나온다. 24명은 이 협의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 선교협의회 위원 중 최종 미국 연합장로교 총회에 의해 추천되어야 한다. 선출된 위원 중 적어도 1명씩은 교단의 각 대회에서 나와야 한다. 선출된 위원 중 교회와 인종협의회, 여성과 교회협의회, 그리고 여성관계위원회를 포함한 재연합 교회의 총회들의 부서, 대행 기관, 그리고 협의회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선출된 사람들의 절반은 목사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평신도이다. G-9.0104와 G-9.0105의 조항에 따르도록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선출된 위원은 변동이 없이 5년 간 시무해야 한다. 단, 사임이나 사망에 의해 생긴 공석은 총회 공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 의한 선출을 통해 보충하는 것은 예외다. 5년 말에 총회 중앙협의회는 그 위원들을, 1년 추가조, 2년 추가조, 3년 추가조 말에 만료되도록 동등한 규모의 3조에 배당해야 한다. 그 후에는 위원들을 G-13.0202에 따라서 선출되어야 한다.

5.3 재연합 후 첫 5년 동안, 총회 중앙협의회는 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하고, 총회에 의해 인준받는 조건으로 그 직원을 임명해야 한다. 총회서기는 협의회의 기록서기가 되어야 한다.

5.4 총회 중앙협의회는 G-13.0201에 열거된 책임을 져야 하며 추가로 재연합한 교회의 총회의 기능, 부서, 대행기관, 협의회, 전권위원회와 단체의 필요한 조정, 관리와 강화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장로교의 첫 총회의 폐회와 함께, 미국 연합장로교의 총회 선교협의회는 해산할 것이다. 미국 남장로교의 총회 선교이사회(총회 중앙협의회의 선출 이후에 잔존한 위원들로 구성하고 있는)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프로그램부, 협력부와 소명부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조기 종결되지 않는 한 그들 각자에 의해 이전에 수행된 프로그램의 관리를 계속할 것이다. 이 기간 상기 부서의 선출된 위원들은 변동 없이 계속 시무해야 한다. 단, 사임이나 사망에 의해 생긴 공석은 총회 공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 의한 선출을 통해 보충되는 것은 예외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본 합의조항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재연합한 교회의 총회의 기능, 부서, 대행기관, 협의회, 전권위원회와 단체에 효과적으로 관련될 총회의 사역을 위한 디자인을 차기 총회에 개발하여 제안해야 한다. 단, 아래 조항 11에 마련된 은급을 위한 대행기관은 제외한다. 그 기능이 재연합한 교회에서 다른 조직이나 다른 방법에 의해 봉사받을 수 있는 대행기관들은 계속하지 않게 될 것이다.

5.5 총회 중앙협의회는 재연합 이전 양총회에 의해 승인된 지속적 선교 방향과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총회 대행기관들의 프로그램의 사역을 조화시킬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치의 맥락 안에서 세계 선교, 전도, 교육, 교회 갱신, 교회 신장과 사회적/경제적 정의의 영역에서 조직적 접근책의 지속을 보장해야 한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대행기관들을 설계하는 일, 인적 및 재정적 주요 자원을 투입하는 일, 국내외의 타교단과 기관들과 더불어 행동하는 일, 남녀 교인들로 하여금 구조와 권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에 따라 미국장로교의 목적에 부합한 사역을 시행하는 일에 특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5.6 총회 중앙협의회는 총회의 사역을 위한 디자인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교회와 인종협의회(양교단), 여성관계위원회(미국 남장로교)와 여성과 교회협의회(미국 연합장로교)의 옹호와 조정 기능의 지속을 역시 보장해야 한다. 총회의 사역을 위한 디자인이 완성되고 이런 기능들이 보장될 때까지 이 조직들의 현존하는 기구와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

5.7 재연합한 교회의 총회들의 여러 이사회, 대행기관, 협의회와 사무국이 재연합한 교회의 삶 안에서 기능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대행기관들이 재연합시 이루어지고 특별히 총회 사무실과 대행기관들이 있을 위치나 위치들에 대해 고려하는 동안, 채용된 직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민감성을 보여야 한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가능한 한 동등한 수준으로 고용의 지속을 보장해야 한다. 직원 공석이 발생하면, 그 자리는 평등 고용기회(G-13.0201b)와 전적 참여의 원칙(G-4.0403)을 위한 교단적 계획에 따라서 보충되어야 한다. 총회 중앙협의회는 공평한 종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 6 조 총회 대행기관들의 장소

6.1 총회 중앙협의회는 총회 대행기관을 위한 단일 장소나 배수 장소를 설정하는 비용을 자문 전문위원과 더불어 검토할 대표위원회를 곧 지명해야 한다. 그 위원회는 가능한 한 하나의 장소나 몇 장소들을 제안해야 한다. 그 위원회는, 만일 재배치가 수반된다면 이전을 위한 예정표를 제안해야 한다.

제 7 조 노회와 대회 구역 특별위원회

7.1 노회와 대회 구역 특별위원회는 현존하는 교회들의 노회들과 대회들이 중복되는 곳의 치리회들과 더불어,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노회들과 대회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 작업은 총회를 대신하여 그리고 총회의 결정을 위해 만들어진 그 제안(G-13.0103, 1과m)을 대신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7.2 재연합한 교회의 각 대회에서 나온 1명으로 구성된 이 특별위원회는 현존하는 교회들의 정규 공천 절차를 거쳐 재연합하는 총회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그 위원회는 재연합하는 총회의 폐회에 이어 곧, 임시 총회서기에 의해 개회될 때 그 위원회의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7.3 특별위원회는 중복되는 노회들과 대회들이 협상을 통해 재연합 후 5년내에 효력을 발생해야 할 노회와 대회 구역을 위한 상호 용납할 만한 계획을 개발하는 일을 협의할 절차를 설정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노회들과 대회들의 치리회들이 총회에 내는 헌의안의 방법으로 구역 조정을 주도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 나라의 몇몇 지역에 어떤 노회들과 대회들은 여러 해 동안 중복되었고 나란히 존재해 왔음을 인지하면서, 각 노회 회원이 현재 누리고 있는 치리의 책임과 특권이 존중되고 향상되도록 G-9.0104에 반영된 공정한 대표제의 정신에서 특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치리회들로 하여금 그들의 협상에 사용하도록 지침서를 개발해야 하며, 각 계획이 관련 치리회들과 특별위원회에 의해 승인될 때, 총회에 그 계획을 채택하도록 제출해야 한다.

7.4 지리적으로 연관된 지역이 가능한 보다 나은 친교를 나누며 치리회의 사무운영에 편하다는 원칙에서 합성하는 치리회는, 교회의 전체 선교를 증진시키는 데 충분한 힘과 지리적으로 근접해야 한다는 사실이 특별위원회의 앞으로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연합하는 치리회들 각자의 권리와 특권을 보호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새로이 형성된 치리회에서 지도력의 책임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7.5 특별위원회는 치리회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경과에 관해 총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만일 재연합 이후 5년내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만족할 만큼 재조정이 상호 개발되지 않으면 그 과정의 계속을 총회에 신청할 수 있다. 만일 허락되면, 완전한 지리적 합병이 연합한 총회 이후 10년을 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대를 갖고 매총회마다 그 노력이 검토되어야 한다.

7.6 인종이나 언어를 고려하는 일에 근거를 둔 관련 노회나 그 회원들이 우세하게 민종계로 구성된 노회들의 경우에는, 재조정의 계획은 10년내에 완성되어야 하거나 만일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총회에 의해 허락받을 그 과정의 계속을 위한 신청에 근거하여 연합한 총회 이후 15년내에 성취되어야 한다.

7.7 그 때에 가서 중복되는 구역의 모든 문제와 타노회들과 대회들의 관련된 문제가 총회 결의로 받아들여지면, 특별위원회는 해산해야 하고 구역의 장래 사안들은 G-13.0103 l과 m의 규정하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제 8 조 민종 대표, 참여와 조직

8.1 미국장로교는 당회 상급 치리회에 대표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 회원권은 남녀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 회원의 다수는 치리회 내에 있는 민종 그룹으로부터 선출해야 하며, 전체 회원은 다음의 각 범주에서 나온 사람들을 포함해야 한다 :

a. 다수 남성회원
b. 다수 여성회원
c. 민종 남성회원
d. 민종 여성회원
e. 청소년 남녀회원

그 주요 기능은 그들의 회원과 그들의 위원회, 이사회, 대행 기관과 타부서의 회원에 관련하여 참여와 포괄성의 원칙을 수행하도록 치리회를 지도하며, 교단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효과적 참여를 확인하는 것이어야 한다.

8.2 교단의 치리회들은 그 회원들의 풍부한 다양성의 완전한 표현을 마련하는 포괄성과 참여에 대한 교단의 공약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모든 치리회는 더욱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민종 배경의 근거에서 과거 차별의 패턴을 교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미국에 있는 민종회원들(아프리칸, 히스패닉, 아시안 혈통과 아메리칸 본토 장로교인들)은 완전한 참여와 교단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대표성의 접근을 보장받아야 하고 코커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민종회원의 참여와 대표성은 대표위원회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8.1).

8.3 위 8.2에 설정된 대로 다양성과 포괄성의 원칙에 일치하여 총회 중앙협의회는 교단의 민종 코커스와 협의하고 정보를 받아야 하고, 그와 같은 협의에 필요한 비용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와 같은 협의 목적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민종교회와 목회를 지원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일,
민종교회 개발을 위한 교단적 전략을 개발하는 일,

역사적으로 흑인 아메리칸과 타민종 그룹을 도왔던 학교와 기타 기관의 기금과 운영상 필요를 보장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일.

8.4 민종 교육기관은 민종교회 지도력을 개발했던 주요 원천이었다. 민종교회 지도력을 위한 긴박한 필요와 일치하여, 총회 중앙협의회는 총회가 대학과 고등학교를 통한 교육과, 역사적으로 흑인 아메리칸과 타인종 그룹을 도왔던 이 장로교 학교들의 운영상, 그리고 개발상 필요에 응하는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총회에 제안해야 한다.

제 9 조 여성의 대표성, 참여와 조직

9.1 당회 상급 각 치리회를 위해 G-9.0105에 요구된 대표위원회는 그들의 회원과 그들의 위원회, 이사회, 대행 기관과 타부서의 회원에 관련하여 참여와 포괄성의 원칙을 수행하도록 치리회를 지도하며, 교단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다수 인종과 민종 그룹의 여성의 공정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9.2 총회 중앙협의회는 양교단의 각기 인정된 여성 그룹에서 나온 선출된 대표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이 9.3에 기술된 대로 공식화될 때까지는 모든 수준에서 두 교단의 여성 프로그램과 조직의 지속을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9.3 양교단에서 나온 각기 인정된 여성 그룹에 의해 선출된 일단의 대표는 프로그램과 조직, 계층 그룹에 의해 승인받을 계획안을 개발하기 위해 회집해야 한다. 그런 계획안은 각 여성 그룹의 집행위원회에 의해 총회 중앙협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그 그룹은 총회에 매년 보고해야 하고 6년내에 그 작업을 완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10 조 신학 교육기관

10.1 재연합한 교단은 신학 교육기관에 계속적인 책임을 진다. 이 기관들은 안수직 목회를 위한 남녀와 다른 전문직 교회 지도력의 소명을 준비시키며, 전체 교회의 지도력을 위한 강력한 신학적 자원 센터를 마련하도록 위임을 받고 있다.

10.2 미국 남장로교의 신학기관 :

Aust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Austin, Texas,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Decatur, Georgia,
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Louisville, Kentucky,[2]
Presbyterian School of Christian Education,
Richmond, Virginia,

---

2) 이 신학교는 미국 연합장로교와 공동으로 운영된다.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Virginia,
Richmond, Virginia,

미국 연합장로교의 신학기관 :

Dubuque Theological Seminary,
Dubuque, Iowa,
Johnson C. Smith Seminary, of the Interdenominational
Theological Center, Atlanta, Georgia,
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Louisville, Kentucky,[3]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Chicago, Illinois,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Princeton, New Jersey,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San Anselmo, California,

이 기관들은 그들의 현재 이사회, 정관과 조직의 계획을 갖고서 재연합한 교단에서 계속해야 한다.

10.3 재연합시 그들이 연관된 치리회에 의한 이 기관들의 재정 지원의 현 패턴은 연합한 교단에서 계속해야 한다. 대회와 총회로부터 오는 신학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수준은 계속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재연합 이전 연도에 치리회들에 의해 할당된 총액의 유사한 비율을 각기 받는다.

10.4 신학기관 특별위원회가 총회의 한 위원회로서 재연합 교단의 첫 총회에서 설립되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1명의 위원은 총회에 의해 교단 전체에서 선출되어야 한다(총회의 공천과 선거 특별위원회를 위한 절차를 따라서). 상기 11개 기관의 이사회는 각기 그 위원회에 시무하도록 그 기관으로부터 1명의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첫 총회의 총회장이나 총회장의 지명자에 의해 개회해야 하며,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총회 중앙협의회의 예산에서 자금을 조달받으며 그 직원에 의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

10.5 특별위원회는 신학기관과 재연합한 교단의 치리회 사이에 관계를 검토하며, 치리회에 의한 신학교육 기금 제도를 연구해야 한다. 유별히 흑인 장로교인 계층을 봉사하는 Johnson C. Smith 신학교의 개발상 필요에 특별한 관심을 두면서, 모든 현 기관들의 지속과 재정 지원을 위해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총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재연합한 총회의 6차 총회시나 그 이전에 위원회는 신학기관들이 치리회들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게 될 방법에 관한 제안과 함께 최종 보고를 해야 한다.

10.6 미국 연합장로교의 신학교협의회와 미국 남장로교의 신학교육위원회는 그들의 현재 기능과 회원권을 갖고 계속해야 한다. 공석이 생기면, 그 자리는 회원권 범주에서 적절한 절차에 의해 보충되어야

3. 이 신학교는 미국 남장로교와 공동으로 운영된다.

한다. 그 협의회와 위원회는 총회가 신학기관 특별위원회의 제안에 의해 결정을 내리기까지 신학기관의 공통 관심에 협력하여 일해야 한다.

제 11 조 은급, 연금, 보험, 혜택, 지원과 구조 프로그램

11.1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 사이에 연합의 완결에 이어, 미국 남장로교의 연금과 구조 이사회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은급이사회는 그들의 책임이 11.3에 마련된 법인체에 의해 책임을 맡기까지는 분리된 법인체로서 그들의 정관하에서 기능을 계속해야 한다. 분리된 조직체로서 이 법인체들이 계속 존재하는 동안, 두 교단의 재연합시 구성된 대로 이사회 회원권은 재연합한 교회의 총회가 어떤 공석이 발생시 새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동결되어야 한다. 재연합시 계약적 책임의 완수나 다른 절차에 있어서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11.2 두 교단의 재연합을 위한 두 총회의 최종 투표에 이어, 미국 남장로교의 연금과 구조 이사회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연금이사회는 가능한 한 신속히 재연합한 교회의 총회에 아래 사항을 개발하고 제안해야 한다 :

a.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은급과 혜택 계획과 지원과 구조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이 통합된 계획과 프로그램 ;

b. 연금과 구조 이사회의 현 연금, 구조와 보험기금, 그리고 그런 기금을 설정해 둔 목적에 확실히 부합한 은급이사회의 현 은급, 기부금, 보조, 양로원과 장비와 특별 신탁기금의 공정한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

11.3 새로이 통합된 계획과 프로그램이 재연합한 교회의 총회에 의해 승인될 때, 그것들은 민사법 정관하에서 설립된 법적으로 책임있는 법인체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이 계획과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미국남장로교의 이전 연금과 구조 이사회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이전 연금이사회의 책임을 지는 일 외엔 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법인체의 이사회의 회원은 재연합한 교회의 총회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재연합한 교회의 총회에 의해 현존하는 기금의 공정한 적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승인에 이어, 상기 기금은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자마자 바로 위 항에서 마련된 법인체의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

11.4 새로이 통합된 계획과 프로그램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두 교단의 현존 계획과 프로그램이 개정없이 계속될 것이다. 모든 회원들은 재연합 직전에 그들이 속했던 계획에 계속 머물게 될 것이다. 단 새로이 안수받은 목사, 새 평신도 고용인과 교회나 고용 조직체 안에서 시무직의 변화가 있는 자들은 개인과 고용 기관들이 하나의 계획에 의견을 같이하여 선택한 계획하에서 필요한 지급금을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어느 계획이나 참여할 수 있을 때는 예외이다.

새로이 통합된 계획과 프로그램은 재연합한 교회의 목사나 평신도 고용인인 모든 회원들이 참여한 현 계획과 프로그램을 위한 적절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은급과 혜택 계획이 시행 중이면 그 후에는 새 회원은 아무도 전에 존재한 계획의 어느 하나에도 등록해서는 안 되고, 새 계획의 효력일자 이후 받은 봉급과 관련된 지급금은 어느 것도 이전에 존재한 어느 계획하에서 징수되어서는 안 된다.

각기 연금과 은급 기금은, 모든 법적 요구사항과 일치한 계약상 위임의 완성과 동시에 발생한 모든 자산의 최종 분배를 고려하면서, 그 회원들, 즉 활동회원과 은퇴회원, 그리고 그들의 유족들만의 독점적인 사용을 위한 보험 업무상 확실한 근거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제 12 조 에큐메니칼 관계

12.1 재연합한 교회의 총회는, 재연합한 교회가 재연합 이전 연합한 교회의 어느 하나가 관련을 맺고 있던 이 조직체들과 주도적으로 관계를 계속한다는 조건으로 그 에큐메니칼 관계를 결정해야 한다.

제 13 조 지교회 재산과 함께 퇴거하는 절차

13.1 본 조항의 규정은 미국장로교를 형성하기 위해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의 재연합에만 적용할 의도이며, 교회법과 민사법에 의해 설립된 대로 이전 교회이거나 재연합한 교회이거나 간에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원칙을 어떤 방법으로도 변경하거나 축소하거나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

13.2 연합의 완수에 이어, 어느 지교회도 총회의 허락을 제외하고는 18개월 간 퇴거되어서는 안 된다. 연합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치 않는 교인들, 제직들이나 목사들은 어느 때나 G-10.0102r, G-10.0302b(1), G-11.0103n에 설정된 대로 타교단과 개체교회와 연합할 수 있다.

13.3 연합의 완결로부터 1년 후 미국 남장로교 소속의 이전 지교회는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될 때 퇴거해도 된다 :

a. 그 교회의 당회는 다음 질문을 토의할 목적으로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즉, "미국장로교 ______ (이름)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타개혁교단에 퇴거를 요청할 것인가?" 그런 회의의 적절한 공고는 두 주일 계속 정규 교회 예배시에 강단에서 구두로 해야 하며, 첫 공고는 회의 전 적어도 10일이어야 한다. 요구되는 정족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만일 교인수가 100명이나 그 이하면 교인의 1/4 ; 또는
   만일 교인수가 100명 이상이면 25명이든지 교인의 1/10이든지, 어느 것이나 더 많은 편.

b. 관할권의 노회는 공동의회시 그 지교회와 만나도록 특별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c. 어떤 목적을 위해 어느 유형의 투표도 그 회의시 해서는 안 된다.

d. 당회는 퇴거의 고려를 위해 소집된 공동의회 일자부터 6개월 이상, 그리고 12개월을 넘지 않고 개최할 특별 공동의회를 소집한다.

e. 그런 회의의 적절한 공고는 회의 전 적어도 30일 전에 교회의 전 교인에게 우송해야 하며, 계속해서 두 주일 정규 교회예배시에 강단에서 구두로 해야 하며, 첫 번째 공고는 회의 전 적어도 10일 전이어야 한다. 노회 위원회는 그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발언하는 특권을 갖는다.
   회의 소집 양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미국장로교__________(이름)은 _________에서 19 ___년 ___월 ___일 ___시(오전 또는 오후)에 특별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타개혁교단으로 퇴거할 것인가 퇴거하지 않을 것인가를 고려하고 결정한다. 본 특별회의의 규정과 권위는 양교단이 한 교회, 즉 미국장로교를 이룬 재연합의 계획의 일부로써 미국 남장로교와 미국 연합장로교에 의해 설정된 합의 조항 제13조에서 찾게 된다.
   이 목적을 위한 정족수는 활동교인의 1/3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결의는 전체 교인의 참된 의사를 반영하기에 충분히 큰 그룹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

토의 후, 다음 범주에 속하는 질문에 대해 비밀투표를 할 것이다 :

미국장로교 ____________은 타개혁교단인____________에 퇴거하도록 요구할 것인가?

퇴거를 요구한다. ____________퇴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____________

만일 출석한 교인과 투표한 투표의 2/3이 퇴거를 요구하면, 이 개체교회는 본 합의조항의 제13조의 특별 규정하에서 퇴거될 것이며, 현존하는 선취특권과 저당권을 조건으로 모든 재산을 보유할 것이나, 미국장로교의 지교회로서의 그 회원권을 양도할 것이다.

f. 10일 이내에 실패한 측의 교인은 누구나 공동의회의 소집이나 진행이나 투표한 일의 규칙에 대해 관할권의 노회에 서면 통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노회는 문제되는 질문을 검토해야 하며, 만일 이의 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공동의회의 소집을 지시해야 한다.

g. 만일 이의 제기가 미국장로교로부터 퇴거하기로 투표한 교인들에 의해 접수되고 이의 제기가 노회에 의해 정당성이 인정 안 되면, 그런 교회는 미국장로교의 회원교회로 계속 존속해야 한다. 만일 이의 제기가 퇴거를 반대하는 데 투표한 교인들에 의해 접수되고 노회에 의해서 정당성이 인정 안 되면, 그런 교회는 타개혁교단에 퇴거해야 하며, 어떤 선취특권이나 저당권을 조건으로 모든 재산을 보유하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h. 노회의 관할권이 이 조항하에서 제기된 어떤 이의 제기에 있어서 최종적이 되어야 한다.

13.4 연합의 완결로부터 8년 이후에 접수된 재산을 갖고 퇴거한다는 청원은 정치형태에 있는 그런 요구를 위한 적절한 규정하에서 취급되어야 한다.

제 14 조 재연합을 완성하는 절차

14.1 재연합한 두 교회의 총회들이 공식질문 1에 찬성하는 투표에 의해서 재연합의 계획을 승인하면, 두 교단의 노회들은 다음 역년(歷年)의 2월 중에 열린 회의에서 그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공식 질문 1 :

결의 : 총회는 거기(G－1.0500)와 본 합의조항에 정의된 대로 이 결의에 첨부되거나 아니면 거기 부수적인 것으로 추정되거나, 또한 이렇게 조회함으로 결의의 일부로 병합되는 다른 모든 문서와 절차와 더불어, 미국장로교의 헌법을 구성하도록 제안된 재연합을 위한 계획하에서 미국 연합장로교의 총회와(미국 남장로교의 총회와) 완전한 조직적 연합을 승인하고 노회들에게 제안한다.

14.2 각 노회는 아래 공식질문 2에 관한 결의를 2월 말 이전 그 노회가 속한 총회의 서기에게 보고해야 한다. 투표의 보고는 총회의 서기에 의해 마련된 투표용지에 다 해야 한다. 연합 노회들은 양총회 서기에게 그들의 투표를 보고해야 한다.

공식질문 2 :

결의 : ____________노회는 거기(G-1.0500)와 본 합의조항에 정의된 대로, 이 결의에 첨부되거나 아니면 거기 부수적인 것으로 추정되거나, 또한 이렇게 조회함으로 결의의 일부로 병합되는 다른 모든 문서와 절차와 더불어, 미국장로교의 헌법을 구성하도록 제안된 재연합을 위한 계획하에서 미국 연합장로교의 총회와(미국 남장로교의 총회와) 완전한 조직적 연합에 자문하고 동의를 한다(찬성을 한다).

14.3 연합한 두 교회의 총회들은, 두 연합한 교회의 필요한 노회수에 의해 공식질문 2를 승인한 다음 공식질문 3을 승인해야 한다 :

결 의 : 총회는 거기(G-1.0500)와 본 합의조항에 정의된 대로, 이 결의에 첨부되거나 아니면 거기 부수적인 것으로 추정되거나, 또한 이렇게 조회함으로 결의의 일부로 병합되는 다른 모든 문서와 절차와 더불어, 미국장로교의 헌법을 구성하도록 제안된 재연합을 위한 계획하에서 미국 연합장로교의 총회와(미국 남장로교의 총회와) 완전한 조직적 연합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그 뒤에 각 총회의 총대들은 미국장로교의 총회로서 개회하기 위해 공동회의 장소에 회집해야 한다. 재연합하는 교회의 총회의 모든 총대는 재연합한 교회의 총회의 총대가 되며, 그 총회는 재연합하는 양 총회에 의해 적절히 회의 일정을 정한 모든 사무와 함께 재연합의 계획에 대한 정치형태의 요구사항에 따라 총회에 나오는 사무를 결정할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14.4 재연합을 위한 계획의 합의조항의 4.1에 설명된 대로 재연합한 교회의 총회의 임시 서기인 재연합하는 총회의 두 서기는 필요한 총회위원들의 명칭과 회원권, 그리고 총회 앞에 놓인 적절한 사무의 이송관계를 재연합한 교회의 총회에 제안하는 계획을 준비하며 수립해야 한다.

14.5 총회의 첫 활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만찬을 거행하기 위해 개회하는 일이어야 한다. 총회장의 선출은 성만찬 집행에 이어 총회의 첫회의 의사 일정에 나오는 첫 안건의 하나여야 한다.

에큐메니칼 선언 지침서를 접수하다(참조 G-15.0302c) :

공식 본문
합의 약정서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
미국장로교,
미국개혁교회,
그리스도연합교회
간에
완전 교제에 참여와
공동소명의 근거에 입각하여 맺음

제209차 총회 (1997년)에서 승인되었고
제210차 총회 (1998년)에서 선포되었다.

공식 본문
합의 약정서

합의 약정서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
미국장로교,
미국개혁교회,
그리스도연합교회
간에
완전 교제에 참여와
공동소명의 근거에 입각하여 맺음

서 문

1997년에 개혁 전통을 가진 네 교단들이 역사적 중요성을 지닌 에큐메니칼 제안을 결의하기로 했다. 교회가 현대 사회에서 일치의 복음을 선포할 긴급성이 점증함에 비추어 과거 32년 이상 발전해 온 교리적 일치를 반영할 시기에 이른 것이다. 공동으로 확인한 교리적 일치에 비추어, 교회의 일치를 향한 가시적 증거를 하려는 열망과 하나님의 선교에 다함께 참여케 하는 부름을 들으면서 이같이 제안한다 :

>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U.S.A.), 미국개혁교회(Reformed Church in America)와 그리스도연합회(United Church of Christ)는 공동소명(*Common Calling*)과 본 *합의 약정서*(*A Formula of Agreement*)의 채택에 근거하여 그들이 피차 완전 교제에 이르게 됨을 선언한다. 그리하여 각 교단은 다른 세 교파들과의 완전 교제에 참여하거나 확인하기에 이른다.

"완전 교제"(full communion)란 용어는 여기서 네 교단이 아래와 같은 일을 한다는 특별한 의미로 이해된다 :

- 복음이 적절히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례전이 집행되는 교단들로서 피차 인정한다 ;
-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생활과 신앙에 부적절함으로써 한 편이나 다른 편에 의한 어떤 역사적 정죄도 철회한다 ;
- 서로의 세례를 계속 인정하고 교인들 간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허가하고 격려한다 ;
- 서로의 다양한 목회사역을 인정하고 말씀과 성례전의 안수받은 목사들의 질서 정연한 교환을 위

한 규정을 만든다 ;

- 교회들의 현존한 구조 내에서 협의와 의사결정의 적절한 경로를 수립한다 ;
- 교회들로 신앙의 공동이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신학적 대화의 지속적 절차를 수립하도록 하며 전도와 증거와 봉사에 있어서 공동 표현을 진작하도록 한다 ;
- 교회들이 복음 아래서 함께 생활함으로써 확인과 권고의 원칙으로 신임 관계의 근거가 되게 하며 거기에서 타인을 위한 존경과 사랑이 자랄 기회를 갖도록 서약한다.

이 문서는 *공동소명 : 현대 북미개혁 교회들의 증언*에서 명확히 표현된 교리적 합의를 추정하며 그 문서와 제휴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합의 약정서*의 목적은 완전 교제에 참여하는 기본 원칙으로써 확인과 권고의 상보성(相補性), 그리고 *공동소명*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런 결정의 함축성을 밝히는 데 있다.

공동소명은, 신학대담을 위한 루터교회-개혁교회 위원회(1998-1992)의 보고인데, 1962년에 시작해서 과정이 계속되었다.[1] 그 보고서 안에는 "미국복음주의 루터교회, 미국장로교, 미국개혁교회와 그리스도연합교회는 그들이 서로 완전한 교제에 있다고 선언한 만장일치의 제안이" 들어 있었다(*공동소명*, pp. 66-77). 거기에서 완전 교제는 신학적 대화를 통한 연구와 더불어 발전되어 수행되어야 할 것이란 일련의 7개 제안들이 뒤따랐다(*공동소명*, p. 67). 그 결과로 완전 교제를 위한 요청을 각각 네 교단에 제안했었다. 완전 교제의 선언에 관한 투표가 1977년에 각기 교단 총회에서 행해질 것이다.

상호 확인과 권고
(Mutual Affirmation and Admonition)

제1차 루터교회-개혁교회 대화에서 일찍이 확인된 개념이 신학적 대담의 이해에 주축이 되었다. 그 대화의 참석자들은 "진리의 가능한 왜곡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교리 자체가 상충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보완적인, 관련교리들에 나오는 다양한 강조점에 귀결했음"을 발견했다(*Marburg Revisited*,서문). 신학적 대담의 참석자들은 이런 통찰력의 함축성을 재발견했고 고려했으며, 그것을 네 교단간 완전 교제를 위한 제안의 기초로 인식했다. 상호 확인과 상호 권고의 상보성이란 이런 비약적 개념은 이제까지 개혁교회의 다양한 증언들을 조화시켜 오지 못했던 개혁교회의 전통을 교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된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에 관련시키는 새로운 방법들을 지시하고 있다.

---

1) 북미 루터교회-개혁교회 대화의 역사의 개요를 위해서는 *공동소명*, pp. 10-11을 보라. 대화의 첫 번째 모임의 결과(1962-1966)는 *Marburg Revisited*(Augsburg, 1966)에 출판되었다. 대화의 두 번째 모임은 1972-1974년에 있었다. 그것의 간략한 보고가 *An Invitation to Action*(Fortress, 1983), pp. 54-60에 출판되었다. 세 번째 모임은 1981년에 시작해서 1983년에 마쳤고, *An Invitation to Action*이란 책자에 출판되었다. 세 번째 대화에 이어 "신학적 대담"의 네 번째 모임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열렸고, *공동소명 : 현대 북미 개혁교회들의 증언*(Augsburg, 1993)에 보고되었다. 더 나아가 루터교회-개혁교회 대화에 참석한 북미 참석자들은 *An Invitation to Action*, pp. 61-73에 출판된 1973년 유럽에서 개혁교회들 사이에 있었던 Concord 선언문인 *Leuenberg Agreement*와 또한 루터교 세계연합 국제공동위원회와 세계 개혁교회연맹(1985-1988)의 보고서인 *Toward Church Fellowship*(LWF와 WARC, 1989)에서 발견되는 신학적 작업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개념은 루터교회-개혁교회 관계의 세 가지 본질적 국면을 인정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 1) 각 교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약성서의 전통에 그 삶의 근거를 둔다 ; 2) 이 교회들의 핵심 전통은 하나며, 거룩한, 세계적 그리고 사도적 교회에 함께 속한다 ; 3) 이 교회들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응수(give-and-take)는 얼버무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동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복음에 대한 다양한 증거들로써"(*공동소명*, p. 66) 이해되어야 할 근본적 상호 비평정신에 귀착했다. 하나의 실용적 인식이 출현했었고, 그것이 새로운 빛 안에서 16세기 논쟁에 현대적 통찰력을 던져 주었다.

우리의 공동 고백 안에 있는 신학적 다양성은 복음에의 완전하고 적절한 증언(상호확인)에 필요한 상보성(相補性)과 모든 신학적 접근은 복음에의 부분적이고 불완전 증언(상호권고)이라는 교정적 각성을 제공한다(공동소명, p. 66).

> "상호 확인과 권고"의 실용적 원리는 합의의 확인을 고려하는 한편, 전적인 합의가 없는 분야에서 상호 개발과 교정의 과정을 동시에 고려한다. 각 전통은 상대에게 그것의 "교정적 증언"을 초래하는 한편, 그들이 나누고 추구하는 신앙의 일치를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한 계속적인 신학적 반성과 대화를 증진시킨다. "상호 확인과 권고"의 원리는 상존한 차이점들을 공동으로 고백한 하나의 복음에의 다양한 증언들로서 간주한다. 사고의 전통적 양태가 일치의 근거를 차이점들의 선언문 뒤에 감추어 버린 반면, 새 개념은, 상존한 차이점들이 화해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음을 인정해야 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적 일치가 바로 결정적인 사실임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상존한 차이점들이 교회-분열의 요소가 아니다.

상호 확인과 권고의 개념은 중요한 결과를 설명해 주는데 이 두 가지가 네 교단이 서로 갖는 관계를 알려 준다. 상보성의 원리와 그것이 수반하는 해석의 양태는 다음의 사실을 분명히 해준다. 즉, 완전한 교회의 교제에 참여함에 있어서 이 교단들이 :

- 그들 교단들의 전통적인 고백적이고 교회적 성격에 타협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 동역 교단들의 고백적이며 교회적인 성격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완전히 인정한다 ;
- 중요한 차이점들이 완전 교제의 관계 안에서 정직하게 표명하도록 의도한다 ;
- 명백히 표명된 차이점들이 각기 동역 교단 안에서, 그리고 완전 교제의 관계 안에서 교회적으로 상호 완전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고려한다.

근본적 교리적 합의
(A Fundamental Doctrinal Consensus)

신학적 대담(conversation)에 참석한 회원들은 완전교제를 위한 필수적 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루터교의 고백적 언어를 빌렸다 : "교회의 참 일치를 위해서는 복음의 교훈과 성례전의 집례에 관해 일치하는 일로 충분하다"(Satis est consentire) (*Ausburg Confession*, 7장). 완전 교제를 위한 최근 제안의 기초인 신학적 일치는 의인화, 성례전, 목회사역,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포함한다. 더 이상 "교회-분열"로 보여서는 안 될 지속적 다양성의 분야는 신학적 대담에 의해 이런 제

목 하에서 취급되었다 : 정죄, 그리스도의 현존, 그리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의인화에 관하여 제1차 대화(dialogue)의 참석자들은 "각기 전통은 죄의 용서와 생명의 갱신을 포함한 복음의 전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었다"는 점에 동의했다(*Marburg Revisited*, p. 152). 제3차 대화의 회원들은 그들의 의인화에 관한 공동 선언문에서 "루터교와 개혁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에 관한 복음에… 뿌리 내렸고, 그것에 의해 살며, 그것을 선언하고 고백한다"고 말했다(*An Invitation to Action*, p. 9). 그들은 "양… 전통들이 믿음만을 통해 은혜에 의한 의인화의 언어로 이 복음을 고백한다"고 계속 말해 왔으며, "의인화에 관련하여 우리를 갈라놓는 본질적 문제는 있지 않다"고 결론지었다(*An Invitation to Action*, pp. 9-10).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는 세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에 포로가 된 인류를 그의 구원의 사귐에 영접하여 그들이 새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신앙의 새 생명, 매일의 회개, 그리고 제자직에로의 부름으로 경험된다(참조 *Leuenberg Agreement*, Ⅲ. 2.a). 주의 만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중심 교리는 매 대화와 신학적 대담에서 주의를 끌었다. *Marburg Revisited*에 나오는 개요 선언문은 합의점을 반영하면서 이렇게 주장한다 :

>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교회와 루터교회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의 빛에 비추어 주의 만찬을 이해했을 때, 복음적 의도를 보여 주었다. 이런 공동의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용어와 개념이 채용되어서… 이것들이 상호 오해와 오보에 이르게 됐다. 적절히 해석되었을 때, 상이한 용어와 개념은 모순적이기보다는 차라리 상호 보충적이었다(*Marburg Revisited*, pp.103-4).

제3차 대화는 루터교회나 개혁교회 어느 편도 성찬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재하며 받아들여지는지 설명하지 못하지만, 양교회는 "그리스도가 그의 상에 주인이며… 그리스도 자신이 성찬에서 완전히 임재하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밑줄 부분은 강조] (*An Invitation to Action*, p. 14). 이런 신학적 합의가 신학적 대담에 의해 이루어진 작업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목회사역의 주제는 제3차 대화에서만 고려되었다.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를 갈라야 할 본질적 사유가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그 대회는 이렇게 확인했다 :

> 우리 전통에 있어서 목회사역은 구원에 충분한 분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에게 향한다.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에 중심을 둘 때, 목회사역은 그리스도가 주는 유익이 믿음, 은혜와 성서를 통해서만 알려진다는 확인에 근거한다.(*An Invitation of Action*. p. 24).

그 대화는 모든 수세자들로 그리스도의 종의 사역에 참여해야 할 책임에 대해 계속 말해 오고 있으며, "말씀의 전파와 성례전의 집행을 통해 은혜를 중재할 도구로써 안수받은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지적했고, "말씀이 진실하게 전파되고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확인하는 일"을 적절히 감독할 필요성을 주장했었다(*An Invitation to Action*, pp. 26, 28, 31).

제1차 대화는 교회와 세상의 주제를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고려했었다. 그 대화는 차이점들을 검토했고, 교정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교회가 현재 처한 근본적으로 변화된 세계를 지적했었다. "개혁자들의 신학에 나타난 기독교 윤리를 위한 공동의 복음적 근거가 있음에" 동의하면서(*Marburg Revisited*, p. 177), 그 대화는 교회와 세상, 율법과 복음, "두 왕국,"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의 관계에 관한 칼빈과 루터의 상이한 "강조점"을 계속 되풀이해서 언급했다. 그 대화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 관계의 상이한 공식화는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의 오류에, 다른 한편으로는 무율법주의의 오류에 대항하는 공동 관심에 의해 자극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독교인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역할에 관한 차이점들이 상존할지라도, 그 대화는 "이것을 분열적인 문제로 인정하지 않았다"(*Marburg Revisited*, p. 177). 더 나아가 20세기의 급격히 변화된 세계에 비추어 볼 때, 현대에 루터교회-개혁교회의 증언을 위한 결정적 요인으로 삼고자, 16세기에 취해진 입장과 선택을 변호하거나 교정하는 일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신학적 대담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의 선언"에 관한 항목에서, 개혁교회와 루터교회의 "강조점들"을 목회적 봉사와 교회의 증언에 도전 자세를 취하는 "상호보완적이며 자극적인" 차이점들로 확인했었다. "'의인화와 정의'에 관해 진행 중인 토론은 근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계기가 된다. 우리의 전통은 하나님의 은혜스런 약속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위해 서로를 필요로 한다"(*A Common Calling*, p. 61).

상이한 강조점들
(Differing Emphases)

정 죄(The Condemnations) :

종교개혁 시대의 정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보호하려는 의도였다 ; 그러므로 그것들은 심각하게 취급되었다. 그렇지만 현대교회의 상황 때문에, 그런 정죄가 교회를 계속해서 분열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공동소명*의 상호확인과 상호권고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우위와 성례전의 은사에 대한 공동이해를 갖고서 상이한 강조점들을 허용하는 한편, 정죄언어를 극복할 방편을 제공한다. *공동소명*은 *Leuenberg Agreement*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교리적 합의의 결과로서 "고백문서에서 표현된 정죄는 서로 찬동하는 교회들의 현대적 교리의 입장에 더 이상 적용하지 못한다."고 선언한다(*Leuenberg Agreement*, Ⅳ. 31. b.). 신학적 대담은 이렇게 선언했다 :

> 우리는 오늘의 과제가 분리와 배제의 관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들의 정직한 관심을 듣도록 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의 에큐메니칼 공동체의 정체성에 합일하도록 허용할 공동언어를 찾는 데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A Common Calling*, p. 40).

정죄의 중요한 초점은 주의 만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의 문제였다. 루터교인과 개혁교인들은 그들의 성례전의 공동이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확신한다 ; 그러므로 주의 만찬에 관련된 교리의 어떤 견해에 관해 그들 교회들 가운데 합의점을 갖도록 강조한다. 그 점에 있어서 루터교인과 개혁교인들은 대담에서 제시된 문제들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동의한다 ;

주의 만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그의 몸과 피 안에서 자신을 나누어 주신다. 그리하여 그는 떡과 포도주를 받은 모두에게 무제한적으로 자신을 주신다 ; 신앙인은 구원을 위해 주의 성찬으로 받고 불신자는 심판을 위한 것으로 받는다(*Leuenberg Agreement*, Ⅲ. 1. 18).

우리는 그의 몸과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먹고 마시는 행위로부터 분리할 수 없다. 이런 행위와 분리하여 추상적으로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의 방식에 관심을 두는 일은 주의 만찬의 의미를 애매하게 하는 위험에 이른다(*Leuenberg Agreement*, Ⅲ. 1. 19).

그리스도의 임재(The Presence of Christ) :

제3차 대화는 이미 달성된 합의에 근거한 성례전의 신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도록 촉구했다 :

우리 개혁교인과 루터교인들이 주의 만찬에 관하여 공동으로 이미 견지하는 바를 인지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교회들이 성례전의 신비의 완전함과 풍부함을 더욱 깊게 인식하는 데까지 계속 자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한다(*An Invitation to Action*, p. 14).

신학적 대담의 회원들은 16세기로부터 내려오는 고백적 진술들(formulations)을 "모든 통찰력, 확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관심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공동언어"와 조화시키는 일이 가능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A Common Calling*, p. 49). 그렇지만 이 신학적 대담은 이런 지속적 차이점들을 주의 만찬에 관련된 용인할 만한 다양성으로 인식했다. 제3차 대화의 전통을 이어서, 그들은, 이런 차이점들이 교회-분열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임을 확인하면서, 그들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신앙과는 구별된 상이한 관점과 확신을 존중했다. 양교회는 "주의 만찬의 문제에 있어서 종교개혁 전통이 같은 뿌리에서 나오고 같은 목적을 직시한다 : 용서, 능력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 자신이 임재하시는 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다"고 다 함께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루터교인과 개혁교인들은 이렇게 동의한다 :

주의 만찬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와 함께 그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그의 몸과 피 안에서 자신을 나누어 주신다. 그는 그것에 의해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신앙의 새 생명을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는 우리로 그의 몸의 지체임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신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공식 원문은 "*Er starkt uns zum Dienst an den Menschen*"이라 읽으며, "모든 인류에게"라고 번역할 수 있다)(*Leuenberg Agreement*, Ⅱ. 2, 15).

우리가 주의 만찬을 축하할 때,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과 자신을 화해시키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파한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전파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영광 중에 그의 장차 오심을 기다린다(*Leuenberg Agreement*, Ⅱ. 2. 16).

주의 성찬에서 발견되는 상보성과 신학적 합의와 함께, 이들 개혁교회들의 전통을 대표하는 성례전적 집례를 위한 함축적 의미가 또한 있다고 생각된다.

개혁교회로서, 우리는 성찬식을 각기 집례하는 데 많은 중요한 특징들을 나누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열한 지 수세기에 걸쳐, 그것의 집례에 있어서 특징적 차이점들을 발전시켰고, 이런 차이점들이 성찬을 서로 축하하는 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차이점들은 여러 방면에서 식별되는데, 예를 들면, 예식의 스타일과 예식의 세목에 있어서, 우리의 집례에 대한 언어적 해석에 있어서, 주의 만찬의 우리 경험 가운데 포함된 감정적 패턴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와 그 교인 개개인의 삶과 선교에 대해 주의 성찬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함축적 의미에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차이점들이 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수용할 만한 다양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확인한다. 우리 양교회는, 그것들 안에서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의미를 발견하면서, 우리의 다양한 성찬예식 전통의 바른 이해 가운데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양자는 주의 성찬의 신비에 대한 공동 경험과 표현을 더욱 심오하게 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An Invitation to Action*, pp. 16-17).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God' s Will to Save) :

루터교회와 개혁교회는 그들의 신앙과 생명의 중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적 능력을 주장한다. 그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지 인간의 협력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런 공동 신념에도 불구하고 예정 교리가 두 전통을 분리하는 문제의 하나였다. 루터교회와 개혁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에 대한 그들의 신념대로 사는 방법에 있어서 상이한 강조점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무조건적 의지가 모든 문화적 낙관주의나 비관주의를 거슬려 전파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A common Calling*, p. 54). 주목할 일은 "과거의 논쟁을 승화시키고 루터교회와 개혁교회의 공통 예정 신앙에 대해 증언하는 공동언어가 신앙적 저서와 우리 교회들 안에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선언문 속에 벌써 나타났다"는 것이다(*A Common Calling*, p. 55). 교리적 획일성을 주장하기보다는, 두 전통들은 그것들이 논의를 통해 발생했고, 그들의 신학적이며 교회적인 현재의 정체성이 이런 논쟁들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려고 한다. 교회-분열을 시켰던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근본적인 교리적 합의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향해 나가는 공동 여정을 나누었던 이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분열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에 대한 공동 증언의 바탕을 박탈한다면, 더 큰 비극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완전 교제에의 의무적이고 효과적인 결단 (The Binding and Effective Commitment to Full Communion)

*공동소명*에 근거한 본 *합의 약정서*를 교회의 최고 수준에서 공식 채용에 있어서, 두 교회들은 그들이 상호 강력한 결단의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들은 피차 서약하고 약속을 하고 있다. 두 교회는 피차에게 하는 완전 교제가 심각한 의도, 인식과 헌신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형식적 행동 이상의 것에 자신들을 매어 두고 있다 ; 그들은 모두를 위한 은사와 변화를 갖고서 관계에 들어서고 있다.

두 교회들은 이런 정해진 의도가 그들의 자아이해, 그들의 생활과 활동의 방법, 그들의 구조, 그리고 그들의 일반적 교회의 기풍에까지도 도전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 두 교회들은 그들의 새로운 관계의 핵심에 있는 완전교제에 참여코자 하는 그들의 역량에 대한 법적 관심을 스스로 지키려고 결단한다.

두 교회들은 삼위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그들이 *공동소명*에 완전히 결단하고, 신앙과 교리에 있어서 위에서 기술한 상호 확인을 지킬 것을 서약하면서, 공동 의사 결정과 상호권고와 교정을 행사하고 수용하는 일을 남아서 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선언한다. *합의 약정서*는 "가시적 일치의 목적으로부터 또는 교회의 일치의 관심과 세계의 고투에 참여하려는 관심을 결합시켜 주는 단일 에큐메니칼 운동으로부터 돌아설 수 없다"는 에큐메니칼적 확신에 응답하고 있다("보다 완전한 코이노니아에 이르는 과정 : 신앙과 직제에 관한 제5차 세계대회의 메시지", 1983). 그리고 성 바울이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키듯,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고 그는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살전 5 : 24).[2]

---

2)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 :**

이 교단들[미국장로교, 미국개혁교회, 그리스도연합교회]과의 완전 교제에 참여하기 위해, 이 교단의 최고 입법권위기관인 1997년 교단 총회의 2/3의 찬성표가 요구될 것이다. 또 이어서 적절한 방식으로, 헌법과 규약의 어떤 변경은 완전한 교제에 참여하기로 총회에 의해 행한 이 의무적 결의와 일치하도록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ELCA)의 헌법과 규약은 이 교단이 비루터교회들과의 완전 교제에 참여하는 일에 대해 특별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가장 근접한 유추(analogy)는, 사항의 심각성에서 볼 때, ELCA의 헌법이나 규약의 개정에 있다고 하겠다. 그 헌법은 그런 개정의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22장). 두 가지 경우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의 2/3 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장로교회 :

미국장로교 총회의 찬성 투표에 근거하여, 완전 교제의 선포는 장로교 *규례서*와 본 *합의 약정서*에 따라서 교회적으로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총회의 다수투표, 노회들 안에서의 다수투표, 그리고 노회들의 다수투표를 의미한다.

미국장로교는 헌법, 정치체제, 직원, 재정과 행정 규칙을 가진 기구로서 그 삶에 질서를 준다. 이것들은 선교의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상이한 질서들이 복음에 봉사했으며 아무것도 배타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장로교 정치는 목회사역을 위한 전체 회원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교단 안에 있는 모든 지교회들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교회적 또는 세속적 권력 야심에 의한 모든 착취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교회의 질서는 그것을 화해 선교의 더욱 효과적인 도구로 삼아야 하므로 그런 개혁에 개방적이어야 한다("1967년 신앙고백," *신앙고백서*, p. 40).

미국장로교는 장로들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인 노회원들(Presbyters)로 구성된 대표 기구에 의해 다스려진다. 이 치리회들을 당회, 노회, 대회와 총회라고 부른다(*규례서*, G-9.0100).

본 교단의 모든 치리회들은 교회의 본질에 의해 연합되었고 이 헌법에 마련된 대로 책임, 권리와 권한을 서로 나눈다. 치리회들은 분리되고, 독립적이지만 그들 중 하나의 결의는 해당 치리회를 통해서 수행된 전체 교회의 결의라는 상호 관련성을 갖고 있다. 각 치리회의 관할권은 각 치리회의 결의가 차상급 치리회에 의해 검토받아야 한다는 헌법의 명백한 조항에 의해 제한받는다(G-9.0103).

미국개혁교회 :

미국개혁교회(RCA)의 General Synod에 의한 찬성 투표에 근거하여, 완전 교제의 선포는 전체 교회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될 것이며, 기독교 일치 전권위원회는 *교회 규례서*에서 부여한 책임에 따라서, *합의 약정서*에 기술된 대로 완전 교제의 의도에 대한 효력발생을 주도하고 감독해 나갈 것이다.

기독교 일치전권위원회는 1997년 완전 교제를 위한 앞으로 있을 투표에 대해 General Synod와 교회를 자문해 왔다. 그 전권위원회는 미국개혁교회가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 미국장로교, 그리고 그리스도연합교회와 완전 교제에 참여함을 선언하는

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합의 약정서*와 일부 그리고 모든 관련 제안들을 General Synod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다.

RCA의 헌법은 에큐메니칼 관계 책임을 General Synod에게 주고 있다(*교회 규례서*, 1장, IV부, 2조, 5항). 에큐메니칼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 General Synod는 기독교 일치 전권위원회에게 타기독교 교단의 최고 치리회나 총회와의 통신과 협력 관계에 관련한 결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상관된 모든 사안들에 관한" 교단간의 대화에 참여하는 결정을 주도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

RCA의 헌법은 "현재 진행하는 에큐메니칼 발전과정을 교회에게 알리며, 교회의 에큐메니칼 참여와 관계에 관련하여 교회의 자문을" 위한 책임을 기독교 일치 전권위원회에 주고 있다(*교회 규례서*, 3장, 1부, 5조, 3항).

General Synod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아서, 기독교 일치 전권위원회는 1962년부터 현재까지 RCA에게 대화와 대담 동역자들을 임명했었다. 그 위원회는 모든 보고를 받았고, 결정이 필요한 곳에서는 투표와 교회에서의 시행을 위해 General Synod에 제안(들)을 제시했었다.

그리스도연합교회 :

그리스도연합교회(UCC)는 1997년 General Synod의 투표에 의해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 미국장로교 그리고 미국개혁교회와의 완전 교제에 참여하는 제안에 결의를 할 것이다. 이 투표는 General Synod에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그리스도연합교회의 헌장의 14, 15, 16 문항에 요약해 놓은 언약정치(covenantal polity)에 일치하여 시행하도록 지방교회(Local Church), 협회(Associations)와 대회(Conferences)가 수락한다.

UCC는 "지방교회, 협회, 대회와 General Synod로 구성"되었다. 그리스도연합교회의 헌법과 규약은 그리스도연합교회의 주 행정관인 총회장과 더불어 General Synod에게 에큐메니칼 삶을 위한 책임을 맡겨 놓고 있다. 그 헌법의 VII조는 어떤 권한을 General Synod에 부여하고 있다. 이것들 가운데 포함된 권한은 :

- 에큐메니칼 조직들, 세계 고백 단체들, 그리고 타초교파 기구들과 갖는 UCC의 관계를 결정한다.
- 타교단들과의 대화를 갖도록 격려하며 적절할 때 공식 통합을 지향하면서 그들과의 교섭에 대한 권한을 갖고 지도한다 (VII, 45i).

UCC의 정치에 있어서, General Synod의 권한은 헌법의 구절을 인용하면, "대회나 협회나 지방교회의 자치권을 결코 침해" 할 수 없다. 지방교회의 자치권은 "고유하며 그것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다(VII, 15). 그렇지만 이 자치권은 "상호 기독교인의 관심의 정황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IV, 14). 자치권의 이런 기독론적이고 계약적 이해는 지방교회 자치권의 토의 바로 앞뒤에 이어 나오는 헌법 문항에 분명히 표현되었다 :

> UCC의 지방교회들이, 사귐 안에서, 지방교회와 그 사역과 그 확장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갖고 있듯이 UCC가, 사귐 안에서, 그것의 지방교회들의 복지와 요구와 열망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갖고 있다. 기독교인의 상호 관심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함에 있어서, 한 지방교회나 많은 지방교회들이 기독교인의 공동경험과 책임을 함께 나눈다(IV, 14).
>
> General Synod이나 대회나 협회에 의한 결정이나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결의나 조언은 모든 지방교회에 의해 최고로 고려되어야 한다(IV, 16).

에큐메니컬 일치
성명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가시적 표시

표준 에큐메니컬 성명서
제211차 GENERAL ASSEMBLY (1999) 승인
제212차 GENERAL ASSEMBLY (2000) 공표
(G-15.0302c)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가시적 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시작이란 참여하는 교회들이 다음과 같은 가시적 표시들을 통해 서로 각 교회간의 관계를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교회임을 확실한 표현을 사용한 공동 인정.*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참여하는 교회들간에 다음의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과 성신으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구세주로서 그리고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약

—성전을 증거하고, 성전에 대해 증거되며, 신앙의 최고 표준서이며 규칙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성스러운 성경에의 충실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2가지의 성식인, 세례와 성만찬에의 충실한 참여에 대한 공약;

—하나님의 복음 전도 및 예언자적인 선교 및 하나님의 정의 및 평화의 통치에 대한 공약;

—성령이 교회들에 명백하게 주어져 왔다는 목사에 대한 감사한 수락.

2. *한 세례를 이룬 회원들의 공동 인정.* 이것은 또한 모든 신자들이 공통의 신권을 공유하고 안수될 이러한 회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목사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

3. *안수 받은 목사에 대한 공동 인정.*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참여하는 교회들이 서로의 안수 받은 목사들이 하나님 은총의 도구로써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으며, 이러한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의 충실함을 구하며, 성신의 내적인 부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육신,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위임또한 지닌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그러한 인정은 2007까지는 목사의 공동 조화를 실현하기위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써 보여진다 ('교회연합 협의회 제18차 총회 보고서'의 제5장에서의 규정을 따름).

4. *사도 신경 및 니케아 신조에서 표현된 경전 및 성전 사도의 신앙을 각 교회가 확약하고 각 교회가 그 삶 및 선교에서 사도적인 신앙에 증거하도록 추구한다는 공동 인정.*

5. *계획된 조화를 이룬 성만찬 의식에 대한 조항.* 이것은 성례전이 교회의 삶의 중심부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이다. 성찬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징표이다.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한 탁자에 그들의 다양성을 지닌 체 모일 때, 그들의 성찬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안에서 서로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증거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성찬을 함께 취할 수 없거나, 취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들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과 인간의 깨어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6. *정규적으로 계획된 기준에 입각한 그리스도의 선교에 함께함*, 특히 인종적 차별에 대항하는 선교에 참가. 교회는 예배, 복음의 선포, 복음 전도, 교육, 및 하나님의 정의, 평화 및 사랑을 구체화하는 행동을 통한 그리스도의 선교에 관여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의 회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약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여 감정과 마음이 바뀌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하는 교회들은 이 사회 및 교회자체 내에서의 생활을 왜곡시킨 백인 특권주의 체제에 도전함으로써 '인종적 차별 폐지'에 대한 특별하고 강조된 부름 ('교회연합 협의회 제18차 총회 보고서'의, 제6장에 그 이유를 약술함)을 또한 인정하는 것이다.

7. *전체와의 통일을 증진시키고 인종, 나이, 성별, 불구의 형태, 성적인 기원, 및 계층과 같은 일들에 근거한 교회 및 사회에서의 진보를 처지게 하고 제외시키는 모든 것에 반대하기위한 계획된 공약.*

8. *신학적인 회담의 전진 과정.* 그러한 회담은 본질적으로 다음의 것들을 하기위해

시도한다.

(1) 인종적 차별에 대항하는 훨씬 더 강제적인 입장을 이룩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인종적 차별주의에 대한 이해력을 깊게 하기위해,

(2)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사도적인 신앙에의 공유 증거를 강화하도록 그 회원들에 의해 동일시된 신학적 문제들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의 회원들에 의한 안수받은 목사에 대한 공동 조화를 위한 기초를 수립하기위해.

9. *적절한 책임 기구와 협의 및 의사 결정을 위한 적절한 방법들.* 몇 조항이 새로운 관계에 대한 표시에 영향을 끼치고 이 교회들이 이룬 공약에 대해 교회들이 공동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기위해 만들어진 반면,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개발된 기구들은 탄력적이어야 하고 그 지방의 환경에 순응해야 한다 (“교회연합 협의회 제18차 총회 보고서”의 제9장을 따름). 그와 같은 전진 기구들 외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회원들은 긴급한 문제들을 고찰하고 공통관심사에 관해 함께 증거를 나누기 위해 이따금씩 모이길 원할 수 도 있다.

이러한 가시적 표시들을 통해 표현된 관계는 조직적인 통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공동체가 된다고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교회들 사이의 다양성에 있어서의 조화를 말한다. 창립하는 순간부터, 이들 교회의 생활이 전에 결코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눈에 띄게 서로 얽혀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창립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의 관계는 정답게 공존하고 협의하는 하나가 아닌 서로서로를 결합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구체화하는 구속력 있는 공동체의 하나가 될 것이다.

부록 1

공식 문서

연합교회 협의회
제18차 총회 보고서

I. 소 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도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화목이라.
(고린도 후서 5:17-20)

나는 결코 피곤치 않네,
나는 출발한 곳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다네.

그 어느 누구도 이 길이 쉬우리라 얘기해 주지 않았네,
주님이 나를 버려 두기 위해 이렇게까지 멀리 데려왔으리라 믿지 않네.
("나는 결코 피곤치 않네," 아프리카계 미국인 복음성가, 커티스 브르웰 곡, 1978, 세가스 음악 회사 발행, 허가를 받고 사용함)

1999년 1월 20-24 세인트 루이스에 모인,협의회의 제18차 총회 동안, 교회연합 협의회의 회원 교회들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눈에 띈 조화를 향한 길이 항상 확실하지 않았거나, 우리의 여정의 속도에 항상 끈기 있어 오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부적당한 도전들 및 놓쳤던 기회들에 대한 무거운 짐들을 떠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외로운 여정을 걷지 않았고, 우리가 함께 여행함에 따라서, 서로간의 사랑이 자라왔음을 공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신감을 가지고 이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히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에베소서 4:6). 우리가 명백히 하도록 추구하는 조화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증거를 나누는 것을 추구하고 서로에게 공평하게 대할 때, 우리가 받은 이 선물에 대한 응답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화를 주셨지만, 우리모두는 우리 사회의 인종적인 불공평에 참여한 결과로써 우리 자신들을 갈라지도록 허가해왔습니다. 우리는 백인 특권을 영속시키는 사회적인 체제 하에 있는 대다수의 우리의 교회들이 이에 동조했음을 회개하고, 또한 이것은 우리 서로가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에게 영광도 돌리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몇 가지의 신학적인 차이들을 교회-분리의 논점이 되도록 허용해왔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본 표준서에 있는 권장 사항들이 우리의 복음 지시에 충실함을 믿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더 깊은 인정과 조화를 향해 일할 때 서로에 대한 지대한 인내와 관용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최상의 이익들을 제쳐둠으로써 하나님과 서로를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고통에 싸인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능력과 정의를 베풀 우리의 책임을 방해하는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자신처럼 서로서로를 존경하고, 우리 자신들에 앞서 하나님을 경배할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인용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복음 성가의 가사는 우리가 불확실하며 미지의 길을 여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는 힘에 대한 심연한 증언을 주고 있습니다.교회 연합 협의회에서 동역자인 우리들은 불확실성, 망설임, 그리고 심지어 절망에 관해서도 아주 많이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가 고난중에 있을 때 우리에 대한 한없는 사랑을 소유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II. 배 경

1988년의 교회연합 협의회(교회연합 협의회)의 제17차 총회는 다음의 문서를 승인했다. *성약 관계내의 교회들*: 교회들의 성약 관계의 구성을 위한 계획으로써 하나되는 그리스도의 교회, 및 다음의 것들을 하기위한 3가지의 공식적인 행동들에 대해 9개의 회원 교회들에게 권함:

1. 성약 관계에서 다른 참여 교회들과의 협력을 위한 결정적인 협약으로써 본 문서를 승인하기 위함이며, 이를 충분히 가능케 할 행동들을 포함한다.

2. 교회연합 협의회(교회연합 협의회)의 회원 교회들 및 본 협약을 유사하게 승인한 다른 교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기꺼이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하기 위함.

3. 그들 자신에 대해 안수받은 목사들에 대한 조화를 위한 준비 및 본 문서에서 출발한 것처럼 성약 관계에 진입 하는데 필요할 수 도 있는 절차들 및 과정들을 일치시키기 위한 시작.

"성약 과정" 설계시에, 제17차 총회에서는 다음의 것을 다루었다 "참여 교회들이 2개의 문서들, 즉 *교회연합 일치 및 성약 관계내의 교회들*, 내에서 포함된 협의회의 제안들을 쫓아 행동하고 고려한 후에, 교회연합 협의회는 이러한 권고들에 관한 교회들의 행동을 조심스럽게 조사할 것이고, 그에 따른 다음 단계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임무였으며 세인트 루이스에서 모임을 가졌던 교회연합 협의회의 제18차 총회의 초점이었다 우리는 9개의 회원 교회들로부터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회원 종파들 가운데 7회원 교회들이 (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Church,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Christi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International Council of Community Churches, United Church of Christ, and United Methodist Church) 성약 과정에 있어서 한층 더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동일한 7개의 논점과 관심사들과 함께, 성약 제안을 승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행동을 취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총회 수준에서, 미국 장로교는 성약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 장로교의 헌법내에서 필요한 변화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회들은 에피스코패 (episcopé), 성약 평의회, 및 치리 장로의 역할에 관한 근심 때문에 감독 목사에 관해 요구된 수정안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Episcopal 교회로부터 제18차 총회까지의 광대한 보고서는 1994년의 일반 협약의 행동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Episcopal 교회가 성약 관계에 가담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과 교회연합 협의회 일치 및 성약 관계 내의 교회들에 관한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또한 교회연합 협의회 과정 내에서 Episcopal 교회의 장래의 참여를 알려주는 5개의 지침 원리를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세인트 루이스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지 식별하기 위해 노력 했으며, 교회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신앙심 깊은 회담에 관한 꼼꼼한 조사로부터 몇 가지의 명백한 확언을 재빠르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가까운 장래에, 이제는 가능한, 종파의 모든 표시들에 명백한 표현을 함으로써, 협의회 교회들 사이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달성하고자 하는 소망,

2. 그 새로운 관계 내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삶의 더욱 충실한 현실화로 이동하고자 하는 소망,

3. 함께하는 삶의 중심적인 징표로써 인종적 평등에 전념하고자 하는 소망.

다음의 권장 사항들은 우리 교회들의 행동, 본 총회의 임무, 및 이러한 궁극적인 확언들로부터 발하도록 추구한다.

III. 권고 사항

교회연합 협의회의 제18차 본회의는 참여 교회들이, 정식적인 행동으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로 불려질 새로운 관계에 가담하는 것에 동의하고, 2002년에 있을 기독교인 조화를 위한 기도 주간 동안 공개 선언 및 예배 의식을 통한 이 새로운 관계로의 서막을 함께 열 것을 권장한다.[1]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교회의 생활에 필수적인 많은 것들에 있어서의 조화를 명백하게 표현할 것이고 (제4장에서 약술된 것과 같이), 심지어는 본 공동체의 회원으로써 그들 자신들 사이의 조화 및 타 교회와의 조화에 있어서의 성장을 추구할 것이다.

제18차 본회의는 교회연합 협의회내의 참여 교회들이 2002년에 새로운 관계에 참가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희망한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교회가 있는 경우, 이 교회들을 그리스도가 기도한 완전한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계속되는 관계 속에서의 동반자가 되도록 초청하고 (제5장 참조) 가능한 한 많은 다음의 관계 표시들을 표현하도록 격려 한다. 그 외에 다른 교회들도 이 기준에 관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과 관계를 갖도록 초청 받을 수 있다.

IV.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가시적 표시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 참여 교회들이 다음과 같은 가시적인 표시들을 통하여 서로 그들의 관계를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1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교회임을 확실한 표현을 사용한 공동 인정.*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참여하는 교회들간에 다음의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과 성신으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한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

—구세주로서 그리고 육신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약

—성전을 증거하고, 성전에 대해 증거 되며, 신앙의 최고 표준서이며 규칙이 되는 것은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성스러운 성경에의 충실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2가지의 성식인, 세례와 성만찬에의 충실한 참여에 대한 공약;

—하나님의 복음 전도 및 예언자적인 선교 및 하나님의 정의 및 평화의 통치에 대한 공약;

—성령이 교회들에 명백하게 주어져 왔다는 목회에 대한 감사한 수락.

4.2 *한 세례를 이룬 회원들이라는 공동 인정.*
이것은 또한 모든 신자들이 공통의 신권을 공유하고 안수될 이러한 회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목회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

4.3 *안수 받은 목사에 대한 공동 인정.*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참여하는 교회들이 서로의 안수 받은 목사들이 하나님 은총의 도구로써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으며, 이러한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충실함을 구하며, 성신의 내적인 부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육신,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교섭 또한 지닌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그러한 인정은 2007까지는 목사의 공동 화해를 실현하기위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써 보여진다 (교회연합 협의회 제18차 총회 보고서'의 제5장에서의 규정을 따름).

4.4 *사도 신경 및 니케아 신조에서 표현된 경전 및 성전에 관한 사도의 신앙을 각 교회가 확약하고 각 교회가 그 삶 및 선교에서 사도적인 신앙에 증거 하도록 추구한다는 공동 인정.*

4.5 *계획된 조화를 이룬 성만찬 의식에 대한 조항.* 이것은 성례전이 교회의 삶의 중심부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성찬의식을 공유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징표이다.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한 식탁에 그들의 다양성을 지닌 체 모일 때, 그들의 성찬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안에서 서로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증거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성찬을 함께 취할 수 없거나, 취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들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과 인간의 깨어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4.6 *정규적으로 계획된 기준에 입각한 그리스도의 선교에 함께함, 특히 인종적 차별에 대항하는 선교에 참가.* 교회는 예배, 복음의 선포, 복음 전도, 교육, 및 하나님의 정의, 평화 및 사랑을 구체화하는 행동을 통한 그리스도의 선교에 관여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의 회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약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여 감정과 마음이 바뀌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하는 교회들은 이 사회 및 교회자체 내에서의 생활을 왜곡시킨 백인 특권주의 체제에 도전함으로써 '인종적 차별 폐지'에 대한 특별하고 강조된 부름 (제18차 총회 보고서'의, 제6장에 그 이유를 약술함) 을 또한 인정하는 것이다.

4.7 *전체와의 통일을 증진시키고 인종, 나이, 성별, 불구의 형태, 성적인 기원, 및 계층과 같은 일들에 근거한 교회 및 사회에서의 진보를 처지게 하고 제외시키는 모든 것에 반대하기위한 계획된 공약.*

4.8 *신학적인 회담의 전진 과정.* 그러한 회담은 본질적으로 다음의 것들을 하기위해 시도한다.

1. 인종적 차별에 대항하는 훨씬 더 강제적인 입장을 이룩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인종적 차별주의에 대한 이해력을 깊게 하기 위해,

2.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사도적인 신앙에의 공유 증거를 강화하도록 그 회원들에 의해 동일시된 신학적 문제들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의 회원들에 의한 안수 받은 목사에 대한 공동

조화를 위한 기초를 수립하기위해 (제5장에서 논의함).

4.9 *적절한 책임 기구 및 협의와 의사 결정을 위한 적절한 방법들.*

몇 조항이 새로운 관계에 대한 표시에 영향을 끼치고 이 교회들이 이룬 공약에 대해 교회들이 공동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기위해 만들어진 반면,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개발된 기구들은 탄력적이어야 하고 그 지방의 환경에 순응해야 한다 ('제18차 총회 보고서--'의 제9장을 따름). 그와 같은 전진 기구들 외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회원들은 긴급한 문제들을 고찰하고 공통관심사에 관해 함께 증거를 나누기 위해 이따금씩 모이길 원할 수 도 있다.

이러한 가시적 표시들을 통해 표현된 관계는 조직적인 통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공동체가 된다고 스스로 이해하고 있는 교회들간의 다양성에 있어서의 조화를 말한다. 창립하는 순간부터, 이들 교회의 생활이 전에 결코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눈에 띄게 서로 얽혀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창립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들의 관계는 정답게 공존하고 협의하는 하나가 아닌 서로서로를 결합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구체화하는 구속력 있는 공동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V. 우리가 추구하는 더욱 충만한 조화의 표시들

이제는 가시적인 공약의 새로운 수준에 가담하는, 우리 각자에 대한 관계는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장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로써 공유 하게 될 선물들보다 더 깊은 선물을 공유함으로써 표시된 함께 하는 삶의 강도를 추구한다. 우리는 각 참여 교회의 안수 받은 목사 들이 모든 면에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사가 될 수 있는 과정과,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실천을 추구하고 있는 조화의 과정을 추구한다. 우리는 이제껏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완성 시킬 방법들을 찾을 수 없었음을 인정한다. 감독 목사는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며, 이것은 공동 감시 또는 개인적인 감시 및 감독에 대한 역사적인 계승에서의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을 지닌 교회들이 전세계의 인정을 초래할 방법에 있어서 일치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최종 도착지를 진행시키기 위해, 본 회는 집행 위원회를 목사의 조화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도록 교회연합 협의회에 포함된 9 교회들로부터의 대표자 모임을 가까운 장래에 가질 수 있도록 지시한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명쾌함은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창립을 고려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서의 함께 하는 삶이 이 조화의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제언들을 드러내 놓길 희망하는 바이다. 여하히 남아있는 도전들에 관한 해결책 뿐만 아니라, 목사들의 완전한 조화는 2007년의 기독교인 조화를 위한 기도 주간까지 이루고 선포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우리의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모임이 공식적인 자문 참여자들인 미국내의 Evangelical Lutheran 교회와 미국내 개혁 교회를 포함하게 되길 감히 희망하는 바이다. 우리는 또한 로마 카톨릭 교회, 정통파 교회들, 오순절 신성 교회들, 및 세례 전통과 다른 역사적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들과의 토론을 포함한, 계속해서 넓혀지는 모임들 내의 회담들을 추구한다.

우리는 더 큰 한 모임에서 호의 및 인류 확언의 운동들과 모든 사람들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교 및 다른 현존하는 신앙들의 대표자들과의 담화를 추구한다. 우리는 우리와의 협정 및 제휴의 변화하는 단계 속에서 많은 집중적인 단체들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조화의 표시로써 창조된 질서의 지속성, 평화 및 정의를 추구할 때, 인류 전체의 조화를 위한 하나님이 의지에 대한 징표 및 방법들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인류의 완전한 조화를 갈망하며, 또한 마지막 시기엔,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실 때,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어떠한 성전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공언하는 바입니다.

VI.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에 대한 보증으로써의 조직적인 백인 특권주의에 대한 투쟁 서약

인종적 차별이라는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직면한 가정 중요한 논점이다. 본 회의는 인종적 공평에 대한 투쟁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 대해 이 새로운 관계의

제1차적인 보증으로써 지명한다.

첫째, 백색 인종 특권으로 대표된, 오만에 대한 죄의 계속된 실체는 권력과 편견에 근거한다. 유럽계 미국인들이 조직적인 백색인종 특권에 의해 나타난 사회적, 정치적, 및 경제적 평등에의 장애물들을 파괴하기 위해 기꺼이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고, 그런 체제하에서 이들이 누렸던 특권들의 일부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엔,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들, 모임들 및 회원들이 평등으로써의 조화에 대한 상대편인 유럽계 미국인의 부름의 성실성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하기가 어렵다.

둘째, 불공평한 체제로 인해 획득한 부정 이득에 대한 그들의 주저하지 않는 용인으로, 본 공동체의 백색 회원들이 이 공동체내의 흑인 회원들 삶의 충만함을 부인하는 이 불공평한 사회 체제에 무언의 공모를 계속할 경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서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란 있을 수 없다. 조직적인 유색 인종에 대한 특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복음 원리들에 방해되기 때문이며, 결국엔, 우리들 가운데 도전 받지 않은 이 악마의 주권의 존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서 진정한 친교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서 우리가 촉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단지 교의상의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실존하는 신앙인 셈이다. 그러한 신앙은 충실한 공동의 책임인 생명이 있는 표시들을 요구한다. 이러한 정황에 있어서, 그러한 책임의 징표들은 경건한 선언 이상이어야만 한다. 즉, 이런 징표들은 백색인종 특권을 파괴할 목적을 표시하는 것을 포함한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한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교회연합 협의회의 제18차 본회의에 의해 승인된 "인종적 차별 투쟁을 위한 부름에의 기독교인 공약 및 행동". 우리는 또한 미국 내에서 조직적인 백색인종 특권의 작용 및 효과에 관한 공동 후원 분석 연구의 채택을 권장했습니다.

보상 정의는 숙고될 수 있는 인종 불평등에의 또 하나의 제언 이다. 주권을 장악한 백인 교회들은 인종에 근거한 경제적인 착취의 다른 형태들과 몇 세기에 걸친 노예 노동력의 직접적인 결과인 부에 근거한 자본 형성의 수익자들이다. 그 결과로 인한 불공평은 보상 정의를 요하며, 이것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들과 기구들이 교회와 사회에 대한 계속적인 공헌들에 대해 이들의 권능 부여에 대한 자산들을 공유함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불평등이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조사하고 차후의 행동을 제안하고, 이로 인하여 더 나아가서의 행동들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의 회원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 그들 각자의 종파내의 목사들과 인종 평등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소집하도록 교회들에게 권고하는 바이다.

하나의 진실된 공동체가 되도록 분투하는 단체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직면한 가장 눈에 띄는 죄악의 조건이기 때문에라도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억압의 계속되는 체제를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엄습했던 억압과 사회적 무시에 대한 교육이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하심 같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분투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 공동체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가질 수 있고, 게다가 더욱 풍부한 삶을 가질 수 있는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구체적이고 헌신적인 행동들에 관여 함으로써 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VII. 지방 및 지역적인 삶에 대한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내의 우리의 조화 속의 삶은 모든 단계 및 특별히 조합 교회제의 단계에서 솔선 및 창조성을 요구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화를 가시적으로 만드는데 있어서의 우리의 성공은 교회가 존재하는 우리의 방식가운데 일부가 되는 그러한 솔선에 달려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속의 우리들은 우리가 선교 하는 방법과 교회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에 있어 우리의 동반자를 포함하는 훈련을 취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음 사항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신학교에서 모든 참여 교회들의 역사, 신학 이론, 및 정치 형태를 가르쳐지도록

하고 목사 지원자들이 다른 교회들에 관한 지식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제안한다,

—회중 또는 사법 행정의 선교에 관한 주요한 결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다른 회중 또는 사법 행정들과의 담화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목회자들 및 평신도가 말씀 선포 및 연구에 있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될 공통 성구집이 어느 곳에서도 어울릴 수 있을 것을 제안한다,

—각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회중들이 인종적 차별에 대한 급습에 그들의 공동 참여를 결정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창립과 관련하여 만날 것을 제안한다,

—성만찬의 정기적인 공유를 위한 모든 장소에서 나타나는 절차들,

—안수 의식이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로부터 온 사람들의 참여 및 참석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교회들에 속한 청년과 청소년들이 에큐메니컬 기구들에 참여 및 공통의 프로젝트를 통한 에큐메니컬 지도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에큐메니컬 편성에 관여할 것을 제안한다.

회중들 및 사법 행정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조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창조성과 부단한 관리 모두 다를 촉진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합동 선교 프로젝트,

—공동 예배, 설교자 교환, 교회 대표자들이 중요 의사 결정 그룹 및, 세례와 취임 예배식을 위해 참석함,

—교회 및 사회 내에서 인종적 차별에 대항하는 우리의 공동 분투에 대한 빈번한 평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에 관해서 및 모든 참여 교회들에 관해 가르치는 교육적인 프로그램,

—동반자 교회의 회중의 삶에서 파견된 회원들에 의한 참여,

본 회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창립을 향해 우리가 살아감에 따라 회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조적인 지방 활동들을 돋보이게 하는 월보를 집행 위원회가 발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회원들은 제4장에서 나열된 많은 가시적 표현들에 따라 살기를 추구하는 연방되고, 연합되고, 조화되고 서로 결합된 많은 회중의 증언을 얻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보편적으로 공유된 목사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회원들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결코 다른 교회들과의 공동 목사를 막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원 교회들은 서로 함께 선교에 참여하고 삶을 공유할 특별한 부름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다.

VIII. 실행

교회연합 협의회의 회원 교회들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본 보고서에서 이루어진 권고들에 관해 응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우리는 참여 교회중 8개의 교회가 제4장에서 나열된 대부분의 "가시적 표시들"에 형식적인 찬성을 이미 주었다는 것에 감사 드립니다.

이 새로운 관계의 막을 열기위해, 본 회의는 교회연합 협의회의 집행 위원회에게 다음 사항들을 지시한다.

1. 다음의 3가지 사항을 하기위해 참여 교회들의 대표자 모임을 소집할 것, a)

권고들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들 공유, b) 국가적, 지역적, 및 지방적 수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개막을 위한 공동 준비, c) 차후의 실행을 위한 책임자 선정.

2. 교회들에게 2002년의 창립을 적절히 준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금 모금을 요청.

3. 새로운 관계의 창립에 대한 적절한 예배식을 준비할 것.

IX. 공동 권능 부여 및 책임 기구

교회들이 설립한 이 새로운 관계는 교회들을 예배, 증거 및 봉사의 새로운 공동 생활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이 공동 생활은 공동 권능 부여 및 책임 기구에 의해 지역, 지방 및 국가적인 발현으로 봉사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시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교회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의 가지각색의 방법들을 조화 시키고 촉진 시킬 것입니다. 이 기구들은 교회들이 공동 생활의 새로운 표현에 진입함에 따라, 공동 의사 결정, 공동 시험을 가능하게 할 것 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상상해 볼 때, 교회들로써 우리들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우리의 비젼을 계속 전진시킬 통솔력 및 의사 결정 기구에서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의 원리들이 새로운 기구 편성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 공동 권능 부여 및 책임 기구는 지역 교회 및 문화적 상황에 따라서, 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다를 수 도 있습니다. 그 목표는 그 장소 안의 교회들이 포함된 특정한 과업과 지역 상황에 적절한 형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포함성 본 기구들은 공동 생활에 함께 참여한 교회들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공동 생활가운데서의 특별한 장소 및 표현에 있어, 이런 풍부함과 다양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 속의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들의 폭넓은 동반자들 또한 포함할 수 도 있다. 그 목표는 모든 교회들이 그들의 공동 생활 및 증거에 있어서 서로간에 책임이 있는는 것을 보증하는데 있다.

가시성 본 기구들은 기독교인들 및 교회들이 사실, 이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새로운 관계를 구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틀림없이, 교회들은 새로운 관료 제도들을 창출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목표는 교회들이 그들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충실하고 지속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러한 원리들의 양상으로 우리는 이 새로운 관계속의 회원 교회들에 대해 최고로 봉사할 기구들의 성질을 명백히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실행 전략 회의를 소집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이 회의는 집행 위원회 및 회원 종파들의 다른 주요한 지도자를 포함할 것이다.

X. 더욱더 폭 넓은 관계들

그 초기부터, 교회연합 협의회는 더 폭 넓은 에큐메니컬 운동 체제 속에 있는 교회의 가시적 조화를 위한 탐구를 시작해왔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생겨남에 따라, 이 교회들이 세계 속의 조화되는 교회들과 조화된 단체들 가운데 그 위치를 단언하고 세상에 알린다. 교회연합 협의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질에 관한 조화 자체의 경험과 세계에의 증언을 통해 습득한 것들을 이런 교회들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국가적, 지방적, 및 지역적인 에큐메니컬 단체들에 그 회원 교회들의 참여 및 기독교인 세계 위원회의 다양함을 지닌 회원 교회들과의 연계들에 감사하게 인정하는 바이다.

교회연합 협의회는 그들 가운데 공동 생활의 쌍무적 표현, 또는 더 광범위한 표현들에 관여한 몇 교회들을 포함해 왔으며, 이러한 표현들은 즉, African Methodist Episcopal, African Methodist Episcopal Zion, 및 Christian Methodist Episcopal 교회들 사이의 토론, 이러한 교회들과 연합 감리 교회, 및 기독교인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들)-그리스도 동반자의 연합 교회 사이의 토론과 같은 표현들을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이러한 지속되는 관계들을 환영하고, 전체로써 그 단체에 풍부함으로써, 기독교인 신앙과 생활의 특별한 양상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는 성장을 환영한다.

몇 교회들은 미국내의 Episcopal 교회와 Evangelical Lutheran 교회사이의 제안된 협약과 그리스도의 연합 교회, 미국 장로교, 미국내의 개혁 교회, 및 미국내의 Evangelical Lutheran Church 사이의 완전 교체의 관계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의 회원들이 아닌 교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있다. 이것들도 이런 관계들이 가져올 선물에 대한 기대와 함께, 환영 받아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것인 더 커다란 조화의 가시적 표현에 대한 계속되는 탐구가 이루어 질것이라는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나 그 길을 여행하고 있을 좀더 폭 넓고 깊은 공동체를 갈망한다. 미국내의 Evangelical Lutheran Church 및 미국내의 개혁 교회와 우리 사이의 몇몇에 의해 이루어진 공유된 생활과 이해에 있어서의 특별한 성장을 인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여정에 이들 교회들이 우리에게 동참하도록 하기위한 정식적인 초대를 할 시기가 되었음을 느끼는 바이며, 우리는 집행 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이것이 신속히 이루어 질것인가에 대해 고려할 것을 권고 하는 바입니다.

송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로써의 우리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희망과 기쁨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와 찬미를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지로다 아멘 하더라
-요한 계시록 7.12

부록 1에 대한 주

1. 기독교인 조화를 위한 기도 주간은 특별히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생신을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의식이 이 주간동안 있기에, 그러한 의식을 위해 상징적으로 적절한 시기가 된다. 지방 환경에서 더 적절한 경우가 있다면 지방 및 지역 의식은 나중에 이루어 질 수 도 있다.

부록 2

인종적 차별주의 투쟁 행동 및 기독교인 공약 부름

다음은 교회연합 협의회의 제18차 본회의 에서의 대표단들로부터 9개의 회원 교회들 까지의 행동 부름이다. 공동 증언 및 봉사는 에큐메니컬 단체의 2가지의 표시들이다. 교회연합 협의회 회원 교회들은 회원 교회들 사이, 모든 교회들에서, 그리고 사회에서의 인종적 차별에 투쟁하기 위해 필요한 대처 안에 집중함으로써 이 공약에 맞추어 살기로 선택해왔다.

교회연합 협의회의 경험은 교회의 조화가 창조와 구속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선물임을 명백하게 했다. 이 조화는 교회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공동체 및 모든 삼라만상을 위해 주어졌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바친 선물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 의도하신 종파 및 정의의 기구 및 징표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 진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연합 협의회의 가시적인 교회 조화 탐구를 알려준다.

* 신앙, 성례전, 및 목사에 있어서 교회들의 조화 탐구 및 교회들과 인간 공동체에서의 인종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분투사이에는 반박할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 진정한 조화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교회들과 사회의 생활 속에서의 인종적 평등을

요구함을 의미한다.

* 인종적 차별 및 압제의 모든 권력에 대항하는 우리의 예언적인 증언은 이들 교회들의 충실함에 대한 근본적인 시험임을 의미한다.

인종적 차별주의에 대한 투쟁에서, 교회연합 협의회의 제18차 본회의는 9개의 회원 교회들이 복음들에서 권고된 조화, 그러나 아직 이들 교회들의 기구들 및 생활 속에서 완전히 표현되지 않은, 이 자유롭게 하고 조정 시키는 조화에 자신들이 전념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되고자 애쓰는 교회연합 협의회 교회들이, 우리들 자신 및 우리의 사회를 변화 시키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환경 하에 있다.

미국내에서 무언가가 인종과 연관해서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 우리의 국가 유산 및 문화적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깊이 스며든 악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종적 차별 주의 이다 — 즉, 이것은 특정한 인종적 소수민족 그룹의 발생론적이고 문화적인 열세, 및/또는 그들의 관습을 경시하고 이들을 추방하거나 그들의 인종적 소수 민족의 정체로 인해 그들의 완전한 인간성을 그들에게서 빼앗는 치우친 역설을 말한다.

인종 차별 주의가 우리의 관습과 제도에 깊숙이 베어있어 어느 누구도 인종 차별 주의로의 참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순 없다. 사실, 우세한 그룹가운데 어느 회원도 인종적 차별 주의에서 오는 이익을 완전하게 피할 수 없고, 종속 그룹의 어느 회원도 이 압박의 의도를 피할 수 없다. 인종적 차별 주의는 결국 권력에 관한 것이다 — 즉 지배 그룹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또는 교회 성직의 특권에 치중한 이 그룹에 의한 권력의 남용이며 종속 그룹에게 놓여진 기회에 대한 박탈의 결과이다.

현저한 솔선이 현재의 조건 및 경향에 대항하기 위해 취해 지지 않는다면, 인종 차별 주의 — 특히 백인민족 우월감 — 은 "모두를 위한 자유 및 정의"를 진실로 구체화 시키는 사회에 대한 우리들의 국가적 그리고 교회 성직의 열망을 계속해서 타락시킬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국가 및 우리의 교회들에 속한 사람들에게 백인 민족 우월 주의와 인종적 차별 주의라는 죄에 투쟁하기 위한 일신된 공약을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의 국가 및 우리의 교회들 모두의 도덕적 고결과 진실성이 이 분투에 달려있는 것이다. 특별히 교회연합 협의회 속의 교회들의 경우, 이 조화가 인종적 평등과 공평에 대한 생생한 대중의 증언을 초래하지 않고 인종적 결속을 구체화 시키지 않는 다면, 가시적 조화를 위한 우리의 추구는 무의미 한 것이 된다 — 사실, 사기 행위와 같다. 교회연합 협의회 회원들에 의해 계획된 하나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교회들이 함께 이 공약을 구체화 하도록 한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조화가 그 지시인 기독교인 복음의 견지에서 볼 때, 인종적 차별 주의는 흉포한 죄인 것이다. 이것은 창조 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이미지를 부인하는 것이고, 또한 세례에 의해 새로운 창조로 진입할 때 각 사람에게 준 이미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되고자 열망하는, 교회연합 협의회의 회원 교회들이 이 인종적 차별 주의에 투쟁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인종적 차별 주의에 대항하는 가시적인 우리의 투쟁을 통해, 진실된 카톨릭, 진실된 복음 전도, 및 진실된 개혁된 교회라는 우리의 비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리고 그런 부름에 대해 효과적인 응답을 하는데 방해물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본 18차 본회의는 우리의 회원 교회들이 다음의 9개의 전략 공약을 제정할 것과 이러한 공약들을 함께 실행할 것을 호소 하는 바이다.[1]

1. *계속해서 인종적 차별 주의에 대항하는 강압적인 신학적 입장을 제정한다.* 인종적 차별 주의는 교회로부터 위안을 구할 수 없고 교회 안에서 피난처를 찾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인종적 차별 주의는 이간된 신앙의 공동체들 속으로 우리를 분할 시키는 인간적 견지에서 세워진 벽들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진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13-14).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준으로 완전하게 열려있지 않다면, 교회는 "진정한 카톨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다양성에 있어서의 예언적인

조화의 징표인, 모델이 되어야만 한다. 기독교인들은 이 확언을 정식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청취해야 한다.

2. *우리의 회원 교회들이 채택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항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솔선안에 대하여 그 이름을 밝히고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이렇게 배움으로써 2002년 Churches Uniting In Christ의 개회 성찬 축제에서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기대로 상담적 성격의 컨퍼런스를 고려해야 한다.

3. *체계적인 변화로 이끄는 회담 동안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날 의식 및 이와 유사한 적절한 의식들을 요구하는 바이다.* 전공동체의 회원들 사이에서 및, 교회들 사이와 그 안에서의 이 인종간의 담화를 가능케 하고 이 담화를 장려한다. 그러한 담화들이 알맞게 계획되었을 때, 두려움, 의심 및 분노들을 감소시키고, 상호 존경 및 이해를 강화 시키는 — 정의 및 조화의 필수 불가결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날 의식과 기독교인 조화를 위한 기도 주간 사이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조화를 추구하고 인종적 차별 주의 처리의 관심사를 서서히 나아가게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4. *사회의 도덕 윤리 질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유는 그 질서가 요구하는 신중한 논쟁과 뉘앙스가 있는 차이는 효과적인 옹호를 방해하는 극단적으로 단순화 한 경고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들 들자면, 긍정적인 행동가운데 몇 가지의 우선적인 형태의 적절한 방어는 배분 및 보상 정의의 충실하고도 미묘한 해석에 얼마간 달려있다. 사회의 도덕 윤리는 인종적 차별 주의에 반하는 전략에 필요한 깊이를 가져올 수 있다.

5. *예배는 인종적 차별 주의에 반하는 계획된 증언이라는 것을 보증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복음의 충만함을 반영한다.* 예배는 때때로 인종 분리 및 억압의 도구가 된다. 성만찬의 테이블은 신학적인 장애들에 의해 분리될 뿐만이 아니라, 교회들 사이 및 그 속에서의 인종 분리에 의해서도 분리된다. 교회연합 협의회의 회원 교회들이 공동의 테이블을 추구함에 따라, 이 교회들은 모든 성찬식의 방편 및 예배식을 평가하고 그들의 인종적 민감성과 포함성을 보증해야 한다.

6. *인종적 평등의 요구 및 인종적 차별 주의의 원동력에 관한 강건한 기독교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하십시오.* 성찬식의 방편들과 같은, 교육적 방편들은 이것들이 특별히 가족 교육과 관련하여, 인종적 평등에 대해 그리고 인종적 차별 주의에 반하는 지속적인 증언임을 보증하도록 평가될 필요가 있다.

7. *교회들의 기구, 정치 및 프로그램들에 깊숙이 박힌 인종적 차별 주의를 찾으면서, 엄격한 성직 수임의 자기 분석에 관여하고, 우리의 진보를 측정하기 위한 목표를 세운다.* 이 자기 심사는 변화를 위한 목표들을 제공하는 동안, 인종적 조화를 진척시키고 인종적 공격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은 교회들 사이의 공동 책임, 훈계, 및 확언의 배경 하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8. *옹호를 통한 평등 인권을 위한 교회들의 분투 공약을 일신 한다.* 평등권 협의 사항을 지속시킬 때, 정의의 4가지 도구들이 특별히 우리의 시기에 적절해 보인다: (1) 연방 정부 시민권리 법의 보호 및 증대, (2) 인종적 차별 주의가 일으킨 불균형 및 상실을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단정적인 행동 솔선들의 지속, (3) 적절한 주택 공급, 건강 관리, 영양, 고용, 및 기타 필수적인 물질 조건과 같은 경제권의 방어, 및 (4) 범죄인 재판 시스템의 개혁.

9. *신 이주 및 문화적 그룹에의 회원 교회들의 수용력 및 반응성에 있어서의 인종적 차별과 관계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편들을 개발한다.*

이 "인종적 차별 투쟁의 행동 및 공약의 부름"에 있어서의 첫번째 단계로써, 제18차 본회의의 대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들이 되길 원하는 우리의 추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써 우리의 국가 및 우리의 교회들 내부의 인종적 차별 주의에 투쟁하기 위한 우리의 친교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함께 서약했다.

인종적 차별에 대한 투쟁은 만만찮은 일이다 — 그리고 이 인종 차별을 박멸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현실적인 가능성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써 보일 수 있다. 그것은 개인들의 전환 및 교회들의 변모 모두를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투에 있어서 지속성 및 희망에 대한 충분한 동기를 지니고 있다 — 주로 하나님은 인종적 일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언제나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계획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포용성 및 조화에 따라 살고 인종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교회연합 협의회 교회들에 의한 공약은 서약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 ,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구속,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및 교회의 성질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이 공약에서, 하나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자 노력하는 9개의 이 교회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 대한 조화의 징표 및 서두가 될 것이다.

이 글은 1999년 1월 24일, 미조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있었던, 교회연합 협의회의 제18차 본회의에서 9개 회원 종파들의 대표들의 만장 일치의 투표로 채택됨.

부록 2의 주

1. 이 9개의 공약들은 "인종적 차별 제거: 인종적으로 정당한 조화 탐구 전략" — 1998년 7월/10월, 제37권, 3-4번, Mid-Stream에서 출간된, 교회연합 협의회의 제18차 본회의를 위한 기본 자료 문서. 에서 더욱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집행 위원회는 이 기록을 연구와 실행을 위해 전권 위원회에게 추천한다.